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076-10

釜山史料叢書 21

國 譯 通 信 使 膽 錄 (Ⅱ)

(1681. 6 ~ 1683. 3)

解題 金東哲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14. 8

일 러 두 기

- 이 책은 현존하는 『통신사등록』 14책(1641년, 인조 19년 ~ 1811년, 순조 11년)과 『통신사초등록』 1책 중 『통신사등록』 제3책(1681. 6 ~ 1682. 4. 1)과 제4책(1682. 4. 15 ~ 1683. 3. 4)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일본의 통신사 파견 요청, 통신사절목, 통신 3사(정사, 부사, 종사관)자료와 왜선의 출래, 차왜의 출래, 안위관 파견, 차비역관의 출래, 문의역관의 파견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통신사등록』의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하되, 외교 및 무역 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조선후기 공용문서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일본 인명과 지명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표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 표기하였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Ⅱ)

(1681. 6 ~ 1683. 3)

차례

□ 일러두기

□ 차례

□ 국역 통신사등록(Ⅱ) 해제 3

국역 통신사등록

제 3 책

□ 신유(辛酉, 1681년, 숙종 7년)

- 6월 26일 新關白 襲位로 通信使請來差倭 出來 通報함 65
 - － 差倭에 대한 接慰官은 慶尙道都事로 差定할 것
- 7월 13일 式年科擧設場으로 인해 接慰官 慶尙道都事를 京慰官으로 差定할 것 67
- 8월 5일 通信使請來差倭 藤一政 一行 出來 68
 - － 差倭 一行에 대한 接待 伴從數 減除
- 通信使請來差倭 一行에 대한 三度宴 및 接慰官 禮單物目
- 通信使請來差倭 齎來 書契藤本 및 別幅內容
 - － 通信使請來差倭에 대한 回答書契 준비 및 回禮物目
- 8월 13일 通信使請來差倭에 대한 接待 인원수 조정 74
- 8월 28일 通信使請來差倭 一行에 대한 接待 格倭數 減除 76
 - 京接慰官 尹德駿 동래 도착
- 9월 6일 通信使請來差倭가 올린 書契를 上送함 77
- 9월 15일 通信使 一行의 應行節目 內容 77
 - 日本國王 以下 各處 禮單物目

○		通信使齋去雜物 各道卜定數	
○	9월	27일 差倭 一行에 대한 下船宴 設行	85
		－ 關白子 賜給禮單 磨鍊	
		－ 通信使 姓名 題給要請은 불허함	
		－ 應連을 加送할 것	
○	10월	2일 對馬島 奉行書契에 대한 回答여부 논의	87
		－ 對馬島 奉行書契 內容	
		－ 對馬島 奉行書契에 대해 回答書契를 撰出 下送할 것	
○	10월	5일 應子를 加分定할 것	89
○	10월	8일 回答書契 중 字行高低 문제로 인한 改書 논의	90
○	10월	12일 回答書契 改書不可 결정	91
○	10월	15일 權現堂 賜祭時의 各樣雜物 준비	91
○	10월	24일 權現堂 以下 3處에 大燭臺, 香爐, 等物을 造送할 것	92
○		請使差倭에 대한 別宴 대신 宴請排床으로 入給함	
○	10월	27일 通信使 別幅應子 元數外 加數分定 및 正月 內 入級할 것	94
		－ 權現堂 以下 3곳의 樂器를 精造할 것	
		－ 乙未年 樂器 10종 造送數	
		－ 경상도 分定 雜物 內 物目 확인(狀啓紙 및 狀紙)	
○	11월	2일 別定差使員이 通信 使齋去雜物를 主掌 照捧할 것	96
○	11월	7일 通信使齋去 人蔘 및 應連數를 改分定할 것	97
○	11월	9일 通信使齋去 應子 輸送日時 변경	97
○	11월	10일 일본에 보낼 樂器 造作時 印信을 取用할 것	98
○		應子 改分定 및 수송일시 변경 통보	
○	11월	15일 일본측에서 요청한 燈籠, 花瓶 等物의 造成 결정	98
○		請使差倭에 대한 上船宴 設行 및 通行入歸 보고	
○	11월	16일 通信使齋去雜物의 分定內容 확인	101
○	11월	18일 首譯私贈禮單雜物 및 使臣所乘 3船紅段帳을 乙未年 例로 磨鍊 할 것	103
○		江原道 卜定 盤纏 중 生梨를 柏子로 대신할 것	
○	11월	19일 通信使齋去 盤纏 중 狀啓紙 및 狀紙에 改付標할 것	103
○	11월	21일 通信使持去燈籠鑄成時의 監董譯官 差送	103
○		通信使船帳에 쓸 紅綾 준비	
○	11월	22일 通信使 渡海時 船上什物 各道 分定數	104

○ 11월	23일	通信使 使行時 使臣禮單 및 首譯私贈禮單 磨鍊	106
○		通信使 使行時 帶行員役差定	
○ 11월	25일	燈籠鑄成時 監董譯官 差定	108
○		平安道 卜定應連 輸送日 改定	
○		燈籠監董譯官 下送時 騎卜馬 題給	
○		通信使 使行時 差使員 差定	
○ 12월	3일	燈籠監董譯官에게 給馬下送	109
○ 12월	17일	燈籠鑄成에 필요한 인원 및 物力을 확보할 것	109
○ 12월	19일	問慰譯官 卜爾標, 韓後援 및 護行差倭 藤成久 來到	110
		－ 일본측이 江戶所用物品 求貿 요청	
		－ 일본측이 通信使 一行의 職姓名 書給 요청	
○ 12월	21일	問慰譯官 귀국 후 手本內容(通信使 一行에 대한 일본측 요구) …	112
○		守職倭人 인원수 확인 후 禮單 磨鍊할 것	
○		問慰譯官齋來 對馬島主 別單內容	
○		對馬島主 奉行 等 別單內容	
○		일본측 요구에 대한 禮曹와 備邊司의 논의 및 처리방침	
○		馬上才 差定	
○ 12월	25일	權現廟, 大有院, 嚴猷院禮單 및 祭物 磨鍊	129
○ 12월	27일	權現廟, 大有院 焚香幣祭物目 및 嚴猷院 致祭所用物目	129

□ 임술(壬戌, 1682년, 숙종 8년)

○ 1월	3일	李彥綱을 陞差하여 通信副使에 임명할 것	131
○		일본에 보낼 御筆文字를 稟定할 것	
○ 1월	5일	差倭 一行이 別單內 일본측 요구에 대한 回答 및 3使臣 職姓名 통보를 요청	131
○ 1월	15일	通信使行에 관한 일본측 요구	132
		－ 日光山焚香 및 嚴猷院致祭를 하지 말 것	
		－ 燈籠 및 祭物을 가져오지 말 것	
		－ 通信使 使行時 所用物品 求貿 요청	
		－ 通信使 一行의 인원수 조정	
○		對馬島主別單內容	
○		對馬島主別單內容 확인 지시	
○		執政, 奉行禮物 加磨鍊 및 禮單物目	

○ 1월	21일	일본 측이 通信使절차別單에 대한 回答別單 書納 요구	136
○ 1월	18일	通信使 發程 및 乘船日時 推擇	137
○ 1월	23일	通信使 入送 및 行期에 관한 移咨여부를 廟堂에서 議處하게 할 것	137
○ 1월	24일	咨文撲出 및 齎咨官 差出	138
○ 1월	25일	通信使 所騎船을 3升으로 造給할 것	138
○		通信使 使行時 船上什物 各道 分定數	
○		通信使 使行時의 公供道卜定 船上什物을 釜山으로 수송할 것	
○		使行時의 함경도 移定船上什物을 釜山으로 수송할 것	
○		通信使齎去 書契 等 磨鍊	
○		使行時의 封表裏물 磨鍊	
○		使行時의 禮單各色筆에 대한 확인	
○ 1월	29일	通信使 使行時의 禁斷節目	141
○ 1월	30일	使行時의 奉幣對象인 2廟는 對馬島中回報 後 확인하여 준비할 것	142
○ 2월	7일	樂器 造成時 掌樂院 提調主管看檢 및 別工作監役官 差送	142
○		通信使 使行時의 首譯私贈禮單物種 및 代給	
○		樂器造成與否를 심문할 것	
○ 2월	8일	通信使 使行中 所用日 및 帳은 宣惠廳에서 備送할 것	144
○ 2월	12일	함경도卜定 熟麻의 수송방법	144
○		通信使齎去 各道卜定應子の 中路死斃에 대한 改備	
○		通信使 所騎給之帆을 莞席으로 造作할 것	
○		通信使 節鉞을 造作할 것	
○		馬上才 의복을 精造 지급할 것	
○		通信使 發船 및 乘船日時 改擇	
○ 2월	19일	通信使 奉幣對象인 2廟 확인 및 준비물 磨鍊	149
		－ 일본 측에서 禮單豫定差馬, 別單回答 및 通信使 一行 職姓名 書納 요청	
○ 2월	27일	日本國王 以下 各處 禮單 및 使臣私禮單 改磨鍊과 그 物目	151
○ 3월	2일	通信使 使行時 省弊理由로 일본 측에서 9送使勿送을 통보	154
		－ 通信使 禮單馬를 先送할 것	
		－ 9送使勿送 통보의 奉行書契를 허락할 것	
○ 3월	5일	평안도卜定應連 중 일부를 他道 移定 요청	157
○		평안도 卜定應連 중 일부를 함경도에 移定할 것(平監了)	

○		평안도卜定應連 중 일부를 함경도에 移定할 것(咸監了)	
○		동래부에서는 通信使別幅應子の 載持入去時 幾坐數 記載하여 馳報 할 것	
○		譯官 1員을 감하고 醫員을 付軍職할 것	
○		通信 3使臣의 假衡	
○		奉行등 書契內容	
○	3월 11일	通信使護行差倭 出來 通보	160
		－ 護行差倭 接待는 鄉接慰官으로 할 것	
		－ 護行差倭 一行 중 副官 都船主 등의 接待인원수 減除	
○		왜인 別單에 대한 회답내용	
○	3월 13일	通信使行 期를 7월로 退程함	163
○		通信使行期 退定을 倭館에 통보할 것	
○	3월 16일	禮單物種을 當初대로 거행할 것	163
○		馬上才의 預差馬 加送 通信使行期 停當次 擇官 別送을 留保할 것	
○		馬上才의 騎馬秒擇	
○	3월 23일	通信使行期 停當次 譯官 別送을 留保할 것	164
○		通信使行期 退停事 館倭 통보 및 설득	
○		奉行 等の 書契에 대해 동래부에서 對馬島主에게 直修書契할 것	
○	4월 1일	通信使護行差倭 平眞幸 및 裁判差倭 平成次 出來하여 通信使行期 退定을 논의	169
○		裁判差倭에 대한 回答書契 준비 및 回禮物目	
○		裁判差倭 一行에 대한 3度宴贈給 禮單物目	
○		大有院, 嚴猷院 2廟 焚香 諸具 勿送 및 禮單馬 先送	
○		禮單馬領去 理馬가 탈 騎馬를 題給할 것	
○	4월 4일	馬上才 所騎胡鞍을 急送할 것	175
		－ 熟手를 入送하지 말 것	
		－ 譯官을 別送하지 말 것	
○		馬上才騎馬鞍을 廂庫의 胡鞍으로 急送할 것	
○	4월 7일	通信使行期 退定事로 頭倭 出來 및 通信使 一行 員役職 姓名 書給	175
○	4월 9일	護行差倭員役 감수 및 接慰官 定奪	178
○		通信使 發程一期 推擇	
○	4월 12일	問慰譯官 護行差倭에 대한 上船宴 宴 乾物을 入給함	180
		－通信使行期 差退로 동래부사가 對馬島에 보낼 書契에 대한 논의	

- 通信使 護行差倭 一行에 대한 3度宴 贈給 禮單物目

국역 통신사등록

제 4 책

□ 임술(壬戌, 1682년, 숙종 8년)

- 4월 15일 通信使一行에 대한 賜宴은 동래에서 한번만 施行할 것 183
- 4월 17일 齎咨官 李萬鎰 改差 및 譯官 擇差 184
- 일본 측과 通信使行期 進退 문답
- 일본 측이 通信使行期 催促함
- 4월 23일 일본 執政等 職姓名 및 日本國王 以下 禮單等物 増減 別單 內容 .. 189
- 4월 24일 通信使行期를 定할 것 194
- 通信使 發程 乘船日 改擇
- 通信使齎去禮單 封裏
- 通信使齎去禮單 및 樂器 內入 御覽
- 禮單 御覽은 該司에서 整齊後 일시에 內入할 것
- 禮單應連을 감수하고 更無加送할 것
- 4월 26일 通信使護行差倭 接慰官은 慶尙道都事로 差定할 것 196
- 差倭 接慰官 尹弘離의 下來를 別關 催促할 것
- 4월 27일 接慰官에 給馬하여 發送할 것 197
- 護行差倭에 대한 接慰官 賜禮單物目
- 日本國王 以下 禮單 改磨鍊 및 答禮 禮單物目
- 通信使護行差倭 齎來 書契 및 別幅 內容
- 通信使護行差倭에 대한 回答書契 준비 및 別幅回禮物目
- 護行差倭에 대한 茶禮 設行 및 通信使失期事로 문답
- 4월 30일 通信使齎去雜物中 黑麻布 및 芙蓉香 追送 204
- 5월 1일 使臣一行 別盤纏 및 首譯私禮單 磨鍊 205
- 通信使齎去 日本國王以下 各處 禮單物目單子
- 5월 4일 通信使 齎去 禮單物目的 看品 206
- 通信3使臣 및 一行員役數 書給
- 通信使齎去禮單雜物中 豹皮를 改備할 것
- 關白前 禮數
- 踰越關文 內容

○ 5월	7일	通信使一行에 대한 禁斷節目을 嚴立科條할 것	210
○ 5월	8일	禁斷節目 添刪 改付標 單子	211
○ 5월	16일	護行差倭 接慰官 尹弘離 동래 도착 및 茶禮 設行	214
○ 5월	19일	일본측에서 通信使시 所用雜物 催促	215
○		差倭一行에 대한 下船宴 設行	
○ 5월	28일	差倭一行에 대한 別宴 設行	215
○ 6월	1일	通信使狀啓 (通信使一行 동래 도착)	216
○ 6월	7일	護行差倭에 대한 上船宴 設行	216
○		禮單馬 및 馬上才馬 先送	
○ 6월	9일	差倭 乘船 待入歸 및 差倭所呈 禮物單子 上送	217
○ 6월	24일	通信使一行 발선 및 通信使護送差倭一行 入歸	217
○ 7월	11일	頭倭가 通信使別宴 가지고 出來함	217
○		通信使別宴 (對馬島도착)	
○		通信使一行의 일본使行時 주의사항 기록한 島主別單 內容	
○ 9월	29일	通信使 근황 통보차 頭倭 出來	220
○		頭倭齋來 書契 및 別幅 內容	
○		頭倭에 대한 回答書契 撰出 및 別幅 回禮物目	
○ 11월	5일	通信使先來上使軍官 一行 도착	223
○ 6월	20일	通信使別宴(通信使一行중 別破陳兼軍官 身死)	223
○ 6월	24일	通信使別宴(通信使一行 乘船 出海 보고)	223
○ 11월	2일	通信使別宴(使行 江戸 도착 전후 일정 및 各種禮單 分給內容)	224
○ 11월	5일	通信使先來軍官 및 譯官一行 도착	225
○		－ 通信使護行差倭 出來에 대비한 鄉接慰官 差定	
○		銀貨 및 雜物, 沙工屍身を 齋來한 倭船 出來	
○ 11월	7일	通信使一行 및 通信使護行差倭 도착	227
○		通信使護行差倭에 대한 接慰官 및 差備譯官(朴有年) 差定	
○		－ 接慰官 私禮單物目	
○		通信使護行差倭 平眞幸 및 裁判差倭 藤成久 一行 出來	
○		－ 兩差倭에 대한 接慰官 및 差備譯官(朴有年) 差送	
○ 11월	8일	通信使別宴(通信上使 尹趾完이 別幅物件 收擇次 高유함)	230
○		護行差倭 一行에 대한 3度宴禮單 磨鍊	
○ 11월	10일	通信使護行差倭齋來 書契 및 別幅 內容	231
○		通信使護行差倭에 대한 回答書契 撰出 및 別幅回禮物目	

○ 11월	13일	通信使禮單應子數 확인 및 留館應子の 처리	233
○		通信使禮單應子數 착오에 대한 해명	
○ 11월	16일	通信使護行差倭 接慰官 催促 및 問慰譯官 差送	235
○		通信使齋去 關白以下 各處의 書契 및 別幅 內容	
○ 11월	16일	通信使護行差倭 京接慰官 差送	241
○ 11월	18일	通信使에게 보낸 對馬島主 都狀에 대한 修答與否 논의	242
○ 11월	21일	通信3使에게 對馬島主가 보낸 書契 內容	243
○		對馬島主에 대한 回答書契 및 回禮別幅 磨鍊	
○		倭館 禁約을 刻碑 立麗할 것	
○ 11월	22일	通信使行時 不傳給한 禮單은 戶曹로 移送할 것	245
○ 11월	30일	倭館禁約인 戊午年 7件約條를 4件約條로 요약하여 刻牌할 것	245
○		7件約條 및 新約刻牌(4件約條)의 內容	
○		對馬島의 漂人護送次 別送使者 派遣에 대한 書契 內容	
○		倭館禁約 4條를 再三 講定하여 刻立할 것	
○ 12월	12일	問慰譯官 差定 (朴再興, 金瑄)	249
○		問慰書契 撰出 및 禮單 磨鍊	
○		問慰譯官 盤纏 磨鍊	
○		問慰譯官 所乘船隻을 分定하여 整待할 것	
○ 12월	15일	通信使護行差倭에 대한 茶禮日期 傳當 設行	250
○		對馬島主가 通信3使에게 보낸 書簡 및 物件을 上送함	
○		通信使齋來 關白以下 各人 別幅回禮進上物目	
○ 12월	17일	通信使護行差倭에 대한 茶禮 設行 및 差倭所呈 書契, 別幅을 上送함	252
○ 12월	23일	護行差倭에 대한 下船宴 設行	252
○ 12월	26일	護行差倭에 대한 別宴 宴需를 배상 入給함	253

□ 계해(癸亥, 1683년, 숙종 9년)

○ 1월	4일	護行差倭에 대한 上船宴 設行	253
○ 1월	18일	護行差倭 乘船 및 接慰官 離發	253
○		接慰官에게 보내는 差倭의 禮物單子 內容	
○ 1월	19일	護行差倭 一行 發船 入歸	254
○ 3월	4일	通信使帶去人中 死者에 대한 恤典 舉行	255

□ 影印本 通信使謄錄 第三冊	259
□ 影印本 通信使謄錄 第四冊	381
□ 國譯 通信使謄錄(Ⅱ) 찾아보기	451

『국역 통신사등록』(Ⅱ) 해제

김 동 철
(부산대학교 사학과)

차 례

1. 통신사의 명칭과 성격
2. 통신사 관련 등록류 개관
3. 『통신사등록』 개관
4. 『국역 통신사등록』(Ⅰ) 개관
5. 『국역 통신사등록』(Ⅱ) 개관

[참고문헌]

1. 통신사의 명칭과 성격

일본의 대외교섭관계 사료집인 『통항일람(通航一覽)』(1850-1853년경 편찬)에는 17세기 이후 일본의 교섭관계를 통신의 나라[조선·유구]와 무상(貿商)의 나라[중국·네덜란드]로 구분하였다. 무상의 나라는 단순한 교역국이다. 유구는 1609년 이후로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통신의 나라는 조선뿐이었다.

17~19세기 일본과의 교류는 통신사와 왜관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던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는 1607년 회답겸쇄환사의 파견,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로 정상화되었다. 1607년 1차 회답겸쇄환사의 파견 후, 1617년, 1624년에 2, 3차 회답겸쇄환사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1636년부터 1811년까지 9차례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 12차례의 사행을 회답겸쇄환사와 통신사로 구분하거나, 합쳐서 통신사로 부르기도 한다. 17세기 이후 조선과 일본 간의 대등한 선린우호 외교의 상징이 통신사였다.

통신사는 17세기 이후에만 간 것은 아니다. 통신사란 이름은 고려 때도 있었다. 1375년(고려 우왕 1) 나홍유를 무로마치(室町)막부에 통신사로 파견한 적이 있다. 조선 건국 이후 16세기 말까지 일본으로 보낸 조선국왕사는 20여 차례나 된다. 이 가운데는 통신사나 통신관이란 이름으로 파견된 사절도 10여 차례나 된다. 이 가운데 ‘통신사’로 불린 사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1413년(태종 13) 정사 박분 때가 통신사 조건을 갖춘 첫 통신사였으나, 이 사행은 경상도에서 도항이 중지되었다. 그 때문에 1428년(세종 10) 사행을 첫 통신사로 본다. 정사 박서생, 부사 이예, 서장관 김극유로 막부장군의 경조를 위한 사절이었다. 1432년(세종 14) 사행까지는 통신사와 회례사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다가, 1439년(세종 21) 정사 고득중 때부터 통신사로 명칭이 정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조선전기 통신사에 대해서는 어느 사행이 통신사의 개념에 가장 적절한가에 따라, 통신사의 시작을 1413년, 1428년, 1439년 등으로 보고 있다. 조선 후기 통신사를 기준으로 조선전기 통신사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1602, 1604년의 사절은 일본 사정을 염탐하는 사절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다시 열리면서 일본에 간 통신사는 조선국왕이 일본국왕인 도쿠가와막부장군에게 파견하는 외교사절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간 통신사는 모두 12회였으나, 1607, 1617, 1624년 3차례의 사절 이름을 통신사라 하지 않고, 회답겸쇄환사라 한 것은 장군의 국서에 대한 회답과 납치된 포로의 쇠환을 목적으로

로 한 사절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통신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통신사’로 부를 만큼 일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임진왜란이 남긴 전쟁의 상처는 그만큼 크고 깊었기 때문이다. 1636년 사절부터 통신사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통신사행은 1636, 1643, 1655, 1682, 1711, 1719, 1748, 1763, 1811년, 9차례 파견되었다.

통신사 파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막부장군의 장군직 계승 등을 축하하고, 일본의 국정을 탐색하며, 양국의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군직 계승과 관련 없이 파견된 적도 있다. 즉 1636년 통신사는 양국 우호의 유지와 일본 정세 파악, 1643년 통신사는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때 아들 이에쓰나(家綱)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통신사는 지금의 도쿄인 에도(江戸)까지 갔지만, 1617년에는 교토, 1811년에는 쓰시마의 이즈하라까지 갔다. 특히 1811년 통신사는 통신사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를 역지(易地)통신이라고 부른다. 우호와 평화의 사절단으로 상징되던 통신사도 1811년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통신사가 중단된 후에도 양국 간의 관계는 왜관을 통해 유지되었다.

통신사의 명칭은 대체로 조선에서는 통신사, 신사, 일본통신사, 일본에서는 신사, 조선통신사, 조선신사라고 불렀다. 조선에서 출발한 해와 일본에 도착한 해가 달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다. 조선에서는 1763년 계미통신사, 일본에서는 1764년 갑신통신사라고 부른다. 통신사를 보내는 나라와 맞이하는 나라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온 통신사라는 뜻에서 붙여진 조선통신사란 명칭에는 그 속에 통신사는 조공사절이라는 역사인식이 암암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을 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쓴 명칭을 그대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이미 브랜드화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익숙할 정도로 고착된 개념이라는 현실론의 입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1876년 개항 이후에 4차례 일본에 간 사절의 이름은 통신사가 아니라 수신사였다. 4차례의 수신사 외에 1881년 조사(朝土)시찰단 이름으로 1차례 갔다. 이처럼 조선 국왕이 보낸 사절 자격으로 일본에 간 사행의 이름은 다양하였다.

2. 통신사 관련 등록류 개관

조선후기 일본과의 교류사를 연구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인 등록류는 현재 많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통신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등록류는 『통신사등록』,

『통신사등록초』, 『통신사왕회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 『동래부접대등록』 등이 있다. 이 4종류의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하우봉, 정연식, 한문종 등의 연구를 토대로 이 책들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래부접대등록』(규 18108)은 동래부가 편찬한 책으로, 1653년(효종 4)부터 1841년(헌종 7)까지 대마도에서 파견한 차왜에 대한 접대 기록이다.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러 온 통신사청래차왜, 통신사를 호행하러 온 통신사호행차왜에 대한 접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1841년 통신사청래차왜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던 1811년 이후의 양국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통신사왕회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규 15068)은 1811년(순조 11) 통신사 정사가 경기도 광주부(廣州府) 판교참(板橋站)을 오갈 때의 준비 및 접대 내용을 광주부에서 편찬한 책이다. 광주부는 통신사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에 위치한다. 통신사가 통과할 때의 도로, 다리, 선창의 수리에 대한 경기감영의 공문, 이에 대한 광주부의 처리와 보고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양재참의 도로와 다리, 한강나루의 선창에 대한 수리를 둘러싸고 광주부판관과 과천현감 사이에 오간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정사 일행의 인원과 말, 예단의 수송, 접대음식의 종류와 수량, 숙소의 치장도구, 통신사가 돌아올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예물의 품목과 수량, 짐꾼의 인원수 등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셋째, 『통신사초등록』(규 15067)은 일본의 요청, 외교 교섭상의 문제 등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된 통신사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책이다. 1786년(정조 10)부터 1808년(순조 8) 사이에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책이다. 표지에는 해당 연도인 병오(1786), 정미(1787), 기유(1789), 신해(1791), 갑인(1794), 임술(1802), 계해(1803), 을축(1805), 병인(1806), 정묘(1807), 무진(1808)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1786년(정조 10) 9월 일본 에도막부의 10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가 죽은 것을 위문하고, 이듬 해 1787년(정조 11) 4월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가 11대 장군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통신사를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연이은 흉년과 화재 등 일본의 국내 사정으로 일본이 통신사 파견의 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중지된 사행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넷째,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 2, 3)은 예조 전객사에서 통신사에 관련된 문서를 연월일 순으로 모아 필사한 책이다. 동래부사나 경상감사 등 대일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의 외교 업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예조나 비변사의 논

의와 처리에 관한 각종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왜선의 왕래에 대한 보고, 차왜의 파견, 접위관과 차비역관의 파견, 차왜에 대한 접대, 차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의 상송(上送), 회사(回賜) 예단의 마련, 문위역관 파견 요청, 통신사 파견 요청, 통신사절목의 마련, 통신사 삼사의 파견 등 조선후기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의 외교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3. 『통신사등록』 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14책의 『통신사등록』은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 12책, 1641~1811년),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 1책, 1681~1682년),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 1책, 1641~1811년)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의 12책에서 제1책은 계미통신사(1643년, 인조 21), 제2책은 을미통신사(1655년, 효종 6), 제4책은 임술통신사(1682년, 숙종 8), 제5책과 제6책은 신묘통신사(1711년, 숙종 37), 제7책과 제8책은 기해통신사(1719년, 숙종 45), 제9책과 제10책, 제11책은 무진통신사(1748년, 영조 20), 제12책은 계미통신사(1763년, 영조 39), 제14책은 신미통신사(1811년, 순조 11) 관련 내용이다. 제3책과 제13책은 결본이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국역 통신사등록』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1991년 영인본으로 간행한 『통신사등록(一~五)』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이 영인본 『통신사등록』은 14책의 『통신사등록』과 1책의 『통신사초등록』을 합하여, 전체 15책으로 간행되었다. 영인본에 수록된 해제를 토대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영인본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원책과 관련 통신사행

원책 번호	사행명(사행연도)	수록기간	비 고
제1책	계미사행(1643, 인조 21)	1641.1.14.~1644.10.14	
제2책	을미사행(1655, 효종 6)	1653.1.16~1656.5.19	
제3책	임술사행(1682, 숙종 8)	1681.6.26~1682.4.12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2)
제4책		1681.4.15~1683.3.4	
제5책	신묘사행(1711, 숙종 37)	1709.2.16~1711.3.1	
제6책		1711.3.3~1712.5.20	

제7책	기해사행(1719, 숙종 45)	1713.1.24~1718.11.17	
제8책		1718.11.14~1720.7.7	
제9책	무진사행(1748, 영조 24)	1746.7.10~1747.7.9	
제10책		1747.7.10~1747.12.29	
제11책		1748.1~1748.11.25	
제12책	계미사행(1763, 영조 39)	1760.12.17.~1765.윤2.26	『통신사등록』 해제에는 갑신사행
제13책	사행퇴정(1788, 정조 12)	1786.10.6~1787.12.26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3)
제14책	신미사행(1811, 순조 11)	1809.1.22~1811.12.7	
통신사초 등록	사행퇴정(1788, 정조 12)	1786.10.12~1808.12.11	『통신사초등록』 (규 15067)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이 제3책,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이 제13책, 『통신사초등록』(규 15067)이 제15책으로 편집되었다. 제13책인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은 표제가 『통신사초등록』이다. 『통신사초등록』(규 15067)과 마찬가지로 초서로 적혀 있다. 해당 기간에는 사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행 연기와 역지(易地) 통신의 교섭만 진행되어 초기(草記) 형태로 남은 채 정서(精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책과 제4책은 수록 날짜가 각각 1681년 6월 26일부터 1682년 4월 13일까지, 1681년 4월 15일부터 1683년 3월 4일까지로 중복되어 있다. 중복된 것은 한 책으로 된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이 제3책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신사등록』은 1643년 통신사 관련 등록이 처음이다. 그 이전 것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통신사등록』 계미년 11월 22일자(를 보면, “병자 이전의 본조(예조) 문서는 거의 다 분실되어, 정축년(1637)의 전례를 조사하여 참고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후기 대일관계 등록은 30종 정도 된다. 이 가운데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례초책』을 제외한 모든 등록은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 또는 그 이후부터 수록되어 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7년(1681) 12월 26일조를 보면, 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 왕이 어필을 써 보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을미년(1655)통신사등록’을 가져와서 보고 논의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에도 기술된 것처럼, 1643년 통신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1636년 통신사가, 1655년 통신사는 1643년 통신사가 전례가 되

었다. 이처럼 『통신사등록』은 통신사 파견 때 항상 전례로 삼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책이었다. 『통신사등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하우봉이 전론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 사료적 가치를 정리한 바 있다. 하우봉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사의 파견에서 귀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전체 업무와 그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살필 수 있다. 특히 통신사 관련 조약 내용과 결정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양국의 목적, 동기, 배경 등을 잘 알 수 있다.

둘째, 통신사에 관한 외교업무가 발생에서 처리까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어서, 양국의 입장 차이와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한 수정, 보완 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다.

셋째, 통신사가 가지고 가는 각종 예단과 별폭의 품목과 수량이 수령 대상자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단은 해당 관청과 지방에 배당되었다. 그러므로 통신사의 경제적, 재정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사행원이 지켜야 할 각종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어 일본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에서 조선에 보낸 서계는 일본국왕(막부장군), 대마도주, 차왜 등이 망라되어 있고, 특히 대마도주의 소지(小紙)까지 망라되어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4. 『국역 통신사등록』(I) 개관

『국역 통신사등록』(I)은 신사년(1641 인조 19) 10월 14일부터 병신년(1656, 효종 7) 5월 19일까지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제1책과 제2책,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간행한 영인본 『통신사등록 一』의 1~394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시작 날짜 항목과 다른 내용의 기사는 별도의 제목으로 목차에 실려 있다. 영인본의 목차에 정리된 기사 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 항목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역 통신사등록(I)』의 연도별 기사 항목 수

시기	1641(인조 19)	1642(인조 20)	1643(인조 21)	1644(인조 22)	합계
항목 수	2	15	67	11	95
시기	1653(효종 4)	1654(효종 5)	1655(효종 6)	1656(효종 7)	

항목 수	2	13	45	8	68
------	---	----	----	---	----

<표 2>를 보면 기사 항목 건수는 모두 163건이다.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1641년부터 1644년까지로, 원본의 제1책, 영인본의 1~20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1653년부터 1656년까지로, 원본의 제2책, 영인본의 207~394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상시적으로 파견한 것은 아니다. 첫째 것은 1643년 계미통신사, 둘째 것은 1655년 을미통신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통신사가 파견되기 2년 전, 통신사 파견 해당 연도, 통신사 파견 후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통신사는 일반적으로 막부 장군이 장군직을 계승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 도쿠가와(德川)막부 역대 장군의 재임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도쿠가와(德川)막부의 역대 장군과 그 재임 기간

대	장군 이름	재임기간
1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603. 2~1605. 4
2대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1605. 4~1623. 7
3대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1623. 7~1651. 4
4대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	1651. 8~1680. 5
5대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	1680. 8~1709. 1
6대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	1709. 5~1712. 10
7대	도쿠가와 이에쓰구(德川家繼)	1713. 4~1716. 4
8대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716. 8~1745. 9
9대	도쿠가와 이에시게(德川家重)	1745. 11~1760. 5
10대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	1760. 5~1786. 9
11대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	1787. 4~1837. 4
12대	도쿠가와 이에요시(德川家慶)	1837. 4~1853. 6
13대	도쿠가와 이에사다(德川家定)	1853. 11~1858. 7
14대	도쿠가와 이에모치(德川家茂)	1858. 10~1866. 7
15대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	1867. 1~1868. 1
출전 : www.http://ja.wikipedia.org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1641년은 3대 장군 이에미쓰(家光) 재임 때이고, 1643년 통신사는 장군직 계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1643년 통신사는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 때 아들 이에쓰나(家綱)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국역 통신사등록』(I)의 첫 기록은 신사년(1641 인조 19) 10월 14일조이다. 내용은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가 장계한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의 장계는 제1특송사가 상선연 때 대군[관백]이 아들을 낳았으므로 내년엔 통신사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최근 3~4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힘이 고갈되었으므로 축하할 일이지만 반드시 해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보고한 것이다. 예조의 계목은 관백이 아들을 낳았으니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축하사절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므로, 묘당[비변사]에 명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비변사의 계목은 동래부사가 대응한 일에 대해 일본의 답변이 없으므로 뒷날의 기미를 보고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인조의 윤허가 있었다.

이 첫 번째 기록은 「부특송사가 관백이 아들을 낳았다고 전함→ 제1특송사가 통신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전함→ 동래부사가 일본측에 답변한 후 이를 예조에 보고함→ 예조가 이를 보고하고 묘당[비변사]에서 결정하기를 청함→ 비변사가 일본측의 답변을 기다려 결정하자는 의견을 보고」하는 등 통신사 파견 요청과 이에 대한 결정 과정을 잘 보여준다.

1월 26일 두 번째 기사는 첫 번째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다만 장계의 주체가 동래부사가 아니라 경상감사인 점이 차이를 보인다. 경상감사는 관백이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대마도측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재정 압박을 받으므로, 사신을 청하는 일이 없을 듯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예조는 도주의 문서를 기다린 후에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비변사가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우리 쪽이 먼저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확정된 대로 실시하자고 보고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I)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43년 통신사와 1655년 통신사 명단

1643년 통신사 사행록은 부사 조정의 『동사록』, 종사관 신유의 『해사록』, 저자 미상의 『계미동사일기』가 대표적이다. 3책 모두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행록에는 통신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통신사등록』 계미년 1월 11일조에는 통신사가 데려가는 원역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43년 통신사 명단(1)

당상역관	2원	홍희남	승록대부	이장생	정헌대부	병자년 예로 데려감
상통사	2원	김근행	행 훈도	윤제현	행 사맹	
차상통사	2원	정시심	행 사맹	김시성	전 봉사	
압물통사	1원	김홍립	전 정			
한학상통사	1원	정충헌	전 정			
압물통사	1원	함 식	행 사용			
사자관	2	박승현		김의신		
화원	1	김명국				

이 기사에서는 의원과 잡예인은 사신이 마땅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아직 임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당상역관 2명은 병자년(1636) 통신사 가운데서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물통사는 각각 1명씩으로 정해져 있다. 통신사 전체의 현황은 아니지만, 통신사 원역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계미년 2월조에는 통신사 원역의 성명과 직함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43년 통신사 명단(2)

직 책	이 름	직 함	이 름	직 함	이 름	직 함
정사	윤순지	병조참지				
부사	조 경	홍문관 전한				
종사관	신 유	이조정랑				
당상역관	홍희남	행 사직	이장생	행 사과		
상통사	김근행	행 훈도	윤제현	전 판관		
차상통사	정시심	전 직장	김시성	전 봉사		
압물통사	김홍립	전 정				
가정통사	이형남	전 정	한상국	전 정	윤성립	전 주부
한학상통사	정충헌	전 정				
한학압물통사	함 식	행 사용				
의원	김 호	전 정	송경일	전 주부		
이문학관	박안기	진사	정언열			

사자관	박승현		김의신			
화원	김명국		이기룡			
천문학	황효공	전 정				
정사자제군관	윤전지	초관	윤천지	업무		
정사군관	조응립	전 부사	정부현	초관	정신경	겸사복
	이 용	전 만호	최기남	사과	장익	전 사과
부사자제군관	조헌	충의위	한상량	한량		
부사군관	김민학	전 군수	홍우량	전 현감	맹상현	전 만호
	이대인	내금위	이정	전 사과	유윤번	전 만호
종사관자제군관	신태해	전 주부				
별파진검군관	박의룡		이예남			
마상재	방계남		강승선			
이마	김득신					
전악	김마당		설의립		임허룡	
	조응립		김용금		김천	
숙수	이운		장돌시			
정사반인	조효검					
정사노자	신일		무응실			
부사반인	문기원					
부사노자	선인		생이			
종사관반인	이의신					
종사관노자	예남		점이			
당상역관 이하 원역노자 23명, 군관노자 19명						

1643년 사행록에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신사등록』은 통신사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의 구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1655년 통신사의 삼사는 정사 조형, 부사 유창, 종사관 남용익이다. 1655년 통신사의 사행록은 조형의 『부상일기』, 남용익의 『부상록』이 대표적이다. 후자는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일찍부터 이용되었으나, 전자는 최근 원문이 『대계 조선통신사 3』에 수록되고, 또 국역되면서(임장혁, 『조형의 부상일기 연구, 집문당, 2000』) 이용이 편리하게 되었다. 이들 사행록에는 통신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을미(1655) 3월 13일조에도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부상록』에는 삼사의 경우, 품계, 관직, 성명, 자, 호, 본관, 생년, 과거급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인원은 정사선, 부사선, 종사관선

별로 되어 있어,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세 책에 수록된 명단을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1655년 통신사 명단의 비교

통신사 직책	부상록				부상일기	통신사등록			
	이름	현직 또는 경력	이름	현직 또는 경력		이름	현직 또는 경력	이름	현직 또는 경력
정사	조형	사간원대 사관			조형	조(趙)	이조참의 (임직)		
부사	유창	사복시 정			유창	유(兪)	사복시 정		
종사관	남용익	홍문관교 리			남용익	남(南)	홍문관 부교리		
당상 역관	홍희남	행사용	김근행	행사용		홍희남	행사직	김근행	행사용
역관	홍여우	전판관	박형원	전 직장	홍희남, 김근행, 홍여우				
	변이표	전 참봉							
상통사	정시심	행사맹	김여택			김시성	행참봉	정시심	전 정
	김시성	행참봉							
차통사						이상한	행사맹	변이표	전 참봉
압물 통사						홍여우	전 판관		
한학 상통사						오인량	전 판관		
한학압 물통사						이승현	전 직장		
한학	오인량	행참봉							
의원	한형국	행참봉	이계훈		한형국, 이 계 훈	한형국	전 주부	최인	사과
	최인	부사정			최 인				
화원	한시각	부사과			한 시 각	한시각	전 사과		
독촉관	이명빈	상호군			이 명 빈	이명빈	상호군		
서기	배옥		한상	무겸	배 옥				

	김자휘		최산준	전 도사	김자휘				
	박문원				박문원				
사자관	김의신	전 참봉	유응발		김의신, 유 응 발	김의신	전 참봉	정 침	전 사과
	정 침	부사맹	윤덕용		윤 덕 용				
상사자 제군관	조 침	행사용				조 침	행사용	목양선	한량
부사 자제군관	민응성	전 사과				민응성	전 사과	정철선	한량
종사관 자제군관	남득정	한량				남득정	한량		
별과진	윤개중		목양선	한량					
	김견희		정철선	한량					
군관	나득성	전 우후	조상빈			조 현	전 첨사	나득성	전우후
	조현	전 첨사	이동로	전 현감		한 상	무겸	이형익	초관
	박지용	첨정				정지석	내금위	이동로	전 현감
						박지용	훈련원 첨정	최산준	전 종사
						정사한	무겸	정귀현	전 판관
						이몽량	내금위	최성길	전 사과
별과진 겸군관						윤익형		김견희	
선장	황생		전운서						
	정사한	선전관	유달신						
초관	이익형								
도훈도	최시연		배준익						
	이몽량	출신	심계신						
내금	정지석								
청직	최효갑		신선원						
	박홍선								
이마						박홍원			
악공	장일춘		김몽술			설의립		김몽술	
	설의립								
숙수						한영			

소동	신득방		정철귀						
	이승현		안덕웅						
	구애길		하민선						
	이영택		이두명						
상사 반당 (반인)	정득열					정득열			
부사 반당 (반인)	이행점					이행점			
종사관 반당 (반인)	도신태					도신태			
사노자	원립		일선						
	애남		경생						
	필성		산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책마다 직책과 이름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부상록』과 『통신사등록』이 상세하다. 두 책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조형은 원래 직책은 사간원 대사간인데, 임시로 이조참의 자격으로 정사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통신사등록』은 사행록의 명단과 비교하여, 통신사 구성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둘째, 1643년 통신사절목의 마련

계미년(1643) 1월 5일조에는 통신사절목에 관한 예조의 감결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1624년, 1636년 통신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별도 항목으로 작성된 같은 날 예조의 계목을 보면, 병자년 문서가 모두 산실되어 참고할 수 없으므로, 갑자년(1624)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을 후록한다고 하였다. 이 두 절목은 내용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1643년 통신사절목의 비교

통신사절목(예조 감결)		통신사절목(예조 계목)	
1	사신의 반전 등의 물자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미리 먼저 조치함.	1	좌동(左同)

2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한 결같이 연경에 가는 사신의 사례대로 거행함.	2	좌동
3	사신의 장복(章服)은 부사 이상은 모두 당상관의 복장을 상의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3	좌동
4	일행 원역의 의복과 신발 등의 물자는 공조와 제용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4	좌동
		5	사신의 형명기와 독(纛)은 본도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6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여 보내게 함.
		7	상선 2척, 하선 2척, 소선 2척은 격군과 함께 본도에 명하여 미리 먼저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하게 함.
5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한 개는 주조한 관방(關防)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도록 함.	8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1알은 주조된 관방인(關防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게 하되, 인가(도장집)와 관가(관방인신집)와 가족남라개(문서통) 한 바리를 본도에서 만들어 대령하게 할 것.
6	상사는 자제군관 2인, 군관 6인, 종 2명. 부사는 자제군관 2인, 군관 6인, 종 2명. 종사관은 자제군관 1인, 종 1인. 왜통사 5원, 한통사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화포장(火砲匠) 2명, 포수 2명, 사자관 2원은 각 해당 관청에서 택하여 보냄.	9	상사의 자제 2원, 군관 6원, 종 2명. 부사 자제 2원, 군관 6원, 종 2명, 종사관 자제 1원, 종 1명, 왜통사 5원, 한통사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별과진검군관 2인, 포수 2명은 감원하여, 갑자년의 사례에 의하여 각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여 보냄. 사자관은 병자년에 2원을 데려 간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대로 시행함.
		10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엄하게 금단하여, 원역 등이 만약 함부로 범하

			는 일이 있으면,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함.
7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지급하게 함.	11	좌동
8	일행의 원역은 각기 중 1명을 거느림.	12	좌동
		13	사신 이하가 관문이나 나루를 넘어 갈 적에 검사할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년의 사례에 의거 마련하여 지급함.
		14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갑자년의 사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사로 잡혀 간 인물을 쇄환하기 위하여, 본조에서 만들어 준 돈유(敦諭)공문으로 찾아다니며 쇄환하여 무마하고 보살펴 데리고 올 것.
9	일본국왕에게는 전례에 따라 ‘위정 이덕(爲政以德)’ 서계를 찍었으니 이대로 시행함.	15	좌동
10	일본국 집정과 도주와 수직왜, 수도서인 등에게는 사신이 귀국하여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전례는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함.	16	좌동
11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마를 보낼 것.	17	좌동
		18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통신사절목은 날짜는 같지만 다른 기사로 각각 11조항과 18조항으로 두 절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11조항의 절목 내용은 동일하게 또는 일부 수정, 보완되어 18조항 절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1조항의 절목에 없는 일곱 개 항목이 18조항의 절목에 포함되어 있다. 후자는 전자를 수정, 보완한 절목이다. 이 절목은 통신사가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을 절목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18조항의 절목은 『춘관지』에도 「신사응행절목(信使應行節目)」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춘관지』에는 18조항 가운데 제2, 3, 4, 5, 6조항의

다섯 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8조항은 『춘관지』를 편찬할 때 의도에 맞게 수정을 가하여 「신사응행절목」으로 정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통신사절목의 제정 과정과 절목의 내용은 물론 『증정교린지』나 『춘관지』 등 대일관계사와 관련된 기본 책자를 편찬할 때, 원 자료가 어떻게 수정보완되면서 편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1643년 통신사 종사관 재거(齎去) 일행 금단절목의 마련

계미년(1643) 1월 6일조에는 통신사 종사관이 가져가는 일행금단절목(從事官齎去一行禁斷節目)이 수록되어 있다. 예조에서는 전례를 상고하여 이 절목을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한다고 하였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시종사관재거절목(信使時從事官齎去節目)’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일(一, 하나)라고 하여 항목별로 구분하고 있다. 전체 열 개 항목으로 된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절목은 『춘관지』에도 ‘종사관재거일행금단절목’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춘관지』에 수록된 절목은 항목별로 된 절목 형태는 아니며, 『통신사등록』과 약간의 글자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양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1643년 통신사종사관재거일행금단절목의 비교

	통신사등록		춘관지
1	일행이 가져가야할 물건은 점검하여 바리로 만들어 각각 글자를 적어 표시하여 서명하고, 또 자호(字號)를 찍어서 달아 놓고, 도중에 불시에 적간하며, 포소 및 대마도와 달리 머무는 곳에 이르면 별도로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물로 몰수하고, 범한 사람은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1	좌와 거의 같음
2	『대전후속록』에 실린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능단, 황백사와 보물을 몰래 거래하는 자는 율령 대로 죄를 다스림	2	상동
3	『대전후속록』 내에 왜인을 무역하는 자, 왜인이 가져온 대량피 및 포소의 잠상과 무역하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3	상동
4	향통사 및 장사꾼이 어두운 밤에 만나기로 약속하여 매매하거나 혹은 서로 모인 자는 모두 잠상금물 조에 의하여 논단함	4	상동
5	일행의 인원 등이 본국의 숨겨야 할 일이나 국가의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5	상동

6	상통사 이하 일행의 하인이 금제에 연계된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 직단함	8	좌동
7	다른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단속하되, 우리 국경에서 범한 일은 즉시 계문하고, 바다를 건넌 뒤에 범한 일은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적어 장계로 알림	9	좌와 거의 같음
8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갔다가 쇄환한 사람을 격군으로 뒤섞어 충당하는 것은 극히 편치 못하니 일체 충당하지 말고, 만약 충당하였다가 탄로나면 본관 수령을 각별히 추고하여 죄를 다스림	10	상동
9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는 종사관이 서명하여 문서에 기록하고, 만약 군기를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7	상동
10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누설하거나, 상국(上國)과 관련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6	상동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양자는 순서의 차이도 보인다. 『통신사등록』 8번째 항목이 『춘관지』에는 10번째 마지막 항목이다. 『춘관지』에는 마지막 항목에 승덕 계미년(1643)에 한 조항을 첨가하였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이 금단절목은 전부터 존재하던 것인데 1643년에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춘관지』 9번째 조항에 표현되어 있는 ‘나머지 미진한 조건(他餘未盡條件)’이 일반적으로 절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므로, 『춘관지』 순서가 『통신사등록』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이 절목은 『춘관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절목의 제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4월 3일 조에는 을미년 통신사 종사관 재거 일행금단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종사관재거금단절목’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이 금단절목은 1643년 통신사의 사례대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내용을 1643년 금단절목과 동일하다.

넷째, 대마도주의 소지(小紙)와 봉행(奉行) 등의 소지(小紙)

『통신사등록』에는 일본에서 보낸 서계는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마도주나 봉행들이 보낸 소지(小紙 : 비망록)까지도 망라하고 있다. 소지는 대마도주나 봉행이 보낸 조목을 나열한 작은 쪽지이다. 이 작은 쪽지에 대해 예조가 계목으로 보고하고, 다시 비변사가 검토한 후 해당 관청과 경상도에 내려보내 알리도록 하였다. 소지는 계미년 1월 15일 조에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시도주급봉행등조렬

소지해서(信使時島主及奉行等條列小紙解書)’라고 부기되어 있다. 대마도주의 소지는 ‘대마도주소지해서’라고 적혀 있다.

『변례집요』(권 18, 신사) 계미년 1월조에도 「島主小紙」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변례집요』는 축약된 내용이다. 『변례집요』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활자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탈초 과정에서 오탈자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1> 대마도 도주의 소지(小紙) 비교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1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시기는 3월 중순과 하순 사이에 대마도에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택일하였음	1	좌와 대동소이
2	대군(大君)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해서 하되, 별폭의 물건 수량은 앞서의 연례대로 하며, 약군(若君) 앞으로 보내는 별폭은 조금 차등을 두되, 다만 마필(馬匹)의 수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것과 한가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지금 아직 확정하지 못하였으니, 비변사의 조처를 기다려 거행할 것임.	2	상동
3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하여 하되, 별폭 가운데 찍는 어보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에 찍는 어보를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상감의 말씀대로 시행할 것임	3	상동
4	일광산에 세 사신이 가는 날 어필을 새긴 종과 향로, 촛대, 화병(花瓶) 등의 물건은 그 때 전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번 사자가 구두로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동래부사가 비변사에 올린 장계로 인하여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음.	4	상동
5	상감께서 치제하는 제문을 세 사신이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향전(香奠)의 물품은 귀국의 법과 예대로 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들어갈 향전과 제문은 마련하여 지급하여 보낼 것임.	5	상동
6	대군과 약군 앞에서 사신이 상견례를 행할 때 및 일광산에서의 예법은 서로 어긋남이 없는데, 만약 그 때를 당하여 어긋남이 있으면 잡담을 제하고 한결같이 도주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회계(回啓)의 판부(判付) 내용에, 사신 등의 예절은 전례가 있는 일인지라 이제 와서 따져 정하는 것은 극히 무리하니 허락하지 말도록 하였음.	6	상동
7	집정 등에게 보내는 서계 별폭은 특별히 유념하여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하였음.	7	상동

『통신사등록』에는 계미년 1월 15일조에는 대마도주의 소지에 봉행 등 소지(奉行等小紙解書)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은 30개 항목, 『변례집요』는 29개 항목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2> 봉행 등 소지(小紙)의 비교

	통신사등록		변례 집요
1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가는 일자는 오는 3월 중으로 한정하여 대마도에 들어오되, 차왜 등지승이 가져온 서계의 회답 내용 가운데,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일을 명백하게 적어 보내면, 그 답서를 예도에 들여보내는 것이 한 시각이 급하니, 별도로 한 사람을 정하여 들여보내고, 등지승은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간까지 부산 왜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회답 서계를 이대로 지어서 보내라고 하였음.	1	좌와 대동 소이
2	대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이전과 같이 그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르되, 그 가운데 두 가지 단자(段子)는 없어서는 불가한데, 바라건대 나라 안에서 찾으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 뜻을 동래 및 두 지사 앞에 이야기하여 해당 관청에 품신하여 보고해달라고 하였는데, 비국에서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해조에 명하여 거행하게 하였음.	2	상동
3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 가운데 응련(鷹連)과 마필(馬匹)은 없어서는 불가하니, 각별히 염두에 두어서 기이하고 귀한 물건을 보내고, 대모필과 각색 붓도 또한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예단의 수량과 물목은 현재 아직 마감하지 않고 비국의 확정을 기다려 시행할 것임.	3	상동
4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다시 말하지 않고, 한 장에는 어보만 찍고 한 장에는 국왕이라 적고 그 위에 어보를 찍어 도합 두 장을 가져오는데,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도에 도착하여 집정과 상의하여 좋은 모양으로 조처할 것이니, 이대로 해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4	상동
5	대군과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작은 쪽지에 적어서 내어 보내니 이대로 할 것이나, 이 밖에 나라 안에서 비축된 토산물 가운데 합당한 물건이 있으면 첨가하여 보내는 것도 좋으며, 무릇 예단에 사용하는 물건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지급해야 할 곳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세 사신이 사용할 잡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세 사신의 예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가는 일은 비국의 조정에 의거하여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할 것임.	5	상동

6	집정 등에게는 앞서의 연례와 같이 예조에서 각각 서계를 만들고 별폭 등의 물건은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각처에 보내는 서계 및 예물은 전례대로 조정하여, 승문원 및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거행할 것임.	6	상동
7	이번에 집정 등의 성명을 적어 보내니 이대로 성명을 적어 넣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을 비국에서 이미 조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였음.	7	상동
8	별폭 가운데 응자(鷹)는 마침 제철이 지났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도에 들여보낼 수량이 많게는 54-5년에 이르니, 지사(知事) 등에게 말하여 다음 달 중순에 모조리 들여주어서, 왜관 안에서 수십 일 먹이를 먹인 뒤에, 그 중 병이 없는 것을 들여보내면, 여기서 오사카[大坂] 성에 올려보내어 대군의 응사(鷹師)에게 전해줄 계획이니, 급속히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비국에서는 병자년의 규정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조정하여 본도 및 강원 감사에게 급속히 거행하는 일로 이문하였음.	8	상동
9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을 조정에서 주조하여 일광산에 보내는 것으로 예조에서 대마도주에게 서계를 만들어 들여보내면, 주조한 물건을 그 서계와 한꺼번에 예도로 들여보내어 귀국의 은근한 정을 보여주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보내게 하였음.	9	상동
10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제문과 향전(香奠)을 가져오는데, 사신 또한 예단이 없지 아니하니 합당할 물건을 마련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제문과 향전을 거행하는 일은 이미 계하하였고, 예단은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	10	상동
11	이번 세 사신은 반드시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보내는 것은 이곳에서 감히 진달할 수 없으나, 이 밖의 상하 원역(員役)은 지극하게 선발하여 데려오되,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워서 하인이 금법을 범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데려가는 원역은 사신이 스스로 선발하여 데려가고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우는 것은 이미 금지하는 사목이 있거니와, 하인이 금령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신에게 명하여 신칙하여 시행하게 할 것임.	11	상동
12	역관은 앞서의 연례 통신사 때에는 수가 적어서 무릇 사환을 하는 사이에 매양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고, 각 배에 나누어신지 아니하기까지 하여 보기에 극히 구차하였으니, 이번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왜어(倭語)에 능통한 자를 잘 선발하여 서너 사람의 인원수를 더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뜻으로 이미 조정하여, 왜어에 능통한 자 서 세를 사역원에 명하여 선발하여 보내게 하였음.	12	상동

13	유자(儒者)로서 글씨를 잘 쓰는 자와 화원 등의 인원 수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각색마다 한 두 사람을 더하여 데려오고, 의원도 또한 최상으로 선발하고, 악공 또한 음악을 잘 하는 자로 극도로 선발하여 데려 오되, 앞서 연례로 들어온 연담(蓮潭)과 같은 자를 선발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조정하여 각 해당 관청 및 통신사에게 명하여 참작하여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가라고 하였음.	13	상동
14	세 사신이 대군 앞에서 예를 행할 때 신는 화자(靴子)는 흙을 밟고 곧장 전각 안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이번에는 화자를 벗고 행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의 회계로 인하여 이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할 것.	14	상동
15	세 사신의 상하 원역이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의 법제(法制) 사목을 적어 대마도에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들어갈 때 본디 금단하는 사목이 있으니 이것을 참작하여 적어 보낼 것.	15	상동
16	사신이 왕래할 때 선박이 정박하는 곳 및 숙소로 삼는 곳에서 접대하는 사람은 모두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기다리는데, 사신이 간혹 멀미[水疾]를 칭탁하거나 병을 칭탁하여 상륙하지 않아서, 접대하기 위하여 허다하게 마련한 물자를 공연히 버려 부질없게 되니, 세 사신 가운데 혹 한 분이라도 상륙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는 일은 오히려 사신이 당연히 시행할 일인지라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잘 조처하라 하였음.	16	상동
17	육로로 가는 도중에 점심을 먹거나 숙소를 정한 곳에서 접대할 때, 세 사신이 노곤하다고 칭하거나 혹은 병을 칭하여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극히 부당하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선처하라 하였음.	17	17번, 18번째 항목을 합쳐 요약 서술
18	세 사신의 휴가 날은 미리 통보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이 거행할 일인지라 이대로 할 것임.		
19	물이나 물이나 곳곳마다 장막을 친 임시 가옥을 정제하여 기다릴 것인데, 하인 등이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주인이 감히 손대지 못하니, 한결같이 도중(島中)의 봉행 등이 하는 말대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할 것임.	18	좌와 대동 소이
20	일행의 원역(員役)이 들어가서 탈 말은 모두 장관(將官)이 타는 말에서 나오므로, 대마도에서 별도로 감관을 정하여 그 중 상중하의 등급을 보고 차례로 나누어 주는데, 하인들이 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뺏어가니 극히 민망하고 우려되어, 이번에는 행중(行中)	19	상동

	에서 별도로 4-5인을 정하여 감관이라 일컫고 일일이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다투어 빼앗아 가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거행하되, 만약 따르지 않고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죄를 따져 시행할 것임.		
21	바닷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 세 사신이 타는 배가 바람으로 인하여 정박할 때는 비록 혹 앞서거나 뒤처지더라도, 포구에 와서는 기다렸다가 차례차례 정박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더라도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함.	20	상동
22	마상재 두 사람은 각기 잘 길들인 말을 끌고 들어가되, 앞서의 연례 마차는 모두 솜씨가 치졸하였으니, 이번에는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혼련도감에 명하여 이대로 선발하여 보내는 일로 이문하였음.	21	상동
23	말을 달리고 활을 잘 쏘는 등 각종 기예를 가진 자 두 세 사람을 군관 중에 데려 오고, 활을 쏘는 도구 또한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 중에도 데려가는 군관이 있으니,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데려가게 하였음.	22	상동
24	에도에 도착하여 일을 마친 뒤에 도주가 사실(私室)에서 세 사신을 청하여 잔치를 하려하니, 미리 알려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이대로 시행할 것임	23	상동
25	각 역참에서의 접대는 최상으로 정하게 골라 준비하는데, 상하 원역 등이 즐겨 먹을 수 없는 것은 제하고 은근히 상을 차려 먹을 만한 음식물만 골라 드리도록 함이 어떠할지, 이는 임의로 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거행하는 일을 일행 중의 장무역관이 담당하여 거행할 것임.	24	상동
26	떠들고 잡담하며 혹은 빼앗거나 혹 가져가거나 불을 금하는 등의 일은 각별히 엄금하고, 만약 일행 중에 절박하게 사들여 사용할 물건이 있으면, 대마도에서 별도로 통사왜(通事倭)를 정하여 사들여 주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게 조목을 세워서 이대로 하라 하였음.	25	상동
27	세 사신이 교자(轎子) 앞에는 앞말 한 필씩으로 끌게 하면 되니 이는 임의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에서 회계할 때 거론하지 않았음.	26	상동
28	세 사신이 타는 배는 각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용을 그린 배의 휘장과 노 등의 물건을 일일이 정밀하게 갖추어 일본인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사공 등이 바람을 살피지 못하여 매양 우려되는 사태를 당하니, 한결같이 일본 사공이 말하는 대로	27	상동

	함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본도 및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하는 일로 거행할 것임.		
29	이제 이번에 진술하는 바의 일은 모두가 귀국을 위하여 유념한 계획이니 한결같이 도주가 말하는 대로 함이 좋을 것이며, 기왕의 통신사 행차에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있었으나 감히 일일이 진달하지 못하니, 모든 일을 각별히 잘 조처하는 일을 동래 부산 양 지사가 힘을 써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따라도 될 일이면 도주가 하는 대로 하겠으나 따를 수 없는 일이면 결단코 따르기가 어려우니,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살펴서 거행하게 하였음.	28	상동
30	위 항목의 조건은 상의하여 조처하고, 조선에서 만약 수궁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비선으로 말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각 항목의 조건을 나열하여 비국에서 이미 참작하여 보고하고 조정하였음.	29	상동

<표 8-2>에서 보는 것처럼 『변례집요』에서는 『통신사등록』의 17번, 18번째 항목을 합쳐서 1개의 항목으로 만들었으므로 항목 수가 하나 적다. 그리고 『통신사등록』은 『변례집요』와는 달리 각 항목의 끝에 이에 대한 결정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4번째 항목은 비변사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변례집요』는 이런 결정내용은 무시하고 대마도 측의 소지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변례집요』에는 13번째 조항에 있는 통신사 화원 연담(김명국)에 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두 책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신사가 가져간 선물과 받아온 선물

계미년 2월 12일조에는 통신사가 일본에 가져간 선물 품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조 단자를 보면 병자년(1643) 통신사의 사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선물의 지급 대상은 일본국왕, 봉행 7인, 대마도주, 수도서왜 4명, 소(召)장로, 수직왜 9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1>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대상자별 선물

	국왕	봉행7인 각각	대마도주	수도서왜 4인 각각	소(召)장로	수직왜 9인 각각
대수자	10필					
대단자	10필					
황조포	30필					
흰모시	30(10)필	10필	10필	5필	5필	3필

검은삼배	30(5)필	5필	5필			
면주	10필	10필	10필	5필	5필	3필
흰무명			20필			3필
인삼	50근		5근		3근	
범가죽	15(2)장	1장	2장	1장		
표범가죽	20장					
청서피	30장					
(채)화석	20(5)장		5장			2장
황모필	50(30)자루	20자루	30자루		20자루	10자루
준마(안장)	2필					
매	20(1)연	1연				
유매먹	50(20)홀	10홀				
참먹					10홀	5홀
황밀	100근					
청밀	10그릇					
어피	100장					
색지	30권					
백지						5권
유둔	3부			1부		
비고 : 국왕의 팔호안은 품목이 중복된 경우다. 포함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포함하면 매는 21연, 호피는 17장이 되어 수가 애매하므로 중복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 9-1>을 보면 품목은 식물류, 인삼, 가죽류, 화문석, 동물, 먹, 꿀, 종이류 등이 주종이다, 국왕에게 대한 선물은 다른 사람과는 물품과 수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비단류, 가죽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물품과 수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통신사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계미년 11월 22일에 수록된 예조 단자에는 통신사가 일본에서 받아온 선물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 관백(국왕), 약군, 대마도주, 만송원, 평의진, 봉행과 집정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2> 1643년 통신사가 가져온 대상자별 선물

	관백	약군	대마도주	만송원	평의진 (平義眞)	봉행인, 2인 집정 4각	집정 1인
침금육곡병풍 (貼金六曲屏風)	20쌍						
산금시회대자 (繖金蒔繪臺子)	5식						
쇠술〔鐵釜〕	●						
구리화로〔銅爐〕	●						
구리물병〔銅水壺〕	●						
구리판립〔銅板立〕	●						
구리수적〔銅水滴〕	●						
구리개치〔銅蓋置〕	●						
산금시회서봉 (繖金蒔繪書棚)	2개						
산금시회광개 (繖金蒔繪廣蓋)	10개						
산금시회의연 (繖金蒔繪衣櫛)	5가						
산금초대도 (繖金鞘大刀)		10자루					
갑옷〔鎧〕		10벌					
당직〔唐織〕		50단					
금대병풍〔金大屏風〕			10쌍				
홍주〔紅朱〕			3근				
운문지〔雲紋紙〕			300근				
납발〔鑢鉢〕			500근				
색대단자〔色大段子〕				2권			
산화연상〔畵硯床〕				2개			
단목〔丹木〕				200근			
문선〔文選〕					1부 31책		

산화연갑(緞畫硯匣)					2개		
우단초(羽段綃)					3권		
백은(白銀)						100매	100매
월주면(越州綿)						100순	
식롱(食籠)							1구
흑칠시회부채 (黑漆蒔繪扇子)							200자루
말광소삼(末廣小簾)							양면
금니(金泥)							양면
은니(銀泥)							●
청지(靑地)							●
백지(白地)							●
●은 받았지만 수량은 불명확한 것임							

백은(白銀) 단 한 종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준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달랐다. 통신사가 가져온 선물 가운데 집정 이하 9명이 보낸 것은 전례대로 호조로 보내고, 관백과 약군이 보낸 것은 상방(상의원)으로 보냈다.

여섯째,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

통신사가 일본을 오가는 동안에 쓸 각종 필수 물품들을 총칭하여 잡물(雜物)이라 하였다. 계미년 1월 17일조에는 후록으로 잡물들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은 1636년 통신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이 잡물들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지에 나누어 배당하여 마련하였다. 예조의 계목에 후록한 잡물 가운데 약재와 우구(雨具)는 말미에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잡물의 종류와 수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1>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1)

진간장	10섬	간장	1섬	울무가루	5말	청밀	2섬
밀가루	2섬	환소주	150병	밀계	5000립	초	300자루
대절참떡	100정	중절참떡	100정	포육	80접	전복	20접

말린해삼	3섬	말린홍합	3섬	호두	2섬	황율	2섬
꽃감	70접	잣	2섬	인삼	20근	백지	245권
대유지	4권	만화석	30장	채화석	30장	옷칠 부채	100자루
기름칠 부채	600자 루	백접부채	30자 루	미선	20자루	참기름	2섬
4장불은 유둔	40번	6장불은유둔	20번	누룩	130원	콩	6섬
팔	7섬	조기	3500 속	건어	80속	도런지	5권
초주지	30권	녹두	2섬	흰모시베	50필	참깨	2섬
편포	8접	말린노루	14마 리	개자	3말	참쌀	3섬
말린평	100마리	김	40접	미역	200근	좁쌀	7섬
메밀	3섬	황밀	6말	오미자	2말	소금	9섬
생울	2섬	녹두가루	5말	생강	6말	표고 버섯	4말
범가죽	16장	표범가죽	8장	사슴가죽	3장	배	100개
군량	333섬	흰사발	15죽	흰보시기	15죽	흰대접	15죽
흰접시	25죽	흰종지	15죽	백자대접	10죽	백자 중발	5죽
백자 잔대구	8부	백자종지	3죽	백자사발	4죽	백자규 화잔 대구	3부
차일	5	휘장	6	돛자리	3부	면석	3립
독석	3립	단석	3좌	화방석	3좌	문방석	1죽
다리 높은상	3	안식	3부	교의	3	평교자	3
작은병풍	3	모부	3	평연	3	대분토	3
소분토	3	관대가죽 상자	3	작은밥상	3	춧대	3쌍
돛쇠타구	3	작은서안	3	일산	3	청산	3

우산	3	요	3	용정	3	향꽃이	3
도장안자	1	매	15연	기름종이 포대	4부	바가지 대,중	24개
밥고리	3	채	6	채칼	3자루	큰밥술	4틀
중간밥술	5틀	작은밥술	4틀	좌철	3	부쇠	2
부젓가락	3쌍	적쇠	3쌍	놋소라	3	놋대야	3
놋요강	3	칠기쟁반	4죽	용탕순가락	3단	놋젓가 락	3매이
큰놋숫가락	3가락	놋뚜껑	3	휘건	3	수건	3
흰면주비갑	3쌍	작은 놋술	3	주전자	2	도롱	4바리
차보시기	3	좌면지	30장	항아리	4좌	독	12좌
어피	50장	흰사기항아리	10좌	장지	5권		

<표 10-2>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2) : 약재

생지황	10냥	옥리인 (산앵두씨)	3냥	마황	7냥	황기	1근
맥문동	10냥	천문동	1근	길경 (도라지)	10냥	적복령	10냥
시호	10냥	백출	2근	방풍	8냥	산약	5냥
천남성	4냥	백작약	5냥	당귀	1근	백복령	10냥
궁궁	7냥	승마	5냥	전호	3냥	향유	2근
백지	3냥	창출	2근	대황	8냥	황백	10냥
강활	5냥	소엽	7냥	황금	8냥	백편두	4냥
택사	6냥	상백피	5냥	반하	8냥	애엽	5두름
목통	10냥	차전자	2냥	말린모과	5냥	오미자	5냥
세신	5냥	박하	3냥	형개	4냥	인동	2근

<표 10-3>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3) : 우구(雨具)

상품 가는 도롱이	3건	상품 언치	3건	백적	3건	유삼	3건
달치	3거리	차상품 익힌 도롱이	32부	차상품 언치	32부	짚도롱이	15부
화자	3부	행수목	1동				

『증정교린지』(권5)에는 「경외노수(京外路需)」 항목에 기록되어 있다. “각 도에 복정한 물품은 부산에 실어다 납부하여 6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여러 도에서 구하여 가린 물품은 사신에게 나누어 보내되, 부경(赴京) 반전의 예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다. 『통신사등록』의 내용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가 이 일본을 왕래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내용을 잘 볼 수 있다. 통신사 사행원의 일상생활사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일곱째, 피로인 쇄환 유문(諭文)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월 5일조에 수록되어 있는 ‘통신사절목’을 보면,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갑자년(1624)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인물을 쇄환하기 위하여, 예조에서 만들어 준 돈유(敦諭)공문으로 찾아다니며 쇄환하여 무마하고 보살피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 피로인을 쇄환하는 유문이 계미년 1월 2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예조 단자를 보면 「피로인물쇄환 유문」을 전례를 참고하여 단자에 후록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조에서 통유(通諭)하는 일임. 국가가 불행하여 갑자기 병란의 화를 입어 팔도의 생령이 도탄에 빠졌는데, 그 중에 겨우 칼날에 죽음을 모면한 자가 모두 묶여 있는 지가 지금까지 50년이 되었다. 그 가운데 어찌 부모의 나라를 그리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하는 이가 없겠는가마는,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 업고 나오는 자가 보이지 않으니, 이는 필시 함몰된 지 오래되어서이니 그 실정 또한 가련하다. 국가에서는 쇄환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병자년(1636) 사이에 사신이 데려온 사로잡혀 간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죄를 면하게 하고, 신역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면역하였으며, 공사전은 면천하여 완전히 복호(復戶)하고 보호하고 보살피서 그들로 하여금 본토에 편안하게 정착하게 하여, 그 쇄환되어 온 사람들 역시 모두 친족들의 얼굴

을 볼 수 있게 하여, 다시금 낙토의 백성이 되게 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이들도 또한 필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이제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의 원수가 된 적당을 섬멸하고, 앞 시대에 하던 바를 모조리 고쳐서 서신을 보내어 우호를 요청하기에, 국가에서는 특별히 생령 때문에 사신을 보내나니, 사로잡혀 가서 일본에 있는 자가 살아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이 그 시기이다. 만약 일제히 나온다면, 마땅히 지난 날 나왔던 사람들의 사례대로 면천 면역 복호 등의 은전을 일일이 시행할 것이니, 유시하는 글이 도착하는 즉시 서로 전달하여, 유시문 내용대로 통고하여, 사신이 돌아올 적에 일시에 나오도록 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여 시일을 연기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귀신이 되는 것을 면하도록 하라. 대조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되, 모름지기 통첩을 받을 사람에게 도착되도록. 위 통첩은 사로잡혀 간 사민(土民)들에게 내림.”

통신사는 인조의 지시에 따라 피로인을 쇄환하려고 노력하였다. 1643년 통신사 사행록인 『계미동사일기』에는 피로인 쇄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사람 잉질금과 청도사람 자질사리·자질덕 내외는 모두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어서 나가기를 원하였다. 시나가와(品川)에서 대구 양반 출신인 안경우(安慶佑)를 만났다. 의사로 살고 있는 그는 번주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8월 6일) 하코네(箱根)에서는 도중에 심한 검문을 받기도 하였다.(8월 9일, 14일) 오가키(大垣) 서쪽에 있는 역참에는 피로인이 많다고 하므로 역관이형남과 김근행을 보내 이들을 찾아 데려 오도록 했다.(8월 17일) 교토에서 대춘(大春)·묘운(妙雲) 등 광주(光州) 출신 여인이 고국에 돌아가기를 원하므로 상통사를 시켜서 데려가도록 했다.(8월 24일) 김근행을 하카다(博多) 근처에 보내 피로인을 찾게 하였다.(9월 22일) 잇키섬(壹岐島)에 도착했을 때 김근행이 3명을 찾아 왔다.(9월 23일) 이형남이 피로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9월 23일)

『인조실록』 21년(1643) 10월 29일조를 보면, 통신사 윤순지와 부사 조경이 대마도에 돌아와 치계하기를, 임진·정유년에 사로잡혀간 인민들은 모두 자손을 두고 그 땅에 안주해 살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14명만 데리고 나왔는데, 도중에 병들어 죽은 자가 여섯 사람이라고 하였다. 11월 3일조를 보면, 통신사 윤순지와 조경 등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 피로인 남녀 14명을 데리고 와서 부산에 도착하였으므로, 경상감사로 하여금 의복과 식량을 넉넉하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14명은 어릴 때 이름과 본관 등을 성책한 후 원적의 지방관으

로 보낼 계획이었다.(『통신사등록』 계미년 11월 10일)

쇄환 유문을 가지고 가서 피로인에게 보이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사람을 쇄환하지는 못하였다. 도중에 6명은 죽고 14명만이 다시 조선의 땅을 밟게 되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자손을 두고 일본에서 안주하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피로인 문제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종료되었고 본다.

피로인을 쇄환하는 문제는 1643년 통신사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이 유문은 피로인 문제와 관련한 통신사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3월 13일조에는 계미년 통신사 때 한 명도 쇄환하지 못하였으므로, 1655년 통신사에게 쇄환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가깝다고 서술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 37년(1711) 4월 1일조에도 계미통신사 때 피로인을 쇄환하기 위하여 ‘돈유공문’이 성급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

여덟째, 남선사 금지원과 건인사 십여원의 편액 요청

일본은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중국 남송의 제도를 본받아 오산십찰제(五山十刹制)를 확립하였다. 남선사를 오산보다 위에 두고, 천룡사(天龍寺), 상국사(相國寺), 건인사(建仁寺), 동복사(東福寺), 만수사(萬壽寺)를 교토 오산으로 정하였다.

『통신사등록』 갑신년(1644) 4월 8일조에는 대마도주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가 상사(上使 : 통신사 정사) 윤순지에게 보낸 서계가 수록되어 있다. 이 서계는 계미년(1643) 11월에 쓴 것이다. 계미(1643)통신사는 일본에 갔다가 1643년 10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러므로 통신사가 돌아가자 곧 보낸 서계이다. 서계는 근래에 일본의 승려가 건물 하나를 지었으나 아직 편액을 써서 걸지 못하였으므로 ‘금지원(金地院)’이란 세 글자를 써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한 건인사의 홍장로(洪長老)가 우거하는 곳이 십여원(十如院)인데, 이 곳의 편액도 바란다는 것이다. 이 부탁을 사양하지 마시길 청하면서, 별도로 서전(書傳) 1부와 산화문갑(緞畫文匣) 1개를 보냈다.

별견역관 홍희남은 수본(手本)으로 이 문제를 보고하였다. 즉 부특송사가 나올 때 통신 상사 앞으로 도주가 바치는 서신과 별폭, 금지원과 십여원의 제액(題額)을 쓸 당지(唐紙) 4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금지원은 대군의 국사(國司) 양장로(良長老)의 수호(守號)이고, 십여원은 대마도에 와서 거주하는 홍장로의 수호인데, 정사가 손수 쓴 필적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전에도 빈번하게 있었으므로 참고하여 회답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보면, 윤순지에게 명하여 써서 보내게 하고, 또 도주가 이미 서신을 보내고 윤순지에게 물건을 보냈으니 서로 신뢰하는 도리에서 회답과 회례가 없어서는 아니되므로, 승문원에 명하여 회답 초고를 짓게 하고, 회례하는 예물을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보내온 서책 등은 예조에 명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인조의 윤허가 있었다.

통신사가 돌아오고 난 이후 양국 간의 교류 양상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윤순지가 금지원과 십여원의 편액을 써 주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내용은 1643년 통신사와 관련된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기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자료의 발굴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홉째, 일광산 동조궁 제사와 대유원 제사

일광산 동조궁 제사

1643년 통신사와 1655년 통신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각각 일광산(日光山) 치제(致祭)와 대유원(大猷院) 치제를 들 수 있다. 1641년 일본의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동조궁(東照宮)의 보탑을 석조보탑으로 개조하여 완공할 무렵에 그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보탑 완공을 기회로 통신사를 요청했다. 조선에서는 일광산 동조궁에 대장경, 인조의 어필 편액, 조정 대신의 시, 동종, 향로, 축대, 화병 등 선물을 전달하고, 세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통신사 삼사가 결정된 후 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643년 1월 부산에서 역관 홍희남과 대마도의 다이라 나리타카(平成幸) 사이에 「통신사강정절목」 24개 조항이 결정되었다. 이 내용은 『증정교린지』(권5, 신행각년례)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강정절목 가운데 일광산 치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삼사가 일광산에 나아갔을 대에 칙필(勅筆), 종, 향로, 축대, 화병 등의 물품을 마땅히 준비하여 지급하고 제문은 삼사가 가지고 가고 향전은 일본에 예법에 따라 행한다.

㉡ 대군과 약군 앞에서 상견하는 것 및 일광산에서 예를 행하는 것은 모두 전례에 따르고, 만약 그 때 가서 틀리는 것이 있으면 모두 대마도주가 말한 대로 한다.

㉢ 일광산에 삼사가 들어갈 때 쓸 예단을 가지고 온다.

위의 내용은 일광산 치제에 관한 절목이 처음 명문화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월 15일조에 수록된 예조 계목을 보면, 일광산(日光山)에 세 사신이 제사를 지낼 때 쓸 예단(禮單)이 후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인삼 15근, 흰 모시 20필, 흰 명주 20필, 오색종이 50권, 채화석 20장, 황모필 각색 100자루, 유매묵(油煤墨) 100홀, 유둔 10번(番), 백지 100권, 석린(石鱗) 20근이다.

1월 25일조에 수록된 예조 단자를 보면, 일광산에 제사지낼 때 쓸 폐백(幣帛)은 홍색 모시 3필, 흰 명주 3필, 검은 삼베 3필, 채초(彩綃) 3필로 정하였다. 그런데 2월 12일조에는 일광산 치제에 쓸 폐백으로, 금단(錦段) 3필, 채화석(彩花席) 10장, 자기잔대(磁器盞臺) 3죽(竹), 대접[大貼] 3죽, 보시기[甫兒] 3죽, 대화촉(大花燭), 대부용향(大芙蓉香), 운모(雲母), 화석(花席) 5넙. 유둔(油苴) 2부가 추가되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월 15일조에 수록된 ‘대마도주 소지’에는 일광산 치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표 8-1〉의 4, 5, 6 참조) 그리고 ‘봉행 등 소지’에도 치제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표 8-2〉의 9, 10 참조) 계미년 2월 11일조에 수록된 「홍희남이 가져온 등차(차왜 藤智繩)의 열거 조목(洪喜男賣來藤差條列)」의 일광산 치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난 여름 어필을 들여보낼 때, 에도에서 사신이 일광산으로 들어갈 때 받들어 가지고 사당에 납입하는 의장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의장은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이 불가한 일이기로, 비변사에서 이미 틀어막는다고 입계하였음.

㉡ 일광산에서 치제할 때의 폐백은 난잡한 상품을 사용하여서는 불가하니, 금단(錦段) 두세 필과 대화촉(大花燭), 대부용향(大芙蓉香), 운모채화석(雲母彩花席), 자기(紫器) 약간으로 마련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치제의 폐백 12필은 이전에 이미 마련하여 계하하였으니, 이제 이 말대로 세모시[細苧]와 삼베 등 물건은 모두 제거하고, 금단(錦段) 3필 및 향촉과 운모채화석(雲母彩花席), 자기(紫器) 등의 물건이 비록 치제의 폐백에 적합치 않지만,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가져가서 임시로 조처하게 할 것.

이처럼 『통신사등록』에는 일광산 치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여러 형태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일광산 치제 때 사배(四拜)를 하느냐 재배를 하느냐는 예법이 문제가 되었다. 계미년 2월 6일조를 보면 대마번 차왜인 후지 도모나와(藤智繩)는 사배의 예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역관 홍희남은 전례를 들어 재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광산에서 사신이 행례하는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필(御筆)을 존경하여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예조는 사배를, 약군(若君)에게는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논의는 그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1643년 통신사의 사행록을 보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계미동사일기』 3월 26일조를 보면, 통신사가 부산에 머물 때 세 사신이 사청(射廳)에 모여 일광산에 헌향하는 의식을 연습하고 난 한 뒤에 관원과 사공들을 모아 금지 조항을 설명하였다. 일광산 치제 의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7월 15일 에도에 있을 때, 대마도주와 역관 홍희남·이장생이 약군 앞에서 취할 예법과 일광산에 배례 문제를 다시 논의하였다. 약군에 대한 예법은 전명(傳命) 의식이 행해지는 날 참석하지 않아서 쉽게 해결되었다. 일광산 배례 문제도 재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계미동사일기』를 보면 7월 21일 에도에 머물 때, 역관 정충현으로 하여금 숙수를 데리고 먼저 일광산에 가도록 했다. 7월 26일 새벽에는 대마도주가 제물 때문에 상의하고자 역관 홍희남과 함께 먼저 일광산으로 갔다. 7월 27일 사신이 평상 위에서 향을 피우고 축을 읽고 전후 재배의 예를 행하니, 도주와 집정들은 평상 밑에 서서 숨을 죽이고 엄숙한 얼굴로 감히 소리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통신사등록』에는 일광산 치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의견이 오고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과정과 예단, 폐백의 결정과정, 치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유원 제사

대유원은 막부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묘당(廟堂)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당인 권현묘(權現廟 : 대권현궁, 동조대권현궁) 서쪽 400m 쯤에 위치한다. 이에미쓰는 생전에 그의 묘를 일광산에 축조하려고 하였다. 이에미쓰가 1651년 4월에 죽자 시신은 일광산에 매장되었다. 이어 영묘(靈廟)인 대유원 축조가 이루어져 1653년 4월 완공되었다. 1653년 9월에는 유구의 축하사절이 에도에 왔다가 동조궁과 대유원에 분향을 하였다.

갑오년(1654) 11월 16일조에 수록된 예조 계목을 보면, 대유원의 폐백과 향전(香奠)에 필요한 물품이 수록되어 있다. 물품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1> 대유원에 쓸 폐백(幣帛)

금단 (錦段)	대화촉 (大花燭)	대부용향 (大芙蓉香)	채화석	자기잔	대접	보시기 [甫兒]	석린
3필	2쌍	30매	10장	1죽	3죽	3죽	10근

<표 11-2> 대유원 향전(香奠)에 쓸 물품

백단향	은향합	홍상건사라	주홍곡수좌면지	백납촉	대부용향
2냥	1부	1필	10장	3쌍	3쌍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3월 2일조에는 문위역관 이형남·박원량 등의 도해(渡海) 후 별단이 수록되어 있다. 별단 가운데 대유원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일광산 대권현(大權現) 묘당(廟堂)과 대유원 묘당은 거리가 1~2리 정도이니 통신사는 먼저 대유원에 갔다가 다음 대권현으로 감이 좋겠음.

㉡ 대유원 묘당에 통신사가 참배할 때 등롱은 귀국에서 이미 주조하여 만들었다고 하니 이는 다행이며, 악기 여러 도구는 정하게 갖추어 들여보내는 것이 매우 적절함. 또한 제문은 은근히 제작하여 보내고 치제할 때의 전물(奠物)은 새 물과 새 불로 숙수(熟手)가 새 옷을 입고 함매(啣枚)하여 손을 대지 않고 조과(造果)하므로, 계미년(1643) 치제 때 각종 전물이 비록 극히 정하였으나 일본의 풍속과는 달랐기에 사당에 진설하지 않고 곧장 대군 앞으로 들였는데, 이번의 전물 여러 도구는 가져오되 그 가운데 기름에 지지는 물건은 일본 풍속에 맞지 않으나, 호두와 대추, 밤, 잣, 꽃감, 청밀 등의 물건은 수량을 갑절로 가져와서, 그 중 좋은 것을 가려 정결한 버들상자에 담아 넣어 치전함이 좋겠음. 혹시 익혀서 진설하는 일이 있으면 숙수가 없어서는 안될 듯하니 숙수 1명을 데려와도 무방함.

㉢ 어필을 대유원 묘당에 써서 보낼 때 선대군(先大君) 생시에 귀국에 대하여 은근한 뜻이 많았다는 뜻을 제술하여 보내면 좋겠음.

예조에서는 도해역관 이형남의 별단이 부질없는 내용이 많으므로 긴요한 일만 후록한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대유원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권현 묘당에 이전에 사신이 들어갔을 때 혹 분향하거나 혹 치제하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제 이전대로 함이 마땅하되, 이른바 대유원 묘당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일체로 시행함이 마땅할 듯한데, 해조에서는 마음대로 하기 어려우니 이는 묘당에 명하여 논의하여 조치할 것.

㉡ 저쪽에서는 대유원 묘당에 등롱을 청하여 얻은 뒤에 또 악기를 청하는 것은 대개 대권현 묘와 일체로 하려고 하는 뜻이나, 전에 이미 갖추어 보냈으니 이제 틀어막기가 어려운데, 또한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니, 묘당에 명하여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며, 전물 한 가지 일은 그 말대로 시행하되,

숙수는 1명을 정하여 보내도 무방하니, 사신에게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함.

이러한 예조의 견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권현묘당의 치제와 분향은 본래 전례가 있는데, 대유원은 이에미쓰의 사당이니 치제하는 절차는 달리하기 어려울 듯한데다가, 장소 또한 매우 가까우니 행하더라도 무방할 듯하고, 악기도 등롱을 이미 허락하였기에 그대로 부응함이 마땅할 듯하니, 예조에 명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효종의 윤허가 있었다.

을미년(1655) 3월 13일조를 보면, 왜인이 구청한 대유원 묘당의 악기를 권현묘당과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내기로 허락하였으므로, 임진년(1652)의 사례대로 호조와 공조 낭청이 장악원 관원과 함께 『악학궤범』의 척도대로 정밀하게 제조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임진년에 보낸 악기대로, 거문고(琴). 슬(瑟). 축(柷). 어(敵). 훈(塤). 지(簋). 약(簫). 적(篴), 관(管). 통소(簫)의 10종 악기를 각 1건씩 만들어 보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증정교린지』(권5) 「일광산에 제사 지내는 의례(日光山致祭儀)」에서는 슬(瑟). 어(敵), 금(琴), 적(笛), 지(簋), 약(簫). 관(管). 훈(塤), 축(祝), 진(蕝?), 소(簫)의 11종을 주었다고 하였다.

대유원 치제는 처음이므로 치제 때 사용할 예물과 잡물은 모두 일광산 치제 때와 같이 마련하도록 하였다.(을미 3월 23일) 을미년(1655) 4월 3일조에는 「권현묘당 및 대유원의 치제 의례(權現廟堂及大猷院致祭儀)」가 수록되어 있다. 사전 준비 내용, 행례 과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유원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은 다음과 같다.

[유세재 을미 4월 을묘삭 20일 갑술 조선국왕은 삼가 신하 통정대부 이조참의 지제교 조형 등을 보내어 일본국 대유원의 영령에 치제하노라]

“아득히 생각건대 영신(靈神)은, 공덕을 크게 드러내어, 큰 사업을 이어받아 지키며, 남겨준 법칙을 준수하여, 후손이 능히 창성하고, 효성스런 생각이 더욱 독실합니다. 우뚝할사 저 정한 사당은, 명복을 비는 곳인지라, 그 산은 높다랗고, 단청은 찬란하게 빛나니, 보우하는 은덕이 미쳐, 기반이 더욱 험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대대로 친목을 닦음에 돈독하여, 비록 큰 파도가 막혀 있지만, 명성과 공훈을 사모한지 오래입니다. 이에 사절을 보내어, 보잘 것 없는 제수를 올리니, 부디 음덕의 보살핌으로, 영세토록 함께 즐겁기를”

1655년 통신사 정사 조형의 『부상일기』를 보면, 10월 18일(병인)에 대유원에서 제사를 지냈다. 통신사 종사관 남용익의 『부상록』에도 제문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제문 날짜가 ‘시월 을묘삭 이십일 갑술’로 『통신사등록』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제문은 대제학 채유후(蔡裕後)가 지은 것으로 『춘관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춘관지』에는 「대유원 등롱명(燈籠銘)」도 수록되어 있다. 『증정교린지』(권5)에도 「일광산에 제사지내는 의례(日光山致祭儀)」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은 대유원치제는 물론 권현묘를 비롯한 일광산 치제와 관련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춘관지』, 『증정교린지』, 『부상록』 등 관련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국역 통신사등록』(II) 개관

『국역 통신사등록』(II)는 신유년(1681, 숙종 7) 6월 26일부터 계해년(1683, 숙종 9) 3월 4일까지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제3책과 제4책,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간행한 영인본 『통신사등록 一』의 395~771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시작 날짜 항목과 다른 내용의 기사는 별도의 제목으로 목차에 실려 있다. 영인본의 목차에 정리된 기사 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 항목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국역 통신사등록』(II)의 연도별 기사 항목 수

시기	1681(숙종 7)	1682(숙종 8)	1683(숙종 9)	합계
항목 수	56	142	5	203

<표 12>를 보면 기사 항목 건수는 모두 203건이다. 기사 항목은 모두 1682년(숙종 8) 임술통신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1682년 통신사의 역관 홍우재(洪禹載)가 쓴 사행록인 『동사록(東槎錄)』에 의하면, 1682년 통신사는 1682년 5월 8일 서울을 출발하여 11월 16일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1681, 1682년의 기사는 통신사 파견 전의 교섭과정 및 통신사 파견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도쿠가와 막부의 4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가 1680년 5월 사망하고, 동생 쓰나요시(綱吉)가 8월 5대 장군으로 즉위하였다. 이에 통신사 파견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에서는 ‘형이 죽고 동생이 계승했다(兄亡弟及)’면 장군직을 찬탈한 것이 아닌가 의심도 하였으나, 전례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1682년 통신사는 1678년 초량왜관이 완성된 이후 일본에 간 첫 통신사였다. 초량왜관이 완성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통신사의 파견이 논의되었으므로, 초량왜관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다.

『국역 통신사등록』(Ⅱ)의 첫 기록은 신유년(1681, 숙종 7) 6월 26일조이다. 내용은 <동래부사 남익훈(南益薰)이 장계한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 내용>과 <비변사의 회계(回啓) 내용>과 <예조 계목에 대한 판하(判下)>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의 장계는 통신사를 청하는 차왜가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머지않아 건너올 것이며, 문위역관(問慰譯官)이 9~10월 경에 대마도에 가야 궁색한 폐단이 없으며, 통신사는 내년 3월 경에 서울을 출발 6~7월 경에 에도(江戸)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으며, 차왜가 오면 경접위관(京接慰官)과 차비역관(差備譯官)을 즉시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예조의 계목은 여러 등록(謄錄)을 상고하니 계미년(1643)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때는 경접위관이, 을미년(1653) 때는 경상도 도사(都事)가 접대하였는데, 이번에는 경접위관을 내려보내야 마땅하며, 문위역관도 미리 차출해야 마땅하되, 이 일은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비변사의 회계는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3)의 사례가 다른데, 이번 차왜는 을미년(1653) 전례와 같으니 경상도 도사가 접대하되, 문위역관은 미리 차출하여 대기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대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예조 계목에 대한 판하는 별차왜 때는 향접위관을 파견하지만 경접위관과 같이 대우하는 사례가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라는 숙종의 윤허가 있었다.

이 첫 번째 기록은 「두왜(頭倭)가 통신사 파견을 청하는 차왜가 올 것이라고 전함→ 동래부사가 경접위관과 차비역관 파견을 청하는 장계를 예조에 보냄→ 예조는 동래부사의 의견에 따라 경접위관을 파견하되 묘당[비변사]에서 결정하기를 청함→ 비변사는 경접위관 대신 경상도 도사를 파견하도록 한다」 등 일본특의 통신사 파견 요청과 이에 대한 조선측의 결정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역 통신사등록』(Ⅱ)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82년 통신사 명단

『통신사등록』 임술년(1682) 5월 4일조에는 통신사 사행원의 직책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82년 통신사 명단

직책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정사	윤지완	이조참의				
부사	이언강	홍문관 전한				

종사관	박경후	홍문관 교리				
제술관	성완	성균관 진사				
당상역관	박재홍	동지	변승업	첨지	홍우재	첨지
상통사	안신휘	전 주부	정문수	전 직장	유이관	전 정
차상통사	김관	전 판관	박중렬	전 봉사		
압물통사	오윤문	전 정	김도남	부사맹	이석린	통훈대부
	김지남	정				
의원	정두준	전 정	주백	전 판관	이수번	전 주부
사자관	이삼석	상호군	이화립	상호군		
화원	함제건	전 교수				
정사 군관	차의린	첨지	윤취상	전 부사	신이장	전 군수
	원덕휘	전 군수	백홍령	전 만호	이엽	전 초관
	이만상	초관	강진무	부사과		
부사 군관	윤취오	전 부정	장한상	전 부정	김중기	첨지
	양익명	선전관	이유린	부사과	홍세태	전 첨정
	김효상	호군	조정원	호군		
종사관 군관	정태석	전 판관				
별과진검군관	이시형	어모장군	한준일	선략장군		
마상재	오순백	부사과	형시정	부사과		
이마	박계한					
전악	김몽술		윤만석			

표에서 정사 윤지완, 부사 이언강, 종사관 박경후, 제술관 성완을 비롯한 46명의 직책과 이름을 알 수 있다. 종사관 박경후(朴慶後)는 자료에 따라 박경준(朴慶俊)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숙종실록』에 따라 박경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82년 통신사 사행록은 당상역관 홍우재의 『동사록』과 압물통사 김지남(金指南)의 『동사일록』이 대표적이다. 두 책 모두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있다. 홍우재의 『동사록』에는 통신사 사행원의 좌목이 없다. 다만 1682년 11월 16일 일기에 보면 서울에 돌아온 후 논공행상을 할 때 원역의 내용을 일부 알 수 있는 정도이다.

사행원의 명단은 김지남의 『동사일록』에 상세하다. 삼사 외에 제1선(정사선)에 31명, 제2선(부사선)에 29명, 제3선(종사관선)에 24명, 합계 84명의 직책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직책과 이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김지남의 『동사일록』에 수록된 1682년 통신사 명단

직책	이름	전 · 현직	이름	전 · 현직	이름	전 · 현직
정사	윤지완	이조참의				
부사	이언강	홍문관 전한				
종사관	박경후	홍문관 교리				
제술관	성완	진사				
수역	박재홍	가선	변승업	절충	홍우재	절충
상통사	정문수	직장	안신희	주부	김관	전판관
	박중렬	전 봉사	유이관	전 정	오윤문	전 정
	이석린	통훈				
양의	정두준	전 정				
의원	이수번	전 주부	주백	전 판관		
화원	함제건	전 교수				
한학	김지남	전 정				
가정	김도남	사맹				
사자관	이삼석	참봉	이화립	상호군		
서기	임재	부사과	이담령	진사		
정사 자제군관	백흥령	전 만호	이엽	전 판관		
군관	차의린	절충	신이장	전 경력	원덕휘	전 군수
	이만상	전 초관	강진무	수문장		
부사 자제군관	이유린	부사과	홍세태	전 첨정		
군관	윤취오	전 부정	장한상	전 부정	양익명	선전관
	김효상	호군	조정원	호군		
종사관 자제군관	정태석	전 판관				
군관	윤취상	전 부사	김중기	전 첨정		
별파진	이시형		한준일			
마상재	오순백		형시정			
전악	윤만석		김몽술			

이마	박계한					
반당	김태익		강선립		홍여량	
선장	황생		김용기		김중일	
복선장	김여경		황진중		장지원	
예단직	여신립					
반전직	여자신		장후량			
도훈도	김기남		남석로		서수명(한학)	
청직	조귀동		박성익			
소동	김취언		최정필		장성일	
	이지화		현천필		장외봉	
	장익		김자중		최영숙	
	장계량		김취적			
수역소동	김성건		최차웅		한국안	
제술관소동	김이경					
사노	애금		맛봉		영립	
	천업		수생		시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사등록』과 『동사일록』 사이에는 이름과 직책의 차이를 보인다. 두 책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등록』은 통신사 구성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둘째, 1678년 무오절목과 1683년 계해약조

초량왜관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로는 1683년에 세워진 약조제찰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683년 계해약조의 내용을 적은 비이다. 이것은 초량왜관이 신축된 해인 1678년(숙종 4) 9월에 동래부사 이복(李馥)이 제시한 7개항을 근거로 한 무오절목을, 4년 후 파견된 1682년(임술) 통신사가 대마번과 직접 교섭하여 검토한 후, 이듬해 1683년 계해약조로 체결되어 왜관 안팎에 세워진 것이다.

『통신사등록』 임술(1682) 11월 30일조에는 「무오년(1678) 장계의 후록(後錄) 조건」과 「폐에 새길 새 약조」로 구분하여 무오절목과 계해약조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에 기록된 1678년 「무오절목」의 7개 조항을 정리한 후, 이를 『변례집요』(권5, 약조 부금조)의 항목 유무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78년 무오절목

	통신사등록	내용요약	변례 집요
1조	왜관 문 밖으로 왜인이 출입하는 제한은 엄중하게 그 경계를 정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구관(舊館)에서는 수문(守門) 밖 수십 보 되는 곳에 좌자천(左自川) 냇물 하나가 있으므로 그 내를 한계로 하되, 신관(新館)에서는 수문 밖에서 앞으로 나오면 곧 해안의 항구이고, 그 항구를 건너면 곧 절영도(絶影島)이며, 서쪽으로 나가면 곧 연향청(宴享廳)으로 지나가는 길이고, 문에서 연향청까지는 겨우 한 마장(馬場)입니다. 동쪽으로는 곧 구관으로 왕래하는 길인데, 문에서 송현(松峴)까지 또한 백 보 남짓 거리에 불과합니다. 연향청에 출입하는 곳은 비록 또한 문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밖에서 굳게 잠궜두고, 열고 닫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기에, 왜인이 결코 수문(守門)을 버리고 감히 이 문으로 출입할 생각을 내지 못합니다. 이제 경계를 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수문으로 그들이 출입하게 정하고, 앞으로는 감히 해안의 항구를 건너 절영도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서쪽으로는 감히 연향청을 지나지 못하게 하며, 동쪽으로는 송현을 지나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명백하게 조정함.	왜관 밖 왜인 출입의 한계 설정	○
2조	이미 경계를 정한 뒤로는 만약 감히 범하는 자가 있으면 수문(守門) 군관(軍官)과 입번(入番) 소통사(小通事)와 복병(伏兵) 등이 법을 범한 왜인을 사로잡아 관수왜에게 들여 주어 즉시 도중으로 보내어 법대로 형벌을 행하라는 뜻으로 특별히 한 조목을 만들어 도주(島主)에게 조정함.	한계를 정한 뒤에 범한 자의 처벌	×
3조	잠상(潛商)의 노부세(路浮稅)가 적발되어 잡힌 뒤에는 피차간에 같은 죄로 해야 마땅하나, 근래에는 비록 이 일로 금법을 범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단지 우리나라 사람만 죽일 따름이고, 왜인은 탈이 없으니 이 어찌 두 나라가 신의로 일을 처리하는 도리이겠는가? 일의 체면으로 헤아리자면 극히 한심하니, 지금 이후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도 같이 일죄(一罪)로 하자는 뜻으로 엄하게 조목을 세워 도중(島中)과 조정하여 일체로 준행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음.	잠상 노부세의 엄금	×
4조	개시(開市) 때 대관(代官) 여러 왜인이 우리나라 역관 상인	개시 때	○

	들과 대청(大廳)에서 좌정하고, 상인들의 종들과 말 주인들은 그들 이름으로 패를 받아 문에 들어온 자는 대청 아래에 줄지어 앉는데, 무릇 매매하는 일은 한결같이 문을 들어온 물화의 수량에 따라 그 다소와 귀천의 품질을 따져 공정하게 교역하여 물러가고, 일체 그 하왜(下倭)들과 사사로이 상인 및 말 주인들과 함께 몰래 각 방에 들어가서 몰래 매매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하게 조목을 세워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각기 잠상(潛商)의 율을 시행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음.	밀무역의 금지	
5조	왜인이 몰래 여염집으로 나와서 함부로 난잡하게 행동하는 폐단은 한정이 없는데, 몰래 나온 자들은 매양 생선과 채소를 산다고 말을 하나 그 간교한 버릇은 참으로 매우 밍지만, 다만 생선과 채소를 매매하는 길을 영영 막는다면 먼 외국 사람의 생계가 또한 매우 절박하여 또한 모름지기 별도로 한 조목을 세워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생선과 채소와 과실과 쌀 등 일상생활에서 폐지할 수 없는 물품을 매일 아침 전에 관문 밖에 가서 팔도록 허락하는 외에, 또한 왜인에게도 수문(守門) 밖에서 사들이는 즉시 들어가서 일체 이전처럼 여염집에 출몰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조정할 것	조시 때 수문 앞 이외의 민가 출입 금지	○
6조	신관(新館)의 객사(客舍)를 아직 새로 짓지 않았고 객사의 터는 현재 비록 들어가 사는 여염집이 없으나, 해가 오래된 뒤면 장차 큰 마을을 이룰 형세이니, 만약 미리 약속하지 않는다면 뒤에 막기가 어렵고, 곧장 구관(舊館)의 일로 말하자면 왜관에서 객사에 이르는 사이에 시골 마을이 즐비하므로, 송사(送使) 등이 숙박하러 왕래할 즈음에 종왜(從倭)를 많이 거느리고 와서 흠어져 들어가 횡행하는 폐단을 건디지 못하니, 이 뒤로는 신관의 송사가 숙박하러 객사에 왕래할 때면 한결같이 품수(品數)에 따라 그 수행하는 인원수를 정하여 곧장 갔다가 곧장 오되, 혹시라도 뒤쳐져서 함부로 행동하여 이전의 버릇을 따르지 말라는 뜻으로 또한 명백하게 조정함.	송사 진상 숙박 때의 규정	○
7조	오일잡물(五日雜物)을 관왜에게 들여 줄 때는, 전례로는 본부에서 아전과 고직(庫直)들을 정하여 보내어 왜관 문을 들어가서 수량을 대조하여 지급하되, 계산하여 지급할 때 만약 사소하게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왜인이 시비를 묻지 아니하고 곧장 사납게 화를 내어, 색리(色吏)나 고자(庫子)나 소통사(小通事)나 부장(部將)이나 문직(門直)의 무리를 따지지 않고 사사로이 끌고 다니며 구타하고, 심지어는 의관을 찢어	5일잡물 입급 때의 규정	○

	버리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지경에 이르니,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성신(誠信)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 이후로는 일체 이런 버릇을 따르지 말고 비록 혹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조용히 본부에 전하여 알려 좋은 모양으로 조치하라는 뜻으로 명백하게 조정함.	
--	--	--

『통신사등록』에서는 무오절목 내용의 수정 사항을 대해 조목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곱 가지 약조는 동래부에서 올린 무오년(1678) 장계 등록에 실려 있으나, 문자가 길고 번거로워 패에 새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곱 가지 가운데 제1조는 관문(館門) 밖의 출입 한계를 정하는 일, 제2조는 경계를 정한 뒤에 범하는 자는 죄를 다스린다는 일, 제5조는 조시(朝市)에서 어울려 매매하는 이외에는 일체 여염집에 출몰하지 말라는 일이다. 이 세 조목은 말의 뜻이 중첩되어 한 가지로 합쳐야 한다.

② 제3조의 잠상(潛商)으로 금법을 범하는 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같은 죄로 한다는 한 조목은 편치 못한 일이 없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간사한 사람이 관가에 고하지 않고 몰래 물화(物貨)를 가지고 왜인과 매매하는 자를 잠상(潛商)이라 일컫는데, 왜인은 그 사람이 잠상인지 모르고 함께 매매하였다가 그것이 적발된 뒤에 우리나라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죄(一罪)로 논한다면 저쪽에서 반드시 원통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잠상을 금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배로 엄격하여 왜인이 잠상을 참형으로 처단한 것이 전후로 한 두 번이 아니거니와, 금령을 범한 왜인이 소지한 물화가 반드시 우리나라 상인의 몰래 판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상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피집(被執)한 물건을 왜인들이 사사로이 매매하다가 도중(島中)에서 탄로 나서 잡힌 뒤에 우리나라 사람을 같은 죄로 처벌하기를 요구한다면 일이 매우 난처하니, 잠상 두 글자는 빼어버리고 단지 노부세(路浮稅) 한 조목만 남겨 둬서 어떻겠느냐?

③ 제6조의 이른바 왜인이 진상숙배(進上肅拜)하러 왕래할 때 그 직품 등급에 따라서 그 수행 인원을 정하여 곧장 갔다고 곧장 올 것이지 혹시라도 뒤쳐져 제멋대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한 조목은, 이른바 뒤쳐져 제멋대로 다닌다는 것은 경계 표시의 금제를 범하는 자와 원래 다름이 없어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 수행 인원 수를 정하는 것은 형편상 시행하기 어렵고 또한 번쇄(煩瑣)한 일이라 이 한 조목은 빼어버리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

④ 이렇게 말하자면 꽤에 새길만한 것은 네 가지에 지나지 않겠기로, 신이 감히 비천한 견해로 조목을 만들어 무오년(1678)에 확정한 7조와 아울러 뒤에 나열하였으니, 묘당에 명하여 참작 취사하여 분부하여 거행하도록 해 주실 일.

동래부사 남익훈은 7개 조항을 둘에 새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4개 조항만 새기자는 장계를 1682년 11월 올렸다. 비변사늑 4개 조항을 범한 자는 모두 왜관 밖에서 처형한다는 조항을 첨가하였다.

셋째, 1682년 통신사 응행절목(應行節目)

『통신사등록』 신유년(1681, 숙종 7) 9월 15일조에는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해야 할 여러 일을 을미년(1655) 통신사의 사례에 따라 후록한다고 하였다. 후록한 것이 통신사 응행절목이다. 그런데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월 5일조에는 1643년 통신사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표 6>에서 정리한 바 있다. 『춘관지』 권2에는 「신사응행절목」이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682년 통신사 응행절목을 1643년 통신사 응행절목, 『춘관지』 신사응행절목과 비교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1682년 통신사 응행절목

	1682년	1643년	춘관지
1	사신의 출발하는 일정 및 바다를 건너는 날씨는 문위역관이 돌아온 뒤에 관상감에 명하여 택일하여 거행함.	×	×
2	사신의 반전(노자) 등의 물자는 해조에 명하여 미리 마련함	○	○
3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을미년(1653) 사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함.	○	×
4	사신의 장복(章服)〔부사 이상은 모두 당상관 장복〕은 상의원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함.	○	×
5	일행 원역의 의복과 신발 등 물자는 공조와 제용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	×
6	사신의 형명기와 둑(纛)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함.	○	×
7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여 보냄.	○	×
8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1알은 주조한 관방인(關防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고, 도장집〔印家〕과 관방인집〔關家〕과 소가죽 남라개집(南羅介: 문서통)를 한 마리 만드는 것도 공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함.	○	○
9	상선 2척, 하선 2척, 소선 2척에 격군은 모두 본도에 명하여 미리	○	○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함.		
10	상사의 자제 2원, 군관 6원, 노자 2명, 부사의 자제 2원, 군관 6원, 노자 2명, 종사관의 자제 1원, 노자 1명 및 독축관 1원, 왜통사 당상관 2원, 당하관 6원, 한통사 2원, 사자관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별과진검군관 2인, 마상재 2인, 약공 2인, 이마와 숙수 각 1인은 각 해당 관청에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하되, 차왜가 말하는 말 잘 타고, 활 잘 쏘며 육량궁(六兩弓)을 잘 쏘는 자는 사신의 군관 중에서 최선으로 선발하여 데려 감.	○	○
11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엄하게 금하여, 원역 중에서 함부로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에 되돌아온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함	○	○
12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지급함.	○	○
13	일행 원역은 각기 노자 1명을 데려 감.	○	○
14	사신 이하가 관문과 나루터를 건너갈 때, 보고 검사할 문서는 을미년(1653)의 사례에 의거 마련하여 지급함.	○	○
15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전례대로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대로 시행함.	○	○
16	차왜가 가져온 서계 가운데 지금의 대군(大君)에게는 이미 저군(儲君)이 있다고 하였는데,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등의 일은 계미년(1643)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거행함.	×	×
17	일본국 집정과 대마도주, 수도서인 등에게 사신이 되돌아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전례라고 하니 이대로 시행함.	○	○
18	사신이 가져가는 예단은 일본국왕 및 집정 4인, 봉행 6인, 장로 1인 등 각 왜인에게 전례대로 차등있게 증정하여 주는 물건은 호조와 본도에 명하여 미리 마련하며, 수직왜에게는 전례대로 짐짓 9인의 수량을 마련하되, 지금은 필시 생존한 자가 없을 것이니, 문위역관이 탐문하여 되돌아온 뒤에 품의 조치함.	×	×
19	시급한 일이 있으면 과발말로 알릴 것.	○	○
20	사신을 들여보낼 때 일본 집정과 도주 이하 수도서 왜인 등에게 본조에서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여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 때도 전례대로 서신을 보내도록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마련하게 함.	×	×
21	사신 일행에게 시행할 잡물은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을미년(1653)의 사례를 상고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대령하게 함.	×	×

22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	○
내용 중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하였다.			

1643년 통신사의 절목이 18개 항목인데 비해, 1682년 통신사의 절목은 22개 항목이다. 통신사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특히 1643년, 1653년 통신사가 근거가 되었다. 제10조에 보면 말 잘타거나 활잘쓰는 사람을 삼사 군관 중에서 특별히 선발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643년 절목에는 피로인 쇄환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1682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1682년 통신사 강정절목(講定節目)

통신사가 파견되기 전에 조선과 일본은 통신사 파견과 관련된 규정인 절목을 서로 강론하여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절목을 강정절목이라 한다. 『증정교린지』(권5, 신행각년례)에 의하면, 1682년(숙종 8, 임술)에 관백 이에쓰나(家綱)가 죽고, 그의 아우 쓰나요시(綱吉)가 그 자리를 이어 통신사를 요청하므로, 윤지완(尹志完), 이언강(李彦綱), 박경후(朴慶後)를 보내었다. 절목은 신유년(1681, 숙종 7) 문위역관인 변이표(卞爾標) 등이 강정하여 왔다고 하였다. 『증정교린지』에는 이 강정절목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과 『증정교린지』에 수록된 강정절목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1682년 통신사 강정절목

	통신사등록	증정교린지
1	선대군(先大君) 능묘는 도성의 동북 5리 쯤의 동예산(東叡山) 땅에 있는데, 묘원의 호칭은 겐유잉[嚴有院]이다. 전례대로 모름지기 전하의 친필 편액을 증정하는 것과 제문을 증정하여 주기 바라는데, 그 동경(銅鑒:구리 등잔걸이), 악기 등은 예전 규범을 준수하기 바라며, 그런 뒤에 그 등경(燈鑒)에는 모름지기 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글씨의 글자 모양은 뜻대로 지어주기 바라며, 만약 먼저 그 초고를 주시면 모양의 높낮이를 모름지기 그림을 그려서 지휘할 것이다.	등롱과 악기는 모두 구례에 따라 하고, 등롱의 명문(銘文)은 먼저 초본을 보여준다
2	또한 생각건대 대체로 매양 본국에 사신을 오는 관사(官使)는 반드시 일광산에 일이 있는데, 이번에 동도(東都)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도오조오규우[東照宮]과 다이유잉[大猷院] 묘에 분향을 할 수 있을	권현당과 대유원 두 곳에서는 분향만 하고, 엄유원에서만 제사 지낸다.

	지? 만약 과연 그럴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분향하는 예물과 먼 길의 수고를 사양하지 말기 바람.	
3	본국의 집정 및 봉행은 당초에 정해진 인원이 없는데, 이제 혹시라도 인원이 더해지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모름지기 음식을 접대하고 위문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 예조의 도장을 찍은 종이 몇 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전의 관례이다.	예조의 도장을 찍은 종이 몇 장을 들여보낸다
4	본국 해로의 험하고 평탄한 장소는 귀국 뱃사공이 아는 바가 아니라서, 우리 뱃사공 가운데 가장 잘하는 자를 최선으로 선발하여 귀국의 배에 나누어 실을 것인데, 바람을 살피고 조수를 살핌에 있어서 모름지기 그 지휘를 따라주고 귀국의 뱃사공이 마음대로 출발하거나 거두지 말게 하기 바란다.	왜 사공은 삼사선에 나누어 타고서 바람과 조수를 기다리게 한다.
5	오사카〔大坂〕 이동에서 관원이 타는 말은 모두 우리나라 후백(侯伯)이 바치는 것이다. 모름지기 빠르게 몬다고 채찍을 치지 말기 바란다. 그 행렬을 소란하게 하여 죽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을 상할까 염려된다.	일행이 타는 말을 너무 달리게 해서 길에 쓰러져 죽는 일이 없게 한다.
6	전년에 사신이 도착하던 날 하관의 종복(從僕)들이 법령을 회롱하거나 침범하여 간혹 객관 밖에서 외람되어 어정거리거나 혹은 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을 몰래 무역하는 자가 있었다. 이제 정령(政令)이 매우 엄격하여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만약 몰래 사사로이 금지하는 물건을 매매하는 자는 규찰하고 검속하여 탄핵하여, 본국의 간사한 사람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법과 다름없이 할 것이니, 바라건대 이번 일행에는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웅당 모름지기 바르고 엄숙하게 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관사의 하의(賀儀)에 사용하는 별폭은 마땅히 두어 가지 물품만 사용하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사용할 집물 외에는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기 바란다.	일행들이 사관 밖에 함부로 나다니거나 금지된 물건을 몰래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7	지난번에 이미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쓰고 활을 잘 쏘는 관원을 데려오기를 희망하였는데, 궁수는 모름지기 완력이 있는 자여야 하고, 마상재는 모름지기 조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글에 능하고,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말 잘 다루고, 활을 잘 쏘고, 말 잘 타고 힘 센 사람을 대동동한다.
8	전년에는 상상관으로 임명된 자가 2원이었는데, 이	상상관(上上官), 압물관

	번 행차에는 3원이 와도 좋다. 이는 하관이 정제되고 예의가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좋은 의원 및 통역을 담당하는 관원의 인원을 더하여도 무방하나, 쓸데없는 인원 몇 명을 데려오지 말기 바란다.	(押物官), 양의(良醫)를 증원한다.
9	우리나라 세 종실 및 집정 등 몇 사람에게는 모두 세 분의 대관사(大官使)께서 증정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물품을 많이 하는 것이 예전의 사례이나, 무명배와 호두 열매와 잣, 화석, 유지(油紙), 설면(雪綿), 패향(佩香), 청심원 등은 굳이 동도의 대관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매와 인삼, 범 가죽, 표범 가죽, 양 가죽, 담비 가죽, 청서피, 백조포(白照布), 필묵, 비단(緞綾), 채전(彩牋), 어피, 녹두, 백밀(白蜜), 작은 칼도 모두 좋다.	삼종실(三宗室)과 집정에 게 삼사가 주는 물건 중에 무명, 호두, 잣, 화문석, 유둔, 설면, 패향(佩香), 청심원 등의 물건은 동도(東都 강호)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다. 이 밖에 매, 인삼, 호피, 표피, 청서피, 양피, 백저포, 붓, 먹, 능단, 색종이, 어피, 녹두, 백밀, 작은 칼을 가지고 온다.
10	세 사관(使官)이 타는 배는 견고하고 치밀하면서 정밀하게 갖추되 큰 밧줄 및 쇠닢은 모름지기 이쪽 대마주에서 실어 보내며, 그 나머지 배 위에서 사용할 짐물로서 만약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람.	사신이 타는 배의 큰 노와 철정은 대마도에서 실어 보내고, 의룡 몇 짐도 만들어 보내다.
11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넣은 껍짝은 모름지기 정밀하게 만들도록 하고 또한 그것을 싸는 보자기 역시 모름지기 극히 화려하게 할 것.	대군(大君)에게 보내는 서계(書契)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자기에 싸고 껍에 넣는다.
12	이번 행차에는 말을 치는 종이라도 새옷을 착용하기 바람. 우리나라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을 불경한 것으로 여기니 풍속을 어지기 말기 바람.	사신 일행이 데리고 오는 사람은 채색옷을 입는다.
13	폐백으로 사용할 말 및 그 밖에 가져올 말을 5필로 정했는데, 별도로 서너 필을 끌고 오면 좋겠고, 그 털 품질은 위라말(駭;얼룩말)이나 가라말(驪:검정색), 절따말(紫毛)이나 황부루(黃毛)를 사용하고, 비록 폐백 말이라도 흰색은 버릴 것.	폐백(幣帛)을 신는 말과 예단(禮單)을 신는 말 이외에 미리 말 3, 4필을 보내되, 얼룩말, 검은말, 자황색 등의 말을 더 보낸다.
14	매는 30연으로 정했는데 그 나머지 세 대사(大使)가 사용할 것까지 피차간에 합쳐서 50연인데, 별도로 10여 연을 조롱에 넣어 온다면 좋겠음. 만약 말이나 매의 발굽이 손상되거나 깃털이 손상되면 바칠 수가 없을까 염려되고 또한 죽게 되는 경우 또한 알 수가 없음.	예단에 들어 있는 매 50마리[連] 이외에 10마리를 더 보낸다.

15	전년에 되돌아 올 적에는 다만 세 분의 대사가 도착하면, 상관이 된 자가 음식을 진설하지 않고 5일 분의 물자를 공급만 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그 사례대로 오가는 사이에 음식을 진설하지 않는 것이 어떠할지? 그러나 오사가 및 양도(兩都)에 처음 도착하는 날과 그 나머지 큰 고을에서는 모름지기 예전 규정을 준수하여 진선(進膳) 연향(宴饗)을 할 것인데, 수고를 사양하지 말기 바란다.	바다나 육지의 각 역참에 서는 예(例)에 따라 5일지공(五日支供)을 지급하고, 대판(大坂) 및 양도(兩都)와 그 나머지 큰 읍(邑)에 서는 숙공(熟供)으로 잔치를 베풀다.
16		집정봉행(執政奉行) 등 10인 이외에 대집정(大執政) 1인, 서경 윤(西京尹) 1인, 봉행 2인에게 줄 물건을 더 가지고 온다.

『통신사등록』에는 『증정교린지』에 없는 내용도 다수 있다. 같은 항목의 내용도 『증정교린지』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강정절목의 어떤 내용이 『증정교린지』에 어떻게 요약 정리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강정된 절목에 따라 통신사의 파견 내용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1655년 통신사 이전까지는 보통 2명의 의원이 갔다. 그런데 이 절목에 양의(良醫)를 증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682년 통신사부터 의원과는 별도로 양의 1명이 증원되었다.

다섯째, 1682년 통신사의 의원(醫員)과 양의(良醫)

통신사에 참여한 의원(醫員) 수는 원래 2명이었다. 그러다가 1655년 통신사부터 3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1682년 통신사부터는 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양의로 대체되었다. 양의의 파견은 마지막 통신사인 1811년 통신사까지 계속되었다. 다만 1811년 통신사 때는 양의 1명과 의원 1명만 갔다.

통신사에 참여한 의원 2명은 정식 규정 인원이며, 양의 1명은 가정(加定), 즉 추가된 인원이다. 양의에 대한 선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1682년부터 양의가 증원된 이후, 일반적으로 의원과 구분하기 위해 ‘양의’가 직책 이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증정교린지』(권5, 통신사행)에서는 “양의 1명은 왜인이 요청하면 의술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파견하였고, 의원 2명은 전의감과 헤민서에서 각 1명씩 선발하였다”고 하였다.

양의 파견이 처음 실시된 1682년 통신사 때는 정두준(鄭斗俊)이 양의, 이수변

(李秀蕃)과 주백(周伯)이 의원으로 갔다. 정두준은 본관은 하동이며, 1660년(현종 1) 의과에 합격하였다. 정두준은 1678년(숙종 4) 당시에는 어의(御醫)로 활동할 정도로 의술에 뛰어났다. 1682년 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9월 1일 대마도주는 병이 나서 양의 정두준을 요청하였다. 양의도 오사카(大坂)에서는 가마를 타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에도(江戸)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양의에 대한 일본측의 접대는 제술관, 상통사와 같은 ‘상관(上官)’의 격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양의를 통한 의학 정보 수입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사등록』 신유(1681) 11월 23일조에서는, 전의감(典醫監)에서 전 판관 주백(周伯)을, 혜민서(惠民署)에서 전 주부 이번(李蕃) [이수번의 오기]을 의원으로 차정한다고 하였다. 12월 21일조에 보면, 양의(良醫) 한, 두 명을 늘려서 들여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양의는 2명이 전레이므로 인원수를 추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2월 21일조에 수록된 문위역관 변이표가 가져온 대마도주의 별단을 보면, 양의와 역관의 인원을 늘려도 무방하지만, 쓸모없는 사람 몇 명을 데려오지 말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의관을 추가하여 보내는 것은 변통에 관계되므로, 묘당[비변사]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의원 1명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

『통신사등록』 임술(1682) 1월 15일조에 수록된 도주별단에도, 양의와 역관 한, 두 사람을 추가로 데려와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통신사등록』 임술(1682) 3월 5일조에서는 의원 정두준을 해조에 명하여 군직(軍職)에 부치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하였다고 하였다. 3월 11일조에서는 상상관 및 양의와 역관은 보여준 대로 인원수를 더하여 데려간다, 5월 4일조에서는 이번 사행에서는 당상역관, 당하역관, 의원을 각 1명씩 추가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통신사등록』 임술(1682) 5월 4일조에 수록된 통신사의 명단을 보면, 「의원 전 정(正) 정두준(鄭斗俊), 전 판관(判官) 주백(周伯), 전 주부(主簿) 이수번(李秀蕃)」으로 3명의 의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3명의 의원은 양의와 의원의 구분없이 모두 의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원 이수번은 『통신사등록』 신유년 11월 23일조에는 이번(李蕃), 임술년 5월 4일조에는 이수번(李秀蕃)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에서는 양의와 의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홍우재의 『동사록』(6월 20일조)에 의하면, 의원 이수번은 인삼 10여근을 몰래 숨겨 두고 있다가 발각되었다. 통신사 의원의 밀무역과 관련된 사례의 하나이

다. 『통신사등록』은 등록이라는 자료적 성격 때문에 통신사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본에서 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다.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통신사 사행원이 남긴 사행일기[사행록]나 필담창화집, 문답집 등 관련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1682년 통신사의 대상자별 선물[예단]

1682년 통신사 때 압물통사인 김지남의 『동사일록』에는 「재거물건(賚去物件)」이란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는 대군, 약군, 집정,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서계의 유무와 내용, 별폭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통신사가 가져간 선물[예단] 내용을 대상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1682년 통신사가 가져간 국왕 등 대상자별 선물[예단]

	대군(大君)	약군(若君)	집정(執政)	대마도주
매(鷹子)	10마리(連)	10		
준마(駿馬)(안장)	2마리(匹)	2		
호피(虎皮)	15장(張)	10	3	2
표피(豹皮)	20장(張)	10	2	3
초피(貂皮)	20장(令)			
대유자(大襦子)	10필(疋)			
대단자(大段子)	10필(疋)			
색대사(色大紗)	20필(疋)	10		
백조포(白照布)	20필(疋)		17	10
황조포(黃照布)	20필(疋)			
유포(油布)	30필(疋)			5
인삼	50근(斤)	30		5
청피(靑皮)	30장(張)	15	5	
어피(魚皮)	100장(張)	100	15	
색지(色紙)	30속(束)			
붓/색붓(筆/色筆)	50자루(柄)	50		
참먹(眞墨)	50개(笏/丁)	50	20	
황밀(黃蜜)	50근(斤)			
황청밀(黃淸蜜)	10단지(壺)			
비단(錦段)		10필	3(段子)	
비단(綾子)		20필		
꽃무늬벼루(花硯)		5개(面)		
황필(黃筆)			30자루(柄)	
유둔(油氈)			5개(浮)	
백면주(白綿紬)				10

백목면				20
화석(花席)				5장
출전 : 김지남, 『동사일기』, 「채거물건(賣去物件)」				

<표 18>을 보면, 품목은 동물(매, 말), 호피 등 가죽, 비단 등 직물, 종이와 붓 등 문방구류, 인삼, 꿀 등이 주종이다. 국왕에 대한 선물은 다른 사람과는 물품과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된 품목은 호피, 표피, 비단의 세 품목이다, 비단은 질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통신사등록』 신유(1681) 9월 15일조를 보면, 일본 국왕, 왕자, 집정, 봉행, 대마도주, 수도서인, 장로, 수직왜에게 가져갈 선물[예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1682년 통신사가 가져갈 국왕 등 대상자별 선물[예단]

	국왕	왕자	집정	봉행	대마도주	수도서인	장로	수직왜인
대단자(大段子)	10필(匹)	10						
백릉(白綾)	20필(匹)	20						
백저포	30필(匹)	30	10	10	10	5	5	3
흑마포	15필(匹)	15		5	5			
인삼	30근(斤)	30			5		3	
호피	10장(張)	10	2	1	2	1		
표피	15장(張)	15			3			
각 색필	50자루(柄)	50						
청서피	15장	15						
준마(안장)	2필(匹)	2						
유매묵(油煤墨)	50개(笏)	50(柄)	20개(笏)	10			10	5
화연(花硯)	5개(面)	5						
어피	100장	100						
매(鷹子)	10마리(連)	10	1	1				
백면주			10필(匹)	10	10	5	5	3
황모필			30자루(柄)	20			20	10
유둔			3개(部)			1		
화석(花席)			5장		5	3		2
백목면					20			
출전 : 『통신사등록』 신유년(1681) 9월 15일								

<표 18>에서는 국왕, 왕자, 집정, 대마도주의 네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 것

이 호피, 표피, 비단의 세 품목이다, <표 19>에서는 호피, 비단, 백저포고 표피는 집정은 제외되어 있다. <표 19>를 보면 모든 대상자에게 간 예단은 백저포한 품목이다. 국왕과 왕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모두에게 간 품목은 백면주한 품목이다. 『동사일기』 내용과 가장 큰 차이의 하나는 국왕과 왕자의 예단 품목과 수량이 같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록상의 오기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검토를 요한다.

『통신사등록』에는 해당 물품의 조달을 담당하는 관청이나 지역이 기록되어 있어 『동사일기』 내용보다는 훨씬 상세하다. 또한 <표 9>에서 정리한 1643년 통신사의 예단과도 차이를 보인다. 통신사의 시기별 예단의 변화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통신사 수행원의 작폐(作弊)와 대마도주의 대응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 나라 사행원 가운데는 상국(上國)의 입장에서 대마도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통신사 삼사 사신들은 매번 수행원들의 예의범절을 강조하였다. 대마도주는 통신사 수행원을 예우하느라, 이들이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하여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1682년 통신사 때는 대마도주의 태도가 달라졌다. 대마도에 머물고 있던 6월 29일 대마도주가 삼사 일행을 초청하는 연회가 있었다. 대마도주는 수행원의 예의를 강조하며 5가지 요망 사항을 적어 보냈다. 이러한 사실은 홍우재의 『동사록』(6월 29일)에 잘 나타나 있다. 이날 일기를 보면 “오늘 연회에 나아가서 세 사신이 자리를 떠나 휴게소에 있을 때 대마도주가 5조목으로 된 한 폭 족자를 보냈다”라고 적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행의 상관(上官) 이하에 있어서 마땅히 정숙하고 조심해야 함이 요망되며, 술에 취하여 문이나 기둥에 흠집 내거나, 돛자리나 병풍을 베어 내거나, 벽에 침을 뱉거나 오줌을 계단에 누는 것이나, 말을 달리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여러 관속들이 심부름할 때 높은 곳에 앉아 오만하게 내려보는 일들을 금한다는 것이다.

② 지난번에 잠상(潛商)을 금하기를 청했는데, 이번에 우리 영토에 들어왔을 때 금지령이 매우 엄하고 가장 정중하였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번의 사신 일행이 좌수포(佐須浦)에 이르러 잠매하려는 물건을 엄하게 수색 검사한 관계로 이를 변명한 것이다.

③ 지난 무신·기유년 사이에 우리나라[倭]의 축전주(筑前州) 호민(豪民)들이 귀국의 상인과 비밀히 통하여서 금지된 물건들을 무역하다가 사형을 당했는데, 이번에 동도(東都)에 머무실 때 혹시 시강관(侍講官)이 의심나는 곳에 증거를 대게 하거든 실정(實情)대로 답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④ 두 장로(長老) 삼(森)과 영(靈)가 접대할 때는 역시 옛 제도에 따라 할 것이다.

⑤ 시를 짓는다면 여행기를 쓰는 등의 저작물에 그들이 싫어하는 말[忌諱]을 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홍우재는 『동사록』에서 이 5조목 글이 번다하므로 그 큰 뜻만 초록한다라고 부기하고 있다. 『동사록』의 내용은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초록한 것이다. 6월 29일 대마도주가 보낸 5조목은 『통신사등록』에서는 임술(1682) 7월 11일조에 ‘별단(別單)’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해당 부분 상단에는 ‘신사전 도주별단(信使前島主別單)’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별단을 보면 5조목을 적어 보내니, 해아려 살피주기를 바란다는 전제 위에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별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역관을 통하여 입으로 알리고자 한 것이 다섯 조목이었으나 사건이 번거롭고 세세하여 곡진하게 전달하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기록하여 바칩니다. 또 생각건대 기실(記室)이 글을 잘하지 못하여 사정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 오직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번 일행의 상관 이하는 모름지기 정숙하고 삼가하고 성실하기 바람.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에 각처의 대기하며 접대하는 곳에서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흠뻑 취한 탓에 간혹 술잔과 쟁반이 낭자하거나 혹은 부질없이 문이나 기둥을 짚아 새기거나, 자리를 잘라내고 병풍에 글을 쓰거나 혹은 당(堂)과 벽에 침을 뱉거나, 혹은 계단 가로 오줌을 흘려보내거나, 마침내는 타는 말을 달리게 하여 엎어져 죽기에 이르는 자도 있어서, 우리나라 인사가 개미떼나 사슴떼처럼 모여들어 보는 자가 담장과 같았는데, 그 목동이나 마부와 종들까지 또한 칼을 차지 않는 자라도 그 풍속이 과감하여 여유 있게 부드러운 기상이 전혀 없으니, 만약 혹시라도 말을 타고 군교를 차거나 혹은 부녀들에게 침을 뱉기까지 하면 보는 이들이 매우 한심하게 여기고, 또한 대기하여 접대하는 곳에서 여러 관리들이 가지 않고 높이 누워 거만하게 바라보는 자가 종종 있으며, 병자년(1636)에 사신들이 이미 동도(東都)에서 출발하는 날 한 하관이 술에 잔

뜯 취한 나머지 말 위에서 우리 병졸에게 꾸짖어 욕설을 하자, 군졸이 노하여 말을 꺼내자 칼을 쳐서 상해하였는데, 생각하면 그렇게 말에 상처를 입힌 것은 오히려 말할 것도 못되고, 만약 혹시라도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하여 꾸짖는 자는 반드시 살해당하여 죽는데. 우리나라의 사나운 풍습은 서경(西京) 동쪽이 심하니, 요컨대 모름지기 잘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국의 사람으로서 법을 범하거나 금지를 침범하는 무리가 있으면 모름지기 먼저 기록하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저는 내 휘하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비록 후백(侯伯)의 대관(大官) 집의 요속(僚屬)이나 이민(吏民) 또한 청하는 바에 따라 처치할 것입니다. 나의 휘하에 속한 자에게는 이미 벌써 몇 건의 명을 내려서 그 법이 매우 엄격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② 지난번에 동래에다 잠상을 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미 우리나라 국경으로 들어왔으니 바라건대 명령을 매우 엄중하게 하여 주시면 가장 감사하겠기에 정중히 말씀드리오니, 우리 섬을 떠나기 전에 더욱 더 규찰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③ 전년인 무신년(1668)과 기유년(1669) 사이에 우리나라 축전주(筑前州)의 호민(豪民)이 위장 선박으로 귀국과 몰래 통하여 금지된 물품을 무역하다가 그 일당 수십 인이 일이 발각되어 모조리 책형(磔刑)을 당하고 집안의 많은 재산을 관고(官庫)로 몰수당하였는데, 그 가운데 귀국에 적(籍)을 올린 자도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일찍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세상에 간행하였고, 또 들으니 『여지도(輿地圖)』와 『대전(大典)』 등의 책을 관고(官庫)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건대 이번 동도(東都)에 머무는 날 혹 시장관으로 하여금 의심나는 여러 곳을 바로잡을 것이니, 그렇다면 모름지기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성조(盛朝)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국가의 금령과 관계되는 것은 침묵하여 빙자하는 한계를 두지 않겠습니다.

④ 이번에 두 장로로 하여금 접위하게 한 것 또한 예전 사례를 준수한 것입니다. 본국에서는 불교를 숭상하여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자의(紫衣)와 황의(黃衣)를 하사한 자는 우리나라 전상관(殿上官)에 상당하니, 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⑤ 창화(唱和)와 기행(紀行)의 여러 시문 작품에 기획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군(大君)은 천부의 자질이 영매(英邁)하고 문학을 숭상하며, 집정 여러 관원 또한 자못 책을 좋아하여, 이 때문에 이번 사행에 저술한 것을 감히 베껴 적어 위에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탄 없이 말하면 저의 허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6월 29일 대마주 태수 다이라 요시자네[平

義眞]].

위 5조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1636년, 1643년, 1655년 통신사 때 술먹고 행패부리는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였으므로, 이번 사행에서는 상관 이하는 모름지기 정숙하고 삼가하고 성실하기 바란다.

제2조, 잠상, 즉 밀무역을 엄중하게 금지하기 바란다.

제3조, 1668~1669년 축전[筑前]주 호민과 조선인이 결탁한 밀무역 사건에 대해 막부에서 물으면 사실대로 대답해 주기 바란다.

제4조, 접반승(接伴僧)은 전례를 준수한 것으로, 이들을 경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5조, 창화 등 글을 지을 때 기휘(忌諱)하는 말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역관 홍우재가 사행록에 이를 적은 것은 그만큼 대마도주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대마도주가 보낸 「일폭오조(一幅五條)」의 내용은 김지남의 『동사일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홍우재가 사행록에 적은 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문이 아니고 초록이다. 전문은 『통신사등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통신사등록』이 가지는 사료적 의미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양자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신사등록』은 등록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료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신사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서와 서계가 중심이다 보니, 전체 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사행원의 일본 내 활동에 대한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외교적, 정치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고, 문화적 측면의 성격이 약하다. 그러므로 문화교류에 관한 내용은 사행록이나 필담창화집 등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통신사 연구에서 『통신사등록』은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않았다. 통신사 연구가 주로 문화연구에 치중한 것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증정교린지』, 『춘관지』, 『통문관지』, 『변례집요』 등에 수록된 통신사 관련 내용은 『통신사등록』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경우 『통신사등록』이 가지는 일차 사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이번 『통신사등록』의 국역본 간행을 계기로 『통신사등록』이 적극 검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해제에는 다음 참고문헌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건서 저, 하우봉·홍성덕 역,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 법제처, 『춘관지(상)(하)』, 법제처, 1976.
- 손승철, 「조선후기 한일관계사료의 소개」 『한일관계사연구』 18, 한일관계사학회, 2003.
- 손승철·김강일, 「조선후기 한일관계사료해제」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2010.
- 신로사, 「1643년 통신사행과 조정의 일본 인식에 관한 소고」 『민족문화』 41집, 민족문화추진회, 2013.
- 윤유숙, 「17세기 후반~18세기 초 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2005.
- 이 훈, 「전근대 한일교류사 자료로서의 대마도종가문서」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 정연식 외, 「『통신사등록』 해제」 『통신사등록 1』(영인본),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 서울대 도서관, 1991.
- 정장식, 「1655년 통신사행과 일본연구」 『일본학보』 44권 1호, 한국일본학회, 2000.
- 정장식, 「계미(1643년)통신사행과 일본인식」 『일본문화학보』 10호,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 정장식, 『통신사를 따라 일본 에도시대를 가다』, 고즈원, 2005.
- 泉澄一, 「대마도 종가문서의 분석 연구-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기록류(6,592점)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집, 국사편찬위원회, 1989.
- 최종일, 「조선통신사의 일광산치제 연구」, 강원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역사학보』 112집, 역사학회, 1986.
- 하우봉, 「『통신사등록』의 사료적 성격」 『한국문화』 1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 한문중,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 연구-대일관계 등록류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 허경진·박혜민, 「조선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일본 문화」 『한국어문학연구』 5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허지은, 「17세기 조선의 왜관통제책과 조일관계-계해약조(1683)의 체결과정

- 을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 15집, 한일관계사학회, 2001.
- 尹裕淑, 「近世癸亥約條の運用實態について-潛商・關出事例を中心に-」『조선학보』 164집, 조선학회, 1997.
 - 홍성덕,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醫員에 대하여」『한일관계사연구』 32집, 한일관계사학회, 2009.
 - 高橋昌彦,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 『グローバル時代の朝鮮通信使研究』, 松原孝俊 편, 花書院, 2010.
 - 箕輪吉次, 「壬戌通信使講定交渉節次と追加的内容-草梁と對馬において-」『일본학연구』 37집,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
 - 吉川弘文館編輯部 편, 『日本史必携』, 吉川弘文館, 2006.
 - 大瀧晴子, 「日光と朝鮮通信使」『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映像文化協會 편, 毎日新聞社, 1979.
 - 三宅英利 지음, 손승철 옮김,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1.
 - 田代和生, 『江戸時代朝鮮藥材調査の研究』,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9.

국역 통신사등록(Ⅱ)

國譯 鄭景株
監修 李源鈞

국역 통신사등록 제3책

신유(1681) 6월 26일 통신사등록

동래부사 남익훈(南益薰)¹⁾이 이달 16일 성첩한 장계(狀啓) 내용. 이달 17일 신시(申時)에 도부(到付)²⁾한 부산첨사 이만철(李萬徹)의 치통(馳通) 내용임.

왜인의 작은 배 1척을 영솔(領率)하여 관소(館所)에 부쳤다는 초탐장(哨探將) 정진(鄭鎭)의 치보(馳報)에 의거하여 훈도(訓導) 박유년(朴有年)³⁾과 별차(別差) 한천석(韓天錫)⁴⁾ 등에게 명하여 문정(問情)하게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비선(飛船) 1척에 두왜(頭倭) 1인, 격왜(格倭) 9명 등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관수(館首)에게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나왔으며, 에도[江戸]에서 곧바로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의 내용을 물었더니, 관수왜(館首倭)의 말이 ‘도주(島主)가 에도에 가서 관백(關白)을 알현하였더니, 관백이 귀국의 통신사(通信使)를 청하고자 즉시 도주에게 명하여 대마도(對馬島)로 돌아가게 하였기로, 도주는 이달 초2-3일 사이에 에도에서 출발할 계획이며, 통신사를 보내주기를 청하는 차왜(差倭)가 예조참판(禮曹參判)에게 보내는 서계(書契)를 가지고 먼저 에도에서 차출되어 출발하였기로, 차왜가 오래지 않아 건너온다는 연유를 먼저 통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두왜(頭倭)를 정하여 내어보냈거니와, 도주(島主)가 되돌아오는 것 또한 멀지 않으니, 문위역관(問慰譯官)이 올해 9-10월 사이에 바다를 건너야 군색한 폐단이 없을 수 있을 것이며, 통신사는 내년 3월 사이에 내려와서 4월 안으로 바다를 건너 6-7월 사이에 에도에 도착하는 일을 이미 관백 앞에서 확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차왜도 오래 머물러서는 안되니, 동 경접위관(京接慰官) 및 차비역관

1) 남익훈(南益薰, 1640-1693): 의령 남씨로 자는 훈중(熏中), 호는 파은(坡隱)이다. 현종 13년(1672)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신유(1681) 2월 밀양부사에서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계해(1683) 4월까지 재직하였으며, 경상도관찰사와 함경도관찰사에 이르렀다.

2) 도부(到付): 공문서가 해당 관청에 도착하여 공식 접수 확인을 마쳤음을 일컫는 말이다.

3) 박유년(朴有年, 1641-?): 남포(藍浦) 박씨로 자는 자구(子久), 현종 3년(1661)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4) 한천석(韓天錫, 1653-?): 청주 한씨로 자는 성초(聖初)이다. 숙종 1년(1675)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差備譯官)을 미리 정해두었다가 동 차왜가 와서 닿는 즉시 내려 보내라는 뜻을 아울러 동래 영감 전에 상세히 고하여 달라'고 운운하였다" 하였기에,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당 예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차왜가 오래지 않아 나온다고 하기로, 본부(本府)에 보관하고 있는 차왜접대등록(差倭接待騰錄)을 상고하였더니, 을미년(1655)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가 나왔을 때 본도의 도사(都事)가 접대하였는데, 이번에는 경접위관으로 접대해 달라고 운운하였는바,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경접위관을 미리 차출하여 차왜가 나오는 즉시 내려 보내 주시거나, 본도 도사가 접대하는 일로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시거나, 해조(該曹)에 명하여 속히 확정하여, 때가 되어 군색한 일이 없게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禮曹)에서 첨부한 계목(啓目).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에도(江戸)에서 직접 관수에게 보낸 두왜가 가져온 사서(私書)의 내용에, 도주가 되돌아오는 것이 멀지 않으니, 문위역관을 올해 9-10월 사이에 바다를 건너게 해 달라고 운운하였으며,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차왜가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에도에서 보냈으니 오래지 않아 건너올 것인데, 접위관을 속히 확정하여 달라고 하였음. 여러 등록을 상고하니 계미년(1643)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를 접대할 때 경접위관을 차출하여 보냈고, 을미년(1655)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차왜 때는 본도의 도사가 접대하였거니와, 무릇 차왜를 접대하는 규정은 혹은 경관(京官)으로 혹은 도사(都事)로 하여 그 주관하는 일의 경중에 따라 형편을 보아 차출하여 정하였는데, 지금 이번 차왜는 이미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사리(事理)와 체면이 또한 정중하여 경접위관을 내려 보내야 마땅할 듯하며, 문위역관은 또한 미리 차출해야 마땅하되 일이 변방의 정세와 관련되니, 아울러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康熙) 20년(1681) 6월 25일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비변사(備邊司)의 회계(回啓).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차왜를 접대하는 규정은, 혹은 경접위관으로 차출하여 보내고, 혹은 본도의 도사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여,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의 사례가 각기 다르거니와, 이제 이번에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것이 이미 새 관백의 지위 세습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로 을미년(1655)의 전례와 같으니, 본도의 도사가 접대하되, 문위역관은 미리 차출하여 대기하게 함이 마땅할 듯하니, 이대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6월

26일 좌부승지 신 송창(宋昌)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판하(判下)⁶⁾ 하여 주시기를. 이전에 별차왜가 나올 때는 비록 향접위관을 차출하여 정하더라도 경접위관과 일체로 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예단(私禮單)을 증정하여 줄 때 이제 또한 이대로 거행함이 마땅할 듯하며, 정관(正官) 이하의 각 연례(宴禮)의 예단(禮單)은 차왜가 나올 때 그가 데리고 오는 원역(員役)의 다소를 상세히 탐지하여 치계(馳啓)한 뒤에 마련한다는 뜻으로 본도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6월 29일 우승지 신 임상원(任相元)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7월 13일

경상감사 이익(李翊)⁸⁾의 서장(書狀) 내용. 동래부사의 첩정(牒呈) 내용임. “해당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차왜의 접위관을 본도의 도사로 하여 접대하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고 형편이 매우 편하고 적절하지만, 다만 그 뒤로 왜선이 올 적에 역관들로 하여금 그 차왜가 나오는 시기를 물었더니, 이미 지난달에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만약 순풍을 만나면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나올 것이지만, 차왜가 나온 뒤에 접대하는 관원은 전례에 따라 본부에 와서 머물다가, 일을 마치기 전에는 멀리 다른 곳으로 떠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번 식년(式年) 과거(科擧)의 과장(科場) 설치가 8월 초순에 시작되어 9월에 초열흘 전에 마치게 될 것이라, 바로 차왜가 머무는 시기와 상치되어, 반드시 때가 되어 낭패할 우려가 있겠기로, 사유를 갖추어 첩보(牒報)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도에서 형세를 참작하여 속히 장계로 알려 변통하여, 때가 되어 군색하여 난처한 우려가 없게 해 달리는 일로 첩

5) 송창(宋昌, 1633-1706): 진천(鎭川) 송씨로 자는 한경(漢卿)이다. 효종 8년(1657)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 도승지, 공조판서를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6) 판하(判下): 상주문(上奏文)의 초안을 임금이 결재하는 일.

7) 임상원(任相元; 1638-1697): 자는 공보(公輔), 호는 염현(恬軒), 시호는 효문(孝文), 풍천인(豊川人)이다. 현종 을사년(1665)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대사헌, 도승지, 우참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8) 이익(李翊, 1629-1690): 우봉(牛峰) 이씨로 자는 계우(季羽), 호는 농재(農齋)이다. 효종 8년(1658)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숙종 7년(1681) 2월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7월까지 재임하였고, 뒤에 형조판서와 이조판서, 경기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정(牒呈) 한다.” 하였음. 다만 과거(科擧)와 상치되어 크게 방해되는 바가 있을 뿐 아니라, 연분(年分)⁹⁾의 시기가 차례로 닳쳐와서, 도사를 접위관으로 차출하면 낭패할 우려가 있을 듯하여 감히 이렇게 치계하오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시기를.

비변사의 회계(回啓) 내용. 일찍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로 말미암아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차왜는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본도에 명하여 도사가 접대한다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¹⁰⁾하였는데, 이번 경상감사 이익의 장계를 보면, 차왜가 나오는 기간이 마침 식년(式年)과장(科場)과 연분(年分)의 복심(覆審)과 상치되어 서로 방해되어 낭패가 날 우려가 있겠다고 하였으니, 당초 도사에게 명하여 접대하게 한 것은 대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으나, 과장과 연분은 모두 도사가 관장하는 것으로 이미 겸하여 시행하기 어려워져서, 일의 형편이 서로 방해되고, 접위관을 서울에서 차출하여 보내는 데는 또한 전례가 있는지라, 해조에 명하여 속히 차출하여 내려 보내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7월 13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8월 초5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지난 7월 25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24일 해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만철(李萬徹)의 치통 내용임. 나온 왜선 5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김시정(金始靖)의 치보에 의거하여, 훈도 박유년(朴有年)과 별차 한 천석(韓天錫) 등에게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제1척은 통신사를 청하러 보낸 차왜 정관(正官) 후지 이찌마사(藤一政)와 도선주(都船主) 후지 나리쓰구(藤成次),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시봉(侍奉) 1인, 반중(伴從) 16명, 격왜(格倭) 60명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書契)와 별폭(別幅) 각 1통,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동래와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소지하였으며, 제2척은 동 차왜의 수목선(水木船)인데 격왜 20명, 제3척은 전례대로 차왜 배

9) 연분(年分): 해마다 9월 보름 이전에 각 군현의 지방 관청에서 그 해 농사의 풍작 또는 흉작의 등급을 결정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이를 점검하여 조정에 알린 다음, 의정부와 각조에서 논의하여 당해 연도의 조세를 결정하는 일.

10) 행회(行會): 조정의 지시 명령을 관청의 장이 그 부하들에게 알리고 또 그 실행 방법을 논정(論定)하기 위한 모임.

의 선미에 매단 작은 배인데 불시의 소용에 대비하기에 원래 격왜가 없으며, 제4척은 신유조 겸대세견(兼帶世遣) 제11선인데 격왜가 20명, 제5척은 동년 겸대세견 제12선으로 격왜가 20명 등이 각각 노인을 가지고 나왔고, 도금도왜 10명 등이 교대하기 위하여 나누어 타고 나왔음. 차왜의 말이 ‘가져온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하였으며, ‘통신사를 보내줄 것을 청하는 일은 일찍이 비선으로 먼저 통지하였거니와, 도주가 에도에 가서 관백을 알현하였더니, 관백이 즉시 도주에게 명하여 통신사가 오도록 청하여, 내년 7-8월 사이에 에도에 도착하는 뜻으로 정녕 분부하였기로, 도주가 즉시 저희들을 차출하여 내보냈으나, 곳곳마다 바람에 막혀 지금 비로소 나왔으며, 저희들이 볼 일을 모두 서계 가운데 있어서 다시 번거롭게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대개 통신사가 내년 3월 사이에 내려와서 4월 사이에 바다를 건너야만 기일에 맞추어 에도에 도착할 수 있겠으니, 이 뜻을 자세히 고하여 진달(進達)하되, 종전에 통신사가 에도에 들어갈 때 관백 및 여러 집정(執政)들이 전례에 따라 관광(觀光)하는 일이 있었으니, 각종의 서법(書法)을 잘 쓰는 자 및 말타고 활쏘기(騎射)를 잘하는 자와, 후궁(幃弓)을 잘 쏘는 자와 육량궁(六兩弓)을 잘 쏘는 자를 편의대로 데려오며, 마상재(馬上才)도 이전대로 최고로 선발하여 서너 사람이 각기 그 재능대로 말을 달리도록 아울러 데려와서 만장의 광채를 나게 해 주면 천만 다행이겠고, 일광산(日光山) 콘젠도우(權現堂)의 사제(賜祭)에 사용할 향촉(香燭)과 촛대 등과 전례에 따라 사용할 기구와 그릇 등은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오고, 접위관이 속히 내려와야만 서계를 전달하고 회답을 받아 에도로 돌아가 알리겠다’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답하기를 ‘통신사를 청하여 보내는 일은 일찍이 이미 상세히 알고 있으나, 무릇 통신사를 보내고 차왜를 접대하는 데는 본디 규칙(規式)이 있어서 결코 어겨서는 안되거늘, 이번 차왜의 도선주가 이미 이전의 규정에 어긋나고, 또한 그 반종이 또 격식 외로 나온 일은 매우 부당하여, 전례대로 10명 외에는 결단코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타일렀더니, 동 왜인의 말이 ‘지금과 옛날이 같지 않다.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져온 자는 모두 도선주가 있었고, 또 10명의 반종은 유독 저희들에게만 어찌 강등해서야 되겠는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 돌아가서 근래의 규정을 상고해보라’고 운운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져온 자가 과연 한두 번이 아니지만 비록 간혹 접대하는 데가감이 같지 않은 데는 모두 까닭이 없지 않거니와, 통신사를 보내도록 청하러 오는 차왜는 예나 지금이나 한가지로 전례가 뚜렷하다’고 운운하였더니, 차왜가 답하

기를 ‘저희들의 직급은 근래에 온 차왜와 조금도 차이가 없어서, 단지 근래의 사례대로 데려와서 서로 접촉할 따름이고, 음식 접대에 있어서는 16명 모두에게 하지 않아도 또한 상관할 것 없다’고 하거늘, 다시 말을 만들어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동 왜인들이 다시 답변을 하지 않고 자못 성난 기색이 있는 바, 처음 서로 만나보면서 갑자기 돌이켜 들어주기가 어려운지라, 조용히 타이르기 위하여 짐짓 과하고 나왔음. 재판차왜(裁判差倭) 다이라 나리쓰구(平成次)의 말이, ‘이제 도중(島中)에서 온 사서(私書)를 보니, 문위역관의 일행을 호송하는 차왜를 이제 장차 내보낼 것인데 폐를 끼칠까 우려된다’고 하면서, 저로 하여금 오는 8월 그믐 전에 호위하여 오는 것으로 조정하여 분부해 달라 하였는데, 왜인의 서계(書契)를 베껴 적은 문서 및 노인을 아울러 가져와서 바친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차왜를 접대하는 규정은 전후로 한결같지 아니하여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져온 차왜로서 도선주를 데리고 온 자가 또한 많았으니, 을미년(1655) 통신사를 청한 차왜는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데려온 원역은 봉진압물과 시봉 2인, 반종 12명이라 그 수가 오히려 많다고 하여 시봉 1인과 반종 2명을 줄였거늘, 이제 이번 차왜는 도선주 1인과 반종 6명을 더 데리고 나왔으며, 격왜에 있어서도 전후로 데려온 것이 원래 정해진 수가 없었으나, 을미년(1655)에는 단지 40명이었거늘 이번에는 60명이나 되도록 많아서 이 수대로 접대하기가 불가하기로, 역관에게 명하게 십분 타일러 기어코 수를 줄이라고 하였으니, 그 조정을 기다려 추가로 장계를 올려 알릴 계획이거니와, 접위관은 해조(該曹)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게 하고, 재판차왜 다이라 나리쓰구(平成次)는 문위역관이 오는 8월 그믐 전에 오면 저쪽에서 호송하여 갈 것이라 하였으니, 문위역관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기일에 맞추어 내려 보내어 기다리는 폐단이 없게 하시고, 위의 차왜가 가져온 서계의 등본 및 겸대세견선(兼帶世遣船)의 노인 2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낸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가 와주기를 요청하는 차왜가 나와서 말한 내용에, 통신사가 내년 3월 사이에 내려와서 7-8월 사이에 에도에 도착하되, 각종 서법(書法)을 잘 쓰는 자 및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사람과 마상재(馬上才)¹¹⁾ 등을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오며, 권현도오(權現堂)의 제사에 사용하는 향로와 촛대 등을 각

11) 마상재(馬上才): 조선 시대 각 영문(營門)의 마군(馬軍) 사이에 행하던 기병(騎兵) 무예(武藝). 말 등에 올라서거나, 몸을 날려 말등의 좌우로 넘나드는 등의 동작이 있다.

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오고, 접위관은 이달 그믐 이전에 호송하여 와서 기일에 맞추어 내려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동 차왜가 데려온 원역이 이전보다 수가 추가되어 다시 조정하여 장계로 알리겠다고 하였는데, 접위관 및 문위역관은 장계대로 재촉하여 내려 보내며, 통신사를 차출하여 보내는 일은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차왜가 데려온 원역 중 도선주는 비록 전례가 아니지만, 이웃나라와 교류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미 데려 왔다면 접대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 반중 16명 가운데 6명을 줄이는 일로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차왜가 자못 성내는 기색이 있다 하는바, 여러 번 다툼 이후에 도리어 수를 더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부응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합당함만 못하지만, 16명을 그대로 허락하면 너무 지나친 듯하니, 앞서 관백의 부고를 고한 차왜를 접대한 사례에 의거하여 반중 16명 가운데 14명을 접대하도록 허락함이 마땅할 듯하니, 이렇게 회이(回移)하며, 그들이 청한 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자와 마상재 등을 선발하여 보내는 일 및 콘젠도오(權現堂)의 제사에 사용하는 향로와 촛대 등을 만들어 보내는 일의 합당 여부는, 통신사가 조정한 뒤에 품의 조처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8월 초5일 동부승지 신 이유(李濡)¹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대마도주가 이미 대마도로 돌아와서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일로 차왜를 보냈다고 하는데, 관백(關白)이 새로 즉위하면 사신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례이니, 해조에 명하여 미리 사신을 선발 차출하게 하며, 나머지 시행해야 할 일은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8월 초8일 우부승지 신 유헌(兪憲)¹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의 단자.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와 도선주 후지 세이쓰구(藤盛次) 등의 원역 이하의 하선연(下船宴)과 상선연(上船宴), 왜관에 머물 때의 별연(別宴) 및 접왜관이 가져갈 예단(禮單)을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접위관과 일시에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12) 이유(李濡, 1645-1721): 전주 이씨로 자는 자우(子雨), 호는 녹천(鹿川)이다. 현종 9년(1668)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13) 유헌(兪憲, 1617-1692). 기계(杞溪) 유씨로 자는 회백(晦伯), 호는 송정(松汀)이다. 현종 6년(1665)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차왜에 대한 3차의 연회에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黃毛筆)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참덕〔眞墨〕 20홀(笏). 화석(花席) 3장. 녁장 붙인 유둔(油屯) 2부(部). [이상은 본도에서].

압물 1인과 시봉 1인에게 각각 3차례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

반중 14명에게 각각 3차례 연회에 각각: 흰 무명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도선주 1인에게 3차례 연회에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4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참덕 20자루. 화석 3장. 녁장 붙인 유둔 2부. [이상은 본도에서].

접위관이 가져가는 예단: 인삼 3근 12냥. 표범가죽 3장.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40자루. [이상 해조에서]. 참덕 40홀. 화석 5장. 녁장 붙인 유둔 5부. [이상은 본도에서]

입계하여 입계한 바대로 시행함.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차왜의 서계 등본.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봉서(奉書).

조선국(朝鮮國) 예조참판(禮曹參判) 대인(大人) 합하(閣下).

쇠도 녹는 여름철 더위에 멀리 생각건대 귀국에서는 강녕하신지, 위로 드리는 마음 참으로 많습니다. 본방(本邦)의 맑은 정치는 멀리서 상상하지 않더라도, 우리 귀대군(貴大君)께서 국가의 계통을 이어받아 선열(先烈)의 광채를 날리시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예전 사례를 따라 멀리 귀국의 사신을 수고롭게 하여 폐백을 바치고 예를 갖추어 경하하기를 바랍은, 좋은 우의를 계속하여 닦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다음 해의 7-8월 사이에 동무(東武)에 도착하도록 향해 날짜를 헤아려 때를 어기기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군(大君)은 이미 저군(諸君)¹⁴⁾이 있으니 함께 경하의 예를 더함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정관(正官) 후지 이찌마사〔藤一政〕와 도선주 후지 세이쓰구〔藤盛次〕를 차출하여 알려드립니다. 별전(別箋)의 토산품으로 부끄러우나 미미한 정성을 나타내오니 웃으시며 받아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14) 저군(諸君): 현재 군주의 뒤를 계승할 사람.

다시 생각건대 절기에 맞추어 스스로 진중하시며 아무쪼록 밝게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연보(延寶) 9년(1681) 6월 일.

별폭: 첩금병풍(貼金屏風) 1쌍(雙).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般) 1부(部). 대화진주(大和眞朱) 5근(斤). 채화경대(彩畵鏡臺) 1비(備). 채화연광(彩畵宴筐) 1구(具). 계(計). 연보 9년(1681) 신유 6월 일.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봉서.

조선국 예조참의 대인 함하.

여름철의 그늘이 장차 끝나려 하는데, 생각건대 귀국이 태평할 줄로 생각합니다. 본방도 평안하여 멀리 염려하는 생각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귀대군(貴大君)께서 큰 계통을 계승하시어 정령(政令)을 편찬하여 펼치니, 앞서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통신사가 방문하여 와서 이웃나라의 화목과 우의를 닦으면 더욱 성신(誠信)이 돈독해질 것입니다. 출발하는 기일은 일정을 헤아려 보면 오는 7-8월 사이에 동무(東武)에 도착해야 될 것인데, 바다와 육지의 먼 길에 시일이 늦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군(諸君)이 있으니 함께 경하의 예를 받드시기 바랍니다. 이에 정관 후지 이찌마사〔藤一政〕와 도선주 후지 나리쓰구〔藤成次〕를 차출하여 알립니다. 애오라지 박한 토산품으로 조금이나마 멀리 정성을 표하오니, 아무튼 살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인사하고 퍼지 못합니다. 연보 9년(1681) 신유 6월 일.

별폭: 채화문갑(彩畵文匣) 1개. 채화층갑(彩畵層匣) 1비(備).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청금화로(靑金火爐) 1개. 수정 갓끈(水晶笠緒) 1묶음(結). 정(整). 연보 9년(1681) 6월 일.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東萊) 부산(釜山) 양 영공(令公) 함하(閣下).

가을 기운이 아직 부드러운데 두 분께서는 잘 계시는지, 참으로 우러러보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귀대군(貴大君)께서 선대의 계통을 이어서 온 나라를 어루만지시니, 통신사가 오는 시기는 내년 7-8월 사이에 동무(東武)에 도착하여야 될 것인데, 미리 일행의 일정을 계산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바야흐로 저군(諸君)이 있으니 함께 모름지기 경하의 예를 바치기 바라며, 이에 정관 후지 이찌마사와 도선주 후지 나리쓰구를 보내어 고하오니, 남궁(南宮)¹⁵⁾에 고하여 전달하

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별록의 박한 물품이 소략하오나 웃으시며 받아들여주시기 바라오며, 아무튼 밝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연보 9년(1681) 6월 일.

동래영공 별폭: 채화칠촌렴경(彩畵七寸奩鏡) 2면(面). 대화진주(大和眞朱) 1근. 동화지(桐花紙) 100편(片). 계.

부산영공 별폭: 채화팔촌렴경(彩畵八寸奩鏡) 2면. 채화연갑(彩畵硯匣) 2개. 동화지 100편. 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회답 서계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承文院)에서 말을 만들어 지어내어, 원 서계가 올라온 뒤에 내려 보내되, 회례(回禮)의 예물은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도록 분부함이 어떠할지?

계목 후록: 참판의 회례;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인삼 2근.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녁장 불인 유둔 3부. 화석 5장. 참떡 30홀. [이상은 본도에서].

참의의 회례;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인삼 2근. 흰 명주 7필. 흰 모시베 7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녁장 불인 유둔 2부. 화석 5장. 참떡 30홀. [이상은 본도에서].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5필. 흰 무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녁장 불인 유둔 1부. 화석 3장. 참떡 20홀. [이상은 본도에서].

강희 20년(1681) 8월 초8일 우부승지 신 유헌(兪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8월 13일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내용. 지난 7월 23일에 나왔던 통신사를 청하는 차왜가 데려 온 원역(員役)의 수가 과다하였기로, 역관에게 명하여 충분히 타일러 기어코 수를 줄일 계획이라는 연유는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역관 등이 와서 고

15) 남궁(南宮): 예조(禮曹)의 별칭.

한 내용에, “차왜의 원역 수를 줄인다는 뜻으로 여러 날 이치에 근거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근래에 차왜가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져온 자는 모두 도선주 1인과 봉진, 시봉 각 1인, 반종은 16-7명, 격왜는 60-70명을 접대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으니, 이제 저희들이 데려온 것은 간략하게 했다 할 수 있는데, 첨지(僉知) 등이 반드시 가장 멀고 인원수가 적었던 사례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아 매양 독촉하여 핍박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이제 이번 에 고집하여 다투는 것은 접대하는 비용을 염려하는데 지나지 않으니, 나 한 사람만 서계를 전하여도 또한 꺼릴 것은 없으니, 다시는 견고하게 고집하지 말고 속히 접위관을 청해달라’고 하면서, 언짢아하는 말을 많이 하며 인원수를 줄일 생각이 없거늘, 관수왜 및 재판차왜에게 가서 만나 중간에서 주선하여 재삼 좋은 말로 ‘관백의 고부차왜(告訃差倭)의 사례대로 14명을 접대하는 일로 겨우 이미 조정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비직(卑職) 등이 또 ‘명백한 전례를 결코 흔들어 고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논란하였으나, 동 왜인들의 말이 ‘이 또한 근래의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져오는 차왜에게 마지막으로 줄인 사례인지라, 다시 수를 줄일 이치는 만무하다’고 운운하였다”고 와서 고하였음. 본부에 보관하고 있는 접왜등록(接倭謄錄)을 상고해보니, 이전에는 차왜가 나올 때 원래 도선주가 없었고 반종도 많아야 10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십 수 년 이래로 점차 증가하여 전후로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오는 차왜는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거니와, 그 중 데려온 것이 가장 많은 자 및 가장 적은 자로 말하자면, 무오년(1678) 3월에 아란다인(阿蘭多人)을 데려가는 일로 차왜 다이라 나리보꾸〔平成睦〕가 나왔을 때 도선주와 봉진압물, 시봉이 각 1인, 반종이 17명, 격왜 85명이었는데, 반종은 2명을 줄여 15명을 접대하였고, 격왜는 15명을 줄여 70명을 접대하였으며, 갑인년(1674) 10월 왜관을 옮기는 것을 허락하는 일로 회사차왜(回謝差倭) 다이라 나리끼〔平成近〕가 나왔을 때 도선주와 봉진압물과 시봉이 각 1인, 반종이 25명, 격왜가 100명이었는데, 반종은 9명을 줄여 16명을 접대하고, 격왜는 30명을 줄여 70명을 접대하였고, 도선주는 접대하였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는바, 이제 이번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는 데려온 반종이 단지 16명이고 격왜도 단지 60명이니, 이는 근년에 인원수를 제법 줄인 것이로되 을미년(1655) 통신사를 청할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과다하기로, 한결같이 을미년(1655) 사례를 따라 접대한다는 뜻으로 역관들에게 신칙하였는데, 저들로서는 근년의 사례로 시행해달라고 하면서 반종 2명만 수를 줄이는 이외에 다시는 더 줄일 의사가 없고, 심지어

어는 격왜는 더욱이 1명도 수를 줄일 계획이 없다고 하는바, 무신년(1668)에 반종 15명, 갑인년(1674)에 반종 16명, 격왜 70명 등을 접대한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으니, 저들이 고집하는 것 역시 근거한 바가 있어서, 지금 비록 힘을 다해서 다투고 따지지만 반드시 을미년(1655) 사례대로 하기는 만무한데, 반종 한 두 명이나 마 다시 수를 줄일 생각으로 역관들에게 다시 더 엄하게 신칙하였거니와, 저들이 만약 필시 근자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14명 이외에 끝까지 인원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을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여 속히 지휘함으로써 때에 맞추어 거행할 수 있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차왜가 데려온 원역의 다소를 접대하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도선주 및 반종 14명의 접대를 허락하는 일은 본부의 치계로 인하여 이미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거니와, 격왜에 있어서는 전후로 나온 인원수가 혹은 많기도 하고 혹은 적기도 하여 정해진 격식이 없었으나, 그 인원수대로 모두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 60명은 을미년(1655) 통신사를 청할 때에 비하여 참으로 과다하여 결코 그 말을 따라주는 것은 불가하니, 역관들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사례에 근거하여 방색하고 기어코 수를 줄이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8월 13일 동부승지 신 이유(李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8월 28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내용. 본부의 장계로 인한 예조의 회계(回啓) 관문에 의거하여 통신사를 요청하는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가 데려 온 격왜 60명은 그 수가 과다하여 역관 등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러 기어코 수를 줄이라고 하였더니, 역관들이 와서 고한 내용에, “격왜의 수를 줄이는 뜻으로 사례에 의거하여 타일러서서 60명 중 10명을 줄여 50명으로 조정하였다”고 하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一. 접위관 병조정랑(兵曹正郎) 윤덕준(尹德駿)¹⁶⁾의 장계 내용. 이달 23일 동래

16) 윤덕준(尹德駿, 1658-1717): 남원 윤씨로 자는 방서(邦瑞), 호는 일암(逸庵)이다. 숙종 5년(1679)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대사간, 형조판서, 한성판윤, 우참

부에 내도하였거니와, 다례(茶禮)를 행하는 일은 추가로 논의하여 기일을 정하여 치계할 계획이라는 연유의 일임.

신유(1681) 9월 초 6일

접위관 병조정랑 윤덕준과 동래부사 남익훈의 연명 장계 내용.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의 원역 등이 지난 8월 29일로 날짜를 정하였기에, 신 등이 함께 관소로 가서 전례대로 연회를 베풀었고, 동 왜인이 바친바 서계 3통과 별폭 4통을 받아 올려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차왜 후지(藤)의 말이 ‘통신사가 내년 7-8월에 에도에 도착하라는 뜻은 이미 서계 가운데 진술하였으니, 모름지기 이 뜻을 다시 조정에 진달하여, 기일에 맞추어 내려 보내어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며, 회답 서계도 마땅히 그가 가지고 곧장 에도(江戸)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재촉하여 내려 보내되, 글자와 줄의 높낮이를 십분 상세하고 신중히 하여, 오고 가며 글을 고치느라 지연되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그 말하는 바대로 진작 거행하여 기다리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임.

신유 9월 15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해야 할 절목 및 일본국왕 이하에게 증정할 예단(禮單) 등의 물자는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의 등록을 참고하여 마련하여 들이고, 예전 관백(關白)의 원당(院堂) 칭호 및 치제(致祭) 여부는 문위역관이 탐문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품지(稟旨)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一.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할 여러 일을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거행하되, 문위역관이 되돌아온 뒤에 만약 다른 요구가 있으면 품지하여 확정함이 어떠할지?

후록:

一. 사신이 출발하는 일정 및 바다를 건너는 날짜는 문위역관이 되돌아온 뒤에 관상감(觀象監)에 명하여 택일하여 거행하게 함.

一. 사신이 반전(盤纏:노자) 등의 물자는 해조에 명하여 미리 마련하여 지급함.

一.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함.

一. 사신의 장복(章服)〔부사(副使) 이상은 모두 당상관(堂上官)의 장복임.〕은 상의원(尙衣院)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함.

一. 일행 원역(員役)들의 의복과 화자(靴子:관복 신발) 등의 물자는 공조에 명하여 제용감(濟用監)에서 만들어 지급함.

一. 사신의 형명기(形名旗)와 독(纛)은 본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함.

一.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¹⁷⁾는 본도에서 정하여 보냄.

一.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印信) 1알은 주조한 관방인(關防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고, 도장집〔印家〕과 관방인집〔關家〕과 소가죽 남라개(南羅介:문서통)를 한 바리로 만드는 것도 공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함.

一. 상선(上船) 2척과 하선(下船) 2척, 소선(小船) 2척에 격군(格軍:노 젓는 군사)은 모두 본도에 명하여 미리 수리하거나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함.

一. 상사(上使)의 자제 2원(員)과 군관 6원, 노자(奴子) 2명, 부사(副使)의 자제 2원과 군관 6원, 노자 2명, 종사관(從事官)의 자제 1원, 노자 1명, 독축관(讀祝官) 1원, 왜통사(倭通事) 당상관(堂上官) 2원, 당하관(堂下官) 6원, 한통사(漢通事) 2원, 사자관(寫字官) 2원, 의원(醫員) 2원, 화원(畫員) 1원, 별파진검군관(別破陣兼軍官) 2인, 마상재(馬上才) 2인, 악공(樂工) 2인, 이마(理馬)와 숙수(熟手) 각 1인은 각 해당 관청에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하되, 차왜가 말한바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며 육량궁(六兩弓)을 잘 쏘는 자는 사신의 군관 중에서 최선으로 선발하여 데려 감.

一.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더욱 엄하게 금하여, 원역 중에서 만약 함부로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에 되돌아온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啓聞)할 것.

一.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찾아서 지급함.

一. 일행 원역은 각기 노자(奴子) 1명을 데려 감.

一. 사신 이하가 관문과 나루터를 건너갈 때 보고 검사할 문서는 을미년(1655)의

17) 취라치(吹螺赤): 군중(軍中)에서 소리를 부는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사례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지급함.

一.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전례대로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御寶)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대로 시행함.

一. 차왜가 가져온 서계 가운데 지금의 대군(大君)에게는 이미 저군(儲君)이 있다고 하였는데,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등의 일은 계미년(1643)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거행함.

一. 일본국 집정과 대마도주와 수도서인(受圖書人) 등에게 사신이 되돌아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전례라고 하니 이대로 시행함.

一. 사신이 가져가는 예단은 일본국왕 및 집정(執政) 4인, 봉행(奉行) 6인, 장로(長老) 1인 등 각 왜인에게 전례대로 차등 있게 증정하여 주는 물건은, 호조와 본도에 명하여 미리 마련하며, 수직왜(受職倭)에게는 전례대로 짐짓 9인의 수량을 마련하되, 지금은 반드시 생존한 자가 없을 것이니, 문위역관이 탐문하여 되돌아온 뒤에 품의 조처함.

一.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 말로 알릴 것.

一. 사신을 들여보낼 때 일본 집정과 도주 이하 수도서(受圖書) 왜인 등에게 본조에서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여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 때 도 전례대로 서신을 보내도록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마련하게 함.

一. 사신 일행에게 시행할 잡물은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을미년(1655)의 사례를 상고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대령하게 함.

一.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강희 20년(1681) 9월 15일 동부승지 신 이유(李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일본국왕 이하 각처에 증정하여 주는 예물을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미리 마련하여 대령하는 일을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되, 이제 이번 차왜가 가져온 서계 중에 지금의 대군에게는 이미 저군이 있다 하였는데, 일본국 왕자에게 증정할 예물을 계미년(1643)의 사례대로 마련하고, 이 외에 만약 가감할 곳이 있으면, 문위역관이 되돌아 온 뒤에 품지하여 확정함이 어떠할지?

후록:

一. 일본국왕 앞의 예단: [서계(書契)가 있음. 서계 통은 은장식에 주홍색 칠을 함].

대수자(大繻子) 10필. 대단자(大段子) 10필. 황조포(黃照布) 30필. 검은 삼베 30필.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50필. 인삼 50근. 범 가죽 15장. 표범 가죽 20장. 채화석(彩畫席) 20장. 각색 붓 50자루. 청서피(靑黍皮) 30장.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준마(駿馬) 2필, 안장 구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함]. 유매묵(油煤墨) 50홀(笏). 황밀(黃蜜) 100근. 청밀(淸蜜) 10그릇. [매 향아리마다 1말씩]. 어피(魚皮) 100장. 색지(色紙) 30권.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20연(連). [15연은 본도에서 마련. 5연은 강원도에서 마련].

一. 일본국 왕자에게 증정하는 예단. [서계가 없고 별폭(別幅)이 있음].

대단자 10필. 백릉(白綾) 20필. 흰 모시베 30필. 검은 삼베 15필. 인삼 30근. 범 가죽 10장. 표범 가죽 15장. 각색 붓 50자루. 청서피 15장.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준마 2필, 안장 구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함]. 유매묵(油煤墨) 50홀. 화연(花硯) 5면(面). 어피(魚皮) 100장. [이상은 본도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10연. [함경도에서 마련함].

一. 집정 4인에게 각각. [서계가 있음. 서계통은 흑칠에 납염(鐵染) 장식을 함].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 가죽 2장. 황모필 3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유매묵 20홀. 유둔(油屯) 3부(部). 화석(花席) 5장.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응자 1연. [강원도에서 마련함].

一. 봉행 6인에게 각각. [서계가 있음. 서계통은 흑칠에 납염 장식을 함].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 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유매묵 10홀. [본도에서 마련함]. 응자 1연. [강원도에서 마련함].

一. 대마도주에게. [서계가 있음. 서계통은 흑칠에 납염 장식을 하고, 도주 및 장로와 수도서인 등에게 보내는 서계는 모두 1통에 넣음].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범 가죽 2장. 표범 가죽 3장. 인삼 5근.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5장. [본도에서 마련함].

一. 수도서(受圖書) 3인에게 각각. [서계가 있음].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범 가죽 1장.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유둔 1부. [이상은 본도에서 마련함].

一. 장로 1인에게. [서계가 있음].

인삼 3근.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유매묵 10홀. [본도에서 마련함].

一. 수직왜 9인에게 각각. [서계가 없음].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황모필 1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2장. 유매목 5홀.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一. 곤겐[權現] 묘(廟)의 분향(焚香) 폐백.

준마 1필. [해당 관청에서 마련]. 一. 분향에 사용할 것; 백단향(白丹香) 2냥(兩). 은향합(銀香盒) 1부(部). 붉은 상건(床巾:제상용 수건)-사라(紗羅) 1필. 주홍 곡수좌(曲水座) 면지(面紙) 2장.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一. 사신의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황모필 각색 모두 100자루. 유매목 100홀.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오색지(五色紙) 50권. [본도에서 마련함]. 채화석(彩畵席) 20장. 유둔 10부. 백지 100권. [이상 전라도에서 마련함]. 석린(石鱗) 20근. [황해도에서 마련함]. 一. 승인(僧人)에게 면피(面皮) 용으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흰 무명 50필.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一. 다이유잉[大猷院] 폐백

금단(錦段) 3필. 대화촉(大花燭) 2쌍(雙). 대부용향(大芙蓉香) 30매. 채화석 10장.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자기잔(磁器盞) 잔대 구비 1죽(竹). 대접[大貼] 3죽. 보시기[甫兒] 3죽. [이상 본도에서 마련]. 석린 10근. [황해도에서 마련함]. 향전(香奠)에 사용할 것; 백단향 2냥. 은향합 1부. 붉은 상건 사라 1필. 주홍 곡수좌 면지 10장. 백랍촉(白臘燭) 3쌍. 대부용향 3쌍.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오색지 50권. 백지 100권. 유둔 10부. 채화석 20장. [이상은 본도에서 마련함]. 유매목 100홀. 석린 20근. [이상 황해도에서 마련함]. 승인에게 면피 용으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一. 사신이 각처에 줄 예단.

인삼 5근. 소은장도(小銀粧刀) 10자루. 색필(色筆) 5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청심원(淸心元) 100알.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강희 20년(1681) 9월 15일 동부승지 신 이유(李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을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급속히 마련하는 일로 각 도 및 해당 관청에 이문(移文)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후록:

一. 경상도에 복정(卜定)¹⁸⁾.

단 간장〔甘醬〕 10섬. 간장〔艮醬〕 1섬. 녹두 10말. 율무 가루 1말. 청밀 13말. 밀 가루〔眞末〕 10말. 환소주〔還燒酒〕 150병. 밀계〔蜜桂〕 1000넙. 납촉〔蠟燭〕 60자루. [매 자루마다 무게 3냥씩]. 포육〔脯肉〕 20접〔貼〕. 전복 10접. 마른 해삼 1섬. 마른 홍합 1섬. 호두 1섬. 황률〔黃栗:밤〕 2섬. 표고버섯 2말. 꽃감 40접. 잣 2섬. 인삼 8근. 백지 50권. 만화석〔滿花席〕 30장. 채화석 30장. 대유지〔大油紙〕 4권. 칠선〔漆扇〕 50자루. 유선〔油扇〕 200자루. 참기름〔眞油〕 7말. 녁장 불인 유둔〔油屯〕 20부. 누룩〔眞麴〕 40원〔圓〕. 콩 6섬. 팥〔赤豆〕 7섬. [전세〔田稅〕로 바꿈]. 범 가죽 7장. 표범가죽 3장. 군량 333섬. [전세〔田稅〕]. 편포〔片脯〕 2접. 소금 5섬. 사슴가죽 2장. 흰 사발 15죽. 흰 보시기 15죽. 흰 대접 15죽. 흰 접시 25죽. 흰 종지 15죽. 백자 대접 5죽. 백자 중발 5죽. 백자 접시 10죽. 백자 잔, 잔대 구비 8부〔部〕. 백자 종지 3죽. 백자 사발 4죽. 백자 규화잔〔葵花盞〕 잔대 구비 3부. 큰 차일〔遮日〕 1부. 작은 차일 3부. 지의〔地衣:큰돛자리〕 3부. 면석〔面席〕 3넙. 덕석〔蔦席〕 3. 단석〔單席〕 3. 화석〔花席〕 3. 문방석〔紋方席〕 1죽. 고족상〔高足床〕 3. 안식〔安息〕 3. 작은 식상〔食床〕 3. 수반〔手盤〕 구비. 도장 안장〔印鞍子〕 1, 여러 가지 구비. 교의〔交椅〕 3. 놋쇠 타구〔鍮唾口〕 3. 응자〔鷹子〕 4연. 교자〔橋子〕 3. 유기 촛대 3쌍. 유지 주머니〔油紙帛〕 4부. 작은 병풍 3. 작은 서안〔小書案〕 3. 사령〔使令〕 관대〔冠帶〕 10건〔件〕. 모둔〔毛氈〕 3. 일산〔日傘〕 3. 표주박 큰 것 중간 것 모두 24개. 평연〔平硯〕 3. 집 갖추어. 푸른 일산〔靑傘〕 3. 밥고리〔食古里〕 3. 화연〔花硯〕 5면. 우산〔雨傘〕 3. 체〔篩子〕 6. 대분토〔大分土〕 3. 요〔褥〕 3. 채칼〔菜刀〕 3. 소분토〔小分土〕 3. 용정〔龍亭〕 2. 큰 밥술〔大食鼎〕 4. 관대 가죽 상자〔冠帶皮箱〕 3. 향동자〔香童子〕 3. 중간 크기의 밥술〔中食鼎〕 5. 작은 밥술〔小食鼎〕 4. 좌철〔坐鐵〕 3. 부시〔火金〕 2, 석소〔石巢〕 갖추어. 부젓가락〔火筯〕 3쌍〔雙〕. 적쇠〔炙金〕 3쌍. 놋소라〔鍮所羅〕 3. 놋대야〔鍮大也〕 3. 놋요강〔鍮要光〕 3. 옷칠평반〔柒平盤〕 4죽. 용탕숫가락〔禿匙〕 3단〔丹〕. 유기 큰 숟가락〔鍮大匙〕 3. 놋젓가락〔鍮筯〕 3매이〔每伊〕. 놋뚜껑〔鍮盖子〕 3. 휘건〔揮巾〕 3. 수건〔手巾〕 3. 붉은 무명 팔찌〔紅綿臂赤〕 3쌍. 놋새용〔鍮沙用:작은 술〕 3. 아리쇠〔阿里金:삼발이〕 갖추어. 도롱〔塗籠:종이 바른 상자〕 4바리〔駄〕. 차보시기〔茶甫兒〕 3. 차순갈〔茶匙〕과 차탁〔茶卓〕 갖추어. 놋주전자〔鍮酒煎子〕 3. 좌면지〔座面紙:제상 위에 까는 기름종이〕 30장. 향아리〔缸〕 4틀〔座〕. 독〔瓮〕 11. 어피〔魚皮〕 80장. 오색지

18) 복정(卜定): 조선시대 정기적으로 징수하던 공물(貢物) 이외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하여금 그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던 일.

(五色紙) 100권. 백사(白沙) 향아리 10. [예단(禮單) 용의 꼴을 넣어 담기 위하여]. 장계지(狀啓紙) 1권. 장지(壯紙) 12권. 말린 지황(乾地黃) 10냥(兩). 옥리인(郁李仁:산이스라지 씨) 9냥. 마황(麻黃) 7냥. 황기(黃芪) 3근. 맥문동(麥門冬) 10냥. 천문동(天門冬) 1근. 도라지(桔梗) 2근 13냥. 적복령(赤茯苓) 10냥. 시호(柴胡) 10냥. 백출(白朮) 3근 8냥. 방풍(防風) 2근 12냥. 산약(山藥) 2근 11냥. 천남성(天南星) 4냥. 말린 모과(乾木瓜) 5냥. 세신(細辛) 5냥. 인동초(忍冬草) 2근. 백작약(白芍藥) 2근 10냥. 당귀(當歸) 1근. 백복령(白茯苓) 10냥. 천궁(川芎) 7냥. 승마(升麻) 5냥. 전호(前胡) 3냥. 향유(香薷) 2근. 강활(羌活) 5냥. 백지(白芷) 3냥. 창출(蒼朮) 3근 8냥. 황금(黃芩) 8냥. 박하(朴下) 3냥. 적작약(赤芍藥) 2근 8냥. 황백(黃柏) 10냥. 백편두(白扁豆) 4냥. 택사(澤瀉) 6냥. 대황(大黃) 8냥. 소엽(蘇葉:차조기 잎) 7냥. 상백피(桑白皮:뽕나무 뿌리) 5냥. 반하(半夏) 8냥. 애엽(艾葉:쑥잎) 5두름[冬音]. 목통(木通:으름) 10냥. 차전자(車前子:질경이 씨) 2냥. 오미자(五味子) 1근. 형개(荊芥) 4냥. 상품의 가는 도롱이[上細蓑] 3부. 상품의 언치[上鞍赤] 3부. 백적(白赤) 3부. 유삼(油衫) 3. 달치[月乙赤] 3부. 차숙사(次熟蓑) 44부. 차상품의 언치[次鞍赤] 42부. 짚도롱이[草蓑] 55부. 화자(靴子:가죽신) 정밀하게 구비하여 3부.

전라도(全羅道) 복정(卜定)

웅자(鷹子:매) 8연. 울무(薺苳) 2말. 청밀(淸蜜) 3말. 전복 10점. 말린 해삼(乾海蔘) 1섬. 말린 홍합(乾紅蛤) 1섬. 호두 1섬. 곱감(乾柿子) 30점. 백지(白紙) 90권. 화석(花席) 20장. 옷칠한 부채(漆扇) 50자루. 기름 먹인 부채(油扇) 400자루. 흰 접부채(白貼扇) 30자루. 생강(生薑) 6말. 표고버섯(蓴古) 6말. 참기름[眞油] 10말. 밀가루[眞末] 10말. 밀계(蜜桂) 1,000 닢. 초[燭] 60자루, 매 자루마다 무게 3냥. 미선(尾扇) 20자루. 넝장 불인 유둔(油屯) 10부. 여섯 장 불인 유둔 10부. 누룩[眞麴] 5원(圓). 조기[石首魚] 2,000속(束). 건어(乾魚) 40속. 도련지(搗練紙) 3권. 초주지(草注紙) 20권. 녹두(菉豆) 2섬. 대절 참먹[大節眞墨] 75정(丁). 중절 참먹[中節眞墨] 50정. 포육(脯肉) 30점. 흰 모시베 24필. 참깨[眞荳子] 2섬. 편포(片脯) 2점. 말린 노루[乾獐]¹⁹⁾ 4구(口). 참쌀 1섬. 말린 꿩(乾雉) 20마리(首). 김[海衣] 40점. 소금 4섬. 생울(生栗) 2섬. 녹두가루(菉豆末) 5말.

19) 원본에 '乾獐'이라 하였으나, 증정교린지(增定交隣志)를 비롯한 여러 문헌을 대조할 때 '獐'은 '獐'의 오키임에 분명하므로 고쳐 썼다.

범가죽〔虎皮〕 6장. 표범가죽〔豹皮〕 3장. 사슴가죽〔鹿皮〕 2장. 차일(遮日) 1부. 장막〔帳〕 1부. 오색지(五色紙) 15권.

공홍도(公洪道) 복정.

웅자(鷹子) 2연. 울무 2말. 청밀 4말. 밀가루 4말. 밀계 1,500넙. 초 80자루, [매 자루마다 무게 3냥]. 대절 참먹 75정. 중절 참먹 50정. 포육 20점. 백지 60권. 화석 20장. 참기름 10말. 넉장 불인 유둔 10부. 여섯 장 불인 유둔 10부. 누룩 40원(圓). 조기 1,500숙. 건어 40숙. 도련지 2권. 초주지 10권. 참깨 1섬. 흰모시베 30필. 편포 2점. 말린 노루 5구(口). 개자(芥子) 3말. 참쌀 2섬. 말린 꿩 20마리. 범 가죽 3장. 표범 가죽 1장. 차일 2부. 장막 3부. 행수목(行需木) 1동(同).

강원도(江原道) 복정.

청밀 10말. 밀계 1,500넙. 초 100자루, [매 자루마다 무게 3냥]. 포육 10점. 말린 해삼 1섬. 말린 홍합 1섬. 인삼 12근. 참기름 3말. 편포 2점. 말린 노루 5구. 말린 꿩 60마리. 미역〔甘藷〕 200근. 좁쌀〔粟²⁰米〕 7섬. 메밀〔木米〕 3섬. 황밀 30근. 오미자 2말. 표범가죽 1장. 배〔生梨〕 100개.

함경도(咸鏡道) 복정.

웅자 8연.

혜민서(惠民署) 전의감(典醫監) 분정.

황기 3근. 도라지 2근 13냥. 백출 3근 8냥. 방풍 2근 12냥. 산약 2근 10냥. 백작약 2근 11냥. 옥리인(郁李仁; 산이스라지 열매) 2근 10냥. 창출 3근 8냥. 적작약 2근 8냥.

황해도(黃海道) 복정.

백렴(白蘘) 5근.

강희 20년(1681) 9월 15일 동부승지 신 이유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20) 원본의 ‘粟米’는 ‘粟米’의 오자로 보인다.

각도 응자(鷹子) 분정: 이상 응자 62연 중
 경상도 19연. 강원도 15연. 전라도 8연. 공흥도 2연. 함경도 18연.
 일본국왕전 20연. 국왕자 10연. 집정 4인 4연. 봉행 6인 6연. 반전(盤纏) 15연.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응자 12연 추가 분정.
 강원도 6연. 경상도 3연. 전라도 3연.
 이상 합 응자 74연.

신유(1681) 9월 27일

접위관 병조정랑 윤덕준과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내용.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의 하선연을 이달 19일로 정하여 행하였는데, 당일 신 등이 함께 초량으로 가니 후지(藤) 차왜 이하가 또한 나와서 진상(進上) 숙배(肅拜)의 예를 행한 뒤에 그대로 관소로 가서 전례대로 잔치를 베풀고 공사(公私) 예단을 들여 주었으며, 파할 무렵에 또한 평좌(平坐)하여 술을 돌리는 예가 있기로, 좌정한 뒤에 등차(藤差)가 통역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을 보내오기를 “통신사 일행이 반드시 내년 7-8월의 기일에 맞추어 예도에 들어가야 하니, 이 뜻을 조정에 거둬 고하여 기일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없게 해 주며, 그 가운데 글씨를 잘 쓰고 육량궁(六兩弓)을 잘 쏘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또한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달라는 뜻을 조정에 알려 달라”고 하거늘, 신(臣)들이 답하기를 “통신사 일행은 조정에서는 네가 번거로이 거둬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절로 기일에 맞추어 차출하여 보낼 것이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도 또한 한결같이 전례에 있고 없는 대로 따라서 선발하여 보내는 여부를 정할 것인데, 네 말이 이러하니 이제 마땅히 다시 거둬 품신할 것이다”라고 하였음. 후지(藤) 차왜는 또 말하기를 “이전에는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하여 보내는 규정이 없어서, 간혹 사행(使行)의 원역 가운데서 이것을 잘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재능을 시험하였는데, 이번에는 편의대로 구차하게 충당하지 말고, 반드시 특별히 선발하여 보내어 조선의 광채가 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바가 어찌 일본을 위하여 하겠습니까? 통신사도 조정에서 이미 차출하였을 줄로 생각되는데, 누구로 하였습니까? 통신사의 성명을 저희들이 간절히 탐지하고자 하며, 회답 서계도 저희들이 예도로 가져가면 관백(關白)이 반드시 친히 볼 것이니, 또한 말을 잘 만들어 주기

바라며, 동 서계가 내려오면 전해주기 전에 먼저 등본 하나를 베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면 비선(飛船)으로 급히 도중(島中)에 보고하여 장로승왜(長老僧倭)에게 전하여 보여서, 회답하는 말 뜻이 장로승왜의 마음에 들어야만 오가며 글을 고치는 우려가 없겠다”고 하거늘, 신들이 답하기를 “통신사는 내년 여름 사이에 당연히 출발할 것인데, 비록 지금 미처 차출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기일에 미치지 못할 우려는 없고, 너희들이 되돌아가기 전에 혹 차출한다면 당연히 즉시 통지할 것이며, 서계도 내려온 뒤에 또한 베껴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였음. 후지〔藤〕차왜가 또 말하기를 “통신사가 들어갈 때 소지한 예단 등의 물건은 조정에서 필시 전례에 비추어 준비하여 보낼 것이거니와, 그 가운데 응련(鷹連)은 평상시에도 죽기가 쉬운데, 통신사가 들어가는 시기가 정녕 한창 더울 때라, 비록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가더라도 수량에 충당할 수 없으니, 이는 겨울 전에 미리 대마도로 보내어서, 대마도에서 특별히 사육하여 기르다가 때가 되면 가지고 가게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관백에게 아들이 있으니 또한 증정하는 물건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거늘, 신들이 답하기를 “조정에서 왜인을 접대하는 일은 한결같이 전례에 따라 하는데, 별도로 관백의 아들에 대하여는, 물어보고 과연 전례가 있다면 네 말을 기다리지 않고 마땅히 거행하겠거니와, 응련과 관련하여서는 통신사가 가져가는 수량이 극히 많은데, 어찌 미리 중간에 죽을 것을 미리 예측하여 수를 배로 하여 가져갈 수 있겠느냐? 대마도에 연례로 지급하는 때 가운데서 변통하여 수량을 채우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하였거니와, 이 두 조목은 해조에 명하여 종을 대로 품의 조처하게 하며, 후지〔藤〕차왜는 또 봉행(奉行)들이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한 통을 내어 보이거늘, 그 서계의 말을 살펴보니, 통신사가 들어갈 때 글을 잘하고 글씨를 잘 쓰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뜻인 바, 도주가 에도로 들어갈 때 봉행들이 서계를 서로 통하는 것은 비록 전례가 있으나, 이미 분수에 넘친 외람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이제 이번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바치지 아니하다가, 이미 수십 일이 지난 뒤에 이제 비로소 내어 보이는 것 또한 극히 수상하고, 또 그 서계에 언급한 말이 모두 근일에 저들이 중복하여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라, 원래부터 특별히 시행할 일이 없기로, 서계에 한 말만 베껴 적어 해조로 올려 보내고, 동 서계는 역관에게 명하여 후지〔藤〕차왜에게 되돌려주게 하였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면 접위관과 동래부사가 차왜와 문답한 이야기는 모두 전례대로 시행하는 일인데, 후지

차왜가 하는 말이 피차간에 광채를 내려는 계획에 지나지 않거니와, 그 가운데 관백의 아들에게 물건을 증정하는 일 및 각처의 예단 응자(鷹子)의 수를 배로 하여 겨울 이전에 대마도로 보내달라는 한 조목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통신사의 성명을 간절히 탐지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바, 관백의 아들에게 증정하는 잡물은 한결같이 계미년(1643)의 사례대로 이미 마련하도록 계하하여 분부하였으며, 응자(鷹子)에 있어서는 을미년(1655) 통신사 때도 더위가 한창일 때 다수가 죽게 되었기로 수량을 더하여 들여 주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 때 응자를 겨울 이전에 진작 수량을 배로 하여 들여보내는 일은, 비록 그 말대로 곱혀 따라주는 것은 불가하나, 원 수량 외에 10마리를 더 정하여 사행이 갈 때 임시로 들여보내어 죽는 일이 없이 들어가면, 그 수량 밖의 때는 연례로 증정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며, 통신사가 들어가는 것이 내년 봄에 해당하여 세 사신의 성명을 지금 미리 말하여 보내지는 못하며,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니, 아울러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비변사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차왜가 통신사의 성명을 알아서 돌아가고자 하니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통신사를 이미 차출하였지만 출발할 시기가 아직 멀어서 그 사이에 혹 고치는 일이 없지 아니하니, 짐짓 미처 차출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말하여 보내며, 응련(鷹連)을 더 보내는 일은 해조의 복계(覆啓)대로 참작하여 수량을 더하여 정하는 것이 무방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9월 30일 좌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10월 초2일

동래부사 남(南)의 장계 내용.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가 바친 봉행 등의 서계를 받아 올리지 않고 서계에 한 말만 전하여 적어서 해조로 올려보낸 연유는 즉시 치계하였고, 동 서계는 역관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되돌려주게 하였는데, 방금 바친 역관들의 수본(手本) 내용에, “전령(傳令)에 의거하여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때 봉행 등이 서신을 보낸 것은, 격식과 사례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봉행의 서신이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오기 전에 나왔더라도, 마땅히 다례하는

날 바쳐야 하거늘, 몇 달 뒤의 하선연(下船宴) 때 비로소 바치는 것 또한 수상한 일에 해당하여, 이제 받아 올릴 수가 없다고 동 봉행의 서계를 차왜에게 되돌려주었더니, 동 차왜가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도주가 관백을 알현하고 통신사가 오도록 청하라는 명을 듣고 즉시 저를 차출하여 내보냈기로, 갑자기 짐을 꾸려서 자빠질 듯 길에 올라 6월 16일 대마도에 도착하였고, 같은 달 23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나오다가 곳곳에서 바람을 만나 지체됨을 면하지 못하였거니와, 도주께서 에도(江戸)를 출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온 연유는 일찍이 이미 비선을 통하여 관중(館中)에 통지한 것은 첨지(僉知)도 일찍이 들어서 알 것이며, 다례하는 날 즉시 바치지 아니한 일은, 먼저 사신을 청하는 서계를 바치고, 다음으로 이 서계를 바치는 것이 실로 이치로나 형편으로나 당연하여 조금도 순서가 잘못된 사단이 없거늘, 단지 도주가 6월 28일 대마도로 되돌아온 까닭에 이제 이 봉행의 서신에 6월이라 써 넣은 것임에도,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뒤라고 핑계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두 첨지가 지나치게 억측한 것이다. 만약 저의 출발이 도주가 이미 대마도로 돌아온 뒤에 있었다면 어찌 감히 먼저 규정을 어기고 넘어서까지 간청하는 일이 있겠는가? 다시 고집하는 말을 하지 말고 전례대로 받아 올려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기로, 연유를 수분으로 바치는 일”이라는 수분이 있었음.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이 6월 28일에 있었으니, 이제 이번 서계는 과연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다례하는 날 바치지 아니한 것 또한 순서가 있다고 이렇게 고집하여 말하며 가져갈 생각이 없는 바, 봉행 등의 서계가 오고가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어서 한결같이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겠기로, 동 서계를 받아 올려 해조로 올려 보내오니, 회답 서계를 해조에 명하여 속히 지어 보내는 일 및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참군사(參軍事) 다이라 마사끼(平眞幸), 다이라 나리가쓰(平成勝), 다이라 나리쇼우(平成昌) 등의 서계임.

조선국(朝鮮國) 동래(東萊) 부산(釜山) 양 영공(令公) 대인(大人) 합하(閣下).

무더위가 찌는듯한데 멀리 생각건대 지내시기에 서늘하고 여유가 있으신지? 우리러 사모하는 마음 이에 깊습니다. 이제 과군(寡君)께서 사신을 보내어 내년 통신사의 내빙(來聘) 기일을 고하는 것은, 우리 대군(大君)께서 대통(大統)을 이어받음과 겸하여 저사(儲嗣)를 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즉 성대한 사신이 바다를 건너는 날 종사(從事) 관료 중에 귀국에 바라는 바는 4원(員)인데, 그 중 첫째는 글에 능하고, 둘째는 글씨에 능하며, 그 셋째는 활쏘기에 능하며, 그 넷째

는 말타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중 글에 능한 사람은 반드시 박통(博通)하여 식견이 많으며, 그 중 말타기에 능한 사람은 모름지기 단번에 올라타서 고삐와 재갈을 사용하지 않고 치달리며 귀신처럼 날아오르는 자라야 합니다. 이제 대군께서는 영무(英武)²¹⁾와 열문(烈文)²²⁾으로 유신(維新)을 일컫고 있는데, 예전에 귀국에서 말을 달리고 활을 쏘는 인재를 얻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과군(寡君)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여 두 분께 서찰을 받들어 올려서 예조에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성대한 일일 뿐만이 아니오니, 늦추지 마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무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숙배하고 펴지 못합니다. 연보 9년(1681) 신유 6월 일. 대마주부(對馬州府) 참군사(參軍事) 다이라 마사끼[平眞幸]. 다이라 나리가쓰[平成勝]. 다이라 나리쇼우[平成昌] 등 서계(書契).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면 봉행 등의 회답 서계를 속히 지어 보내 달라 하였거니와, 동 서계를 차왜가 다례할 때 전하지 아니하였다가 하선연 때 비로소 바쳤다고 하는바, 몇 달 뒤에 비로소 서계를 바친 것은 그 연유를 알 수 없으나, 이미 올려 보냈으니 회답이 없어서는 불가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급히 지어내어 전례대로 특별히 금군을 정하여 내려 보냄이 마땅하니, 이대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10월 초2일 동부승지 신 이유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유(1681) 10월 초5일

예조 단자.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일본국 통신사가 갈 때 보낼 응자(鷹子)의 수를 추가하여 정하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는데, 동 응자는 경상도에 3연, 강원도에 6연, 전라도에 3연으로 참작하여 분정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동래부로 수송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함.

21) 영무(英武): 영민하고 용맹스러움.

22) 열문(烈文): 뛰어난 공도와 덕행.

신유(1681) 10월 초8일

접위관 윤덕준과 동래부사 남익훈의 연명 장계 내용. 지난 9월 19일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에게 하선연을 베풀 때 차왜의 말이, ‘회답 서계가 내려오면 먼저 한 본을 베껴서 대마도로 들여보내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기로, 전일의 장계 가운데 이 뜻을 갖추어 진술하였는데, 동 서계를 지난달 29일 역관이 가지고 내려왔거늘, 한 본을 옮겨 적어 역관들에게 시켜서 후지(藤) 차왜에게 전하게 하였더니, 역관들이 돌아와 고한 내용에, “서계의 등본을 가지고 후지 차왜에게 보였더니, 동 차왜 등이 함께 모여서 자세히 본 뒤에 그대로 비직 등에게 말하기를 ‘서계에 한 말이 장로승왜(長老僧倭)의 뜻에 맞을지 여부는 저희들이 짐짓 미리 헤아리지 못하거니와, 다만 이제 이 서계 가운데 저사(儲嗣)의 저(儲)자와 령사(令嗣)의 령(令)자는 귀대군(貴大君)의 귀(貴)자와 같이 극항(極行; 맨 윗쪽)에 써야 마땅하거늘, 부항(副行; 다음 줄)에 조금 낮게 쓴 것은 격식과 사례에 어긋나니, 이는 장로의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저희들도 명확하게 그것을 고쳐야 하는 줄 알고 있으니, 이 뜻을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 급히 고쳐 적어 달라’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답하기를 ‘예(禮)에 자식을 아버지와 같은 향렬로 하는 글은 없으니, 우리나라의 예만 그럴 뿐 아니라, 천하 고금에 바뀌지 않는 예이다’라고 하였더니, 차왜가 말하기를 ‘판사(判事)의 말은 참으로 그렇다. 옛날의 예는 또한 그러하나 우리나라의 규정과 사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저희들이 가지고 온 서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운운하며, 여러 날 타일러도 굳게 고집하여 돌이키지 않는 바, 저사(儲嗣)와 령사(令嗣) 글자 줄의 높낮이는 본디 우리나라의 사리와 체면에는 손익이 없으나, 차왜의 말이 이러하기로 동 회답 서계를 부득이 되돌려 올려 보내오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고쳐 적어 급히 내려 보낼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면 차왜 등이 회답서계의 글자 줄의 높낮이가 규정과 사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 날 타일러도 굳게 고집하여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여, 동 서계를 되돌려 올려보냈는바, 장계대로 고쳐 적어 내려 보내도 무방하니, 승문원에 명하여 속히 고쳐 적어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가져가도록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10월 초8일 동부승지 신 이유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유(1681) 10월²³⁾ 12일

비변사에서 계달(啓達)하기를, “접위관 윤덕준과 동래부사 남익훈의 연명 장계에, 회답 서계의 글자 줄의 높낮이를 차왜가 말한 바대로 고쳐 적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에서 이미 복계하여 윤하(允下) 하였는데, 저사(儲嗣)의 저(儲)자와 령사(令嗣)의 령(令)자를 귀대군(貴大君)의 귀(貴)자보다 조금 낮게 적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나, 차왜가 반드시 극항(極行; 글줄의 맨 처음)에 함께 적고자 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기가 막심한데, 우리 쪽에서 그의 고쳐 적어달라는 청을 구차하게 따르는 것은 일의 체면에 있어서 실로 적절치 못하고, 또한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서계를 되돌려 내려 보내어 접위관과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다시 ‘일본에서는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구분이 비록 뒤섞여서 분별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분과 지위 등급을 극도로 엄격하게 하여 터럭 하나라도 문란함을 용납하지 못하니, 우리나라의 서계에는 마땅히 우리나라의 규정과 사례를 따라야 마땅하지, 결코 그 말을 따라 변경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치에 근거하여 굳게 틀어막는 것이 합당하니, 이렇게 해조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신유(1681) 10월 15일

예조에서 계달하기를, “지난번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에, 차왜의 말이 ‘일광산(日光山) 콘젠도우(權現堂)에 사제(賜祭)할 때 전례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를 각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전례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모양의 물건인지 모르는지라, 본부로 하여금 왜인에게 상세히 탐지하게 하였는데, 이어서 올라온 동래부사의 보고 장계를 보니, ‘즉시 역관에게 명하여 차왜 등에게 탐지하게 하였더니, 왜인의 말이 「이른바 정밀하게 제조한다고 운운한 것은 각종 잡물을 정밀하게 준비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등롱(燈籠) 등의 물건은 더욱이 긴요하니 정밀하게 준비하여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소장한 등롱을 꺼내어 보여주는데, 그 등본을 가져다 보니 을미년(1655) 통신사가 가져간 대마도주에게 보낸 예조의 서계 가운데 과연

23) 원본에 ‘十月’ 두 글자가 누락되었음.

등롱 등의 물건을 사용하여 다이유잉〔大猷院〕에 제를 올린다는 글이 있다’고 운운 하였습니다. 신의 예조에서 예조에 보관하고 있는 등롱을 가져다 살펴보니, 갑오년(1654)에 왜인의 구청으로 인하여 과연 등롱을 만들어 지급한 일이 있는데, 들어간 구리와 납이 많게는 6,000근이며, 구리는 본부에 올린 품질 검사용의 견본 구리쇠를 가져다 사용하고, 납은 왜인이 보내온 것을 사용하였으며, 체제의 높이와 너비와 물상(物像)을 조각하여 새기는 것은, 에도〔江戸〕에서 보내온 견본에 의거하여 그대로 만들어 보냈는데, 그 공사가 매우 넓고 크기에 해를 넘겨 경영하여 겨우 주조해서 완성하였으니, 이번에는 통신사의 행차가 단지 넉 달 밖에 남지 않아서 일의 형편이 매우 급박하여 결코 조성할 길이 없고, 또 일이 멀리 오래 전에 있었던지라 그 때의 기술자가 지금은 이미 죽고 역관들 또한 기억하여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반드시 일본의 견본을 본 뒤에라야 주조하여 만들 수가 있는데, 오가는 사이에 걸쭉하면 몇 달을 지내야 하니,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는 실로 부쳐 보내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본부 및 접위관에게 분부하여 차왜에게 타이르게 하고, 왜인이 끝내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전례대로 납은 왜관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양 대로 그 사용될 양을 공급하게 하고, 견본은 일본에 통지하여 그곳에서 내어보내게 하되, 이미 통신사의 행차에 대지 못한다면, 형편상 마땅히 뒤에 만들어 보낸다는 뜻으로 역관들에게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힘껏 다투게 하고, 한편으로 본부와 도신(道臣)이 상의하여 물력(物力)을 마련하여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동래부사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셨습니다. [본도와 접위관, 동래 등으로].

신유(1681) 10월 24일

예조 단자. “일본 통신사 때의 촛대와 향로를 일체로 만들어 보내는 일은 이미 확정하였는데, 콘젠도우〔權琨堂〕 이하의 세 곳에 각각 큰 촛대 1쌍과 향로 1틀 등의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보내는 일로 분부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라고 계달하여, 계달대로 시행함.

一. 접위관 윤덕준과 동래부사 남익훈의 연명 장계 내용. 방금 바친 역관들의 수본 내용에, “사신을 청하는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의 말이, ‘제가 신병(身病)

이 있고 또 날씨가 추워서 연례(宴禮)에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별연(別宴)을 베푸는 것은 없애고 배상(排床:잔치상 음식)을 들여 주기를 원한다'고 운운하였다고 수본하였기로, 그 말한 바대로 이달 15일의 잔치 물자의 배상 및 공사(公私)예단을 수량대로 대조하여 들여 주었다는 연유의 일임.

一. 강원감사 정시성(鄭時成)²⁴⁾의 장계 내용. 방금 예조의 관문 내의 사언을 보니, '통신사가 가져 갈 잡물을 한결같이 이전의 등록대로 마련하여 계하하였으니, 이렇게 복정(卜定)한 수량을 각 지방에 분정하여 고쳐 분부하고 즉시 동래부로 수송하여 들이라'고 운운하였는바, 본도에서는 관문이 도착한 즉시 동 잡물을 도내의 각 지방관에다 그 고을의 쇠잔하고 융성한 정도를 참작하여 이미 분정하였거니와, 금년은 평상시와 다르거늘 많은 종류의 물건 값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창생(蒼生;민중)들이 생업을 잃고 적자(赤子;백성)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시기에 진상(進上)까지도 모두 값을 주고 구하는데, 이제 이번 과외(科外)의 부역을 민간에 강제로 분정하는 것은 참으로 적은 우려가 아닙니다. 인삼에 있어서는 비록 토산물이라고는 하더라도, 산 허리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화전(火田)을 일구도록 허락한 뒤로 이전에 인삼이 생산되던 곳도 모조리 별거벗었기로, 산골의 백성으로 인삼 채취를 업으로 삼는 자도 종일토록 한 뿌리를 얻지 못하오며, 간혹 여러 날이 되도록 얻지 못하여 몇 달 동안 모아서 위에서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영서(嶺西;강원도 대관령 서쪽 지방)의 인삼 1냥 값이 간혹 상목(上木;상품의 무명) 6-7필에 이르거나 혹은 8-9필에 이르며, 평해(平海)와 울진(蔚津) 등의 지방관에서는 1냥의 인삼 값이 정조(正租) 12섬이라도 오히려 구하지 못하여 값을 얻어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복정한 인삼은 12근이나 되도록 많아서, 연례로 내국(內局:내의원)의 인삼을 봉진(封進)한 뒤에 민간에는 다시 남은 인삼이 없으니, 비록 날마다 매를 치면서 구할지라도 인삼을 얻을 길이 만무한 바, 이는 곧 도내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형편이 그러한지라 참으로 목이 마르도록 걱정스럽습니다. 일찍이 기해년(1659)에 양양(襄陽)과 간성(杆城)이 재해를 너무 참혹하게 입었다고 하여, 내국에서 어용(御用) 인삼만 추등(秋等:하반기)을 전부 감하고 춘등(春等:상반기)을 반으로 감하였으며, 을사년(1665)에 강릉, 양양, 간성 등 세

24) 정시성(鄭時成, 1608-?): 영일(迎日) 정씨로 자는 집경(集慶)이다. 인조 17년(1639)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숙종 7년(1681) 5월에 강원도관찰사로 임명되었다.

지방관의 3등 인삼 18근 2냥 가운데 절반인 9근 1냥은 호조에서 마련하여 내국으로 보냈으며, 절반은 매 근에 공목(貢木) 30필 씩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재해를 입은 곳은 기해년(1659)이나 을사년(1665)의 강릉·양양·간성에 비하여 또한 심함이 있을 뿐 아니라, 인삼 값이 오르는 것이 날마다 더하고 달마다 층이 나는 것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공물로 올리는 약과 관계된 것은 감히 줄여 달라고 청하지 못합니다마는,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인삼은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특별히 감면하여, 죽음에 가까이 닦친 백성들의 목숨이 조정에서 진휼(軫恤:불쌍이 여겨 구휼함.)하는 은택을 입게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강원감사 정시성의 장계를 보면, 인삼을 특별히 감면해 달라고 하였거니와, 신의 예조에서는 단지 통신사를 보낼 때 각종의 물건을 등록에 의거하여 분정하였고, 물건 가격과 인삼을 감면하는 등의 일은 본조에서 변통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선혜청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10월 24일 우부승지 신 이동명(李東溟)²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유(1681) 10월 27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19일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비선에 응사왜(鷹師倭) 1인과 금도왜(禁徒倭) 1인, 격왜 9명 등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통신사의 별폭 응자(鷹子)는 연례 송사(送使)의 별폭과는 다름이 있어서 준비하여 가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응자라는 것이 병으로 죽는 것이 우려되어 멀리 가져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운 여름철에는 더욱이 나다니기 어려운 것이기에, 종전의 통신사 때도 미리 먼저 들여보낸 것은 실로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며, 원래 수량 외에 배로 수량을 더한 것 또한 중도에 죽으면 융통하여 수량을 채우자는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내년 정월 안에 이전대로 수량을 배로 하여 들여 주어야 직접 데려 가서 곳곳에 남겨 조용히 기르다가, 앞서 오사카〔大坂〕

25) 이동명(李東溟, 1624-1692): 덕수(德水) 이씨로 자는 백종(白宗)이며 호는 학정(鶴汀)이다. 효종 3년(1652)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참의, 서천군수, 청송부사를 역임하였다.

성 등지에서 통신사의 행차를 기다릴 계획이거니와, 동 별폭의 응련(鷹連)은 전례대로 별도의 도장을 찍어 그 생사를 징험하되, 만약 모두 사고가 없으면 별폭의 수량을 채운 이외로는 그 나머지 수량을 연례로 지급하는 것 중에 미처 받지 못한 수량에 옮겨 충당하는 것이 실로 편하고 좋으며, 만약 죽게 되어 모자라게 되면 수량을 충당할 길이 없어서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니, 이 뜻을 자세히 고하여 기일에 맞추어 수량을 배로 하여 들여 주어서 조용히 데려 가겠다'고 운운하였음. 통신사가 들어갈 때 예단으로 지급하는 응련을 이전보다 수량을 더하여 들여 보내는 일은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는데, 예조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에, '원래 수량 외에 10마리를 더 정하여 통신사 행차가 출발할 때 들여보내는 일로 관문을 보내 왔지만, 통신사가 들어가는 것이 정녕 더위가 한창인 계절이라 그 때가 되어 들여 보내면 반드시 죽게 될 우려가 있고, 이제 이번 응사왜가 말하는 바가 또 이러하니, 미리 분정하여 초봄에 맞추어 대마도로 보내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해조에 명하여 다시 참작하여 품의 조처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가 들어갈 때가 정녕 더위가 한창인 계절인지라 응련을 그 때가 되어 들여보내면 반드시 죽게 될 우려가 있고, 이제 이번 응사왜가 말하는 바가 또 이러하니 미리 분정하여 초봄에 맞추어 대마도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응련의 원래 수량 55마리에서 추가한 수량이 19마리나 되도록 많으니, 급해서 그 말을 따라 또 그 수량을 배로 하는 것은 불가하거니와, 더위가 한창일 때 죽게 되는 우려는 참으로 우려되니, 초봄에 들여보낸다는 뜻으로 각도 및 동래부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10월 27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예조에서 계달하기를, “여러 등록을 상고하니, 을미년(1655) 통신사 때 왜인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콘젠도우[權現堂]와 다이유잉[大猷院] 두 곳에 악기(樂器) 10종을 만들어 보낸 일이 있었는데, 동래부사의 보고 장계 내용에 차왜 등이 말하기를 ‘악기 등의 물건은 정밀하게 제조하여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운운하였으며, 이미 전례가 있었다면 틀어막기는 어려운 형편이라, 을미년(1655)에 보낸 수량에서 가감이 있어서는 불가하여, 콘젠도우 이하 세 곳의 악기 10종 각 1건씩을 만들어 보내기 위하여 별단(別單)을 적어 들었으니, 전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郎廳)에 명하여 장악원(掌樂院) 관원과 함께 입회하여 한결같이 『악학궤범(樂學

軌範』의 척도대로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보냄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유허한다” 하셨음. [호조(戶曹)와 공조(工曹)로]

一. 예조의 단자. 을미년(1655) 악기 10종을 만들어 보낸 수량.

금(琴:거문고), 슬(瑟:큰거문고), 축(杼), 어(敵), 훈(塤), 지(箴), 약(簫:피리), 적(簃), 관(管), 소(簫:통소). 계달드림[啓].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도부한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 내용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통신사가 가져 갈 잡물 및 예단의 잡물을 관문에 부친 수량대로 각 지방관에 분정하였거니와, 물건 종류 가운데 ‘장계지(狀啓紙) 12권’이라 하였거늘, 본도에 보관한 을미년(1655) 등록을 살펴보았더니, ‘장계지 1권, 장지(壯紙) 12권’이라 하였으나 이번에는 장지는 분정하지 않았는바, 장계지 12권이라 한 것은 장지인듯하고, 관문 내용에는 비록 장계지를 적지 않았으나 통신사의 행차는 다른 행차와 달리 장계를 쓰는 일이 없어서는 불가하므로, 장계지 1권을 이전의 등록대로 마련하였으며, 장지도 12권을 전례에 의거하여 분정하였음. 을미년(1655) 등록에 있는 휘장[帳] 3건 가운데 지의(地衣) 2부(浮), 국서통(國書筒) 1부(部), 유지(油紙) 4권 17장, 매조룡[鷹籠]과 화석(花席) 30장, 유기 큰 촛대[鑰大燭臺] 1쌍, 망소자(網疎煮) 2, 유자(鑰煮) 1, 흰 술통 항아리[白樽缸] 2개 등은 배겨 적어 오지 않았는데, 이런 물건은 비록 분정하지 않더라도 저쪽에 도착하여 사용할 때 특별히 구차한 일이 없을지? 속히 회이(回移)하여 거행하도록 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당상(堂上)이 수결(手決)한 내용. 장계지 1권과 장지 12권이라 한 것은 본도의 등록이 참으로 옳으니, 이렇게 마련함이 적절하며, 휘장과 지의 등 9종은 본조의 등록에는 원래 기록된 곳이 없는데, 이는 필시 본도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보낸 것인지라, 본도의 등록에 이미 실려 있다면 전례대로 갖추어 보내며, 큰 촛대는 해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는 일로 이미 입계하여 확정하였으니, 살펴 보고 시행할 것. [통신사 및 경상감사에게].

신유(1681) 11월 초2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를 보낼 때 각도에 분정한 잡물을 대조하

여 받아들일 즈음에 주관하는 관원이 없어서는 안되는데, 전례대로 특별히 차사원을 정하여 모든 일을 점점 신칙하고 정돈하여 대기함으로써 미진한 폐단이 없게 할 일.

신유(1681) 11월 초7일

지난 10월 23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을 때 영의정 김수항(金壽恒)²⁶⁾이 계달하기를, “통신사의 출발 기일이 마땅히 내년 3-4월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여행 도중에 사용될 물건 종류가 매우 많아서 예조에서 한결같이 전례대로 이미 지방에 분정하였다고 하는데, 방금 지방의 형세는 이전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삼은 전례대로 강원도에 분정하였지만, 본도는 흉년의 흉작이 가장 심하여 어공(御供)의 인삼도 재감(裁減)해 달라고 청하였으니 또 다른 잡역의 인삼을 분정하는 것은 불가하여, 오로지 서북 두 도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응련(鷹連) 또한 양남(兩南; 영남과 호남)에 분정하였으나 생산되는 곳이 아니어서 구하기가 필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각종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그 원래 수량에서 다시 더 재량하여 추이(推移)하여 다시 분정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한 일로 명이 내렸고, “사신의 반전(盤纏)으로 들어갈 인삼은 이미 선혜청에서 평안도에 복정하였고, 예단 등으로 증정하는 응자(鷹子)는 함경도에 25연(連), 평안도에 23연, 황해도에 20연, 강원도에 7연으로 고쳐 분정하여, 오는 12월 그믐 내로 동래부로 보내라는 일로 각도에 분부하여, 응자를 데려 가는 자가 먼 길에 매를 데려가느라 양식을 싸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경유하는 각 지방관에서 전례대로 음식을 접대하고 매에게 먹일 것도 또한 찾아 지급하라는 일로 아울러 알림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신유(1681) 11월 초9일

26) 김수항(金壽恒, 1629-1689): 자는 구지(久之), 호는 문곡(文谷), 안동인으로 좌의정 김상헌의 손자이다. 인조 24년(1646) 반시(泮試)와 진사시(進士試)를 거쳐 효종 2년(1651)에 알성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명사를 함부로 죽였다는 죄목으로 사사되었다.

예조에서 상고할 일.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통신사가 갈 때 예단의 응자(鷹子)를 내년 초봄에 맞추어 대마도로 들여보내는 일로 계하하였기로, 오는 12월 그믐 안으로 동래부로 보내는 일로 방금 이미 확정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다시 생각하니 그 사이 날짜가 촉박할 뿐 아니라, 이렇게 추운 겨울에 먼 길을 다니는 동안 얼어서 죽는 것이 우려되니, 동 응자를 내년 정월 20일 전에 이전에 분정한 수량대로 동래부로 수송하되, 도착한 일시를 이문(移文)할 일.

신유(1681) 11월 초10일

예조에서 계달하기를, “일본에 보내는 악기(樂記)를 호조와 공조에 명하여 낭청(郎廳)이 함께 만들어 보내라는 일로 이미 계하하였는데, 방금 접한 호조와 공조 낭청의 보고에는, 을미년(1655) 일본에 보낸 악기를 제작할 때 악기소(樂器所)의 칭호 인신(印信) 1개를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전례대로 악기소의 칭호 인신을 본조에서 보내어 거행하게 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통신사가 갈 때 예단 등에 사용할 응련을 대신의 계달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곳으로 고쳐 분정하는 일로 확정하였기로, 함경도 25연, 평안도 22연, 황해도 20연, 강원도 7연으로 고쳐 분정하여, 내년 정월 20일 전에 동래부로 수송하는 일을 이미 각도에 분부하였으니, 이것을 차사원(差使員) 및 동래부에 아울러 알려져 시행하되 도부한 일시를 이문할 일. [경상도로]

신유(1681) 11월 15일

접위관 윤덕준(尹德駿)과 동래부사 남익훈이 10월 30일 성첩한 장계 내용임.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에게 줄 회답 서계를 이달 17일 금군(禁軍)이 가지고 왔거늘, 동 차왜에게 ‘저(儲)’자와 ‘령(令)’자를 극행(極行: 줄의 가장 위)에 올려 쓰는 것이 부당하여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역관들에게 시켜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차왜 등이 처음에는 마치 어려워하는 듯하다가 끝내 굳이 고집하지

않고 장차 순순히 받아들일 기색이 있기로, 동 서계를 이달 18일 폐단없이 들여 주었거니와, 상선연의 날짜를 이달 28일로 정하였기에 이날 신 등이 함께 관소로 가서 폐단없이 잔치를 베풀었고, 공사의 예단을 아울러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음. 이전에 도착한 예조의 계하 관문에 의거하여 등룡(燈籠) 하나를 역관들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방색하라 하였더니, 역관들의 수본 내용에,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 및 관수왜 등의 말이, ‘이제 이번 등룡과 향로, 촛대, 화병(花瓶) 등의 물건은 서로 증명하는 다른 예단에 비할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조문하는 도구로서 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 콘젠도우(權現堂)와 다이유잉(大猷院) 등의 장소에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으니 이제 가감해서는 안되며, 위의 물건들은 원래 귀국에서 평상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종전에 주조하여 만들었던 기술자가 이제 이미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 전례에 따라 보내는 견본(樣子)으로 주조하여 만들면 전후의 기술자가 본디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작업이 느리거나 빠른 것은 오직 기술자의 다소와 공사 감독의 부지런하고 태만함에 달려 있는데, 기술자를 정하여 기한을 정해 주조한다면 필시 기일에 미치지 못할 우려는 없을 것이니, 미리 기술자를 모으고 물자를 준비해 두었다가 견본이 나오는 즉시 일을 시작하여 이전대로 통신사가 출발하기 이전에 들여보내도록 해 달라’고 거듭 거듭 말하였으며, 견본은 이미 예도에서 내어보냈다고 하니 가까운 시일 내로 나올 것이며, 납〔鐵鐵〕도 전례대로 들어갈 양을 배당하여 두었다고 하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을 내었음. 당일 연례를 마칠 무렵에 차왜 등이 또 수본 내용의 사연을 누누이 간절하게 신(臣) 등에게 말하거늘, 신 등이 물자와 인력이 매우 크게 들어가고 또한 기한이 임박하여 실로 기일에 맞추어 제조하여 보내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답하였거니와, 이제 이번 왜인이 청하는 등룡 등의 물건은 이미 제조하여 보낸 전례가 있고, 납 등의 물자는 저쪽에서 마땅히 들어가는 분량대로 드리겠다고 하며, 견본도 오래지 않아 나올 것이라고 하는바, 기일에 맞추어 제조하는 여부는 오직 견본이 나오는 것이 늦은가 빠른가에 달려 있으니, 기술자와 물자와 인력을 먼저 넉넉하게 준비하였다가, 견본이 나오면 즉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면 통신사를 청하는 차왜가 가져갈 회답 서계를 폐단 없이 들여 주었다고 하며, 왜인들의 말이 향로와 촛대, 화병 등의 물건을 일찍이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으니 이제 가감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등룡도 또한 제조하여 보내는 사례가 있고, 납

철 등의 물자는 저쪽에서 들어가는 분량을 들여주겠다고 하고, 견본도 오래지 않아 마땅히 나올 것이니, 기술자와 물자와 인력을 미리 넉넉하게 준비하였다가 견본이 나오는 즉시 일을 시작함이 어떠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바, 향로 좇대 등은 해조에서 제조하여 보내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거니와, 화병은 을미년(1655) 통신사 때는 비록 만든 일이 없었지만, 계미년(1643) 통신사 때는 이미 만들어 준 사례가 있어서 방색하는 것이 부당할 듯하며, 등룡을 주조하여 만드는데 들어가는 납 등의 물건은 저쪽에서 마땅히 들여주겠다고 하고, 견본 또한 보내주겠다고 하여, 기일에 맞추어 주조하여 만들 수가 있어서, 또한 굳이 방색하기가 어려우니, 기술자와 물자와 인력을 마련하는 등의 일은 장계대로 시행함이 마땅할 듯한데,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11월 초8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비변사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통신사가 들어갈 때 화병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이미 계미년(1643)의 전례가 있고, 등룡도 들어갈 납철을 저쪽에서 장차 스스로 들여 주겠다고 하고 견본 또한 내보낸다면, 아울러 그 말대로 부응하도록 허락함이 마땅할 듯하니, 이대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11월 11일 좌승지 신 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판하(判下)하시기를. 등룡을 주조하여 만들 때 감동역관(監董譯官) 등을 차출하여 보내는 사례가 있으니 역관 1인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택하여 보내게 하며, 화병도 전례대로 동래부에 명하여 주조하여 만드는 일을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11월 15일 동부승지 신 윤(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접위관 윤덕준의 장계 내용임.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는 이미 상선연(上船宴)을 행한 뒤에 짐을 꾸려 출발하였는데, 방금 접한 역관들의 수본 내용에, “도선주는 이번 초6일에 먼저 배를 탔으며, 정관왜(正官倭)는 초7일에 또한 배를 탈 계획이라”고 수본하였는바, 바람을 기다려 돌아들어가는 일은 본부에서 마땅히 치제 하겠고, 신은 다시 머물러 대기할 일이 없기로, 이제 방금 갈 길로 출발하였으며, 전후 세 차례로 보내온 예물 단자는 해조로 감봉하여 올려보내오며, 물건은 본부로 수송하여 추후에 올려 보내도록 한 일임.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내용. 해당 통신사를 보내주기를 청하는 차왜 정관 후지

이찌마사(藤一政)와 시봉 1인, 반종과 격왜가 이번 11월 초9일 발선하여 돌아들어 왔다는 일임.

신유(1681) 11월 16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의 통신사가 가져 갈 잡물 및 예단 잡물을 을미년(1655)의 등록과 비교하니, 약재는 조금도 가감이 없고, 잡물은 혹 서로 부합하는 것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간혹 가감된 물종이 있어서, 이전의 등록과 서로 대조하였더니, 을미년(1655) 4월분의 내용에 다이유잉(大猷院) 치제(致祭) 때의 제물(祭物) 예단과 다이콘겐(大權現) 예단 잡물을 추가로 정하였는바, 생각건대 필시 이 수량이 그 사이에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것이기로, 한결 같이 초록하여 온 수량대로 분정하였으며, 짐을 싸는 중에 작은 궤짝은 비록 귀조(貴曹)의 등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을미년(1655)에는 3부를 마련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본국 왕자에게 보내는 예단에 ‘화연(花硯) 5면(面)’이라 하였는바, 이는 이전의 등록에 없었던 것으로, 동 화연은 마땅히 궤짝에 넣어야 하겠기로, 만약 을미년(1655)의 등록 수대로 분정하였다가 앞으로 낭패가 날 우려가 있어서 4부를 분정하였으며, 오색지(五色紙)도 을미년(1655) 등록에는 대렴(大簾:큰 발로 뜯 종이)이 130권, 소렴(小簾:작은 발로 뜯 종이)이 75권이라 하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대렴 소렴으로 구별하는 말이 없으나, 색지(色紙)는 보통 방법에 따라 떠내는 다른 종지와는 달리 물자를 기일에 앞서 마련해야만 떠낼 수 있기로, 한결같이 초록하여 온 수량대로 분정하였는데, 원래 수량 내에 몇 권을 대렴으로 떠내고, 몇 권을 소렴으로 떠낼지 상고하여 회이(回移)하여 주시며, 일본국왕 앞에 증정할 물종 가운데 ‘색지 30권’이라 하였는데, 이전의 등록을 상고하면 오색지 외에 별도로 색지를 분정한 일은 없었는바, 이른바 색지라고 한 것이 아마도 오색지로 의심되며, 다른 곳에 증정하는 물종 가운데는 모두 오색지라 일컫고는 유독 국왕에게 증정하는 물종 아래에는 단지 색지라고만 일컬은 것은 그 까닭을 모르겠으나, 본도에서 억측하여 오색지와 뒤섞어서 일컫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결같이 관문 내용대로 오색지 외에 색지(色紙)라고 일컬어 분정하였거니와, 분정한 각 고을에서는 생각건대 필시 이것을 의아하게 여겨 분분하게 따져 보고할 것이기로, 상고하여 회이하여 분부하여 주시며, 응자(鷹子)도 이전의 등록을 상고하면, 함경·전라

· 강원 등의 도에는 반으로 참작하여 분정하였는데, 이번에 본도에 분정한 것은 전후로 모두 이미 22연이나 되도록 많은바, 또한 매우 편중된 것이라 짐짓 이 수량대로 분정하였지만, 지금 이후로는 전례대로 다른 도에도 분정하여 주시며, 유매먹(油煤墨)도, 본도의 먹은 비록 특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도 해서(海西)에서 예사로 만드는 먹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일찍이 계미년(1643)에 전교에 의거하여 충청 전라 황해 등의 등에 분정하였는데, 올해에는 295홀(笏)의 먹을 아울러 본도에 분정하였는바, 본도의 먹은 체제의 정묘함이 다른 도에서 만드는 것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도에 분정된 각종의 물건이 그 수량이 매우 많은 가운데 또 이렇게 수량을 모조리 분정하는 일이 있는 것은, 한쪽만 지나치게 괴롭게 됨을 면치 못하지만, 짐짓 경주와 의성 두 고을에 분정하였거니와, 먼 외국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미리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형세를 참작하여 편의에 따라 조처할 일이라는 관문임.

통신사가 갈 때 예단 및 반전 등의 물건은 한결같이 본조의 등록대로 계하하여 분정하였는데, 무릇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하여 귀도(貴道)에서 전담하여 거행하니, 본 감영의 문서에는 생각건대 각종 물건이 상세할 것이라, 본조에서 분정한 외에는 한결같이 본도의 등록에 따라 거행함이 마땅한데, 일본국 왕자에게 증정하는 화연이 이미 을미년(1655)에 비하여 더해짐이 있었으니 담는 께짝 또한 이에 의거하여 더 분정해야 마땅하며, 본조의 등록 가운데 단지 물종만 적어 기록하였지 색지를 떠내는 발의 대소는 원래 거론한 곳이 없으니, 또한 본도의 전례대로 분정하여 떠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며, 일본국왕 앞에 증정할 색지는 등록 가운데 단지 색지라고만 일컬었기로 전례대로 분정하였는데, 오색지 외에 별도로 다른 색지가 없다면 오색지로 분부함이 마땅할 듯하며, 응자는 삼남(三南)에는 모두 이미 줄여 없애고 양서(兩西:해서 및 관서) 및 강원·함경 등의 도에 고쳐 분정하여 방금 이미 행회하였거니와, 먹에 있어서는 원래 본도에만 모든 수량을 분정한 것이 아니라, 전라·공홍(公洪:충청도)·황해 등 세 도에도 한결같이 을미년(1655)의 전례대로 각기 대절묵(大節墨) 중절묵(中節墨)을 또한 모두 분정하여 등록대로 계하하였는데, 분정한 뒤에 지금 변동하여 고쳐 분정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전에 분정한 대로 각별히 정밀하게 제조하는 일을 신칙하여 분부 시행할 일임.

신유 11월 18일

예조에서 상고한 일.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갈 때 왜인에게 수역(首譯)이 사사로이 증정하는 예단 잡물은 한결같이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하며, 사신이 타는 세 척의 배에 사용할 홍색 비단 휘장〔紅段帳〕 또한 을미년(1655)의 전례대로 마련할 일. 상고하여 시행할 일.〔호조(戶曹)로〕

예조에서 상고한 일.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갈 때 왜인에게 수역이 사사로이 증정하는 예단 잡물을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분정하였으며, 사신이 타는 세 척의 배에 사용할 붉은 명주 휘장〔紅紬帳〕 또한 전례대로 마련할 일. 상고하여 시행할 일.〔경상도로〕

강원도에 분정한 반전(盤纏:여비)의 생리(生梨:배) 100개 대신 잣으로 대체하여 보내는 일로 본도에서 이문(移文)하였기에, 이대로 대체하여 보내는 일로 회이(回移)함.〔선혜청, 통신사에게〕

신유(1681) 11월 19일

예조의 계사(啓辭).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 갈 반전은 한결같이 본조에 있는 등록대로 하여 장계지(狀啓紙) 12권을 계하하여 분정하였는데, 방금 접한 경상감사의 이문에는 본도의 등록 가운데는 장계지가 1권, 장지가 12권이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대로 분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본도의 등록이 상세한 듯하니, 이문 내용대로 장계지 1권과 장지 12권을 원래 계목 가운데 고쳐 표를 붙여 넣으라는 뜻으로 감히 계달드립니다.” 하였더니, 전교에 “알았다”고 하였음.

신유(1681) 11월 21일

방금 바친 사역원(司譯院)의 첩정(牒呈) 내용임. “통신사가 가져 갈 등롱 등을 주조하여 만들 때 감독할 역관 1인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로 계하하여 당하 역관 1원을 가려서 차출함이 마땅한데, 본 사역원의 도제조가, 등롱 등의 물건을 주조하여 만드는 일은 관계됨이 작지 아니하니 그 일행 중에 당상 역관을 특별히 차출하여

함께 가서 주조하여 만들 때 물자와 인력을 함께 마련하여 감동역관에게 교부하여 준 뒤에 올라온다는 뜻으로 본조에서 입계하여 확정해 달라”는 일로 첩보하였음. “이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는데, “입계한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도부한 경상감사의 이문(移文) 후록(後錄) 내용임. 통신사의 선박 휘장에 사용될 홍릉지초(紅綾只綃) 비단 1,074자[尺], 필(匹)수로 61필 2자[尺] 다섯 치[寸]를 을미년(1655)에 호조에서 내려보낸다는 관문이 있었으니, 관문 내용의 사연을 상고하여 시행할 일.

신유(1681) 11월 22일

경상감사의 이문(移文) 내용임.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해야 할 여러 일을 을미년(1655)의 사례에 의거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한다’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을미년(1655)의 등록을 상고하였더니, 격군(格軍)의 짐물은 또한 다른 도에 분정한 수량이 있었는데, 생각건대 필시 이미 각 해당 도에 분부하였겠거니와, 위 항목의 분정 수량을 이문에 후록(後錄)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해당 도에 분부하시기를. 본도에 분정한 짐물(什物)은 이제 막 마련하고 있는데, 좌수사(左水使)의 첩정(牒呈) 내용에, “해당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배에 사용될 각 항목의 물종 성책(成冊)을 다듬어서 관찰사에게 올렸거니와, 을미년(1655)의 짐물(什物) 차사원(差使員)이 들어가야 할 수량을 수록하여 만든 성책(成冊)을 가져다 살펴보니, 감영에서 분정한 잡물의 태반이 부족하였으나 그때 사정이 급박하였기에 부족한 수량을 본영 및 각 포(浦)에서 준비하고, 그 때 부족한 수량을 기록한 도성책(都成冊)을 또한 관찰사에게 올리니, 이번에는 부족한 수량을 모두 각 지방관에 분정해 주시되, 방금 도부한 통신사의 관문 내용에, ‘타고 갈 배를 정밀하게 만들어 대기하라는 일로 해조에서 이미 행회하였거니와, 이번 행차가 3-4월 사이에 들어갔다가 겨울철에 되돌아 와서 가고 오는 것이 모두 바람이 불순한 계절이라 예사로 만들어서는 불가하니, 각종의 짐물을 명념하여 준비하되, 밧줄(繩索)만 하더라도 또한 숙마(熟麻)로 준비하여 미진한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일로 관문이 내도하였는데, 이전에는 배 위의 각 항목의 줄을 받은 산

마(山麻)로 만들고 반은 숙마로 만들며, 닛줄〔倭注乙〕과 지갑줄〔地甲注乙〕, 벼리줄〔伐伊注乙〕 등은 칩으로 만들었으나, 이제 관문의 내용을 추정한다면 배 위에 사용되는 산마줄 대신 모두 숙마로 마련하는 일과, 닛줄과 벼리줄과 지갑줄 등은 칩줄을 바꾸어 마땅히 산마로 마련하는 일로, 성책 가운데 들어가야 할 수량을 일일이 구별하여 모두 이미 계산하여 올리니, 동 줄을 이전의 규정대로 거행할지, 한결같이 지금 이 관문대로 거행할지, 아울러 참작하여 분부하라”는 일로 첩정하였음.

통신사의 관문이 이렇게 거듭 분명할 뿐 아니라, 만 리 멀리 배를 운행할 물건을 특별히 더 견고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기에, 칩줄 대신으로 산마를 사용하고, 산마 대신으로 숙마를 사용하여, 차례 차례 마련할 수량 및 등록에 의거하여 분정한 이외의 앞서 부족하였던 수량 또한 1,070여 근이나 되도록 많은 바, 수영의 배 두 척을 만드는 물자의 수량이 이러한즉, 통영의 배 네 척의 짐물은 이로 미루어 알 수가 있어서, 성책이 일제히 도착한 뒤에 융통해서 마련하여 이문할 일로되, 이문이 오고 가면서 확정할 사이에 날짜를 많이 허비하고, 분정하고 관문을 보낼 즈음에 세월이 점차 지연되어 필시 궁색하고 긴박한 우려가 있겠거늘, 짐짓 좌수영의 배 두 척에 응당 준비되어야 할 것과 분정한 외의 부족한 수량을 이문에 후록하였음. 통영의 성책은 도착하는 즉시 추가로 이문할 계획이거니와, 이전에 선격(船格)과 짐물(什物)을 참작하여 다른 도에 분정한 것은 본도만 치우치게 그 고통을 받는 것을 우려해서였지만, 지금에는 대동법(大同法)을 설립한 이후로 실 한 오라기라도 모두가 남은 쌀에서 나오는데, 본도에 분정한 각종 잡물의 수량이 매우 크고 많은데다, 더구나 이 숙마(熟麻)와 산마(山麻)는 모두 제철이 아님에도, 만여 근의 수량을 다른 도에 옮겨 분정하지 아니하고 본도에만 전담하여 분정하였으나, 본도의 각 지방관과 포구에서 또한 감당하기 어렵고, 만약 전례를 따라 수량에 맞추어 분정하지 아니하면 좌수영과 우수영에서는 더욱이 홀로 감당하기 어렵겠기로, 이문의 후록을 상고하여 형세를 참작하여 앞의 항목의 부족한 산마와 숙마, 초둔(草氈) 완풍석(莞風席), 정철(正鐵) 및 이제 이번의 칩줄 대신의 산마와 산마 줄 대신의 숙마 등의 물건을 양호(兩湖: 호남 호서)에 분정해서 마련하여 수송하는 일을 급속히 확정하여 회이하라는 일로 보낸 관문임.

후록의 잡물은 본도의 관문과 첩정에 의거하여 후록하였거니와, 본조의 등록 가운데 격군과 줄 등의 물자를 양호(兩湖)에는 별도로 분정한 일이 없고, 상선과 하선, 소선 각 2척에 격군을 아울러, 본도에 명하여 미리 다듬고 만들어 호송하라는

일만 등록에 실려 있기에, 전례대로 계하하여 본도에 분부하였는데, 이 이문을 살펴보면, 격군 및 각종 줄 등의 물건을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전라도와 공홍도(公洪道;충청도) 등에 분정하며, 숙마 등의 물건 역시 다른 도로 옮겨 분정하겠으나, 삼남 지방은 모두 대동법(大同法)으로 들어가기에 본조에서 함부로 가감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본청에서 참작하여 분정하시기를.

후록: 도해선(渡海船) 6척. 상선(上船) 2척은 통영. 하선(下船) 2척 중 1척은 통영, 1척은 좌수영. 소선(小船) 2척 중 1척은 통영, 1척은 좌수영.

격군(格軍) 302명 중 262명은 본도, 40명은 전라도.

초둔(草屯) 252번(番) 중 168번은 본도, 42번은 전라도, 42번은 공홍도(충청도), 부족한 8번은 을미년(1655) 수영 각 포구에서 마련하였는데, 이제 분정함이 마땅함.

산마(山麻) 3,775근 중 3,016근은 본도, 379근 8냥은 전라도, 379근 8냥은 공홍도. 부족한 1,632근은 을미년(1655)에 수영의 각 포구에서 마련하였고, 새로 준비할 각 항목의 줄에 들어갈 2,515근, 도합 산마 4,147근은 이제 분정함이 마땅함.

숙마(熟麻) 3,647근 중 2,065근은 본도, 791근은 전라도, 791근은 공홍도. 부족한 798근은 을미년(1655)에 수영의 각 포구에서 마련하였고, 새로 준비할 각 항목의 줄에 들어갈 1,291근, 도합 숙마 2,089근은 이제 분정함이 마땅함.

숙마선색(熟麻線索) 1,008발〔把〕은 공홍도에, 숙마선색 1,008발은 전라도.

완풍석(莞風席) 708넙〔立〕 중에서 380넙은 본도, 164넙은 전라도, 164넙은 공홍도. 부족한 1,075근은 을미년(1655)에 수영의 각 포에서 마련하였는데, 지금 분정함이 마땅함. [이렇게 초록하여 선혜청(宣惠廳)에 알리고 본도에 회이함].

신유(1681) 11월 23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은 한결같이 본조에 보관한 등록대로 분정하였는데, 동래에 있는 문서 및 역관의 집에 보관한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니, 일본국왕 및 국왕자 앞으로 사신이 사사로이 주는 사예단(私禮單)과 왜인을 접견할 때 수역(首譯)이 사사로이 증정하는 예단, 사신 일행의 별반전(別盤纏) 등의 물건 또한 수록하였기로. 전례를 참고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알려 거행함이 어떠할지?

일본국 왕자 사신 예단: 인삼 10근. 범 가죽 5장. 흰 모시베 10필.

왜인을 접견할 때 수역이 사사로이 증정하는 예단: 인삼 5근. 표범가죽 5장. 범 가죽 1장. 검은 삼베 5필.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무명 10필. 생마포 10필.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27장. 벼루[硯] 3면(面). 참떡 30정(丁). 설화지(雪花紙) 1권. 운암지(雲暗紙) 1권. 도화지(桃花紙) 1권. 잔국지(殘菊紙) 1권. 황국지(黃菊紙) 1권. 상화지(霜花紙) 1권. 장지(壯紙) 15권. 백지(白紙) 50권. 부채[扇子] 100자루. 황율(黃栗) 10말. 호두 1섬 12말. 법유(法油; 들기름) 2말. 녁장 불인 유둔(油屯) 8번. 여섯 장 불인 유둔 2번. 참깨 10말. [이상 본도에서 마련]

사신 일행의 별반전(別盤纏): 인삼 15근. 표범 가죽 3장. 흰 명주 50필. 흰 모시베 50필. 황모필 600자루. 참떡 250홀(笏). [이상 해조에서]

강희 20년(1681) 11월 23일 동부승지 신 윤가적(尹嘉績)²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승문원의 첩정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 때 사자관(寫字官)으로 이화립(李華立)²⁸⁾과 이삼석(李三錫)²⁹⁾을 차출하여 정함.

一. 전의감(典醫監)의 첩정 내용. 전 판관(判官) 주백(周伯)³⁰⁾을 차정함. 혜민서(惠民署)의 첩정 내용. 의원(醫員)으로 전 주부(主簿) 이번(李蕃)³¹⁾을 차출하여 정하는 일.

一. 군기시(軍器寺)의 첩정 내용. 겸군관(兼軍官)으로 별파진(別破陣) 한준일(韓俊一) · 이시형(李時馨)³²⁾ 2인을 차출하여 정하는 일.

一. 한성부(漢城府)의 이문 및 봉상시(奉常寺)의 첩정 내용. 숙수(熟手) 여신립(呂信立)을 차출하여 정하는 일.

27) 윤가적(尹嘉績, 1642-?): 칠원(漆原) 윤씨로 자는 여휴(汝休)이다. 현종 5년(1664) 춘당대시(春塘臺試)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공흥도관찰사와 충주목사를 역임하였다.

28) 이화립(李華立, ?-1699): 현종 13년(1672) 학생(學生)으로 시재(試才)에 입격(入格)하여 사자관(寫字官)으로 활동하였다.

29) 이삼석(李三錫, 1656-?): 전주 이씨로 호는 설월당(雪月堂)이다. 글씨와 그림이 능하였다. 사헌부 지평과 사간원 정언을 역임하였다.

30) 주백(周伯): 영광 주씨로 효종 5년(1654) 의과(醫科)에 합격하였다.

31) 이번(李蕃, 1641-1708): 연성(延城) 이씨로 자는 중거(仲舉)이며 의학에 종사하였다. 『용산요두편(龍山療痘編)』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통신사등록 제4권 임술 5월 초4일 조에는 이수번(李秀蕃)으로 기록되어 있다.

32) 이시형(李時馨, 1643-?): 태안(泰安) 이씨로 자는 형숙(馨叔)이다. 숙종 4년(1678) 정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 一. 장악원(掌樂院)의 첩정 내용. 악공(樂工) 김몽술(金夢述), 윤만석(尹萬石).
- 一. 사복시(司僕寺)의 첩정 내용. 이마(理馬) 이효민(李孝民)을 차출하여 정하는 일.

신유(1681) 11월 25일

一. 예조의 단자. 방금 바친 사역원의 첩정 내용에 ‘일본에 보낼 등룡(燈籠)을 주조하여 만들 때의 감동역관으로 당상관 부사용(副司勇) 변승업(卞承業)³³⁾, 당하관 전정(前正) 오윤문(吳允文)³⁴⁾을 차출하여 정하였는데, 오윤문은 부산으로 내 보내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첩정하였는데, 보고한 대로 차출하여 보내되, 오윤문은 동래부에 그대로 머물러서 소임을 살펴보게 하라고 분부함이 어떠할지? 계달하였더니 계달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평안감사의 보고 장계로 말미암아, 통신사가 갈 때 들여보낼 응련(鷹連)을 내년 정월 그믐 이전에 동래로 수송하는 일로 비변사에서 분부하였는데, 본도에 분정된 응련도 이에 의거하여 일체로 수송하는 일로 분부하여 거행하되, 도부 일시를 이문할 일. [함경, 강원, 황해 등의 도 및 동래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일본에 보낼 등룡을 주조하여 만들 때 감독하기 위하여 당상역관 1원을 특별히 내려 보내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기마(騎馬:타는 말)와 복마(卜馬: 짐 싣는 말) 각 1필을 전례대로 지급할 일.

一. 경상감사의 이문 내용임. 통신사가 갈 때 부산첨사의 차사원(差使員)을 차출하여 정할 일.

33) 변승업(卞承業, 1623-?): 초계(草溪) 변씨로 자는 선행(善行)이다. 인조 23년(1645)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에 종사하고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34) 오윤문(吳允文, 1646-?): 해주 오씨로 자는 자화(子華)이다. 현종 13년(1672)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신유(1681) 12월 초3일

예조의 단자. 사역원의 첩정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보낼 등룡을 주조하여 만들 때 감독하는 역관으로 전정(前正) 오윤문을 차출하였는데, 동 오윤문이 부산으로 명을 받고 나가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기로, 그대로 동래부에 머물게 하여 소임을 살피게 하라는 일로 계하하여 분부하였는데, 방금 접한 본원의 보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공문이 미처 저쪽에 도착하기 전에 올라와서 복명하였다고 첩정하였으니, 전례대로 말을 지급하여 되돌려 내려 보내어 소임을 살피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계달하였더니 계달한대로 시행하라 하심.

신유(1681) 12월 초6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일본에 보낼 등룡을 주조하여 만들 때 감독할 당하 역관 외에 당상 역관 1원을 별도로 내려보내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이전부터 수역(首譯)을 별도로 내려 보낼 때는 관수왜와 다례의 접견 때에 전례에 따라 증정하는 예물이 있다고 하는바, 수역이 저쪽 사람과 서로 접촉할 때의 예단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지급하여 보내지 않아서는 불가하겠는데, 신해년(1671)과 임자년(1672)에 수역을 내려 보낼 때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할 일.

신유(1681) 12월 17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일본에 보내는 등룡 등의 물건을 주조하여 보내는 일은 이미 계하하여 분부하였기로, 감독하기 위해 당상 역관 1원과 당하 역관 1원이 이제 장차 내려갈 것인데, 접대하는 등의 일은 전례대로 거행하는 일로 동래부에 별도로 분부하며, 도내의 솜씨 좋은 공장(工匠:기술자) 다수를 정하여 보내고, 들어갈 물자와 인력 또한 부산으로 수송하도록 분부하여 일일이 정돈해 두었다가, 건본이 나오는 즉시 일을 시작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하여 시행할 일. [경상 감사에게]

신유(1681) 12월 19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번 12월 초10일 성첩한 장계 내용임. 이달 초9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두귀(李斗龜)의 치통 내용에, “왜선 4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서상검(徐尙儉)의 치보에 의거하여, 훈도 박유년(朴有年)과 별차 한천석(韓天錫) 등에게 명하에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1척은 문위역관 변이표(卞爾標)³⁵⁾와 한후원(韓後援)³⁶⁾ 등이 탄 배로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금도 왜 2인, 지로사공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나왔거늘, 동 왜인들은 도착하여 정박한 즉시 관중으로 들여보냈음. 제2척은 동 역관의 여행을 호송하는 차왜의 배인데, 차왜 정관 후지 나리히사(藤成久)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0명, 격왜 40명 등이 전례대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대마도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통신사가 갈 때 응당 시행할 절목은 문위역관 등에게 자세히 언급하였으니 지금 다시 번거롭게 언급하지 않거니와, 다만 세 사신의 직함과 성명 및 일행 역관의 성명을 아울러 적어 주어야 대마도에 보고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서계는 다례하는 날 바치겠다고 운운하였음. 제3척은 도주가 대마도로 되돌아왔음을 알리는 차왜 마치바나 도끼이(橘時以)의 배인데, 전일에 구대관(舊代官) 등이 빌려 타고 들어갔다가 그 정관을 데려가기 위하여 이제 또 나왔으나, 동 정관 등이 방금 이미 돌아 들어갔기에 이는 규정 외이기로 노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제4선은 비선인데, 두왜 1인과 격왜 9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에도(江戸)에서 구하는 바로 귀국의 정밀한 제품의 말안장에 삼거리(三巨里)를 구비하여 2부(部)와, 자필(咨筆) 200자루, 『동의보감(東醫寶鑑)』 5질, 말린 대구 3,000마리, 호두 30섬, 잣 15섬, 녹두가루 300근, 특별히 제조한 대진묵(大眞墨) 20동(同) 등의 물건을 구청(求請)하여 들여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였는데, 위 항목 물종의 무역을 속히 허락하되, 근래에 먹의 품질이 매우 정밀하지 못하니 반드시 좋은 품질의 대한림풍월(大翰林風月) 최상품으로 가려서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거늘, 비직 등이 물종이 너무 많고 수량 또한 극히 많아서 이렇게 품신하기가 어렵다는 뜻으

35) 변이표(卞爾標, 1623-?): 밀양 변씨로 자는 탁연(卓然)이며 효종 경인(1650)에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으로 종사하다가 자헌대부의 품계까지 받았다.

36) 한후원(韓後援, 1659-?): 청주 한씨로 자는 백옥(伯玉)이다. 숙종 4년(1678)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로,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 십분 타일렀는데, 통신사가 올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와는 크게 다르다고 하면서 단지 대구 1,000마리, 잣 5섬만 줄이고, 그 밖의 각종 물품은 정녕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며 다시 줄일 뜻이 없는바, 일이 매우 미워서 다시 조용히 타이를 계획임. 차왜의 서계 등본 및 비선의 노인 1통을 가져와 바침'이라고 회언하였음. 동서계 등본 및 노인 1통은 받아 올려서 보내거니와, 위 항목의 규정 외의 배는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역관들에게 분부하였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일"이라는 치통이었음.

동 차왜 후지 나리히사(藤成久)가 가져온 서계 등본 1통과 비선의 노인 1통과 문위역관이 바친 수본 1통과 가져온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별단 2통 및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 통신사 때 증정한 예단 물건의 등본 1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며, 규정 외의 배는 속히 돌려보내라는 뜻으로 역관들에게 엄하게 신칙하였거니와, 무역을 요구하는 물종은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기 하시고, 차왜 후지 나리히사의 접위관은 도내의 수령 중에서 차출하여 정하라는 뜻으로 도신에 보고하였는바, 증정할 예단은 또한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낼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가 갈 때 에도에서 사용한다고 정밀한 품질의 말안장에 삼거리를 갖추어 2부, 자필 200자루, 한림풍월 대절진묵 20동, 『동의보감』 5질, 말린 대구 2,000마리, 호두 30섬, 잣 10섬, 녹두가루 300근의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는바, 무역을 요구한 수량이 비록 과다하지만, 이미 통신사 때 사용할 것이라 하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어서 이전대로 방색하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그 말대로 수량에 맞추어 부응하도록 허락하되, 말안장과 자필, 한림풍월, 대절진묵, 『동의보감』 등은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하고, 말린 대구, 호두, 잣, 녹두가루 등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하게 하며, 세 사신이 직함과 성명 및 일행의 역관 등의 성명을 아울러 적어 달라고 하였거니와, 통신사의 출발 기일이 아직 멀어서 혹시라도 그 사이에 교체되는 일이 없지 않으니, 통신사가 출발할 때가 되어 적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언급하는 일을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12월 19일 우승지 신 유헌(兪櫟) 차지로 임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유(1681) 12월 21일

一. 문위역관 변이표(卞爾標)와 한후원(韓後援) 등이 신유 12월 초9일에 동래에 있으면서 성첩한 수본 내용. 비직(卑職) 등 일행은 지난 9월 21일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리다가, 24일 처음으로 대마도(對馬島)의 좌내포(佐奈浦)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나오는 비선(飛船) 편이 있어서 폐단 없이 바다를 건넜다는 연유를 일찍이 이미 수본으로 보고하였거니와, 연일 바람에 막혔다가 같은 달 28일에 노를 저어 전진하여 10월 초2일에 대마부(對馬府)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관백(關白)이 승습(承襲)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이에쓰나(家綱)의 3형제 중 다음 아우인 좌마두(左馬頭)는 이미 죽었고, 끝 아우는 곧 우마두(右馬頭)인데, 앞서 관백이 죽는 날에 우마두를 대신하여 세우라는 명이 있었기로, 승습한 뒤에 이름을 고쳐 쓰나기찌(綱吉)라 하였으며, 나이는 36세이고, 그 아들 도꾸마쓰(德松)를 저사(諸嗣)로 세웠으며, 일본국왕이 연호를 덴와(天和)로 고친 것은 또한 관백이 새로 선 경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초9일 다례(茶禮) 때 서계와 별폭의 잡물을 전하여 주었는데, 서로 접촉하는 예와 음식을 접대하는 일은 전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 인하여 도주(島主)에게 말을 전하기를 “에도의 행차가 신속하게 되돌아왔고 또 진중하시다니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라고 하였더니, 도주가 답하기를 “통신사를 청하기 위하여 곧장 대마도로 되돌아왔거니와, 통신사가 올 때의 절목에 대하여 이야기할 일이 많으나, 처음 서로 만나서 급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겠기에, 별연(別宴)을 기다려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운운하였으며, 해가 저물어 파하고 나왔습니다.

22일 별연에 참여하기 위하여 도주의 성 안으로 가서 전례대로 문안을 한 뒤에, 도주와 봉행(奉行) 등이 모여 앉아서 말하기를, “이미 통신사를 청하였으니, 동 통신사를 필시 차출하였을 것이니 그 성명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정사를 담당하는 관원에게 사고가 있어서 아직 차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을미년(1655) 통신사 이래 이제 장차 30년이 되는데, 피차간에 일찍이 왕래하던 자들은 거의 모두 죽었으니, 무릇 규모를 어찌 능히 일일이 기억하여 생소한 폐단을 모면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지금 관백은 성품이 분디 엄격하고 급하여 극히 염려된다”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답하기를 “통신사가 왕래하는 것이 비록 드물다고는 하지만, 이미 앞서 시행한 적이 있고 일찍이 겪은 자가 있으며, 또한 절목의 문헌이 있으니, 이제 마땅히 적절하게 재량하여 할 따

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주 및 봉행 등이 통신사가 올 때 거행할 편의 조목을 열거한 별단(別單) 2통 및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에 그쪽의 등록을 베껴 쓴 기록 한 통 등을 그 봉행 다이라 마사갱(平眞顯)으로 하여금 재삼 점검하여 읽어 주게 하고는, 도주가 이에 말하기를 “때가 다르고 일이 변하여 고급이 각기 다른 데, 이제 이번 통신사를 청하는 일은 막대한 경사요, 일이 또한 중대하니, 통신사는 반드시 직급이 높고 온화한 관원을 차출하여 보내며, 국서(國書)에 하는 말도 되도록 은근하게 하며, 별폭의 물건에 있어서도 각별히 정밀하게 마련하여 매물하다는 폐단을 면함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비직 등이 답하기를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것은 성신(誠信)의 돈독하고 후덕한 정이 아님이 없는데, 어찌 서신을 은근하게 하지 않고, 물건을 정치하게 하지 않는 폐단이 있겠는가? 다만 통신사의 직급은 본디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만 직급이 높은 사신을 별도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은 그럴 이치가 만무하다”고 준절하게 물리쳤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이전에는 통신사의 행차 때 예단의 응자(鷹子)는 전례대로 모두 수량을 배로 하여 들여보내야 육로와 해로 먼 길에 많이 죽게 되어 마침내 임시로 군색하게 되는 우려를 면할 수 있겠는데, 하물며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정녕 더운 여름철의 응련(鷹連)이 깃을 갈 때를 당하였으니 더욱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각별히 변통하여 넉넉한 수량을 들여 보내주며, 별폭에 부치는 준마(駿馬) 및 분향 때의 폐백으로 사용하는 준마는 전례대로 들여보내되, 멀리 보내는 사이에 병으로 손상될까 우려되니, 또한 수량을 더하여 주며, 말의 털 색깔도 한결같이 기록한 바의 색깔대로 하고, 재주가 좋은 자를 들여보내어 무안한 폐단이 없도록 하며, 또한 글을 잘 짓고 잘 쓰며 말을 잘 모는 관원과, 활을 쏘에 팔 힘이 좋은 자 및 마상재(馬上才)에 정교한 자를 최선으로 선발하여 데려 와 달라”고 이야기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쓰는 자 및 마상재와 육량궁(六兩弓)을 잘 쏘는 자와 활을 쏘는 힘이 좋은 자를 가려서 데려오는 일은 비직 등이 돌아가 조정이고할 따름이고, 들여보내는 여부는 아직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도주가 말하기를 “대군(大君) 및 집정 이하의 사람들이 관광하려는 계획으로 마상재 등을 특별히 데려오라는 뜻으로 분부하여 듣고 왔으니, 이 뜻을 간곡하게 진달하여 말을 잘 달리는 자와 함께 기어코 데려 와서 광채를 내게 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선대군(先大君) 이에쓰나(家綱)의 묘호(墓號)는 엄유잉(嚴有院)으로 우에노(上野)의 동예산(東叡山)에 있는데, 에도와의 거리는 5리 쯤 된다. 전례

대로 겐유잉〔嚴有院〕 및 일광산(日光山) 두 곳에 치제(致祭)해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을미년(1655) 통신사 때 치제는 다이유잉〔大猷院〕에 하고, 분향(焚香)은 콘젠도오〔權現堂〕에 하였거늘, 무릇 일광산이라고 범범하게 칭하면서 두 곳에 치제한다는 이야기는 이치에 천만 근사하지 않으니, 다만 전례대로 겐유잉〔嚴有院〕에는 치제하고 다이유잉〔大猷院〕에는 분향만 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도주가 말하기를 “콘젠도오〔權現堂〕는 은덕이 백대 뒤에까지 전해져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언짢은 기색을 말 밖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비직 등은 억지로 말을 만들어 타일러 말하기를, “콘젠도오〔權現堂〕에 치제하는 일은 차라리 죽는 것이 쉽지 예에 지나치는 일을 감히 조정에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며 시종 논란할 무렵에, 도주 및 봉행 등이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침지 등이 중간에서 막는 일은 매우 부당하니, 이 뜻을 상세히 고하여 달라”고 하거늘, 콘젠도오〔權現堂〕에는 결코 치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죽기로 다투며 따져 말하기를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도리에 있어서 한 번 조제(用祭)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할 것인데, 전후의 묘소에 대대로 치제하는 것은 이웃나라에 알려지게 하여서는 불가할 뿐 아니라, 을미년(1655) 사례로 말하더라도, 한 곳에는 치제하고 한 곳에는 분향하였는데, 이제 이번 일광산(日光山) 치제의 설은 천만 근거가 없으며, 별단 가운데 어필을 얻으려는 것도 일이 매우 중대하기로 감히 돌아가서 고하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도주 및 봉행 등이 말하기를 “두 곳에 치제하는 일은 침지가 하는 말에 혹 이치가 있어서 혹 변통할 도리가 있겠지만, 어필은 일찍이 이미 여러 번 청하여 콘젠도오〔權現堂〕와 다이유잉〔大猷院〕 두 곳에 봉안하였으니, 이제 와서 결코 빠트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하거늘, 침지 등이 마치 모르는 체 하며 막으려는 일은 매우 부당하다. 공 등은 피차간에 사정을 소통하는 직책을 맡았으니 오직 그 별단 대로 자세히 고하여 전달해 줌이 마땅하다”고 운운하였습니다.

별단 가운데 이에쓰나〔家綱〕 묘소의 등룡과 악기 등의 물건을 주조하여 만들어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등룡 등의 물건은 연전에 대마도에서 무역을 요청하여 얻은 것인데 전례에 따라 주조하여 보내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하였더니, 도주 및 봉행 등이 답하기를 “을미년(1655) 통신사 때 전례에 의하여 주조하여 보낸다는 문서가 명백하게 남아 있거늘, 침지 등이 일마다 막으려 하는 것은 무슨 도리인가? 동 등룡 등의 물건을 더욱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또 말하기를 “비록 전례가 있어서 돌아가서 허락을 받

는다 하더라도 날짜가 이미 늦고 작업이 거대하여 시기에 미치지 못할 형편이라”고 다시 타일렀더니, 도주 및 봉행 등이 “통신사를 청하는 차왜 및 관수에게 이미 먼저 통기하였으니, 침지 등은 단지 일꾼을 많이 정하여 기일에 맞추어 주조하여 보내되 통신사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보내라는 뜻을 고하여 달라”고 운운하였습니다.

또한 별단 가운데 ‘에도의 집정과 봉행 등은 당초에 정해진 인원이 없었으나, 이제 혹시라도 추가됨이 있을 듯하니, 비록 음식을 접대하고 문안하더라도 예조에서의 도장을 찍은 종이 몇 장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 곧 옛날 규정이다’라고 적었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을미년(1655) 통신사 때 집정 4인, 봉행 6인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인원수를 더하는가? 한결같이 옛날 규정을 따라 10인만 전례대로 서계를 보낼 따름이고, 빈 종이를 만들어 보낸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막았더니, 도주가 말하기를, “이번에는 이전과 차이가 있어서, 대군이 새로 선 초기인지라 집정과 봉행은 원래 정해진 수가 없어서 추가하여 내는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군사부(大君師傅)와 저군사부(儲君師傅)는 전일보다 더 해짐이 있어서, 이른바 사부는 집정이나 봉행 등과 동등하게 우대하는 자인데, 전례라고 칭하면서 집정과 봉행 10인에게만 예단을 하고 마는 것은 불가한 일이고, 직접 서계를 청하는 것이 마지못할 일이로되, 이번 관백의 행정이 엄격하고 준절하여 교체하는 일이 일정하지 아니하니, 그 때 가서 재임하는 자가 누구일지 지금 미리 알 수 없기에 도장을 찍은 빈 문서를 청하는 것이다”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집정과 봉행 10인에게만 서계를 가져가고 예단이 있는 것은 전례가 매우 뚜렷하고, 도장을 찍은 빈 문서 한 조목은 일이 아름답지 못하고 또한 돌아가서 고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논란할 무렵에 그쪽의 등서(謄書) 가운데 집정과 봉행 및 사부를 아울러 14원의 성명을 적어서 내어 보이면서, “공(公) 등의 하는 말이 이치가 없지는 아니하나, 다만 도장을 찍은 빈 문서를 가져가지 않았다가 통신사가 에도에 도착하는 날 이른바 집정과 봉행이 과연 추가로 나오거나, 두 사부 앞에 아울러 시행하지 않는다면 일이 반드시 낭패가 날 것이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일의 형편이 비록 그렇더라도 앞서 규정에 없었던 일을 조정에서 필시 듣고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도주가 화를 내어 말하기를 “이는 신중하게 하는 도리에 불과하지 단연코 다른 속셈은 없다. 조정에서 만약 이런 사연을 통촉한다면 필시 머뭇거리며 어려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전의 등록 가운데도 또한 실려 있다”고 하면서 온갖 말로 간청하였습니다.

“중전에는 행차 때 당상역관 2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번 행차는 이전에 비하여 다름이 있으니 당상 3원, 당하역관 및 좋은 의원 한 두 사람을 더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좋은 의원은 전례에 2원으로 하고, 당상역관과 당하역관은 본디 이전의 규정이 있으니 이제 인원수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더니, 도주 및 봉행 등이 답하기를, “일찍이 이전의 계미년(1643)에는 역관이 10인이었고, 을미년(1655)에는 역관이 8원이었으니, 정해지 인원이 없음을 따라서 알 수가 있다. 접대는 우리 쪽에 달려 있으니, 모름지기 염려하지 말고 인원수대로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이번 행차에 관백의 아들 저군(儲君)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은 전례가 있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전례로는 서계가 없고 별폭이 있거늘, 어찌하여 서계를 갖추냐고 하는가?” 하였더니, 도주가 답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이전의 규정대로 함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비직 등이 수직왜(受職倭) 등의 성명을 물었더니, 원래 상세히 아는 자가 없었는데, 그쪽에서 내놓는 등록(騰錄)의 등서(騰書) 가운데는 수직왜는 거론하지 않았기로, 자는 범의 엉덩이를 건드리는 일이 될까 우려하여 일부러 제기하지 않았습니 다.

11월 초2일 상선연(上船宴)을 할 때, 도주가 말하기를 “전담의 사신을 보내어 위문해 주시니 감격의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은 비록 서계 가운데 있지만, 첨지 등도 극진하게 치사(致謝)한다는 연유와 별단 20조를 일일이 굽혀 시행해 달라는 뜻을 남김없이 잘 고하여 달라”고 재삼 정녕하게 말하였고, 지난 번 별단 가운데 미진한 곳이 있었으므로 상세히 고쳐 적었다고, 고쳐 적은 별단 1통 및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 등서(騰書) 1통, 도합 3통을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전일에 일광산(日光山) 두 곳에 치제하는 일은 첨지 등이 입씨름을 하며 다투어 고집하였기로, 십분 생각하여 이제 두 곳에 분향하는 것으로 고쳐 적었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을미년(1655)에는 한 곳에 치제하고 한 곳에 분향한 것이 이미 규례로 성립되었는데, 이번에도 이전대로 해야 마땅하다”고 하였더니, 도주가 답하기를 “두 곳에 분향하는 일은 첨지 등이 비록 천 마디 말과 만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신이 이미 일광산(日光山)에 간다면 다이유잉(大猷院)과 콘겐도오(權現堂)에 분향하는 것을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번거롭게 말하지 말고, 분향과 폐백의 도구를 각별히 정밀하게 준비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거듭 거듭 말하였습니다.

다음날 봉행 다이라 마사끼〔平眞幸〕 및 호행차왜 후지 나리히사〔藤成久〕 등이 회답 서계를 가지고 와서 전해 주거늘, 서계만 받고 별폭에 붙인 잡물은 후지 나리히사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왜관에 도착하여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11월 17일 후지 나리히사와 함께 대마부에서 출발하여 22일 좌수내포(佐須奈浦)에 도착하였는데, 연일 바람에 막혀 있다가 이달 초8일에 비로소 순풍을 만나 폐단 없이 되돌아 건너왔습니다. 동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통신사가 갈 때 거행할 조건을 적은 별폭 2통과 저쪽의 등록 등서 1통, 도합 5통을 감봉하여 올려보내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해역관 등의 수본 내용에 누누이 이야기한 것이 모두 피차간에 수작한 말인데, 그 가운데 거행할 일은 왜인의 별단을 복계한 가운데 하나하나 조목으로 진술하였거니와, 수직왜의 생존 여부에 있어서는 역관들이 일부러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 일이 몽롱하여 역관이 사사로이 보관하고 있는 을미년(1655)의 일기를 가져다 살펴보았더니, 수직왜 9인 중 4인은 죽어서 후사가 없기로 지급한 예단을 도로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예단은 짐짓 5인으로 마련하여 가지고 갔다가 5인 가운데 또한 사망하여 후사가 없으면 전례대로 되돌려 가져오는 것이 무방하니, 이대로 거행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12월 21일 동부승지 신 송창(宋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문위역관 변이표가 가져온 도주의 별단(別單)

一. 내년엔 통신사가 있어 오는 것은 대군(大君)의 계업(繼業)을 축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그 서계(書契) 및 별폭(別幅)의 글은 모름지기 신중하고 예물은 모름지기 정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 폐주(弊州)는 귀국(貴國)에 대하여 신의를 다지고 화목을 닦은지 해가 오래되었기에 이에 힘입어 보호와 사랑을 받고 보인 것이 이미 깊다. 그러므로 이번에 관사(官使)를 영접하여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것이 어찌 다만 폐주(弊州)의 편안함을 도모하여 사리를 해치고 귀국을 번거롭게 할 일이 있겠는가? 바라건대 조정에 전달하여 주시고 세 분의 관사 때문에 저지되지 않게 하시며, 만약 그 일의 형편이 미리 확정하기가 쉽지 않고 시기가 되어 청할 것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 고하는 바에 따라 주기 바라며, 그 요청에 대하여 혹 계문(啓聞)하지 않겠다거나 혹 예전의 사례가 아니라고 답한다면 대의를 폐하게 될까 우려된다. 요시자네〔義眞〕는 봉작(封爵)을 이어받은 뒤에 처음으로 성대한

사신을 맞게 되었는데, 우리 쪽에 오는 날 우리 가종(家從) 중에 마침 을미년(1655)의 사례를 아는 자는 팔구십 세의 노인이라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이번의 일행에는 귀국에서도 또한 그러리라 생각되는데, 본국의 풍습은 폐주에서 알고 있으니, 모름지기 시의(時誼)를 준수하여 상의하고 지휘하여 예가 이뤄지고 일이 수행되면 이웃나라 우호의 성신이 오래도록 더욱 두터워지게 되기 바란다.

一. 선대군(先大君) 능묘(陵墓)는 도성의 동북 5리 쯤의 동예산(東叡山) 땅에 있는데, 묘원(廟院)의 호칭은 겐유잉〔嚴有院〕이다. 전례대로 모름지기 전하의 친필 편액을 증정하는 것과 제문을 증정하여 주기 바라는데, 그 동경(銅鑾:구리 등잔걸이), 악기(樂器) 등은 예전 규범을 준수하기 바라며, 그런 뒤에 그 등경(燈檠)에는 모름지기 명(銘)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글씨의 글자 모양은 뜻대로 지어주기 바라며, 만약 먼저 그 초고를 주시면 모양의 높낮이를 모름지기 그림을 그려서 지휘할 것이다. 또한 생각건대 대체로 매양 본국에 사신을 오는 관사(官使)는 반드시 일광산(日光山)에 일이 있는데, 이번에 동도(東都)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도오조오규우〔東照宮〕과 다이유잉〔大猷院〕 묘에 분향을 할 수 있을지? 만약 과연 그럴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분향하는 예물과 먼 길의 수고를 사양하지 말기 바람.

一. 본국은 도오조오 다이징구우〔東照大神宮〕께서 상서로운 조짐에 부응하여 온 나라를 이끌면서부터 옛날의 주(周)나라나 한(漢)나라 때와 대략 유사하여, 비록 땅은 협소하나 종실(宗室)에는 열후(列侯)가 있고 경대부(卿大夫)가 있는데, 지금 세 종실(宗室)은 대군의 친척으로서 봉작을 받은 것이 크므로, 우리나라 인신(人臣)의 최상위에 있다. 그러나 그 반열과 작위는 삼품(三品)이고, 열후(列侯)가 된 자는 사품(四品)과 오품(五品)이 있으며, 일품(一品)과 이품(二品)은 없다. 또한 집정(執政)이 되거나 봉행(奉行)이 되는 자는 사품이다. 그러나 귀국의 작위와 견주어 보면 우리의 종실(宗室)은 현록(顯祿)과 흥록(興祿) 두 대부(大夫)의 작위와 차이가 없고, 또 대광보국(大匡輔國)이 집정 및 봉행이 되는 것은 의정부의 승록(崇祿)과 승정(崇政) 대부와 같다. 이는 이제 우리 관가(官家)께서도 아는 바이니, 동도(東都)의 금내(禁內)에서 세 분의 대사(大使)를 접반(接伴)함에 있어서 반드시 종실(宗室)로 하는 것은 본국에서 귀국을 접대하는 예가 지극히 귀중한 것이다. 그러니 그쪽의 세 사신의 관직과 작위는 모름지기 높은 반열이어야 하고, 또한 집정 및 봉행에게 증정하는 서신 또한 가볍지 않게 하여야 하니, 그 봉행 또한 집정 관원이기 때문이다.

一. 본국의 집정 및 봉행은 당초에 정해진 인원이 없는데, 이제 혹시라도 인원이

더해지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모름지기 음식을 접대하고 위문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 예조의 도장을 찍은 종이 몇 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전의 관례이다.

一. 오사카〔大坂〕 및 양도(兩都)에 있는 자는 명을 받고 접대하는데, 그 접위 관원은 모두 우리의 대관(大官)이다. 모름지기 인사를 공경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그 수륙의 각 역참에 대기하는 것도 또한 후백(侯伯)이 베푸는 것이니, 모름지기 정중하게 치사(致謝)하기 바란다.

一. 본국의 해로(海路)의 험하고 평탄한 장소는 귀국 뱃사공이 아는 바가 아니라서, 우리 뱃사공 가운데 가장 잘하는 자를 최선으로 선발하여 귀국의 배에 나누어 실을 것인데, 바람을 살피고 조수를 살핌에 있어서 모름지기 그 지휘를 따라주고 귀국의 뱃사공이 마음대로 출발하거나 거두지 말게 하기 바란다.

一. 오사카〔大坂〕 이동(以東)에서 관원이 타는 말은 모두 우리나라 후백(侯伯)이 바치는 것이다. 모름지기 빠르게 몬다고 채찍을 치지 말기 바란다. 그 행렬을 소란하게 하여 죽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을 상할까 염려된다.

一. 전년에 사신이 도착하던 날 하관(下官)의 종복(從僕)들이 법령을 희롱하거나 침범하여 간혹 객관 밖에서 외람되이 어정거리거나 혹은 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을 몰래 무역하는 자가 있었다. 이제 정령(政令)이 매우 엄격하여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만약 몰래 사사로이 금지하는 물건을 매매하는 자는 규찰하고 검속하여 탄핵하여, 본국의 간사한 사람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법과 다름없이 할 것이니, 바라건대 이번 일행에는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응당 모름지기 바르고 엄숙하게 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관사의 하의(賀儀)에 사용하는 별폭은 마땅히 두어 가지 물품만 사용하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사용할 집물 외에는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기 바란다.

一. 관사가 바다를 건너는 시기는 폐주(弊州)에 돛을 거두고 정박하는 것이 5월을 넘지 않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 6월에 오사카에 도달하고 7월 말에 동도(東都)에 들어가서 8월에 되돌아온다면, 9월에는 배를 타고 있게 된다. 그러니 귀국에 영광스럽게 되돌아가는 것은 생각건대 초겨울이 될 것이다. 이는 바람과 조수물을 잘 만나야 되고, 만약 10월을 넘기면 서풍이 매양 매서워서 닻을 풀고 출발할 수 없다. 만약 사람이 살지 않는 절도(絶島)에서 무료하게 여러 날을 보낸다면, 여러 관원들이 병들 뿐 아니라 우리 또한 귀국 사신을 위해 우려됨이 많고, 또한 바다로 나가서 바람과 파도가 노하여 소리치면 북쪽을 바라보고 한심해 한다. 그러므로 이제 뱃길로 오고 가는 날짜를 계산하여 정하여 알리니, 늦추지 말기 바란다.

一. 지난번에 이미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쓰고 활을 잘 쏘는 관원을 데려오기를 희망하였는데, 궁수(弓手)는 모름지기 완력이 있는 자여야 하고, 마상재(馬上才)는 모름지기 조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一. 전년에는 상상관(上上官)으로 임명된 자가 2원이었는데, 이번 행차에는 3원이 와도 좋다. 이는 하관(下官)이 정제되고 예의가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좋은 의원 및 통역을 담당하는 관원의 인원을 더하여도 무방하나, 쓸데없는 인원 몇 명을 데려오지 말기 바란다.

一. 세 관사(官使)가 머무는 객관은 명을 내려 예사롭지 않게 온전히 수선하였는데, 여행하다 투숙하는 곳에서 모름지기 종복(從僕)들이 방문에 침을 뱉거나 기둥에 글을 새기는 행위를 하여 낭자(狼藉)하게 더럽히지 말게 하기 바란다.

一. 우리나라 세 종실(宗室) 및 집정 등 몇 사람에게는 모두 세 분의 대관사(大官使)께서 증정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물품을 많이 하는 것이 예전의 사례이나, 무명배와 호두 열매와 잣, 화석(花席), 유지(油紙), 설면(雪綿), 패향(佩香), 청심원(淸心元) 등은 굳이 동도의 대관(大官)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매(鷹)와 인삼, 범 가죽, 표범 가죽, 양 가죽, 담비 가죽, 청서피(靑鼠皮), 백조포(白照布), 필묵(筆墨), 비단[緞綾], 채전(彩牋), 어피(魚皮), 녹두, 백밀(白蜜), 작은 칼[小刀子]도 모두 좋다.

一. 세 사관(使官)이 타는 배는 견고하고 치밀하면서 정밀하게 갖추되 큰 밧줄 및 쇠닢은 모름지기 이쪽 대마주에서 실어 보내며, 그 나머지 배 위에서 사용할 집물로서 만약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람.

一. 대군(大君)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넣은 껍죽은 모름지기 정밀하게 만들도록 하고 또한 그것을 싸는 보자기 역시 모름지기 극히 화려하게 할 것.

一. 세 사신 행차의 집물을 넣는 농작은 전년에 본 바로는 본국 서민들이 누추하게 여겼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상자 하나로 만들어서 메고 짊어지기에 편한데, 이번에 제공하려고 하니, 먼저 가지고 올 농작이 몇 바리인지 먼저 알려주면 지휘하여 만들 것임.

一. 이번 행차에는 말을 치는 종이라도 새옷을 착용하기 바람. 우리나라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을 불경한 것으로 여기니 풍속을 어기지 말기 바람.

一. 폐백으로 사용할 말 및 그 밖에 가져올 말을 5필로 정했는데, 별도로 서너 필을 끌고 오면 좋겠고, 그 털 품질은 위라말(駭;얼룩말)이나 가라말(驪;검정색), 절따말(紫毛)이나 황부루(黃毛)를 사용하고, 비록 폐백 말이라도 흰색은 버릴 것.

一. 매(鷹)는 30연으로 정했는데 그 나머지 세 대사(大使)가 사용할 것까지 피차 간에 합쳐서 50연인데, 별도로 10여 연을 조롱에 넣어 온다면 좋겠음. 만약 말이나 매의 발굽이 손상되거나 깃털이 손상되면 바칠 수가 없을까 염려되고 또한 죽게 되는 경우 또한 알 수가 없음.

一.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의 사례에는 육지와 바다의 각 역참(驛站)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세 대사가 막 도착하면 상관(上官)이 된 자가 특별히 예를 갖추어 잔치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빈객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예가, 풍속이 다르고 습관도 달라서 모두 입맛에 맞지 않으며, 또한 비록 입맛에 맞게 조리하려고 해도 젓가락을 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귀국 사신이 먼 길에 수고롭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더구나 앞서서 접대하고 위로하는 일이 빈번하여 매번 길가는 짐이 일찍 출발하는 데 방해되었다. 그러므로 전년에 되돌아 올 적에는 다만 세 분의 대사가 도착하면, 상관(上官)이 된 자가 음식을 진설하지 않고 5일 분의 물자를 공급만 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그 사례대로 오가는 사이에 음식을 진설하지 않는 것이 어떠할지? 그러나 오사카〔大坂〕 및 양도(兩都)에 처음 도착하는 날과 그 나머지 큰 고을에서는 모름지기 예전 규정을 준수하여 진선(進膳) 연향(宴饗)을 할 것인데, 수고를 사양하지 말기 바란다. 그쪽의 중관(中官) 이하에게는 각 역참에서 음식을 접대할 것인데, 5일분의 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법전이 이미 엄중하여 각자 정밀하게 준비하고 또 풍성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지방마다 생산되는 것과 생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며 철마다 익는 것과 익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일정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야 또한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이번에는 모름지기 주방에서 일을 하는 관료에게 음식의 많고 적음이나 가부를 책망하여 다투지 말게 하고, 또한 비록 많이 쌓아 놓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적으면 버리고 가는 것이 가장 무익하니, 각처에 도착하여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알리고 타일러 주어서 상의하여 보내주게 하도록 바람. 간곡하게 회답해 주시기 바람.

왜인 등록의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의 조례.

一. 대군(大君) 어전의 빙물(聘物): 준마(駿馬) 2필, 안장 및 여러 도구 갖추어. 응자(鷹子) 20연. 대단자(大緞子) 10필. 대유자(大繻子) 10필. 생조포(生照布) 30필. 흰 모시베〔白紵布〕 30필. 검은 삼베〔黑麻布〕 30필. 흰 명주〔白綿紬〕 50필. 범 가죽 15장. 표범가죽 20장. 인삼 50근. 청피(靑皮)³⁷⁾ 30장. 어피(魚皮; 상어껍질)

100장. 채화석(彩花席) 20장. 각색 붓 50자루. 색지(色紙) 30권. 참먹〔眞墨〕 50홀(笏). 청밀(淸蜜) 10단지〔壺〕. 황밀(黃蜜) 100근.

一. 저군(儲君) 앞으로: 응자 10연. 준마 2필, 안장 및 여러 도구 갖추어. 인삼 30근. 범가죽 10장. 표범가죽 15장. 대단자 10필. 백릉(白綾) 20필. 흰 모시베 30필. 검은 삼베 15필. 청피 15장. 어피 100장. 각색 붓 50자루. 참먹 50홀. 화연(花硯) 5면(面).

一. 도오조오규우〔東照宮〕 공폐(供幣): 말 1필. 유지(油紙) 6장. 황촉(黃燭) 2쌍(雙). 큰 촛대〔大燭臺〕 1쌍. 면석(面席) 2장. 홍사라(紅紗羅) 1권. 은향합(銀香盞). 백단부용향(白丹芙蓉香).

一. 통신사의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오색지 50권. 황모필 100자루. 상화지(霜花紙) 100권. 화석(花席) 10장. 참먹 100홀. 유둔(油氈) 5장.

一. 다이유잉〔大猷院〕 묘공(廟供): 신한(宸翰)의 편액과 제문(祭文). 그 편액에는 ‘영산법계승효정원(靈山法界崇孝淨院)’이라 적음. 금등롱(金燈籠) 쌍기(雙基). 큰 촛대〔大燭臺〕 1쌍. 은향합(香盒) 1. 백단(白丹) 1근. 금단(錦段) 3필. 사홍라(紗紅羅) 1권. 화석(花席) 10장. 백랍촉(白蠟燭), 황촉(黃燭), 대화촉(大花燭). 부용향(芙蓉香). 유둔(油氈). 폐백(幣帛).

전물(奠物): 호두, 건울(乾栗:말린 밤). 백임(白荳:참깨). 밀(蜜:꿀). 룡분(菱粉:마름 가루). 조(棗:대추). 진(榛:개암). 해태(海苔:김). 송자(松子:잣). 생울(生栗:생 밤). 건시(乾柿:곶감) 따위.

악기(樂記): 금(琴:거문고). 슬(瑟:큰거문고). 소(簫:통소). 어(敍) 받침대와 함께. 축(柷) 받침대와 함께. 관(管). 적(簃:피리). 약(簫:피리). 지(箎). 표(瓢). 훈(塤).

一. 통신사의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명주 20필. 채지(彩紙) 50권. 유둔 5장. 상화지(霜花紙) 100권. 화지(花紙) 100권. 화석(花席) 10장. 황모필 100자루. 참먹 100홀.

一. 대군(大君) 앞으로 세 사신의 헌물(獻物): 범 가죽 5장. 인삼 10근. 조포(照

37) 청피(靑皮): 청피는 본디 약재로 사용하는 제주도 특산물인 청귤(靑橘)의 껍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계량 단위가 ‘장(張)’으로 되어 있다. ‘장(張)’은 짐승의 가죽을 헤아리는 단위이다. 따라서 이 청피(靑皮)는 왜관 무역에 종종 사용되었던 청서피(靑鼠皮, 靑黍皮)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청서피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방한용 귀마개(耳掩)를 만드는데 소중하게 사용되었다.

布) 10필.

一. 저군(儲君) 앞으로 세 사신의 헌물: 범 가죽 5장. 인삼 10근. 조포 10필.

이번에 선물을 주고 문안할 관원은 아래에 기록한 바와 같음. 그러나 우리나라 집정(執政)은 당초에 정해진 인원이 없어서 폐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없음. 지금은 저군(儲君)이 위에 있어서 그 사부(師傅) 역시 집정의 반열에 속하니, 간곡히 바라건대 다시 품신하여 지금 기록한 것을 실제 인원으로 여기지 말며, 짐짓 소견을 바칠 따름임.

대집정(大執政): 이나바 마사노리〔稻葉正則〕 오찌공〔越智公〕.

집정(執政): 오오구보 다다또모〔大久保忠朝〕 후지공〔藤公〕. 훗다 마사또시〔堀田正俊〕 기노공〔紀公〕. 이따꾸라 시게미찌〔板倉重通〕 미나모또공〔源公〕. 아베 마사오〔阿部正武〕 미나모또공〔源公〕.

봉행(奉行): 마쓰히라 노부오키〔松平信興〕 미나모또공〔源公〕. 이나바 마사야스〔稻葉正休〕 오찌공〔越智公〕. 가네다 마사가쓰〔金田正勝〕 미나모또공〔源公〕. 나이또오 시게요리〔内藤重頼〕 후지공〔藤公〕.

미시게이잉〔西京尹〕 고다 다다쇼오〔戸田忠倉〕 후지공〔藤公〕.

집정에게 예조에서 보내는 별폭(別幅): 백조포(白照布)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 가죽 2장. 붓 30자루. 유둔 3권(卷). 떡 20홀. 화석 5장. 응자(鷹子) 1연.

봉행에게 예조에서 보내는 별폭: 흰 명주 10필. 백조포(白照布) 10필. 검은 삼베 5필. 범 가죽 1장. 붓 20자루. 떡 10홀. 응자 1연.

세 종실(宗室)에게 세 사신이 주는 물품: 응자 1연. 인삼 1근. 범 가죽 1장. 백조포 5필. 작은 칼(小刀子) 1자루. 붓 20자루. 떡 20홀.

집정과 봉행에게 세 사신이 주는 물품: 흰 명주 5필. 조포 5필. 유둔 1권. 채지 3권. 붓 20자루. 떡 10홀. 석린(石鱗) 1근. 인삼 1근. 범 가죽 1장.

그 나머지 접위관반(接慰官伴) 및 시장(侍講) 의관(醫官)과 사원(寺院)의 승관(僧官)에게 모두 세 사신이 선물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 그 선물 물품에 많거나 적음이 있는 것은 모름지기 시의(時宜)를 준수하기 바람. 전년에는 토산물로 하였는데 대략 아래의 기록과 같음.

범 가죽. 표범 가죽. 청피. 양피(羊皮). 인삼. 단자(段子). 붓. 먹. 채지. 부용향. 조포. 흰 명주. 유둔. 석린. 황밀. 청밀. 방백자(房栢子), 건울(乾栗). 모시 베.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도해역관 변이표 등이 가져온 도주의 별단과 봉행 등의 별단 및 왜인에 베껴 적은 전례를 보면, 조목으로 나열한 것이 비록 많으나 모두 부질없는 이야기이고,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그 대략만 들어서 뒤에 적었으니 이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一. 도주의 별단 가운데 이른바 선대군(先大君)의 묘호(廟號)는 겐유잉(嚴有院)입니다. 어필을 청하여 얻어서 편액을 만들어 증정해 달라고 하였는바, 이미 전례가 있어서 방색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일이 중대한 관계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함.

一. 별단에 이른바 등룡(燈籠), 악기(樂記) 등의 물건은 한결같이 예전 사례를 준수하되, 등룡에 새기는 글의 글자 모양은 먼저 그 초본을 내려주면 모양의 높낮이를 우리쪽의 제도에 따라 제작하겠다고 하였는바, 등룡에 새기는 명문 또한 전례가 있으니 이제 방색함이 적당치 않으니, 승문원에 명하여 시일에 맞추어 지어 내어 초본을 베껴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함.

一. 콘겐도오(權現堂)와 다이유잉(大猷院) 두 곳에는 단지 분향만 하고 겐유잉(嚴有院)에 치제(致祭)하는 일은 역관의 수본에 이미 조정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함.

一. 별단에 이른바 ‘예조(禮曹)의 도장을 찍은 종이 몇 장’이라 한 것은 아마도 공성첩(空成貼)을 말한 것인 듯한데, 이는 역관들이 이미 다투어 고집하였으니,

이전 그대로 방색하는 일로 다시 더 엄하게 신칙함.

一. 별단에 이른바 오사카〔大坂〕성 및 양도(兩都)에서 대기하며 접대하는 관원에게 사신 등이 경의를 표하는 일과, 왜인 사공(沙工)이 세 사신의 배에 나누어 타고서 조수와 바람을 살피는 일과, 통신사 일행이 타는 말을 몰아 달리게 함으로써 죽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일, 일행의 인원이나 일꾼이 간혹 여관 밖에 함부로 다니거나 혹은 금지된 물품을 몰래 사고팔거나, 혹은 방문에 침을 뱉고 기둥에 글을 파서 새기는 등의 몇 가지 일은 사신에게 부분하여 보냄이 마땅함.

一. 별단에 이른바 사행은 반드시 5월 이내로 발선(發船)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함.

一. 별단에 이른바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쓰며 말을 잘 몰고 활을 잘 쏘며 말을 잘 타며 팔힘이 있는 자를 데려 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여 정할 일로서 이미 분부하였음.

一. 별단에 이른바 상상관(上上官) 3원(員)에 좋은 의원과 역관의 인원을 더하는 것은 무방하나 쓸모 없는 인원은 데려오지 말라고 운운하였는바, 상상관 운운한 것은 곧 당상역관(堂上譯官)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상과 당하 역관 및 의관(醫官) 등을 추가하여 보내는 일은 변통에 관계된 일이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며, 이른바 쓸데없는 인원이란 한 조목은 사신에게 분부함.

一. 봉행(奉行) 등의 별단 가운데 ‘세 종실(宗室) 및 집정 몇 사람에게 세 사신이 선물하는 물품이 많으나 무명과 호두, 잣, 화석(花席), 유둔(油屯), 설면(雪綿), 패향(佩香), 청심원(淸心元) 등은 동도(東都)의 대관인(大官人)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매〔鷹子〕, 인삼, 범 가죽, 표범과 담비 가죽, 양 가죽, 청서피(靑黍皮), 백조포(白照布), 붓, 먹, 능단(綾段), 색지(色紙), 어피(魚皮), 녹두, 백밀(白蜜), 작은 칼〔小刀〕은 좋다’고 하였는바, 이른바 ‘세 종실’은 곧 저쪽에 대납언(大納言) 따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청심원 이상의 물품은 이미 쓸모가 없다고 하였으니 선물할 필요가 없어서 사신들에게 분부하여 납언 등에게는 사용하지 말

라고 하며, 그 가운데 매와 인삼, 범 가죽, 모시베, 붓, 먹, 작은 칼은 이미 전례가 있으며, 색지와 어피, 녹두, 백밀은 일행 중에서도 또한 가져가니, 변통하여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함이 없을 듯하나, 표범 가죽과 양가죽, 담비 가죽, 청서피, 능단은 비록 전례에 없는 물건이지만 저쪽에서 이미 이름을 들어 적어서 에도(江戸)에 환심을 사려는 계획으로 간절히 바라는지라, 먼 외국 사람의 청을 또한 전연 방색하는 것이 불가하니, 양가죽, 표범 가죽, 청서피 등 세 종류를 간략하게 마련하는 것도 무방할 듯함.

一. ‘세 사신의 배에 사용할 큰 밧줄과 쇠뿔은 저희 고을에서 실어 보내겠다’고 하였으며, ‘세 사신의 의복 장롱은 이전부터 파손되었으니, 이번에는 장롱이 몇 바리이든 스스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바, 위 항목 등의 물건을 저쪽으로 하여금 장만 하여 만들게 하는 것은 아주 매우 구차하니, 사신으로 하여금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함.

一. 대군(大君) 앞으로 보내는 서계(書契)를 넣어 담을 꿰썩은 정밀하게 만들고 싸는 보자기도 극도로 화려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바, 일찍이 이미 신칙하여 지금 막 정밀하게 만들고 있음.

一. ‘사신 일행이 데리고 가는 하인들에게 모름지기 새 옷을 입혀 달라’고 하였는바, 저쪽에서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형편없게 하여서는 불가하니, 원역(員役) 이하의 따라가는 종들이 착용하는 의복은 모름지기 선명하게 하라는 뜻을 사신 및 본도 감사에게 각별히 분부함.

一. ‘폐백으로 사용하는 말은 예단(禮單)의 말 이외에 예비용의 말 서너 필을 추가하여 보내달라’고 하면서, 원하는 말의 색깔은 얼룩(駮), 검정(驪), 붉은 빛(紫), 누런 빛(黃)이라 하였는바, 말의 털빛은 그 원하는 바대로, 위라(月羅:駮-얼룩말), 가라(加羅:驪-검정말), 자류(紫驪:월따-붉고 검은 말), 고라말(古羅) 등의 말을 가려서 보내되, 예비용으로 더 보내는 일은 변통에 관계된 일이라 묘당에 품의하여 조치하게 함.

一. ‘수륙(水陸) 각지의 역참에서 대기하면서 음식을 접대하는 사이에 조리하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전례대로 5일 지공(支供)으로 하고, 오사카 성과 양도(兩都)와 그 나머지 큰 고을에 이르러서는 숙공(熟供)으로 잔치를 베풀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5일 지공의 잡물을 받아들일 때 요리사들이 간혹 많고 적은 것을 다투어 버리고 가게 되는 것은 가장 무익하니 바라는 바가 있으면 미리 알려 깨우쳐 달라'고 운운한 등의 말은 아주 매우 자잘한 일이라 굳이 거론함이 적절치 않은데, 저쪽에서 이미 나열한 조목 가운데 기록하였으니, 오직 사신이 저쪽에 도착한 뒤에 편의대로 시행하기에 달려 있음.

一. 등룡과 악기 등의 물건에 사용될 물자에 대한 몇 건의 일은 왜인의 별단 및 역관의 수본 가운데 모두 거론하지 않았고, 단지 저쪽의 등록 가운데 '등룡 쌍기(雙基)'라고 하였는바, 이는 임진년(1652)에 도주가 별구청(別求請)한 등룡 및 을미년(1655) 통신사 때 등룡을 가져간 두 가지 일을 합하여서 '쌍기(雙基)'라고 일컬은 것이거니와, 이번에는 겐유잉〔嚴有院〕에만 치제하니 등룡과 악기 등의 물건은 각기 한 건씩 만들어 보냄이 합당함.

一. 왜인이 베껴 적은 전례의 받기〔件記〕를 일일에 대조하니, 그 가운데 물건은 대동소이한바,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전례를 따라 마련함이 마땅하거니와, 말단에 기록한 바 저쪽의 집정과 봉행 등의 성명이 10인 이외에 이른바 대집정(大執政) 1인, 서경윤(西京尹) 1인, 봉행 2인의 이름을 추가하여 적은 것이 4인에 이르는바, 이전에 있었던 10인의 사례와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등본 가운데 '이번에 선물로 위문할 관원은 아래에 적은 바와 같으나, 그러나 지금 저군(諸君)이 있어서 그 사부(師傅) 또한 집정의 반열이라, 간곡하게 모름지기 다시 품신하여 지금 기록한 것을 실제 인원이라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고 운운한 이야기는 아주 매우 모호하여 또렷하게 알 수가 없고, 역관의 수본 가운데 '그쪽의 베껴 적은 글 가운데 집정 및 봉행과 사부를 아울러 14인의 성명을 적어서 내어 보여주었다'고 하였는바, 이른바 사부라는 것은 14인 가운데 있는 듯하니, 도해역관(渡海譯官)이 서울에 들어온 뒤에 다시 상세히 물을 계획이거니와, 도주(島主)가 이미 역관 중에 당상관과 당하관 및 좋은 의원을 추가로 데려와 달라고 하면서, 은연히 저쪽의 4인을 추가하여 적어 넣었는바, 그 정상과 태도가 아주 매우 교활한데, 대집정과 서경윤(西京尹)과 봉행 등이 과연 그런 사람이 있어서 반열에 끼여 있다면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여 응접하는 사이에 편치 못할 사단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명목을

만들어 글어 적어 놓았으니, 저쪽에서 다투어 고집할 것은 반드시 있게 될 형세이고, 그 사이에 다툴 것은 단지 서계를 증정하여 주는 것이며 일의 체면에 특별한 손상됨이 없다면, 집정과 봉행의 사례에 의거하여 마련함이 마땅할 듯한데, 일이 변통에 관계되는지라 모두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 강희 20년(1681) 12월 21일 동부승지 신 송창(宋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이제 이번 사행(使行) 때 일본에서 요청한 편방(扁榜; 편액) 한 조목은 이미 탑전(榻前)에서 확정하였거니와, 역관과 의관을 추가하여 보내는 것은 이미 일의 체면에 방해됨이 없고 또한 이미 지난 옛날의 사례가 있으니 그 요청을 따라 줌이 적절하며, 예단 폐백에 사용할 말을 예비로 추가하여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전례에 없는 바라 들어주는 것은 불가하며, 집정과 봉행 등 10인 이외에 전에 비해 4인을 추가 수록하고 아울러 선물 증정을 요청한다고 한 것은 저들의 교활한 정상과 태도를 예측하여 알 수 없으니, 사신이 저쪽에 도착한 뒤에 만약 대응하기에 어려운 사단이 있으면 또한 매정하다는 우려가 없지 아니하니, 짐짓 그 말대로 마련하여 보내어서 사신이 형세를 보아 잘 조처하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정월 초8일 우부승지 신 이인환(李寅煥)³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여 판하(判下)하였음. 이제 이번 통신사 때 역관과 의원을 추가로 데리고 가는 일과 예단의 폐백 말을 예비로 추가하여 보내는 일과, 집정과 봉행 등 10인 이외에 4인을 추가 기록하여 선물을 증정하여 주는 등의 일은, 묘당에서 이미 복계(覆啓)하여 확정하였거니와, 역관은 당상관과 당하관 각 1인, 의원 1인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선발하게 하며, 예단 폐백의 말을 예비로 차출하여 에도(江戸) 들여보내는 것은 비록 불가하나, 서울에서 동래로 내려 보내는 사이에 혹 병이나 절뚝거릴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본도에 명하여 예비로 차출한 말 두 세필을 가려서 대기하게 하였다가, 서울에서 내려 보낸 말이 만약 혹시라도 병이 있으면 바꾸어 보냄이 마땅하며, 집정과 봉행 중에 만약 교체된 사람이 있으면 사신이 저쪽에 도착한 이후에 서계를 고쳐 적는 것은 실로 불편하니 집정과 봉행 등 14인의 직함과 성명은 서계의 지면에

38) 이인환(李寅煥, 1633-1699): 경주 이씨로 자는 문백(文伯), 호는 생곡(生谷)이다. 현종 6년(1665)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과 대사성, 도승지를 역임하고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짐짓 적어 넣지 않고 있다가 그 때에 임하여 적어 줌이 편하고 적당할 듯하니, 이렇게 분부하여 거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정월 15일 동부승지 신안후(安垺)³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훈련도감의 관문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가 데려 가는 마상재(馬上才) 2인은 오순백(吳順伯)과 형시정(邢時挺)⁴⁰⁾으로 차출하여 정하는 일임.

신유(1681) 12월 25일

예조에서 계달하기를, “이제 이번 통신사 때 일본의 콘젠〔權現〕묘와 다이유잉〔大猷院〕과 겐유잉〔嚴有院〕에 분향 및 향전(香奠)을 할 때의 폐백과 사신의 예단 등의 물품은 본조에서 마련하고, 세 곳에 사용될 과일과 제물은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호조에서 마련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윤택한다” 하셨습니다.

신유(1681) 12월 27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 때의 분향(焚香)과 향전(香奠)에 들어갈 물품 등은 짐짓 을미년(1655) 통신사 때의 물품 수량으로 마련한다고 계하하여 이미 분정하였는데, 왜인의 별단으로 말미암아 콘젠〔權現〕묘와 다이유잉〔大猷院〕두 곳에는 단지 분향만 하고, 겐유잉〔嚴有院〕에만 치제(致祭)하는 일로 계하하였기로, 세 곳에 사용될 각 항목의 물품은 당초 분정한 수량을 참작하여 변통해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後錄)하였으니, 그 중에 미비한 물건은 해조 및 각 해당 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거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후록: 콘젠〔權現〕묘의 분향 폐백; 준마 1필. [이미 해당 관청에서 마련함]. 분향에 사용될 붉은 홍상건(紅床巾:상을 덮을 붉은 색의 수건) 사라(紗羅) 1필. 주홍

39) 안후(安垺, 1636-?): 순흥(順興) 안씨로 자는 자후(子厚)이다. 현종 10년(1669) 정시에 급제하여 승지를 역임하였다.

40) 형시정(邢時挺, 1647-?): 장흥(長興) 형씨로 자는 호경(豪卿)이다. 인조 25년(1647) 별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색 곡수좌(曲水座)의 면지(面紙) 2장. 백단향(白丹香) 2냥(兩). 은향합(銀香盒) 1부(部). 큰 촛대[大燭臺] 1쌍. 향로 1좌[坐].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황촉(黃燭) 2쌍. [해조에 마련하고 있음]. 면석(面席) 2좌. [본도에서 마련하고 있음].

승인(僧人)에게 체면치레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흰 무명 50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사신의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황모필 각색 아울러 100자루.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오색지(五色紙) 50권.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백지 100권. 유둔(油屯) 10부. 채화석(彩畵席) 20장. [이상 이미 전라도에서 마련함]. 유매먹(油煤墨) 100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석린(夕麟) 20근. [이미 황해도에서 마련함].

다이유잉[大猷院]의 분향 폐백: 준마 1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고 있음]. 분향에 사용될 큰 촛대 1쌍. 향로 1좌. 은향합 1부.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황촉 2쌍. [해조에서 마련하고 있음]. 홍상건 사라 1필. 주홍 곡수좌 면지 2장. 백단향 2냥. [이상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면석 2좌. [본도에서 마련하고 있음].

승인(僧人)에게 체면치레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흰 무명 30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사신의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황모필 각색 아울러 100자루. [이상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오색지 50권. 백지 100권. 유둔 10부. 채화석 20장. [이상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유매먹 100홀. 석린 20근. [이상 이미 황해도에서 마련함].

겐유잉[嚴有院] 향전(香奠)에 사용할 물건; 홍상건 사라 1필. [해조에서 마련하고 있음]. 주홍 곡수좌 면지 10장 중에서 [8장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하였고, 2장은 해조에서 마련하고 있음]. 큰 촛대 1쌍. 향로 1좌.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백단향 2냥. 은향합 1부.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하고 있음]. 백자 잔과 잔대 구비하여 1죽(竹). 대접 3죽. 보시기 3죽. [이상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배상(排床)에 사용될 물건; 백랍촉(白臘燭) 3쌍. 큰 부용향(芙蓉香) 3쌍.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황촉 5쌍. 면석 3좌. 유둔 2번. 유지 2권. 백지 10권. [이상은 본도에서 마련하고 있음]. 전(奠)을 드릴 때의 폐백; 금단(錦段) 3필. 대화촉(大花燭) 2쌍. 큰 부용향 30매. 채화석 10장.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석린 10근. [이미 황해도에서 마련함].

승인에게 체면치레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흰 무명 50필. [이상 해조

에서 마련하고 있음).

사신의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황모필 각색 아울러 10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하고 있음]. 오색지 50권. 백지 100권. 유둔 10부. 채화석 20장. [이상 본도에서 마련하고 있음]. 석린 20근. 유매떡 100홀. [이상은 황해도에서 마련하고 있음]. 강희 20년(1681) 12월 27일 동부승지 신 송(宋)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술(1682) 정월 초3일

一. 이조에서 계달하기를, “통신부사(通信副使)가 대신에게 물으니, ‘해당되는 품계의 관원 중에는 이미 합당한 사람을 얻기 어려운데, 종사관 이언강(李彦綱)⁴¹⁾이 이미 4품의 직급에 승진하였으니 종사관으로는 적절치 않은지라, 부사(副使)로 승격함이 실로 합당하다’ 하니, 감히 계달드립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비변사]

一. 전교에 “지난해에 예조에서 일본에서 수필(手筆)을 청하여 얻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이라고 복계하였지만, 대신(大臣)에게 여러 날 잇달아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품의하여 정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해가 이미 바뀌었고 출발할 기일 또한 멀지 않으니, 반드시 속히 품의 조처한 뒤에라야 적어서 지급할 문자를 차례로 거행할 수 있으니, 이 일을 대신에게 물어 오늘 인견(引見)할 때 품의 확정함이 좋겠다”고 하셨음.

임술(1682) 정월 초5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지난 12월 26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25일 접위관 신령현감(新寧縣監) 남치훈(南致熏)의 이첩 내용에, “문위역관의 호행(護行) 차왜 후지

41) 이언강(李彦綱, 1648-1716): 전주 이씨로 자는 계심(季心)이다. 숙종 4년(1678)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682년 통신 부사로서 일본에 다녀왔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나리히사(藤成久)의 원역 등의 다례를 이달 25일 전례대로 베풀어 행한 뒤에,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동 차왜가 역관을 시켜 말을 전해 오기를 ‘통신사의 사행 때 시행할 절목은 일찍이 이미 자세하게 문위역관 등에게 언급하였고 또 별단으로 적어 바쳤는데, 동 별단에 진술한 조건을 시행하는 여부를 속히 회답으로 내려주시며, 세 사신의 직함과 성명 및 원역(員役)이 누구누구인지 데려오는 인원의 많고 적음 또한 모름지기 진작 적어 보여 주어 도중(島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운운하였다”고 이첩한다 하였음. 동 서계 2통과 별폭 3통 등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차왜의 말이 별단 가운데 진술한 조건을 시행하는 여부를 속히 회답으로 내려달라고 하였으며, 세 사신의 직함과 성명 및 원역이 누구누구인지 데려오는 인원의 다과를 진작 글로 적어 보여줌으로써 도중에 통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왜인의 별단에 대한 축조(逐條; 조목별 검토) 회계(回啓)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는 일로 복계하여 윤희를 받았으며, 세 사신의 직함과 성명은 사행의 기일이 아직 멀고 혹시라도 교체되는 일이 없지 아니하여, 그 때 임하여 적어 주는 일로 또한 복계하여 모두 이미 행회(行會)하였는데, 회하(回下)의 내용이 미처 저쪽에 도착하기 전에 이런 치계가 있었으니, 이런 뜻을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정월 초5일 동부승지 신 송창(宋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임술(1682) 정월 15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초7일 성첩한 장계. 지난 12월 29일 나오다가 거제 경내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2척 및 다대포로 나갔던 금도왜(禁徒倭)의 작은 배 1척을 모두 영술하여 관수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훈도 박유년(朴有年)과 별차한천석(韓天錫) 등에게 명하여 다시 문정하라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선격(船格)은 별차가 문정한 것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거니와, 관수왜(館守倭)가 사람을 시켜 만나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이제 도중(島中)에서 나온 사서(私書)를 보니 통신사가 에도(江戸)에 들어갈 때의 절차를 에도에 품의하였더니, 집정 등의 회언

(回言) 내용에 「관백(關白)이 일광산(日光山)에 전알(展謁)하기 전에 다른 나라 사신이 먼저 분향을 행하는 것은 미안할 듯하니, 이번에는 일광산 분향과 겐유잉〔嚴有院〕 치제 등을 모두 하지 말게 하되, 폐백과 향축은 전례대로 가져오며, 등롱과 화병과 제수는 가져오지 말라」고 운운하였으며, 또한 종전에 사행이 오는 도중의 각 역참에서 숙설(熟設)⁴²⁾로 접대하였던 물자를 세 대사(大使)가 일찍이 젓가락을 대지 않았는바, 수륙(水陸)의 접대 물자가 곧장 공허하게 버려지게 되었기로, 이번에는 건물(乾物)로 매 5일마다 수량을 계산하여 진배(進排)할 계획이거니와, 간혹 숙공(熟供)⁴³⁾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으니, 무릇 요리가 비록 입에 맞지 않더라도 억지로 참아 받아들이고, 또한 도구와 기계를 받드는 여러 집사 이외에 그 밖의 긴요하지 않은 사람의 인원수를 넉넉하게 하여 데려올 필요가 없이 모두 3-4백 인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그 가운데 역관과 의관은 혹 1-2원을 전에 비하여 인원수를 추가하되, 이른바 의관은 반드시 의술이 정밀하고 묘한 자를 데려와야만 우리나라 의원과 병을 논하여 상의할 수 있으며, 온 나라의 병든 사람이 우러러 바라는 자가 또한 많거늘 만약 글로 병을 논할 줄 모르고 의술로도 병든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귀국의 광채를 손상시킬까 염려된다'고 하면서 그 한 장의 글을 내어 보여주었는바, 대저 관수에게 보낸 사서의 뜻과 대략 동일하였는데, 피봉에 원래 받는 곳이 없거늘, 그 까닭을 물었더니, 관수왜의 말이 '저에게 보내 오는 사서(私書)에는 왜인의 글 사이에 이어(俚語:속어)가 많아서 환하게 통하기가 어렵기로 첨지에게 보이기 위하여 별도로 진서(眞書:한자)로 만들었다'고 하였음. 동 왜인이 또 말하기를 '전일에 요구한 바 각종에 대하여는 이미 허락을 받아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거니와, 통신사 때 사용할 것이 매우 많아서 이제 또 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그 발기(件記)를 보여주었는데, 표범가죽 30령(令), 생 모시베(生苧布) 70필, 흰 모시베 10필, 꼬리를 갖춘 향초피(鄉貂皮:조선 담비가죽) 100령, 양가죽 150령, 대추 3섬, 죽은 범 몸 전체 1마리 등의 무역을 요구하거늘, 비직 등이 '전에 요구한 것을 그대로 허락한 뜻은 우연이 아니지만, 이제 또 다시 구하는 물건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이 지루하게 될 뿐 아니라, 범이라는 짐승은 잡기가 매우 어렵고, 비록 간혹 사냥하여 잡더라도 서북 지방에서 몸 전체를 운반하여 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 더욱이 무역 요청을 고하여 진달하

42) 숙설(熟設): 음식 재료를 조리(調理)하여 진설함을 가리키는 말. 조리하지 않은 음식 재료는 건물(乾物)이라 일컫는다.

43) 숙공(熟供): 음식재료를 조리하여 접대함. 이는 조선과 일본의 조리법이 다르고 서로의 취향이 다름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오해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다.

기가 어렵다'고 하였더니, 관수왜가 재삼 간절하게 말하기를 '무역 요구가 너무 번거로운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이 한 조목만으로도 또한 도중에서 헛되이 쓰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거늘 이를 보살펴주지 아니하고, 가격에 맞추어 교환하는 물품을 오히려 아까워하니 일이 매우 섭섭하다. 바라건대 막지 말고 속히 고하여 그대로 허락해 주시되, 몸 전체에는 소금을 입혀서 주시고, 끝내 잡기가 어려우면 혹 한 마리의 뼈라도 전량을 찾아 달라'고 하면서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였음. 별단의 글 한 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운운하였기에 감봉하여 올려보내거니와, 등릉은 감동역관이 이미 내려와서 들어갈 물자와 인력을 현재 막 모아놓고 전본이 나오기를 기다려 즉시 일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제 만들어오지 말라는 통보가 있으니 참으로 다행임. 무역을 요구하는 물종은 무역을 허락할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관수왜의 말이 일광산(日光山) 분향과 겐유잉〔嚴有院〕치제 등의 일을 모두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폐백과 향축은 전례대로 가져 오되 등록과 화병과 제수는 가져 오지 말아 달라고 운운하였다고 하는데, 이대로 시행하며, 또한 종전의 사행에는 각 역참에서의 수륙의 접대 음식을 헛되이 버리는 지경으로 돌아갔으니, 이번에는 건물(乾物)로 5일 마다 진배하겠다고 하였으며, 집사 외에 긴요하지 않은 사람의 인원수를 넉넉하게 데려 올 필요가 없으나, 그 가운데 역관과 의관은 인원수를 추가하되, 의관은 반드시 의술이 정묘한 자를 데려와 달라고 운운하였는바, 이런 등의 일은 전에 왜인의 별단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사신 일행이 모두 3-4백을 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은 곧 각 항목의 원역(員役) 및 선격(船格) 등을 가리킨 것인데, 긴요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되도록 간략하게 데려가는 일을 사신에게 분부하며, 통신사의 사행 때 사용할 것이라고 표범 가죽 30령, 생모시베 70필, 흰 모시베 10필, 꼬리를 갖춘 향초피 100령, 양가죽 150령, 대추 3섬, 범의 뼈 온몸 전체 1마리 등의 물자의 무역을 요구하였는바, 근래에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비록 굵혀서 그 청을 따라주는 것은 불가하나, 이미 사행 때 사용할 것이라 일컫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그 원하는 대로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해조 및 본도와 강원도에 아울러 분부하되, 그 가운데 표범 가죽 30령은 과다한 듯하니, 10령을 줄여 무역을 허락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정월 15일 동부승지 신 안후(安垺)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一. 도주(島主)의 별단(別單)

一. 어제 동도(東都)의 통보가 도착하였는데, 여러 집정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일광산(日光山)에 향을 사르는 것과 겐유잉〔嚴有院〕에 치제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운운하였고, 다만 비록 향을 사르고 치제하는 일이 없더라도 두 묘(廟)에 폐백을 봉헌하는 의식⁴⁴⁾에는 모름지기 그 예가 있어야 하나, 그러나 그 바칠 토산물은 바라건대 가져옴이 적절할 듯하며, 다만 그 구리 등경(燈檠)은 제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一. 수륙의 각 역참에서 전년에는 세 대사 및 상관(上官)에게 음식을 접대하였으나, 그러나 끝내 젓가락을 대지 않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으므로, 이번에는 모름지기 찬품(饌品)을 지급할 [이른바 5일 분량의 음식물과 같은 것] 것인데, 나머지 내용은 우리 쪽에서 말로 이야기할 것임.

一. 이번에는 쓸데없는 관원을 데려오지 말고 3-4백명을 지나지 않도록 함이 좋겠음. 지난번에 고한 네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 및 좋은 의원과 역관은 한 두 인원을 추가하여 와도 무방하나, 그래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으니 모름지기 재삼 간곡하게 품의하여 줄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번에 동래부사가 올려보낸 도주의 별폭을 보면, 조목으로 진술한 이야기가 관수왜가 말한 바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으므로 이미 본부의 장계에 대한 복계에 이미 상세하게 적었거니와, 이제 이번 별단 가운데 두 묘(廟)에 봉헌하는 폐백 운운하였으나, 콘젠도오〔權現堂〕와 다이유잉〔大猷院〕과 겐유잉〔嚴有院〕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른바 두 묘를 뚜렷하게 알 수 없으니,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왜 등에게 탐문하여 시행함이 마땅한 곳 두 곳을 구별하여 탐지한 뒤에 장계로 알리라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정월 15일 동부승지 신 안후(安垺)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一.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 때 집정과 봉행 등에게 증정할 물품을 당초에 등록에 의거하여 집정 4인과 봉행 6인의 수로 마련하였는데, 문위역관이 가져온 왜인 등의 별단으로 말미암아 집정 1인, 봉행 3인에게 증정할 예물을 추가로 마련하여 보내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으며, 세 종실 및 집정 등에게 줄 사

44) 원본의 ‘議’는 ‘儀’의 오기인 듯하다.

신의 사예단(私禮單)으로 양가족, 표범 가죽, 청서피 등 3종을 왜인들이 청한 바대로 마련하여 보내는 일 또한 이미 확정하였기로, 참작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며, 집정과 봉행에게 증정할 응련(鷹連)은 전일에 분정한 응련에 이미 추가된 수가 있으니 변통하여 들여 줄이 어떠할지?

후록:

집정 1인에게 증정할 물품: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2장. 황모필 3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유매떡 20홀. 유둔 3부. 화석 5장. [이상은 본도에서]. 응자(鷹子) 1연.

봉행 3인에게 각각 증정하는 물품: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유매떡 10홀. [본도에서 마련함]. 응자 1연.

사신의 사예단: 세 종실 및 집정 5인에게 각각. 양가족 30령. 표범 가죽 1장. 청서피 5장.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강희 21년(1682) 정월 15일 동부승지 신 안후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술(1682) 정월 21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번 정월 15일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왜선이 나왔기에 훈도 박유년과 별차 한천석 등에게 명하여 문정(問情)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동 왜선 1척의 비선에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12명 등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사연 및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가서 관수를 만났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제 도중에서 온 사서를 보니, 전일에 문위역관이 되돌아갈 때 통신사의 절차별단(節次別單) 두 통의 글을 보냈는데, 동 회답 별단을 속히 들여 보내주어야 에도(江戸)에 보고하고 각 역참에 알려서 정제하여 대기할 수 있겠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문위역관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결정된 것이 없거니와, 동 회하(回下)가 비록 내도하더라도 단지 전하여 이야기할 뿐이지 어찌 조목을 나열하여 적어 주는 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무릇 사고가 있어서 서계(書契)로 진술하여 품의하면 서계로 회답하고, 별단으로 진술하여 품의하면 별단으로 회답하는 것은 그만 두지 못할 일일 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절목은 원래 예사로운 일이 아닌지라 허다한 곡절을 또한 어찌 입으로 전하여 승인하겠는가? 모름지기 이 뜻을 자세히 갖추어 고하여 진달해 달라’고 운운하였으며, 노인 1통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라고 치통하였음. 동 노인 1통은 감봉하여 올려 보내거니와, 별단의 조목을 확정하는 일은 이미 해조에서 계하한 말의 뜻을 역관들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차왜 등에게 언급하게 하였는데, 이제 도중에서 반드시 회답별단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바, 별단을 적어 줄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라고 운운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왜인의 말이 전일에 글로 적어 보낸 통신사의 절차에 대한 두 차례의 별단 회답을 들여보내라고 운운하였다고 하였거니와, 별단의 회답은 전례에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일찍이 문위역관이 가져온 왜인 등의 별단으로 말미암아 조목을 나열하여 복계하여 동래부에 행회하여 왜인에게 이미 전하여 이야기하였으니, 별도로 회답 글을 주는 일이 없다는 일로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정월 21일 동부승지 신 어진익(魚震翼)⁴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시행함.

임술(1682) 정월 18일

예조의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출발할 일정 및 배를 타는 길일(吉日)을 일관(日官)에게 명하여 가려 뽑으라고 하였더니, 출발 일정은 오는 4월 초2일 묘시, 배를 타는 것은 5월 12일 진시가 길하다고 하니, 이렇게 분부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계달하였더니 계달한 대로 시행하라 하심.

임술(1682) 정월 23일

45) 어진익(魚震翼, 1625-1684): 자는 익지(翼之), 호는 겸재(謙齋), 본관은 함종(咸從)으로, 판관 한명(漢明)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과 지평을 거쳐 벼슬이 호조참의와 승지에 이르렀다.

[당상역관 3원 외에 1원을 추가로 보내는 일을 오늘 탑전(榻前: 조정의 임금 앞)에서 확정했다고 함. 독축관(讀祝官)은 제술관(製述官)으로 이름을 지어 보내는 일을 계달(啓達)했다 함].

예조에서 계달하기를, “여러 등록을 상고하니 일찍이 을미년(1655)에 통신사를 들여 보내는 것과 출발 시기를 아울러 저쪽에 통보하였는데, 이제도 자문(咨文)을 보내는 일이 있어야 합당할 듯하니, 묘당에 명하여 논의하여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임술(1682) 정월 24일

비변사에서 계달하기를,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 두 해에 통신사를 들여보낼 때 모두 저쪽에 통보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문(衙門)에 자문(咨文)을 보내야 마땅하니 승문원에 명하여 미리 자문을 지어내고 재자관(賚咨官) 또한 해조에 명하여 차출하여 때가 되어 보내도록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임술(1682) 정월 25일

一. 이번 정월 23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을 때, 통신사가 타고 가는 배 세 척의 선범(船帆: 돛)을 통영 및 경상좌수영에 분부하여 삼승(三升)으로 만들어 지급하는 일을 탑전에서 확정하였음. [비변사와 선혜청으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에, “방금 해당 통신사의 사행 때 격군(格軍)과 집물(什物) 등을 다른 도에 분정하는 수량을 아울러 구별하여 베껴 보냈는데, 을미년(1655) 등록 가운데 전라도에 분정한 것이 격군 40명, 초둔(草屯) 42번(番), 산마(山麻) 379근 8냥, 숙마(熟麻) 791근. 숙선색(熟線索: 숙마로 만든 새끼줄) 1008발[把], 완풍석(莞風席; 돛으로 사용할 왕골 돛자리) 164닐[立]”이라 베껴 보냈거늘, 삼남(三南)이 모두 대동(大同)의 규정에 들어갔기로 본조에

서는 마음대로 가감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본청(本廳:대동청)에서 참작하여 분정하라는 뜻으로 선혜청에 통보하였는데, 선혜청의 관문 내용에, “해당 부족한 산마 1632근과 새로 마련하는 밧줄에 들어갈 산마 2515근을 전라도 좌우 수영에 분정한다 하였으며, 전라도에 분정한 숙마(熟麻) 791근은 함경도로 옮겨 분정한다 하였고, 부족한 완풍석 70납은 전라도 좌우 수영에 분정한다”고 관문을 보내왔으니, 위 항목의 을미년(1655) 등록에 분정한 수량 및 선혜청에서 고쳐 마련한 것을 아울러 상고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부산첨사에게로 보내며, 도내의 좌우 수영에도 분부하여 시행하되, 공문이 도부한 일시를 이문(移文)할 일. [전라 감사에게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에 “해당 통신사의 사행 때의 짐물 등을 다른 도에 분정하는 수량을 아울러 구별하여 등록을 보냈는데, 을미년(1655) 등록 가운데 공홍도(公洪道:충청도)에 분정한 것이 초둔 42번과 산마 379근 8냥, 숙마 791근, 숙마 선색(線索) 1008발, 완풍석 164냥”이라 하였거늘, 삼남은 모두 대동의 규정에 들어갔기로 본조에서 마음대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로 본청에서 참작하여 분정하라는 뜻으로 선혜청에 통보하였더니, 선혜청의 관문 내용에, “해당 부족한 정철(正鐵) 1075근을 공홍도로 분정한다”고 관문을 보내왔는데, 위 항목의 을미년(1655) 등록에 분정한 수량 및 선혜청에서 추가로 분정한 철물(鐵物) 등을 아울러 상고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부산첨사에게로 수송하되, 도부한 일시를 이문할 일. [공홍도 감사에게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선혜청의 관문 내용에 “해당 이번 통신사의 사행 때 전라도에 분정한 숙마 791근을 함경도로 옮겨 분정한다”고 관문을 보내왔는데, 통신사 출발 일정이 오는 4월 초3일이고 배를 타는 것이 5월 12일이니, 위 항목의 분정한 물건을 급속히 마련하여 부산첨사에게로 수송하되, 도부한 일시를 이문할 일. [함경 감사에게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일본국왕 앞으로 보내는 서계의 문서통을 은 장식에 주홍 칠로 1개, 국왕자(國王子)의 별폭 문서통은 일본국왕의 서계 문서통의 사례대로 1개를 전후로 마련하고, 집정 5인과 봉행 9인에게 보내는 서계 문서통은 흑칠(黑漆)에 납염(鑢染) 장식으로 각 1개,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서계 문서통은 흑칠에 납염 장식으로 하되, 도주 및 장로 1인과 수도서(受圖書) 3인 등의 서계는 아

올려 한 통에 넣는 일로 등록에 실려 있는데, 이 수량을 마련하고, 들어갈 보자기와 여러 도구도 전례대로 정밀하게 마련하며, 수직왜(受職倭)는 9인 가운데 4인을 줄여 5인으로 고쳐 마련하였으니, 지급할 붓을 이 수에 의거하여 마련하되, 겐유잉〔嚴有院〕의 치제는 시행하지 말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으니, 제문을 담는 통은 별도로 마련할 일이 없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호조와 공조, 승문원, 통신사에게로]

一. 호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도부한 관문 내용에 “해당 이번 통신사의 사행 때 잡물을 감봉하여 포장하는 것은 원래 폐조(弊曹)에서 마련하여 알리는 일이 없으니, 귀조(貴曹)에서 그 들어갈 수량을 헤아려 분부하여 마련하도록 하라는 일로 관문이 왔는데, 전례로는 귀조에서 마련하여 각 해당 관청에 분부하면 본조에서는 계산하는 관원을 정하여 실제로 넣을 따름인지라, 전례대로 귀조에서 분부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이라는 관문이었음. 무릇 포장하는 물건은 모두 귀조에서 주관하여 마련하니 그 들어갈 내용을 헤아려 마련할 수가 있는지라, 북경으로 가는 방물(方物)과 포장하는 잡물까지도 귀조에서 마련하니, 이제 이번 통신사 행차의 짐 또한 본조에서 알 바가 아니고, 또한 이미 시행한 등록이 없으니, 이는 미룰 일이 아닌지라, 한결같이 북경으로 가는 방물(赴京方物)의 사례대로 귀조에서 마련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一. 공조에서 상고할 일. 전후로 도부한 귀조의 관문 내용에, “일본국왕 앞으로 보내는 예단의 각색 붓 50자루와 일본국 왕자에게 증정하는 각색 붓 50자루, 콘젠〔權現〕묘의 사신 예단의 각색 붓 아울러 100자루, 사신이 각처에 보내는 예단의 붓 50자루, 통신사의 별단으로 겐유잉〔嚴有院〕향전(香奠) 때의 사신 예단 중의 각색 붓 100자루 등을 미리 마련해 달라 하였는데, 대충 ‘각색 붓〔各色筆〕’이라고 이문하여 어떤 종류 몇 자루라 적지 않았기로, 그것이 어떤 종류 몇 자루인지 모르겠기로,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귀조에서 전담 주관하여 담당하는 것이므로 귀조에서 구별하여 폐조로 이문하면, 폐조에서는 들어갈 잡물을 마땅히 마련하여 속히 호조로 이문할 따름인지라, 급속히 구별하여 회이함으로써 때에 맞추어 거행할 일”이라는 관문이었음. 여러 등록을 상고하면 이른바 각색 붓은 곧 대모(玳瑁), 용편(龍鞭), 홍당죽(紅唐竹) 등의 붓이며, 자루 수량의 다소는 세 종류로 나누어 정밀하게 묶음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임술(1682) 정월 29일

예조의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의 종사관이 가져 갈 일행의 금단절목(禁斷節目)을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개좌(開坐)하였는데,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찌할지?

후록:

一. 일행이 한꺼번에 가져가야 할 물건은 점검하여 짐바리로 만들어 각기 글자를 적어 표시하고 서명하며, 또 자호(字號)를 붙여서 서명하여 곁어서 묶고, 도로 중간에 불시에 적간(摘奸)하며, 포소(浦所) 및 대마도와 달리 머무는 곳에 도착하면 별도로 추가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에서 몰수하며, 범하는 사람은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실려 있는바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紗羅) 능단(綾緞) 황백사(黃白絲) 보물을 몰래 사고파는 자는 모두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대전후속록 내용에, 왜인의 은을 무역하는 자와 왜인이 가져오는 대랑피(大狼皮) 및 포소에서 몰래 사고팔아 무역하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通事)는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향통사(鄉通事) 및 장사꾼이 왜인과 약속하여 어두운 밤에 매매하거나 혹은 서로 모이는 자는 모두 잠상금물(潛商禁物) 조에 의거하여 논단함.

一. 일행의 인원들이 본국에서 숨겨야 할 일 및 국가와 관련된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림.

一. 상통사(上通事) 이하 일행의 하인으로 금제(禁制)에 걸린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는 바로 처단(直斷)함.

一. 다른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점검하되, 우리나라 경내에서 범한 일은 즉시 장계로 알리고, 바다를 건너 뒤에 범한 일은 조정에 되돌아온

뒤에 일일이 글로 적어 보고함.

一. 우리나라에서 풍랑에 표류하였다가 되돌아온 사람을 격군에 뒤섞어 넣어 충당하는 것은 매우 편치 못하니 일체 충당하여 넣지 말고, 만약 탄로가 나면 본관 수령은 각별히 추고(推考)하여 죄를 다스림.

一.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軍器)는 종사관이 서명을 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만약 군기를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림.

一.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슬며시 누설하여 사사로이 통한 자와 중국과 관계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아울러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계달하여, 계달한대로 시행하라 하심.

임술(1682) 정월 30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25일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예조의 회계 관문 내용에 “이제 이번 도주의 별단 가운데 두 묘에 폐백을 봉헌한다고 하였는데, 콘젠 도오(權現堂)와, 다이유잉(大猷院), 겐유잉(嚴有院)을 구별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두 묘를 뚜렷하게 알 수 없으니, 역관에게 명하여 관왜 등에게 탐문하여 속히 장계로 알리라는 일”의 관문이었음. 관문 내용의 사연을 역관에게 알려 그들로 하여금 탐문하게 하였더니, 역관들의 수본 내용에, “관문 내의 사연을 관수 및 차왜 등에게 물었더니, 동 왜인들 또한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마땅히 도중에 물어서 회고(回告) 하겠다고 운운하였다”고 수본하였는바, 그들의 도중에서의 회답 통보를 기다려서 추후에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임술(1682) 2월 초7일

예조의 계달(啓達)한 말임. “방금 접한 악기소(樂器所)의 첩보에 ‘이제 이번 악기

는 곧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인지를 정밀하게 제조하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솜씨 좋은 기술자가 모두 각 지방 관청에 있어서, 만약 도감(都監)의 계하사목(啓下事目)이 아니면 임의로 본 악기소로 데려오지 못하는데, 현재 주관하는 당상(堂上)이 없어서 들어갈 물자와 인력의 정조(精粗)를 품의하여 정할 곳이 없으니 참으로 낭패인지라, 속히 입계하여 확정하고, 별공작(別工作) 역시 기일에 앞서 차출하여 보내어 각종 궤짝(櫃子) 및 장강(長杠) 등의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음. 통신사의 사행에 비록 치제(致祭)하는 일은 없지만 악기는 짐짓 미리 준비하여 형편을 보아 조처하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공역(工役)이 대단하지는 않아서 이제 별도로 도감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니, 장악원에 명하여 제조가 간검(看檢)을 주관하고, 별공작의 감역관(監役官) 또한 해당 감역에게 명하여 차출하여 보내게 하는 일을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장악원과 선공감으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에 수역(首譯)이 왜인들과 접견할 때 사사로이 증정하는 예단의 물건 종류를 전례대로 마련하여 이문(移文) 하였거니와, 동 물종 가운데 표범 가죽 2장 대신으로 명주 20필, 무명 20필을 해조에서 지급하고, 범 가죽 1장 및 검은 삼베 5필 대신으로 쌀 30섬으로 바꾸어 본도에서 지급하는 일이 등록에 실려 있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호조로]

一. 방금 도부한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임. 방금 도부한 예조 관문 내용에, '이번에는 겐유잉(嚴有院)에 이미 치제하는 일이 없어서 등롱 등의 물건은 만들어 보내지 않으니, 악기도 또한 만들어 보내는 일이 없어야 마땅한데, 이 뜻을 상세히 탐문하여 급속히 첩보하라'는 일의 관문이었기로, 관문 내의 사연을 역관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세히 탐문하게 하였더니, 역관들의 수본 내용에 '악기를 만들어 보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관수왜에게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번에 일광산(日光山) 분향과 겐유잉(嚴有院) 치제를 아울러 하지 않고, 등롱에 있어서도 또한 만들어 보내지 말라는 일로 조정하였는바, 의도가 있을 터이지만 실로 피차간에 매우 다행이거늘, 이제 등롱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하여 악기까지 모두 폐한다면 도주의 별단에 이른바 봉헌하는 폐백은 예에 따라 토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그 뜻이 어디 있겠는가? 비단 악기를 폐하여서는 안될 뿐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는 것 또한 하나 둘이 아니니, 이전대로 해 달라고 하였기

에, 연유를 수본으로 제출하였다”는 일로 첩정함. 수결(手決) 내용: 도부함.

임술(1682) 2월 초8일

선혜청 관문 내용임. 이제 이번 통신사 사행의 행중에 사용될 공홍도에 분정한 차일(遮日) 2부(浮) 중 1부는 사방에 푸른 선(縵; 단)을 둘러 모두 16폭에다 길이는 9척의 흰 무명(白木)이며, 1부는 푸른 선(縵)을 둘러 모두 18폭에다 길이는 10척의 흰 베(白布)이며, 휘장(帳) 3부 중 1부는 푸른 선(縵)을 둘러 모두 7폭으로 길이는 22척이며, 1부는 푸른 선을 둘러 모두 7폭으로 길이는 20자의 흰 베(白布)이고, 1부는 푸른 선을 둘러 모두 7폭으로 길이는 29척의 흰 베인데, 본청에서 마련하여 보내는 일로 보낸 관문임. 이에 의거하여 수결한 내용에 의거하여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본청에서 부산첨사에게 수송하는 것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임술(1682) 2월 12일

함경 감사의 관문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 때 전라도에 분정한 숙마(熟麻) 791근을, 방금 선혜청의 관문으로 말미암아 각 고을에 분정하고 안변부(安邊府)를 도회(都會:집결지)로 하여 이미 받아 두고, 해당 선혜청에서 고쳐 분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번 본조 관문 가운데 동 숙마를 부산첨사에게 수송하라고만 하였을 뿐, 안변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수송하여 운반할 고마(雇馬; 세를 주고 빌리는 말)는 거론하지 않았는바, 본도에는 일찍이 이런 규정이 없으니, 역마(驛馬; 각 역참 소속의 말)로 차례 차례 실어 보낼지, 쇠마(刷馬; 지방 관청의 관용 말)로 차례 차례 운반할지 되도록 속히 확정하여 회이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하여 수결한 내용: 숙마를 수송 운반하는 한 조목은 본조에서 지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본청에서 직접 본도로 분부할 일. [선혜청으로]

임술(1682) 2월 13일

방금 바친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 일찍이 통신사가 가져 갈 각도에 분정한 응자(鷹子) 73연을 피집(被執)⁴⁶⁾하여 먹여 기르는 사이에 필시 죽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라 예비로 추가하여 분정하라는 뜻으로 예조에 논보(論報)하였는데, 본도에서는 예조의 분부대로 20연을 추가 분정하여 임시로 변통하여 수량에 충당하도록 하였더니, 방금 황해도에 분정한 응자 20연을 도색리(都色吏:총괄 담당 아전)가 영솔하여 보내온다는 관문이 도부하였는데, 10연은 도중에 죽었고 10연만 본부에 도착하였거늘, 즉시 왜관에 들어가 왜인에게 지급하게 하였더니, 1연은 본부에서 부산으로 가는 사이에 죽었고, 1연은 겨우 왜관 문에 들어가자 즉시 죽었으며, 1연은 왜관에 들어간 다음날 또 죽어서, 지금 살아 있는 것은 단지 7연이나, 또한 병이 들어 곧장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바, 도중에 죽은 때는 이미 해당 도에서 마땅히 바꾸어 마련해야 할 물건이나, 왜관에 들어간 7연도 반드시 살아 있을 것이라고 기약하기 어려운바, 이렇게 추리하면 본도에 추가 분정한 20연만으로는 수량에 충당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 일의 형편이 균색하여 조처할 계책이 없기로, 한결같이 연례구청(年例求請)의 매를 피집(被執)하는 사례에 의거하여 10일 동안 먹여 길러서 죽지 않은 다음에 도부(到付) 문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해당 도의 색리(色吏)는 지금 막 머물러 두고 있거니와, 도중에 죽은 때 10연 및 본부에 도착한 뒤에 죽은 때 3연, 도합 13연은 해도에 분부하여 급급하게 바꾸어 마련하여 보내게 하되, 이제 이번 응련을 분정한 각도에서 도중에 죽게 되는 우려를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왜인에게 주어 먹여 기르게 하는 규정을 모르고, 단지 분정한 1연을 사람에게 전담시켜 팔에 얹어 보내게 하기 때문에, 팔에 얹어 오는 사람이 이미 매를 받은 이후에 도중에 죽게 되어도 본관에게 변명할 수가 없거늘, 이제 이 해서(海西; 황해도)의 매가 충주에서부터 밀양까지 오는 사이에 10연이 모두 죽게 되었는데, 되돌아가서 본 고을의 관원에게 고하여 고쳐 마련하여 오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빈손으로 본부에서 현신(現身)하여 도부 문서를 받으려고 하는바, 그 혼미하고 어리석음은 책망할 것도 못되지만, 함경도나 평안도 두 도와 같이 가장 먼 곳에서 팔에 얹어 오는 사람이 만약 다시 이와 같이 한다면, 기일에 맞추어 오가

46) 피집(被執): 대금을 먼저 결제하고 상품을 나중에 인도하는 거래 방식. 여기서는 일본에 가져갈 상품을 먼저 왜관에 들여주고 나중에 청산하는 거래 방식을 나타낸 말로 사용되었다.

며 고쳐 마련할 길이 만무하니, 일의 난처함이 이보다 심할 것이 없음. 예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만분 참작하여 도중에 죽게 되는 때는 그 데려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본관으로 되돌아가서 진작 고쳐 마련하여 오게 하며, 왜관에 들여 주고 먹여 기르는 기한 이전에 죽게 되는 때는 차사원(差使員)이 따져서 해당 고을에 이문을 보내어 다시 기일에 맞추어 마련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급히 분정한 각 도에 알리며, 본도에 추가로 분정한 20연의 정수는 참작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제 황해도에 매가 죽게 된 사정으로 본다면, 왜관에 놓아두고 먹여 기르는 사이에 죽게 되는 수 또한 몇이나 될 지 알 수가 없고, 거리가 먼 도에 분정하여 만약 기일에 맞추어 왕래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 73연의 수량을 모두 장차 본도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군색하고 낭패스런 우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20연 이외에 임시로 추가 분정하는 일이 없어서는 불가하며, 추후에 강원도 회양(淮陽)의 응련(鷹連)이 마침 내도하였는데, 예비로 마련한 1연의 수를 추가하여 데려 왔는바, 지금의 형세로는 대단히 긴급하고 간절하여 변통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되겠기로, 위 항목의 회양부에서 추가로 보내온 것과 아울러 2연을 아울러 왜관에 들여 주었는데, 먹여 기르는 기한 전까지 만약 모두 살아 있다면, 다른 고을에서 죽게 된 수량으로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편하고 합당하겠거니와, 뒷날에라도 혹 수량을 추가하여 가져오는 때가 있다면 아울러 모두 왜관에 들여 주어서 수량을 헤아리는 일로 올린 첩정임.

이에 의거하여 당상관이 수결한 내용. 첩정한 대로 황해도에 이문하겠거니와, 예비로 마련한 응련(鷹連)은 일의 형편이 이러하니 변통하여 들여보내지 않아서는 불가하고, 이 뒤로 다시 추가로 오는 것이 있으면 모두 이대로 시행함이 마땅한 일임. 서목(書目)을 지어 발송함.

경상감사의 위와 같은 내용의 관문 내용. 동래부사가 첩정하였는데, 통신사의 출발 기일이 멀지 않은데 응련이 죽게 된 수가 이렇게나 많게 되어 장차 일이 생길까 극히 우려되는데, 응련을 분정한 각 지방관에 각기 회양에서 한 바와 같이 예비용을 차출하여 보내어 임시로 낭패가 나는 우려가 없게 하는 일로 분부하여 시행할 일.

이에 의거하여 수결한 내용. 각도에 분정한 응자(鷹子)는 죽은 것을 대신할 것을 속히 다시 마련하여 수송하라는 일로 해당 도에 이문하며, 응련을 분정한 각 지방관에는 각기 예비용을 보내라고 해 달라 하였는바, 이는 수량을 배로 하는 것인지라 본조에서 임의로 다시 분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거니와, 전례대로 본도에서 변

통하여 수량을 충당하여 들여 주고, 그 대신을 그 분정한 해당 도로 하여금 추후에 수량을 충당하게 함이 합당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임. 본도에 회이(回移)하고, 분정한 4도에도 또한 이문(移文)할 것.

一. 경상우수사 민섬(閔暹)⁴⁷⁾의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이번 정월 23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통신사가 타고 갈 배 세 척의 돛(帆)을 통영 및 경상좌수영에 분부하여 삼승(三升)⁴⁸⁾으로 만들어 지급하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하여 전교를 받들어 받고, 받은 전교 내용의 사연을 상고하여 시행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동 풍석(風席: 돛)을 과연 삼승(三升)으로 지어 만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한결 같이 확정된 대로 분부하여 즉각 거행할 일이거니와, 대개 시험삼아 신의 수영에서 전선(戰船)에 삼승(三升)의 돛(風帆)을 올려본 것으로 말하자면, 완석(莞席)에 비하여 비록 광채는 현격하게 다르지만, 만약 폭풍이나 소나기가 내릴 때면 바람이 치고 비에 젖어 올려도 올라가지 않고 내려도 내려오지 않아서 도리어 완석(莞席)만 못하기로, 배 안에 그냥 놓아두고 한갓 헛된 장식만 될 뿐인데, 하물며 이렇게 먼 바다를 왕래하는 배에 걸 돛을 어찌 꼭 삼승으로 만들어서 끝없는 우려를 끼치게 해야 되겠는지? 배의 돛으로 가장 좋은 것은 완석(莞席)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종전부터 통신사의 사행에 삼승(三升)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각 배의 사공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호소하는바, 이제 이번 삼승으로 돛을 만들라는 명령이 조정에서 사신을 염려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제작하는 데 들어갈 비용의 쌀을 선혜청에서 일일이 계산하여 지급해야 마땅한데, 신이 어찌 감히 터럭만큼이라도 꺼리는 마음을 가져서 거행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삼승이 무익하고 해가 있음이 이미 이러한데, 계품하지 않고 갑자기 먼저 지어 만들었다가 바다가운데서 불편함이 있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기로, 이렇게 치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급히 품의 조처하실 일임. [이달 15일 인견하였을 때 완석(莞席)으로 만들어 보내는 일을 확정하였으므로 회계(回啓)하지 아니함].

47) 민섬(閔暹, 1628-?): 여흥(驪興) 민씨로 자는 퇴지(退之)이다. 효종 2년(1651) 별시 무과에 급제하여, 상주 영장(尙州營將), 전라우수사, 통제사를 역임하였다.

48) 삼승(三升): 1승(升;새)은 베의 씨실의 가닥 수를 헤아리는 단위로서, 한 폭에 80가닥의 씨실을 거는 것을 1승이라 한다. 3승이면 한 폭에 240올의 씨실을 걸어 짜는 것이니, 베로서는 매우 엉성하고 거칠다. 여기서는 3승의 삼베를 가리킨다.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 때 절월(節鉞)⁴⁹⁾이 없어서는 불가하여, 상사와 부사의 절월을 만들어 보내는 일을 묘당에 품의하였는데,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라고 하였다는 일이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호조와 공조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가 데려갈 마상재 2인이 착용할 의복은 반드시 선명한 채단(綵緞)으로 정밀하게 만들어 지급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임. [호조로]

一. 예조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의 출발 일정 및 배를 타는 길일을 택일하여 계하하였는데, 새로 차출한 종사관이 이제 비로소 올라왔기에 다시 일관에게 택일하게 하였더니, 출발 일정은 오는 4월 22일 묘시이고, 배를 타는 것은 5월 26일 묘시가 길하다고 하니, 이 날짜와 시간을 분부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계달하였더니 계달한 대로 시행하라 하심.

임술(1682) 2월 17일

이번 2월 1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예조판서 여(呂)가 계달하기를, “이전부터 통신사의 사행에는 완석(莞席)으로 돛을 하는 것이 전례이나, 지난번 통신부사(通信副使)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베돛(布帆)을 준비하여 지급하는 일로 확정하여 분부하였는데, 이제 통제사의 장계를 보니 베돛이 자리돛(席帆)만 못하다 하였고, 또한 경상감사의 보고를 보면 삼승(三升)은 희귀하여 실로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허비하는 폐단을 우려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나, 이미 확정된 일이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품신합니다”라고 하였음. 영의정 김(金)이 말하기를 “왜국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자리돛(席帆)은 보기에 형편없으므로 사신이 베돛으로 하고자 하여 이런 진청(陳請)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전부터 통신사의 사행에 모두 완석을 돛으로 하였고, 또한 돛을 만드는 베는 들어가야 할 비용이 수백 냥에 이른다고 하는데, 해조에서 비축하고 있

49) 절월(節鉞): 왕명으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권을 위임 받아 수행하는 관원의 의장(儀仗). 절(節)은 부절(符節)이니 왕명을 받은 전권 사신임을 표시하는 뜻대이고, 월(鉞)은 부월(斧鉞)이니 도끼 모양의 뜻대로 생살(生殺)의 권한을 상징한다.

는 삼승포 또한 많지 않고, 본도에서는 또한 홀로 담당하여 장만해 내기가 어려운 지라, 이런 시기에 물자와 인력을 허비하는 것을 보살피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이전대로 완석으로 돛을 함이 옳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완석으로 돛을 만드는 일을 본도에 분부함이 좋겠다”고 하셨음.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 때 종사관의 장복(章服) 또한 만들어 지급하는 일을 묘당에 품의하였는데, 그 품계의 복장을 만들어 지급하라는 일로 해당 관청에 분부하여 시행할 일임. [호조로]

임술(1682) 2월 19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번 2월 12일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왜선 4척이 나왔기에 혼도 박유년과 별차 최억(崔億)⁵⁰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제1척은 신유조 겸대세건 제14선이고, 제2척은 비선에 교대차 나온 대관왜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3척은 비선에 두왜 등이 청구한 응자(鷹子)를 재촉하기 위해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4척은 신유조 부특송사 수목선(水木船)에 격왜 20명 등이 전일에 돌아 들어갔다가 그의 정관(正官) 등을 데려가기 위해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동 송사왜 등은 이미 돌아 들어가서 규정 외에 관계 되기로 노인을 받지 아니하고 속히 돌아들어가는 뜻으로 말로 책망하였음. 노인 3통을 가져다 바쳤다고 운운” 하였기에 받아서 보내거니와, 규정 외로 나온 배는 돌려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역관에게 신칙한 일이라고 운운하였음. 동 노인은 감봉하여 올려 보내고, 규정 외로 나온 배는 역관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말로 책망하여 그로 하여금 돌아 들어가게 하였음. 전일 도주의 별단 가운데 일광산(日光山)에 분향하고, 겐유잉(嚴有院)에 치제하는 것은 모두 다 정지하였고, 등룽(燈籠) 받침대 역시 만들어 보내지 말라고 하였으나, 치제 때 사용하기로 한 잠물은 거론한 일이 없는데, 이미 치제하는 일이 없다면 악기 등의 물건은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겠고, 어필(御筆) 한 조목에 있어서는 더욱이 중대하기로 전례에 따라 증정을 허락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뜻으로 역관들을 시켜 관수 및 차왜 등에게 말을 하

50) 최억(崔億, 1648-?): 경주 최씨로 자는 무경(茂卿)이다. 숙종 1년(1675) 증광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에 종사하고, 교회(敎誨)와 직장(直長)을 역임하였다.

여 도중(島中)에 통보하게 하였더니, 방금 역관들의 수본 내용에 “일찍이 분부한 내용의 사연으로 관수 및 차왜 후지 나리히사〔藤成久〕 등에게 언급하였더니 즉시 도중에 통보하였으며, 별단 가운데 이른바 ‘두 묘(二廟)’도 콘젠〔權現〕, 다이유잉〔大有院〕, 겐유잉〔嚴有院〕 등 세 곳 가운데서 지적하여 회보하라는 뜻으로 또한 언급하였는데, 이제 도중에서 보내온 사서를 보니 이른바 2묘는 곧 다이유잉〔大有院〕과 겐유잉〔嚴有院〕이라 하였으며, ‘어필 한 조목은 이미 치제가 없으니 편액의 증정을 청하는 일은 어떻게 할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로, 말을 만들어 에도〔江戸〕에 보고 품신하였거니와, 악기와 향촉, 폐백은 한결같이 별단에 진술한 바대로 시행하며, 예단의 예비용 말의 수를 추가하여 보내도록 요청한 것은 그 의도가 있는데, 이제 만약 원래 정한 것만 보냈다가 몇 천 리 무더운 길을 건너가는 사이에 만약 죽거나 상하는 폐단이 있으면 일이 필시 낭패가 날 것이며, 당초 도주와 봉행 등이 통신사의 사행에 대한 절목(節目)의 별단을 진청(陳請)한 것은 오로지 회답을 받아 에도〔江戸〕에 보고하여 각 역참에 알리려는 계획이거늘, 입으로 말을 전하는 것은 불가함이 있을 뿐 아니라, 동 별단은 또한 예사로운 문서가 아니고,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서 문위역관 편에 부쳐서 바치게 한 것이니, 예조에서 조목 조목 회답하는 것은 마지못할 일인지라, 이런 말의 뜻을 꼭진하게 고하여 전달해 달라’고 운운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종전의 사행이 한 두 번이 아닌데 별단의 회답은 일찍이 그런 전례가 없는데다, 한 두 조목 외에 거의 다 들어주신다고 하였는바, 이렇게 준행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비록 예조의 회답이 아니라도 본부에서 약간을 마련하여 도장을 찍어 보낸다면 혹 무방할 듯하다’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였으며, ‘통신사의 행차가 이미 5월에 발선(發船)하는 일을 확정하였으면 그 사이 날짜가 그다지 멀지 아니하거늘, 세 대사(大使) 이하의 학사(學士)와 의관(醫官) 등 원역(員役)의 직함과 성명을 아직도 적어 주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뒤에 비록 교체되어 바뀌는 폐단이 있더라도 그 때 고쳐 적어 보내도 또한 무방하니, 짐것 먼저 적어 보내어 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수본임. 운운.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오니, 위 항목의 수본 내의 사연을 해조에 명하여 확정하여 시행하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이른바 2묘는 곧 다이유잉〔大猷院〕과 겐유잉〔嚴有院〕이라 하였는바, 두 곳의 향촉과 폐백 및 사신의 예단 등의 물건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보내며, 어필 한 조목은 에도〔江

戶)에 보고하여 품신하였다고 하니, 이는 그 회보의 치계를 기다린 뒤에 품의 확정하며, 악기 등의 물건은 한결같이 별단대로 시행한다고 하였으니, 전례대로 확정하여 만들어 보냄이 마땅할 듯하며, 예단용의 말을 추가하여 보내 달라는 청에 대하여는 예비로 차출하여 추가로 보내는 것은 전례에 없어서 들어주는 것이 불가하다는 일로 묘당에서 일찍이 이미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이제 추가하여 보내는 것은 불가하며, 도주와 봉행 등의 별단에 회답하는 일은 전에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전례에 없는 것이라 시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복계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이제 또 간청한다고 하니, 그 원하는 대로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전일에 행회한 별단의 회계 내용의 사연을 적어 줌이 무방할 듯하며, 사신 이하 원역의 직함과 성명을 적어 주는 일은 일찍이 이 일로 인하여 치계하여 때가 되면 적어 보낸다는 뜻으로 복계하여 행회하였는데, 이제 또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출발 기일 또한 멀지 아니하니, 사신 이하 원역의 직함과 성명을 그 말대로 적어 보내어 동래부에 명하여 글로 전하여 적어 주게 하여도 또한 무방할 듯한데,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2월 19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차왜가 요청한 각 항목의 일에 대한 해조의 복계는 적절한 듯하니 이대로 시행하되, 사신 이하 원역의 직함과 성명은 일찍이 적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짐짓 지연하여 지금까지 이른 것은 그 때가 되어 교체되는 일이 있을까 우려해서인데, 이제는 출발 기일이 이미 닥쳐오고 저쪽에서도 또한 뒤에 비록 교체되더라도 고쳐 적어 보내어도 무방하다고 말을 하니, 적어 주게 함이 적절한데,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2월 22일 우부승지 신 윤이도(尹以道)⁵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술(1682) 2월 27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 때 분향과 치제할 때 사용될 물건들은 당초에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분정하였다가, 왜인의 별단으로 말미암아

51) 윤이도(尹以道, 1628-1712): 남원 윤씨로 자는 자유(子由), 호는 용호(龍湖), 오촌(梧村)이다. 숙종 5년(1679) 문과에 급제하여 영암군수, 호조참의와 승지, 공충도관찰사를 거쳐 공조와 형조의 판서, 참찬, 한성판윤을 역임하였다.

콘겐〔權現〕묘와 다이유잉〔大猷院〕두 곳에는 분향만 하고 겐유잉〔嚴有院〕에만 치제하는 일로 확정하였으므로, 세 곳에 사용할 각종의 물품은 당초에 분정한 수량을 융통하여 고쳐 마련하여 추가로 분정하였는데, 이제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다이유잉〔大猷院〕의 분향과 겐유잉〔嚴有院〕의 치제 향축과 폐백 및 사신의 예단 등의 물건을 전례대로 갖추어 보내는 일로 복계하여 윤택을 받았기로, 당초 마련한 콘겐〔權現〕묘의 분향에 사용할 물건들을 다이유잉〔大猷院〕에 옮겨 시행하고 다이유잉의 치제에 사용할 물건들을 겐유잉〔嚴有院〕에 옮겨 시행하며, 겐유잉에 사용할 추가로 분정한 물품은 마련하지 말라는 일로 분부하며, 일본국왕 이하 각처의 예단 및 사신의 사예단(私禮單)과 별반전(別盤纏: 별도 노자) 등의 물건을 아울러 일체로 고쳐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거행하는 일로 해조 및 각 해당 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一. 일본국왕 앞으로의 예단: [서계가 있음. 통은 은 장식에 주홍칠을 함]. 대수자(大繻子) 10필. 대단자(大段子) 10필. 황조포(黃照布) 30필. 검은 삼베 30필.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50필. 인삼 50근. 범 가죽 15장. 표범 가죽 20장. 채화석(彩畵席) 20장. 각색 붓 50자루. 청서피(靑黍皮) 30장.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어피(魚皮) 100장. 색지 30권. [이상은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20연. [이상은 각 해당 도에서 마련함].

一. 일본국왕자에게 증정할 예단: [서계가 없음]. 대단자 10필. 백룡(白綾) 20필. 흰 모시베 30필. 검은 삼베 15필. 인삼 30근. 범 가죽 10장. 표범 가죽 15장. 각색 붓 50자루. 청서피 15장.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얼룩말(駁馬) 2필. 안장 갖추어.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유매먹〔油煤墨〕50홀. 화연(花硯) 5면. 어피 100장. [이상은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응자 10연. [이미 각 해당 도에서 마련함].

一. 집정 5인에게 각각: [각기 서계가 있음. 통은 흑칠에 납염 장식].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 가죽 2장. 황모필 30자루.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유매먹 20홀. 유둔(油氈) 3부. 화석(花席) 5장. [이상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응자 1연. [이미 각 해당 도에서 마련함].

一. 봉행 9인에게 각각: [각기 서계가 있음. 통은 흑칠에 납염 장식].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 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유매먹 10홀. 응자 1연. [이미 각 해당 도에서 마련함].

一. 대마도주에게: [서계가 있음. 통은 흑칠에 납염 장식을 하되 도주 및 장로와 수도서인(受圖書人) 등의 서계를 아울러 한 통에 넣음].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범 가죽 2장. 표범 가죽 3장. 인삼 5근.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5장.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一. 수도서인(受圖書人) 3인에게 각각: [각기 서계가 있음].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범 가죽 1장. 화석 3장. 유둔 1부. [이상은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一. 수직왜(受職倭) 5인에게 각각: [서계가 없음].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황모필 10자루.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2장. 유매떡 5홀. [이상은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一. 장로(長老) 1인에게: [서계가 있음]. 인삼 3근.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유매떡 10홀.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一. 다이유잉〔大猷院〕 분향 폐백: 준마 1필. [이미 해당 관청에서 마련함]. 분향에 사용될 것; 홍상건(紅床巾) 사라(紗羅) 1필. 주홍 곡수좌(曲水座) 면지(面紙) 2장. 백단향(白丹香) 2냥. 은 향합(香盒) 1부. 큰 촛대 1쌍. 향로 1좌. 황촉(黃燭) 2쌍.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면석(面席) 2좌.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一. 승인(僧人)에게 체면치레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一. 사신의 예단(使臣禮單);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황모필 각색 아울러 100자루.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오색지 50권. 백지 100권. 유둔 10부. 채화석 20장. [이상은 이미 전라도에서 마련함]. 유매떡 100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석린(石鱗) 20근. [이미 황해도에서 마련함].

一. 겐유잉〔嚴有院〕 향전(香奠) 때 사용될 것: 홍상건 사라 1필. 주홍 곡수좌 면지 10장. 큰 촛대 1쌍. 향로 1좌. 백단향 2냥. 은 향합 1부.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백자 잔과 잔대(盞臺) 1죽(竹). 대접(大貼) 3죽. 보시기〔甫兒〕 3죽. [이상은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一. 배상(排床:진설)에 사용할 것; 백랍초〔白臘燭〕 3쌍. 대부용향(大芙蓉香) 3쌍.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황촉(黃燭) 5쌍. 면석 3좌. 유둔 2번(番). 유지(油紙) 2권. 백지 10권. [이상은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一. 전(奠)에 사용할 폐백: 금단(錦段) 3필. 대화촉(大花燭) 2쌍. 대부용향 30매. 채화석 10장.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석린 10근. [이미 황해도에서

마련함].

一. 승인(僧人)에게 체면 치레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백 무명 50필.

一. 사신의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황모필 각색 아울러 100자루. 오색지 50권. 백지 100권. 유둔 10부. 채화석 20장. [이상은 이미 본도에서 마련함]. 석린 20근. 유매떡 100홀. [이상은 이미 황해도에서 마련함].

一. 일본국왕에게 증정하는 사신의 예단: 인삼 10근. 범 가죽 5장. 흰 모시베 15필.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一. 일본국 왕자에게 증정하는 사신의 예단: 인삼 10근. 범 가죽 5장. 흰 모시베 10필.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一. 사신이 각 처에 보내는 예단: 인삼 5근. 작은 은장도〔小銀粧刀〕 10자루. 색필(色筆) 50자루.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청심원(淸心元) 100알〔丸〕. [이미 해당 관청에서 마련함]. 양피(羊皮) 50령(令). 표범 가죽 5장. 청서피 25장.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一. 사신 일행의 별반전(別盤纏): 인삼 15근. 표범 가죽 3장. 흰 명주 50필. 흰 모시베 50필. 황모필 600자루. 참떡〔眞墨〕 250홀. [이상은 이미 해조에서 마련함].

강희 21년(1682) 2월 27일 동부승지 신 어진익(魚震翼)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술(1682) 3월 초2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2월 19일에 성첩한 장계. 운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나온다는 문서가 왔고, 왜선 1척이 또 나온다고 운운 한 일에 의거하여 훈도 박유년과 별차 최억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제1척은 임술조 세건 제1선에 격왜 40명, 제2척은 동 송사의 수목선인데 격왜 15명, 제3척은 동년조 세건 제2선에 격왜 40명, 제4척은 동년조 세건 제3선에 격왜 40명 등이 각기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관수 및 차왜 후지 나리히사〔藤成久〕등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 등에게 가서 그 사서 가운데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들이 답한 내용에, ‘지난번에 침지 등의 간절한 말로 인하여 통신사의 사행으로 온갖 일이 바쁘고 소란하여 금년의 송사(送使)를 내보

내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폐단을 덜 수 있겠다고 하여,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 봉행 등에게 통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주에게 좋게 말하게 하여 기어코 청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방금 봉행 등이 보내온 답신을 보았더니, 두 나라의 성신(誠信)이 오직 송사의 왕래에 달려 있기에 정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종전에 통신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또한 연례송사를 임시로 줄인 일이 없었는데, 왜관을 옮길 적에 일찍이 김지사(金知事)의 요청으로 송사를 보내지 않았더니, 이제 와서 매번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어떨지? 한결같이 정사년의 사례대로 1년조의 송사를 모두 내어보내지 않는 일로 조정하겠다'고 운운 하였으며, '도주가 이런 뜻의 조목을 서계로 보내자면 사신 한 사람을 차출하지 않아서는 불가한바, 이제 송사를 보내지 아니하고 차왜에게 맡겨 보내자니 도리어 폐를 끼치게 되겠기로 봉행 등이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별단이 내도하였다'고 하면서 내어 보여 주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폐를 끼칠까 하여 1년의 송사를 모두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하여 천만 감사하거니와, 다만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때 봉행 등이 서계로 통지하는 한 조목은 예에 합당하지 않기로, 종전에 책망하여 금한 것이 엄격하고 준절하였거늘,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라고 하였더니, 동왜인들이 말하기를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때 봉행 등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실로 불가하다고 하였는바, 이치와 형세가 참으로 그렇겠기로 이를 도중에 통지하였더니, 봉행 등이 또한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제 이 서계는 과연 폐단을 없애자는 데서 나왔고 부득이한 형편이 있어서, 저희에게 보내온 사서 가운데서도 언급하였으니 불안한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정사년(1677)에도 또한 봉행의 서계를 돌려서 전달하였는데, 그 때에 한 마디도 없이 순순히 받은 것은 모두 변통하는 도리였다'라고 하여, 종일토록 논란한 말을 다 적을 수가 없음. 동 왜인들이 또 말하기를 '9송사에게 지급해야 할 잡물은, 한결같이 송사가 나왔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혹은 본색(本色)으로 혹은 가격에 해당하는 미곡으로 대관(代官)에게 편리한 대로 들여 달라'한다고 이야기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정사년(1677)에도 잔치 음식은 다른 오일잡물(五日雜物)과 다름이 있어서 전혀 들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땔감(柴炭)은 반으로 줄여 지급하여 왜관에 있는 두왜(頭倭)들이 사용하는 데 넉넉하게 하였기로, 지금에도 또한 이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들이 말하기를 '전례가 과연 이러하다면 이제 달리하여서는 불가하거니와, 땔감은 비록 각 방에 전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있지만 매양 부족한 것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만약

줄여서 지급하면 보충하여 사용할 수가 있겠으니, 이렇게 조정하여도 불가할 것은 없는데, 잔치 음식에 있어서는 그 때 대관이 등록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이제 상고하기가 어려우니, 도중에 물어서 회보하겠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만약 도중에 통지하여 물으려면 전례 뿐만 아니라 이치와 형편이 실제로 그러하기로 이미 조정하여 줄였다는 뜻으로 통보해 달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들이 서로 논의한 뒤에 '마땅히 이렇게 통보하겠다'고 운운하였으며, '통신사 사행 때의 예단 등의 말의 실제 수와 예비 말을 모두 4월 초순 사이에 들어 달라고 도중에서 알려왔는데, 이것을 고하여 달라'고 운운하였으며, '위 항목의 세견선의 서계와 별폭은 이제 이미 내도하였는데, 서승왜(書僧倭)에게 전하여 적은 뒤에 뒤따라 바칠 계획이 거니와, 회답서 및 예단도 각각 가져 올 필요가 없고, 통틀어 아홉 차례 송사(送使)의 분량을 두 세 차례로 나누어 역관이 가져와 달라'고 하였음. 당일 나왔던 왜선 1척을 초탐장 개운포만호(開雲浦萬戶) 김시정(金始靖)이 영솔하여 관수에 부쳤거늘, 일시에 문정하였더니 동년조 세견 제4선의 격왜 30명에도 교대차 나온 도도금도왜(都都禁徒倭) 1인과 소금도왜(小禁徒倭) 3명과 서승왜(書僧倭) 1인과 종왜(從倭) 5명 등이 함께 타고 나왔거늘, 그 대마도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음. 각 배의 서계는 베껴 적은 뒤에 가져다 바치겠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일찍이 전에는 통신사가 들어갈 때 연례송사가 전례에 따라 나왔으나, 앞으로 통신사의 출발 기일이 멀지 않은 시기에 아홉 번의 송사가 잇달아 나오면 본부에서 응대하는 책임을 장차 이루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역관들이 이런 폐단을 우려하여 도중(島中)과 주선하여 이렇게 정지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은, 폐단을 줄임에 있어서 실로 알지 아니하여 참으로 다행이거니와,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때 봉행 등이 서계를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은 일찍이 전에도 여러 차례 따져서 책망하였는데, 이제 아홉 번의 송사를 정지하는 일로 또 봉행 등이 서계를 보내왔는바, 그 분수를 넘는 외람됨은 참으로 밋지만, 저쪽의 말이 만약 도주의 서계가 있으면 마땅히 차왜가 있어야 하겠기로, 봉행 등이 서계를 만들어 보내는 것 또한 폐단을 줄이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할 뿐 아니라, 정사년(1677)에 신관(新館)을 조성한 뒤에 아홉 차례 송사를 정지할 때도 단지 봉행 등의 서계만 있었고, 본부에서 전례에 따라 회답하였는바, 이제 이번 봉행 등의 서계는 이미 전례가 있고, 또 폐단을 줄이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하니, 물리쳐 받지 않는 것도 또한 매몰차서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기에, 동 서계를 먼저 한 벌 베껴 적어 해조로 올려 보내오니, 받을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

여 진퇴할 수 있도록 하며, 잔치 음식을 줄여 없애는 뜻은 이미 도중에 통지하여 그 조정의 회보를 기다리고 있고, 잡물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한 조목은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여 거행할 계획이며, 각 배의 서계는 추후에 받아 올릴 계획이라고 운운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 때 예단 등에 사용할 말의 실제 수와 예비용을 아울러 4월 초순 사이에 들여 보내달라고 도중에서 알려왔다고 하였거니와, 예단의 사례로 보내는 말은 그 말대로 먼저 보내어도 무방할 듯하나, 예비용의 말을 추가로 보내는 일은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전례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시행함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복계하여 윤허를 받아 방금 이미 행회하였으니, 이대로 분부하시며, 금년 임술조 연례송사를 모두 내보내지 말고 단지 서계만 보내는 일은 참으로 다행이로 되, 왜인들의 말이 만약 도주의 서계가 있으면 마땅히 차왜가 있어야 하기에 봉행 등이 서계를 닦아서 보낸 것은 또한 폐단을 줄이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하니, 물리쳐서 받지 않는 것은 또한 매몰찬 일이라고 봉행 등이 보낸 서계의 등본을 먼저 올려 보냈는바,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적에 봉행 등이 서계를 닦아 보내는 일은 매우 분수를 벗어난 외람스런 일이고, 금년 조의 아홉 송사를 내보내지 말라는 것은, 이제 통신사의 행차로 말미암아 이렇게 폐단을 줄인다는 말을 한 것이고, 봉행 등의 서계 또한 전례가 있어서 받아야 마땅할 듯한데,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2월 27일 동부승지 신 어진익(魚震翼)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대마도주가 대마도에 있는 시기에 봉행 등이 서계를 닦아 보내는 것은 과연 분수를 벗어난 외람스런 일이나, 저쪽에서 이미 의도가 폐단을 줄임에 있다고 하고,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전례가 또한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있으니, 짐짓 받는 것을 허락해도 무방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3월 초2일 우부승지 신 안후(安垺)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술(1682) 3월 초5일

一. 평안감사 유상운(柳尙運)⁵²⁾이 이달 초3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의 예단에 사

용할 응련(鷹連) 22좌(坐)를 본조에서 본도에 분정하였기로, 예비용과 아울러 23좌를 각 고을에 분정하여 지난 정월 보름 전에 동래부로 발송하였는데, 동 응련 21좌가 도중에 이르러 서로 잇달아 돌림병으로 죽었다고 죽은 때를 가지고 영하(營下)에 납입하거늘, 22좌를 다시 각 고을에 분정하여 지난 달 초승에 또 해당 동래부로 발송하였더니, 그 가운데 14좌가 돌림병으로 도중에 죽었다고 다시 마련하여 보내는 일로 해조에서 잇달아 관문을 발송하였기에, 부득이하여 이제 또 각 고을에 분정하였거니와, 도내의 매의 돌림병이 근래에 와서 더욱 치열한지라 동래로 보내는 매가 전후로 죽은 것이 이미 35좌나 많은 수량에 이르렀는데, 선후(先後)로 신칙하여 올라 갈 때 표시를 하여 영내 각 읍에서 접수한 것 또한 서로 이어 죽는 것이 많아서, 이미 이로 인하여 일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내려 올 때 추가 분정한 수로는 더욱이 충당하여 지급할 길이 없을까 하여, 이런 뜻을 갖추어 따져서 해조에 보고하였더니, 해조의 이문(移文) 내용에 ‘이미 각 도에 분정하였기에 다시 추이(推移;유통)할 길이 없으니, 병으로 죽은 것의 대용 매를 속히 마련하여 보내게 하라’ 하였는바, 구하라고 신칙하는 일도 하염없고 그 수량도 매우 많으며, 동래로 발송하여도 모두 병들어 죽어서 매 종자가 이미 모조리 남은 것이 없고, 통신사가 서울에서 출발할 기일이 멀지 않았는데, 만약 지금 진작 변통하지 않고 또 도중에 돌림병으로 죽을 우려가 있어서, 때가 되어 낭패를 볼 것은 반드시 닥칠 일이기로, 부득이 이렇게 치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조에 명하여 일의 형편을 참작하여 편의대로 품의 조처할 일임. [초4일에 판부(判付)하여 초5일 계하(啓下)하였는데, 오늘 입시하였을 때 이미 변통하였기에 회계하지 아니함].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 때 본도에 복정(卜定)한 응자(鷹子)가 도중에 죽게 된 것의 대용의 매를 본조에서 변통하는 일을 여러 차례 이문하였는데, 계하하여 분정한 뒤로 본조에서 임의로 추이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일로 회이(回移)하였더니, 본도에서 일의 형편이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하기로 묘당에 품의하여, 오늘 입시하였을 때 본도에 분정한 응자의 원래 수량 22좌 가운데 10좌는 함경도로 옮겨 분정하는 일로 탑전에서 확정하였으니, 이대로 거행하되, 도부한 일시를 이문할 일. [평안 감사에게],

52) 유상운(柳尙運, 1636-1707): 문화(文化) 유씨로 자는 유구(悠久), 호는 약재(約齋) 또는 누실(陋室)이다. 현종 7년(1667)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홍문관 교리, 대사간을 거쳐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호조, 이조, 형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영의정에 이르렀다.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통신사의 사행 때 보낸 응자 22좌를 평안도에 복정하였는바, 방금 접한 평안감사의 장계 내용에, 동래로 보낸 응자가 전후로 도중에 죽은 것이 35좌나 많은 수량에 이르고, 전후로 매를 구하도록 신척하는 것도 하염없고 통신사가 서울에서 출발할 시기도 멀지 않았으니 속히 변통하라는 일로 치계하였기로, 묘당에 품의하여 평안도에 분정한 응자 10좌를 본도로 옮겨 분정하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하였으니, 급속하게 마련하여 동래부로 수송할 일. [함경 감사에게]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지난 2월 29일 성첩한 본부의 장계 가운데, 단지 통신사의 별폭 응자(鷹子)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갔다고만 말을 하고 그것이 몇 좌인지 말하지 않았는바 매우 분명치 못한 일인지라, 지금 이후로는 응자 몇 좌를 가지고 들어갔는지 치계할 것이며, 어느 도의 응자가 전후로 통틀어 몇 좌를 들여주었는지 연유를 또한 낱낱이 본조로 급히 알려 상고할 수 있도록 할 일임. [동래부로]

一. 판서(判書) 여(呂)가 입시하였을 때 통신사의 사행에 역관 4원 중 1원을 줄이고 의원 정두준(鄭斗俊)⁵³⁾을 해조에 명하여 군직(軍職)에 부치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하였음.

一. 통신사의 세 사신 직함을 묘당에서 품의하여 전례대로 임시 직함[假銜]으로 하는 일로 이조에 명하여 입계하게 한 일임.

一. 대마도주와 봉행 등의 서계.

일본국 대마주부(對馬州府) 참군(參軍) 종사관(從事官) 등은 삼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분 영공대인(令公大人) 합하(閣下)께 받들어 올립니다. 봄의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적합한데 삼가 생각건대 지내시는 것이 여유 있고 좋으시며 온갖 복이 함께 하여 새해와 더불어 모두 새롭겠지요. 지난번에 앞으로 사신의 기일이 닥쳐와서 사무가 번잡하다는 말씀을 받들어 듣고는, 이치가 혹 그러하리라 생각하여, 혼도가 논의한 바를 우리 과군(寡君)에게 알렸더니, 이에 제1선에서 부특송사에

53) 정두준(鄭斗俊, 1639-?): 하동 정씨로 자는 자양(子昂)이다. 현종 1년(1660) 의과에 급제하여 내의원의 수의(首醫)를 역임하였다.

이르기까지 그 서계 및 별폭만으로 하고, 구비하는 여러 물품은 모름지기 때에 따라 부쳐주시며, 계해년(1683)에 이르러서는 모든 관원을 예전 같이 하도록 함이 옳겠다고 하여, 과군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두 분 합하게 명백하게 품신하라 하셨습니다. 아무튼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임술년(1682) 정월 일. 다이라 마사끼〔平眞幸〕, 다이라 나리가쓰〔平成勝〕, 다이라 나리쇼우〔平成昌〕, 다치바나 싱주우〔橘眞重〕, 다이라 싱깅〔平眞賢〕. 이상 모두 도장을 찍음.

임술(1682) 3월 11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3월 초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에 나왔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 일에 의거하여 훈도 박유년과 별차 최억(崔億)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제1척은 비선인데 두왜 1인과 격왜 12명 등이 노인과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거늘, 그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통신사의 호행차왜(護行差倭)가 전례에 따라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이번 13일 사이에 배를 탈 계획이기로 통보하기 위하여 나왔거니와, 차왜의 정관(正官)은 일등(一等)의 봉행(奉行)이고, 부관(副官)으로 차봉행(次奉行)과 도선주(都船主)의 인원을 갖추어 나온다고 하니, 근래의 사례대로 반드시 경접위관(京接慰官)으로 접대하는 일로 조정하여 왔다’고 하거늘, 그 두왜와 더불어 함께 관수에게 가서 사서 가운데의 사연을 물었더니, 두왜가 한 말과 별로 다른 점은 없음. 제2척과 제3척, 제4척도 모두 비선인데 두왜 각 1인과 격왜 각 7명 등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은화(銀貨)를 실어왔음. 노인 4통을 가져다 바쳤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하였음. 동 노인 4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을미년(1655) 호행차왜가 나왔을 때 데려온 원역은 봉진압물과 시봉 각 1인이었을 따름이고, 또 향접위관(鄕接慰官)으로 접대하였는데, 이제 이번 차왜는 부관과 도선주의 인원을 갖추어 나오니 반드시 경접위관으로 접대하는 일을 조정하여 왔다고 하였는바, 이는 모두 전례에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정녕 통신사가 내려갈 시기를 당하여 경접위관이 또 중첩하여 온다면 본도에서 접대하는 폐단은 장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일이 매우 우려되기로, 역관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수왜에게 타일러 전례대로 향접위관이 접대하기로 하며, 부관과 도선주 또한 모두 줄여

없앤다는 뜻으로 도중에 급하게 통보하게 하였거니와, 조정하기 전에 차왜가 만약 그 부관 이하의 준비한 인원을 데리고 일시에 나온다면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을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해조에 명하여 미리 확정하여 급히 회하(回下)하여 거행할 수 있도록 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두왜의 말이 ‘통신사의 호행차왜가 정관은 일등의 봉행, 부관으로 차봉행과 도선주가 인원을 갖추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이번 14일에 배를 탈 계획이니 경접위관으로 접대하는 일로 조정하여 왔다’고 하였기로, 역관들에게 분부하여 향접위관으로 접대하고 도선주 또한 줄여 없앤다는 뜻으로 도중에 급하게 통보하였는데, 미처 조정하기 전에 차왜와 부관 이하가 일시에 나오면,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을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미리 확정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 통신사 때 이미 부관과 도선주의 인원을 갖추는 사례가 없었고, 경접위관이 접대하는 일이 없었으니, 전례대로 향접위관이 접대하는 일로 분부하며, 부관 및 도선주는 전례에 의거하여 방색함이 마땅하고 접대 여부는 논할 바가 아니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3월 11일 우송지 신송창(宋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동래부에서 글로 적어 줌].

一. 이번에는 일광산(日光山)에 향을 사르고 또 겐유잉[嚴有院]에 치제하지 않기에 구리 등경(燈檠)도 아울러 제조하는 일이 없으니, 어필 또한 적어 지급할 일이 없으나, 다이유잉[大猷院]과 겐유잉[嚴有院] 두 원(院)에 주는 토산물 등은 마련하여 가져감이 마땅함.

一. 집정과 봉행은 당초 정해진 인원이 없는데 이제 혹시라도 추가됨이 있다면 증정하여 주는 물품 또한 수량을 추가하여 가져가야 마땅하나, 주어야 할 곳에는 본디 서계가 있으니 도장 찍은 종이는 사용할 필요가 없음.

一. 오사카[大坂] 성 및 양도(兩都)에서 대기하는 관원에게 치사(致謝)하는 한 조목은 본디 인사가 있는 마당에 있는 예사로운 일인데, 오직 치사(致謝)하고 경의를 표하여 나의 예를 다함에 달려 있을 뿐임.

一. 귀주(貴州)의 뱃사공을 나누어 실는 한 조목은 또한 편의에 따라 할 것.

一. 일행이 타는 말을 마구 달려서 갑자기 죽게 하는 일이나, 일행 중의 사람들이 간혹 여관 밖을 함부로 다니거나, 혹은 금지된 물건을 몰래 사고팔거나, 혹은 방문이나 기둥 등에 글을 새기는 등의 몇 가지 일은 세 사신이 일행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할 것.

一. 세 사신의 출발 기일은 마땅히 5월 사이에 있을 것임.

一. 상상관(上上官) 및 좋은 의원과 역관은 또한 보여준 대로 인원수를 더하여 데려 갈 것임.

一. 세 사신이 타는 배의 짐물과 사행의 행장(行裝)과 여러 도구를 넣어 담는 농작 등은 행중에서 정밀하게 마련할 수 있으니 귀주에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음.

一. 서계를 넣어 담는 께작 및 일행이 데려가는 하인들이 착용하는 옷 또한 모두 신칙함.

一. 폐백의 말은 이전부터 정해진 수 이외에 원래 수를 추가하여 가져가는 사례가 없으니 이제 또한 이전대로 실제 수만 끌고 갈 것임.

一. 응련이 죽어버리는 우려가 많은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하나, 이미 추가한 수량이 있으니 마땅히 추이(推移)할 형편이 있을 것임.

一. 수륙의 각 역참에서 대기하며 음식을 접대하는 사이에 조리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례대로 오일지공(五日支供)으로 하되, 오사카〔大坂〕 및 양도(兩都)와 그 밖의 큰 고을에 이르러서는 숙공(熟供:익힌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오일잡물(五日雜物)을 받아들일 즈음에 요리사들이 간혹 많고 적음을 다투어 버리고 가게 되는 것은 가장 무익하다고 운운한 등의 말은 모두 다 자잘한 일이니, 이러한 일은 미리 먼저 따져서 정할 필요는 없고, 오직 세 사신이 편의에 따라 조처하기에 달려 있음.

一. 집정과 봉행에게 증정하는 물품의 등록이 우리나라의 전례와 다소 균일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등록의 수량대로 가져감.

一. 세 종실 및 집정 몇 사람에 대한 세 사신의 선물 약간 종류는 마땅히 보여준 별단대로 가져갈 것임.

一. 이번에 데려가는 인원은 3-4백 명을 넘지 말아달라고 하였는데, 원역(員役) 이하 사공과 격군은 이전대로 데려가는 외에, 별도로 청한 상상관과 좋은 의원과 역관과 마상재 등이 각기 데려가는 바가 있어서 그 형편이 저절로 400의 인원수를 넘을 것임.

임술(1682) 3월 13일

一. 이번 3월 13일 진찰하러 들어갔을 때 영의정 김(金)이 계달한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초가을로 물려 정하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함. [호조와 사역원]

一. 예조에서 계달하기를,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물려 정하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하였는데, 호행차왜가 오래지 않아 마땅히 나올 것이라, 때에 맞추어 동래부에 분부하여 관왜(館倭)에게 전하여 통지하게 하도록 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먼저 특별히 금군을 정하여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고, 또한 사행을 물려 정한 이유를 관문(關文)만으로 대충 분부하는 것은 불가하니, 일을 아는 역관 1인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선발 차출하여 동래부로 내려 보내어, 관왜에게 상세하게 언급하여 도중(島中)에 전하여 통지하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윤희한다”고 하신 일로 계하하였는데, 이제 이번 사행의 행차 도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7월로 출발을 물렸으니, 이런 뜻으로 먼저 관왜에게 전하여 통지하며, 왜인에게 보내는 별단의 회답 초고는 표시를 붙여 방금 이미 내려 보냈거니와, 짐짓 역관이 내려가서 고쳐 적어 주기를 기다리되, 금군이 소지한 관문의 도부 날짜와 시간을 먼저 첩보할 것.

덧붙임. 역관이 내려간 뒤에 별단을 적어 주면 지연될까 염려되니, 사신의 출발 기일이 5월에 있을 것이라는 ‘오월(五月)’의 ‘오(五)’를 ‘칠(七)’자로 고쳐 적어서 먼저 들여 주어서 도중에 전하여 통지하도록 함이 마땅함.

임술(1682) 3월 16일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에 수역(首譯)이 왜인들과 접견할 때 사사로이 증정하는 잡물 및 세 종실에게 증정하여 주는 물품이 원 예단과 다름이 있기로, 이번의 다이유잉(大猷院) 이하의 폐백 예단 등의 물품을 모두 모아 마련하는 가운데서는 거론하지 않았거니와, 한결같이 당초에 계하한 이문대로 거행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호조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 때 마상재 2인이 타는 말 2필 외에 예비용의 말 1필을 또한 추가하여 보내는 일로 묘당에 품의하였으니, 상고하

여 시행할 일. [훈련도감으로]

一. 마상재 2인이 타는 말 2필은 이미 훈련도감에서 가려 뽑기로 경연(經筵)에서 확정함.

임술(1682) 3월 23일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왜인 등의 별단에 대한 회답 초고는 더하거나 깎아내고 표시를 붙여서 이번 12월 12일 발군(撥軍:과발군)에게 부쳐서 내려 보냈거니와, 출발 기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역관 1인을 별도로 내려 보내는 일은 짐짓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확정할 계획이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동래로]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17일 성첩한 장계 내용. 당일 진시에 도부한 예조의 계하 관문 내용에,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7월로 물려 정하니 이 뜻을 관왜에게 언급하여 도중에 전하여 통지하게 하라”는 일의 관문을 금군 김승세(金勝世)가 가지고 내도하였거늘, 즉시 관문 내의 사연을 역관들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왜에게 언급하게 하여 즉시 도중에 통보하도록 하였는데, 역관들의 회언(回言) 내용에 “분부한 뜻을 갖추어 관수 및 차왜 등에게 말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제 이번에 통신사를 청하는 일은 지난해 가을 사이에 있었으니 통신사를 차출한지 이미 오래이고, 출발 기일 또한 이미 5월로 택하여 정하였다가 이제 와서 사행의 도구가 미비되었다고 일컫는 것은 실로 이치에 가깝지 않으니, 다른 곡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일이 매우 괴이하고 의아할 뿐 아니라,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일을 이미 택하여 정하였기로, 도중에서 에도(江戸)에 이르는 각 역참에서 접대하기 위한 여러 도구를 장만하여 대기하고 있거늘, 이제 사행의 도구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멀리 7월로 물린다고 도중에 통보한다면, 도주가 저희들에게 문책할 것은 돌볼 것도 없거니와, 도주는 장차 무슨 말로 에도(江戸)에 통보하겠는가? 출발을 물리는 곡절을 상세히 탐지한 연후에 도중에 통보할 수 있겠다’고 운운하였다”고 역관들이 와서 고하였는바, 이제 이번 통신사의 출발을 물리는 연유에 대한 예조의 관문을 밤낮없이 내려 보낸 의도는 호행차왜가 갑자기 먼저 나올까 우려하여 저쪽에서 급히 도중에 알리게 함인데도, 관왜 등이 출발 기일을 멀리 물리는 것이 도리어 의아하다고 하며 끝내 급하게 도중에 통보할 뜻이 없으니, 일이 극히 해괴하기

로, 이제 바야흐로 역관들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서로 버틸 무렵에 호행차왜가 또 나온다면 일이 매우 낭패가 될까 극히 우려되며, 예조의 관문 내용에 별단의 회답 초고를 역관이 소지하고 내려 보낸다고 하였는데, 역관은 아직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거니와, 이제 사행의 도구가 미비되어 출발을 7월로 물린다는 이야기는 관왜 등이 이미 믿지 않고 반드시 그 곡절을 알아야만 하겠다고 시종 고집하여 말을 하니,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할지,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지(稟旨)하여 분부할 일.

그리고 18일에 성첩한 동 동래부의 장계 내용임. 통신사의 출발을 물리는 데 대하여 관왜 등이 도중에 통보할 뜻이 없기로,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십분 타이르게 하였다는 연유는 어제 유시(酉時)에 사유를 갖추어 치계하였거니와, 즉각 역관 등이 와서 고한 내용에, “분부한 말씀의 연유를 다시 관수왜와 차왜 등에게 타일렀더니, 그들의 말이 ‘당초 사신을 청한 차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가 가져온 서계 가운데 반드시 7-8월 사이에 동무(東武)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예조의 회답 서계 가운데도 이미 기약한 대로 차출하여 보내겠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접위관과 서로 접촉하였을 때도 또한 그 때를 어기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가 그 서계를 가지고 돌아가 관백(關白)에게 고하였고, 문위역관이 가지고 온 별단의 예조 회하(回下) 내용에도 5월에 배를 탄다고 정녕 조정하였다 하였기로 또한 즉시 도중에 통보하였고, 도중에서도 이미 재삼 정녕한 약속을 받들어 호행차왜를 기일에 맞추어 출발하여 보내어 오늘 내일 사이에 도착할 것이거늘, 이제 와서 통신사의 사행의 도구가 미비되었다고 출발을 7월로 물렸는바, 이른바 통신사의 사행 준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니, 해를 넘겨 짐을 꾸리면서 어찌 미비될 리가 있겠으며, 두 나라가 교류하는 우호관계에 성신(誠信)이 귀중하니, 비록 사소하게 미비된 물품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절차 때문에 재차의 정녕한 약속을 억지로 어기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 이제 출발을 물리는 일은 반드시 대단한 곡절이 있어서일 것이니, 바라건대 실상을 들어야만 하겠다’고 하며 거듭 반복하여 말하거늘, 소인이 ‘사신이 여러 차례 교체되었기 때문에 사행 도구가 미비된 것이 그 실상이지 조금도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도리어 의혹을 품는가? 7월로 출발을 물리는 일은 조정에서 이미 조정하여 이런 분부가 있었으니, 너희의 도리에 있어서도 오직 도중에 급히 통보하여 돌려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거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질없이 의심하는 마음만 품고서 즉시 도중에 통보하지 않고서 기다리는 폐단이 있게 되었으니, 이는 무슨 도리인가?’

라고 하며 이런 사연으로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 타일렸는데도, 왜인들의 의혹이 점점 심해져서 끝내 듣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이제 만약 이렇게 도중에 통보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조선에 무슨 큰 일이 있어서 통신사의 출발을 5월에 배를 탄다는 일로 정녕 서로 약속하였다가 멀리 7월로 물리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모두들 의혹하여 소동이 나는 것은 도중의 일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 참으로 작은 염려가 아니다. 만약 물리지 않을 수가 없는 큰 일이 있다면 그 실상을 글로 지어서 서계로 보내주어야만 예도에 품신하여 보고함으로써 폐단이 없겠거니와, 사행의 도구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고 계절이 덥고 습하다고 말을 한다면 비록 서계가 있더라도 부질없이 웃음거리만 될 것이라 당초에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니, 이런 뜻을 급히 조정에 품신하여 속히 서계를 내려 비선으로 도중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면서 끝내 도중에 통보할 뜻이 없으니, 일이 극히 걱정스럽다”고 와서 고하였는바, 이제 이번 통신사의 출발을 물리는 것은 실로 부득이한 일에서 나온 것이지만, 관왜 등이 도리어 의혹을 내어 즉시 도중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그 정상과 태도가 참으로 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하거니와, 5월에 배를 탄다고 조정한지 이미 오래된 뒤에 이렇게 출발을 물리는 일이 있었으니, 구전(口傳)으로 통보하는 것은 또한 범연하여 그 부득이 사행을 물리는 연유를 말을 만들어서 서계로 도주에게 보내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품지하여 분부하시며, 훈도 박유년(朴有年)이 코피(衄血)를 흘리는 위중한 병을 얻어 전후로 피를 흘린 것이 거의 너댓 동이(盆)에 이르러 원기가 소진되어 숨이 끊어질 듯 죽어가고 있기로, 차도를 보여 회복할 사이에 차왜 후지 나리히사(藤成久)의 예단은 역관 변정욱(卞廷郁)⁵⁴⁾을 가훈도(假訓導)로 정하여 임무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방금 박유년의 병환이 조금도 차도가 없고, 별차 최억과 가훈도 변정욱 등은 모두 낮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번 사행을 물리는 한 가지 일을 좋은 말로 타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호행차왜가 만약 이런 시기에 온다면 응접하는 책임은 결코 최억 등이 감당할 바가 아닌지라, 변통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훈도 박유년은 이제 짐짓 바꾸어서 그 대신으로 일을 아는 역관을 최선으로 선발 차출하여 밤낮없이 내려 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전후 장계를 보면,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물리는 것을 관왜 등에게 타일렸더니 동 왜인의 말이 당초

54) 변정욱(卞廷郁, 1638-?): 밀양 변씨로 자는 문경(文卿)이다. 숙종 4년(1679)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정헌대부에 이르렀다.

사신을 청한 후지 이찌마사(藤一政)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에 이미 기일대로 보내겠다고 하였고, 접위관과 서로 접촉했을 때 또한 그 때를 어기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돌아가서 관백(關白)에게 고하였으며, 별단의 회하 내용에 5월에 배를 탄다고 정녕 조정하였다고 하기로 도중에도 이미 정녕한 약속을 받고서 도중에서부터 에도(江戸)에 이르기까지 각 역참에서 접대할 여러 도구를 이미 장만하여 대기하며, 두 나라 교류의 두터움은 성신(誠信)을 귀하게 여김에 있거늘 이제 사행의 도구가 미비하였다고 멀리 7월로 물리는 것은 모두가 의혹하여 소동이 나는 것이 도중의 일만으로 그치지 않고, 만약 사행을 물리지 않을 수 없는 큰 일이 있거든 그 실상을 글로 지어 서계로 보내 주어야만 에도(江戸)에 품신하여 보고할 수 있겠다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 사신의 출발을 물리는 일을 저들이 의혹하여 심지어는 각 역참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소동이 난다는 이야기로 이렇게까지 올려대니, 그 정상과 태도가 참으로 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할 뿐 아니라, 사신이 여러 번 교체되어 사행의 도구가 준비되지 아니하여 기일을 물리는 것은 일의 형편상 부득이한데서 나온 것이고, 그 사이에 별로 다른 뜻은 없는데, 의혹하여 소동을 떠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라, 별도로 서계를 지어 보낼 필요가 없으니, 다시 타일러서 호행차왜가 나오기 전에 급히 도중에 통보하라는 뜻으로 동래부에 분부함이 마땅할 듯한데,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훈도 박유년의 병든 실상이 이러하다면, 장계의 내용대로 이제 짐짓 바꾸어서 그 대신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각별히 선발하여 급속히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3월 23일 우승지 신 송창(宋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당초에는 비록 5월에 배를 타는 것으로 저쪽에 회보하였으나, 사고가 있어 물리는 것은 일의 형편이 마침 그러해서이지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거늘, 관왜들이 지나치게 의혹을 내어 즉시 도중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게 되었거니와, 출발 기일을 이미 물린 뒤로는 저쪽의 말 때문에 다시 나가거나 물리는 일이 있어서는 불가하며, 우리쪽에서 벌써 이미 관왜에게 언급하였으니 도중에 통보하는 여부의 책임은 저쪽에 있지 우리가 알 바 아니니, 해조의 회계대로 다시 명하여 이런 뜻으로 타일리게 하되, 사행을 물리는 이유에 있어서는 특별히 다른 사단이 없고 단지 차출된 사신이 때가 임박하여 병으로 교체되어 미처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에, 조금 물리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언급해도 무방하며, 또한 사행의 개선

(開船:배로 출발함)은 7월이 가장 편하며, 만약 7월에 서울에서 길을 떠나면 바다를 건너는 기일은 정녕 바람이 높은 계절에 해당하여 배를 운행하기에 이롭지 못하다고 하니. 사행의 출발 날짜는 5-6월 사이로 물려 정하고, 배를 타는 것은 마땅히 7월에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관왜에게 말을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3월 24일 동부승지 신 조세환(趙世煥)⁵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동래부사 남(南)의 장계 내용. 이달 15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두귀(李斗龜)의 치통 내용임. “지난 2월 초10일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7명 등이 무역을 요구한 잡물을 실어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지난번에 봉행 등의 서계를 받을지 여부를 품의 조치하라는 뜻으로 치계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계하 회관(回關)⁵⁶⁾ 내용에,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때 봉행 등이 서계를 다듬어 보내는 것은 과연 분수에 넘친 외람된 일이나, 그들이 이미 폐단을 줄이는 데 뜻이 있고 뒤로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전례 또한 근거할 만하니, 짐짓 받는 것을 허락해도 무방하다는 일의 관문이었기로, 동 봉행 등의 서계 1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봉행 등이 서계를 왕복하는 것이 비록 한 때의 임시조처에서 나왔으나 본부에서 매양 답장을 닦아 주는 것 또한 피곤한 일일 뿐 아니라, 이제 이번 아홉 차례 송사를 정지하는 일은 실로 도주가 폐단을 줄이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도주에게 직접 서계를 닦아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봉행 등에게 답서를 닦아서 보내는 것은 없는 일로 함이 어떠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이제 이번 아홉 차례 송사를 정지하는 일은 실로 폐단을 줄이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본부에서 매양 답장을 닦아 보내는 것 또한 피곤한 일이고, 곧장 도주에게 서계를 닦아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봉행 등에 대한 답서는 다듬어 보내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함이 어떠할지 품의 조치하라 하였는바, 봉행 등의 서계 왕복은 한 때의 임시 조처에서 나온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례로 삼아서는 불가한데, 곧장 도주에서 서계를 닦아 보내는 것이 참으로 체면에 맞으니,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답 초

55) 조세환(趙世煥, 1615-1683); 임천(林川) 조씨로 자는 의망(嶷望), 호는 수촌(樹村)이다. 효종 정유(丁酉, 1657)에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경신(庚申, 1680)에 동래부사를 역임하고 승지가 되었다.

56) 회관(回關): 앞서 올린 공문과 관련하여 회답으로 보낸 관문(關門).

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어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함지? 강희 21년 3월 23일 우승지 신 송창(宋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술(1682) 4월 초1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내용.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1척이 나와서 돌아온다는 보고에 의거하여 가훈도 변정옥과 별차 최억 등에게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제1척은 통신사의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가 탄 배인데 봉진압물 1인, 시봉 2인, 반중 25명, 격왜 90명, 제2척은 동 차왜의 부관 다이라 나리히사(平成尙)가 탄 배인데 시봉 1인, 반중 10명, 격왜 50명, 제3척은 도선주 후지 나리세이(藤成淸)가 탄 배인데 격왜 40명, 제4척은 동 차왜의 수목선(水木船)으로 격왜 20명 등이 전례대로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졌으며, 제5척은 재판차왜 다이라 나리쓰구(平成次)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0명, 격왜 40명, 제6척은 동 차왜의 수목선으로 격왜 20명 등이 전례대로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졌으며, 제7척은 임술조 겸대세견 제5선으로 격왜 30명, 제8척은 동년조 겸대세견 제6선으로 격왜 30명 등이 각기 노인을 가졌으며, 제9척과 제10척은 비선인데 각기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교대차 나온 도금도왜 6명과 소금도왜 5명 등이 나누어 타고 있었음. 제11척은 소소종선(小小從船)으로 불시에 사용하기 위해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가 탄 배에 매어 두어서 본디 격왜가 없고 또한 노인도 없었음. 위 항목의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는 일등(一等) 봉행의 우두머리로 권력을 잡아 용사(用事)하기로 그보다 더한 이가 없기로, 관수왜가 왜관에 있는 두왜들을 거느리고 선창에 나열하였다가 그 차왜가 육지에 내릴 무렵에 부복하여 경건하게 맞이하였고, 차왜는 성대하게 위의(威儀)를 펼쳐 우리에게 존대(尊大)한 기색을 보이는 것이 모두 본보기로 보이려는 일이 아님이 없었음. 소인들이 차왜가 머무는 곳에 가서 서로 접촉하여 인사를 나눈 뒤에, ‘지난번에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7월로 물려 정하였기 때문에 짐짓 올라 올 일이 없다는 말을 보냈는데 이제 어찌하여 왔는가?’ 하였더니, 차왜 등이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당초 통신사가 오도록 청한 차왜 후지 이찌마사

〔藤一政〕의 회답 서계 가운데 이미 금석 같은 승낙을 받았고, 또한 문위역관이 되돌아갈 때 가져 온 도주의 별단에 대한 회답에도 또한 그대로 시행한다 하였기로, 오가며 조정한 것이 금석과 같을 정도일 뿐만이 아니기로, 동 사신의 행차가 4월에 내려 와서 5월에 배를 탄다는 정녕한 뜻을 에도〔江戸〕에 전달하여, 이것을 수륙 각 역참에 분부하여 미리 먼저 정제하도록 하였는데, 지나는 길의 각 지방관들이 모두들 분주하게 현재 대기하고 있기로, 저희들도 이달 14일 대마부에서 출발하여 사수나(佐須奈) 포구에 이르러서 7월로 행차를 물렸다는 기별을 얻어 듣고는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급급히 나온 것도, 또한 종전에 확정된 계획을 어길 필요가 없다고 곡진하게 고하여 전달하려는 계획이거니와, 이제 이번에 가져 온 서계 가운데 또한 곡절을 자세히 다 말하였으니, 이 서계를 급급하게 베껴 적어 올려 보내고, 또 저희들이 하는 말을 일일이 고하여 전달해 달라'고 하거늘, 소인들이 말하기를 '공 등이 하는 말이 비록 이러하나 조정에서 이미 물려서 정하였으니 이제 다시 고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의 형편으로 말하더라도 5월이나 7월 사이가 그다지 멀지 아니한데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지난번에 관수(館守)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이미 에도〔江戸〕에 보고 품신하여 혹 서계를 물리자고 청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 터이거니와, 무릇 차왜(差倭)와 송사(送使)는 본디 정해진 격식이 있는데 이제 공이 격식 외의 사람을 함부로 거느리고 온 것은 또한 무슨 일인가?' 하였더니, 정관왜(正官倭)가 말하기를 '나를 차출하여 나오게 한 뜻은 우연이 아니고, 수봉행(首奉行)에게 부관이 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며, 거느리고 온 사람의 다소는 한 사람의 존비(尊卑)에 관계된 것이지 접대 등의 일은 논할 겨를이 없으며, 다만 그 민망하고 긴박한 사정은 모두 사행을 물리는 한 조목이 극히 우려될 만함에 있거늘, 관수왜가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끝까지 논란하지 아니하고 대충 글로 적어 보고하였는데, 만약 이로 인하여 일을 망치는 우려가 있게 되면 그 책임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그때 후지 이찌마사〔藤一政〕가 사행의 시기를 논의할 때를 당하여 사행을 물렸으면 비록 1년을 물리더라도 불가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재차 굳힌 약속이 임박한 뒤에 갑자기 물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낭패는 굳이 돌볼 것도 못되지만 신의를 잃음에 있어서는 어찌할지 모르겠다. 사행의 도구가 미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이 한 번의 웃음거리도 되지 못하니, 급히 서계를 베껴 적어 기일을 정하여 올려 보내어 폐단 없이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접위관도 급속히 오도록 청하여 달라'고 거듭 말하여, 서로 문답한 이야기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음. 관수왜가 자리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행차를 물리는 것이 어렵다는 뜻은 이미 갖추 진술하였기에 이제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않거니와, 이제 도중에서 온 사서를 보면 세 사신 이하의 직함과 성명을 십분 다시 재촉하여 적어 보내고, 겐유잉〔嚴有院〕 편액은 증정을 청할 필요가 없으며, 두 묘(廟)에 분향하는 여러 도구와 예단과 폐백에 사용할 잡물 또한 가져 오지 말되, 별폭의 말과 마상재에 탈 말 및 마상재를 할 사람은 사행 이전에 들여 보내주며, 마의방(馬醫方) 1질과 또 다른 말을 기르는 처방이 있거든 아울러 무역을 청하여 들여 보내달라고 도주로부터 간절한 요구가 있었으니, 고달(告達)하여 무역을 허락해 주고, 마상재 및 말은 즉시 명하여 내려 보내어 왜선으로 먼저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음. 차왜가 데려온 원역(員役)을 다투어 줄이는 일 및 접위관을 서울과 지방 중에서 조정하는 일은, 왜관의 여러 왜인들이 차왜를 만나고자 청하는 자가 당(堂)에 가득하여 소란스럽기가 매우 심한데다, 허다한 서계를 베껴 낼 무렵에 밤이 장차 반이나 지나고, 동 차왜 등이 갑자기 먼저 안으로 들어갔기에, 지금은 짐짓 파하여 나왔다가 조용히 힘껏 다룰 계획임. 차왜 후지 나리히사(藤成久)의 말이 ‘교대차 나온 차왜 다이라 나리쓰구(平成次)가 이미 나왔기에 저는 속히 돌아가야 마땅하니, 속히 상선연을 행하고 그대로 곧장 돌아 들어가겠다고 하였음. 두 차왜의 서계 등본 및 노인 4통을 가져다 바치면서 회언한다’ 하였기로, 동 서계 등본과 노인 4통을 받아 올려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통신사의 행차를 물리자는 기별은 이달 21일 관왜(館倭) 등이 사서(私書)로 도중에 통보하였다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호행차왜가 늦추어 간다는 이 통보를 듣고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제 이번 차왜의 말이, ‘늦추어 간다는 기별을 듣고는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고 급히 나온 것은, 또한 꼭진하게 고하여 진달하여 반드시 종전에 확정된 것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는 말이 전일에 관왜 등이 말한 바와 한 가지 투식(套式)이며, 그 의도는 반드시 앞서 정한 기일로 사행을 당기고자 하는 것인 바, 이른바 다이라 마사끼(平眞幸)는 곧 지난번 봉행 등의 서계 가운데 첫머리에 적은 사람으로, 도중(島中)의 모든 일이 이들이 주장하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의 사정은 지난번 관왜 등과 다투어 고집하던 때와는 크게 다름이 있어서, 비록 사행을 물리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서계로 닦아서 도주에게 보낸다고 하나, 도주의 뜻이 만약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와 다름이 없어서 억지로 사행을 당기자고 청하여 시종 서로 버틴다면, 장차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참으로 우려되거니와, 차왜를 접대하는

한 조목은, 이전에 도부한 예조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의 ‘을미년(1655) 통신사 때 이미 부관과 도선주의 인원을 갖추는 사례가 없었고, 또한 경접위관이 접대하는 일이 없었으니, 전례대로 향접위관으로 접대하며, 부관과 도선주는 전례에 의거하여 방색하라’는 일로 관문에 타일렀기로, 부관과 도선주는 전례에 없는 바니 데려 오지 말라는 일로 관왜 등에게 말하여 차왜가 나오기 전에 통보하였더니, 이제 인원을 갖추어 데리고 와서는 ‘수봉행(首奉行)이 부관을 데려 오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바, 전례로 말하자면 무신년(1668) 차왜 다이라 나리가쓰(平成勝)와 신해년(1671) 차왜 다이라 나리다이(平成太), 임자년(1672) 차왜 다이라 나리노리(平成令) 등이 모두 봉행으로서 부관과 도선주를 데리고 나왔으나, 일찍이 사례에 의거하여 막지 않고 모두 다 접대하였는데, 이제 비록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의 전례로 말을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수봉행에게 부관이 있는 것 또한 전례가 있다고 고집하여 말하는 처지일 뿐 아니라, 부관과 도선주를 차출하여 보내는 뜻이 이미 도주의 서계 가운데 있는바, 일의 형편으로 해아리더라도 접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데려온 반종과 격왜의 인원수에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지나치기로 이제 막 역관들에게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를 줄이게 하였으며, 또한 향접위관이 접대하는 뜻을 타일러 조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거니와, 다만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멀리 7월로 물려 조정에서 결코 당겨 정할 뜻이 없다면, 이제 이번에 나온 차왜를 급급하게 접대할 필요가 없으니, 지금은 짐짓 되돌아갔다가 기일에 맞추어 다시 오라는 뜻으로 특별히 통신사 일행 중에 차출한 수역(首譯)을 보내어 그들에게 조정에서 결코 당겨서 정할 뜻이 없음을 타일러야 진퇴(進退)할 바가 있을 것인데, 어찌해야 할지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며, 재판차왜는 종전에 향접위관이 접대하였기로, 전례대로 이웃 고을의 수령 가운데서 차출하여 정하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으니, 증정할 예단 등의 물건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며, 통신사의 사행 때의 별폭으로 사용할 말과 마상재를 할 사람 및 그가 탈 말을 아울러 사행 이전에 들여보내며, 마의방 한 질 및 달리 말을 기르는 처방의 무역을 청하는 일은 또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기를. 두 차왜의 서계 등본 2통 및 각 선박의 노인 4통 등을 감봉하여 올려 보내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의 호행차왜로 수봉행 다이라 마사끼가 부관과 도선주를 데리고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통신사의 사행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뜻을 누누이

이야기하였으며, 경접위관을 급속히 청해 오라 하였으나 향접위관으로 접대한다는 뜻으로 타일러 조정하여 추후에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 하였으며, 통신사의 출발 기일은 결단코 당겨 정할 뜻이 없다면 차왜는 접대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짐짓 되돌아 들어갔다가 기일에 맞추어 다시 오라는 뜻으로 특별히 사행 중의 수역을 보내어 잘 타이르며, 도중(島中)에서 보내 온 사서 가운데 세 사신 이하 원역을 적어 보내는 것을 또한 재촉하였으며, 겐유잉(嚴有院)의 편액은 증정해 줄 것을 청할 필요가 없으며, 두 묘(廟)에 분향하는 여러 도구와 예단 폐백에 사용할 잡물 또한 가져 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예단의 말과 마상재에 탈 말 및 마상재를 할 사람은 사행 전에 들어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마의방 1질 및 다른 양마방(養馬方)을 아울러 무역하여 보내 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는바, 세 사신의 원역의 직함과 성명은 이미 적어 보내게 하였는데 아직 미처 거행하지 않아서 이런 재촉이 있었으니 즉시 적어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분부하시며, 겐유잉(嚴有院)의 편액 및 두 묘에 분향하는 여러 도구는 그 말한 바대로 들여보내지 말며, 예단용의 말을 기일에 앞서 들여보내는 일은 일찍이 이미 확정하였으니 이대로 거행하며, 마상재에 탈 말 및 마상재를 할 사람은 사행 전에 먼저 들여보내는 것은 불가하고 사행과 동시에 데리고 가는 일을 언급하게 하며, 마의방은 일찍이 이전에 무역을 요구할 때 이미 달리 말을 기르는 처방이 없어서 단지 『마의서언해(馬醫書諺解)』의 무역을 허락하였는데, 『마의서언해』 1질을 사복시(司僕寺)에 명하여 찾아 보내는 일로 분부하시며, 재판차왜가 교대차 나왔으니 증정할 예단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며, 통신사 출발 시기를 이미 물렸는데 호행차왜가 이제 이미 나왔으니 이웃나라와 교류하는 도리에 있어서 접대하지 않고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또한 불편하며, 사행 중의 수역은 지금 별도로 내려 보낼 필요가 없고, 새로 차출한 훈도로 하여금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어 지금은 짐짓 돌아 들어갔다가 기일에 맞추어 다시 오라는 뜻을 차왜에게 타이름이 마땅할 듯한데,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 지라, 모두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초1일 동부승지 신 조세환(趙世煥)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통신사의 사행 시기를 조금 물린 것은 일의 형편이 마침 그래서인지라, 차왜가 비록 전일에 확정된 것에 어긋남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행의 출발 일정을 4월로 물릴 수가 없는데, 이제 임시로 나와서 도리어 신의를 어겼다고 우리를 책망하니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매우 미우니, 이런 조목은 말을 만들어 타이르게 하되, 저쪽에서 이미 나온 뒤에 접대하지 않고

곧바로 되돌아 들어가게 함은 먼 외국 사람을 대하는 도리가 아닌 듯하고, 사행을 물린 것도 또한 한 달 사이에 지나지 않아서, 혹 그대로 머물러 기다리거나 혹은 되돌아갔다가 다시 오거나 그 하는 대로 맡김이 합당하니, 이대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초2일 동부승지 신 조세환(趙世煥)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재판차왜 다이라 나리쓰구〔平成次〕가 가져온 서계 등본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전에 재판차왜 다이라 나리쓰구〔平成次〕가 가져온 서계에 대한 회답을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였다가 원 서계가 올라온 뒤에 내려 보내되, 회례 물품은 전례대로 참작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또한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낼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 화석 3장. 녁장 불인 유둔 2부. 참먹 30홀. [이상 본도].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 참먹 20홀. [본도에서 마련함].

一. 예조의 단자. 이제 이번 재판차왜 다이라 나리쓰구〔平成次〕의 각 연회에 증정하여 줄 예단은 전례대로 마련하였으니,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차비역관을 정하여 가지고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차왜의 세 차례 연회에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 화석 3장. 녁장 불인 유둔 3부. 참먹 30홀. [이상 본도].

압물(押物) 1인과 시봉 1인의 각기 세 차례 연회에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 [이상 해조].

반종(伴從) 10명에게 각각 세 차례의 연회에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 해조]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심.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계하하신 내용에, 동래부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이번 통신사 사행 때 겐유잉〔嚴有院〕 편액의 증정을 청할 필요가 없고, 다이유잉

[大有院]과 겐유잉[嚴有院] 두 곳 묘에 분향하는 여러 도구와 예단 폐백에 사용할 잡물 또한 가져 오지 말아 달라고 하였는데, 그 말하는 바대로 들여보내지 말며, 예단용의 말은 사행 전에 먼저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기에 기일에 앞서 들여보내는 일을 일찍이 이미 확정하였으니, 이대로 거행하는 일로 복계하였는데, 계하한 내용의 사연을 상고하여 시행할 일. [호조, 경상감사, 전라감사에게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에 예단용의 말을 먼저 들여보내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데려가는 이마(理馬) 1인이 타고 갈 말 1필을 전례대로 지급할 일. [병조로]

임술(1682) 4월 초4일

一. 이달 초3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을 때, 본조의 판서 여(呂)가 계달한 바, “통신사의 사행 때 마상재가 탈 말의 안장 2부를 상고(廂庫)에 있는 호안(胡鞍: 청나라 안장)으로 지급하여 보내고, 겐유잉[嚴有院]에 치제하는 숙수(熟手)는 들여보내지 말고, 사행 기일을 조정하기 위한 역관 1인은 별도로 보내지 말자”는 일로 탐전에서 확정함.

一. 이달 초3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보냈을 때 예조판서 여(呂)가 계달한 바,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에 마상재를 할 사람이 탈 말의 안장을 전례대로 만들어 주게 하였는데, 가만히 들으니 상고(廂庫: 대궐 창고)에 있는 호안(胡鞍)의 제도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특별히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없다고 하니, 이것을 주어 보내는 것이 편하고 합당할 듯하다”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왜인은 대개 새롭고 선명(鮮明)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니 상고에 있는 호안 2부를 주어 보내도 좋다”고 하였음. [호조, 공조, 통신사에게]

임술(1682) 4월 초7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초2일 성첩한 장계 내용. 왜인의 작은 배 2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일에 의거하여 가훈도 변정옥과 별차 최억 등에게 명하여 문

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관수 및 차왜 등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갔더니, 차왜 등이 먼저 이미 자리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저번에 통신사의 사행을 7월로 물린다고 운운한 일로 도중(島中)에 통보하였더니, 도주가 놀라움과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동래 부산 두 영공을 뵈기를 청하여 사서 가운데의 말뜻을 자세하고 곡진하게 진달하여 기어코 청을 받아내라고 운운하였는데, 즉시 내일 뵈기를 청한다는 뜻으로 가서 고하고, 회답해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도중(島中)에서 온 사서의 의도를 물었더니, 그들이 장황하게 말한 바는 대개 전일에 관수 및 호행차왜의 말과 시종 한 가지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으나, 대개 ‘두 나라에서 서계를 오가며 논의하여 정한 일을 결단코 사행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조그만 일로 이렇게 신의를 잃는 것은 참으로 매우 괴이하니, 조선에서 만약 사행을 물리지 않을 수 없는 큰 일이 있다면, 어찌 감히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억지로 청할 리가 있겠으며, 사행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일이라고 할 수 없으니, 한결같이 이전에 정한 대로 시행하여 온 나라가 낭패가 나는 데 이르지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천만 직접 동래 부산 두 영감 전에 간청하여 달라’고 운운하였는바, 교활한 왜인이 평소 머뭇거리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의심을 하니, 일이 극히 해괴하기로, 사신이 여러 번 바뀌어 사행의 도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그 실상이라는 뜻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였는바, ‘이제 비록 뵈고 진달하더라도 끝내 보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 등이 말한 바와 호행차왜의 서계 등본으로 인하여 조정에 품신하여 보고하였고, 그 회답이 오래지 않아 내려올 것이니, 지금은 짐짓 공손히 기다리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 말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서로 한참 논의한 뒤에 말하기를 ‘회답이 내려오는 사이에 기다릴 계획이니, 동 회답이 내려오는 즉시 언급해 달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세 대사(大使) 이하의 직함과 성명과 연세를 아울러 적어 주어 들여보내는 일을 이제 또 독촉하였는데, 다시 더 재촉하여 적어 달라’고 재삼 이야기하였음. 노인 1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하였음.

동 노인 1통을 감봉하여 올려 보내거니와,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을 물리는 일은 당초 관왜 등이 이미 의심하는 사단을 내어, 서계를 받아 곡절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다고 하였고, 추후에 나온 호행차왜는 또 이전에 정한 날짜대로 당겨 행하기를 청하였다가, 이제 이번에 나온 비선의 도중에서 보내온 사서에는 차왜에게

명하여 동래 부산의 영감을 뵈기를 청하여 기어코 청을 얻어내라고 하여, 갈수록 한층 더 장차 강박하여 마지않는 것은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매우 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하거니와, 방금 역관들의 말을 들으니 이제 이번 통신사가 들어가는 기일에 대하여 도주가 이미 관백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만약 기일을 어기면 도주가 장차 엄중한 문책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차왜 등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바, 과연 그 말대로라면 앞으로 강박하는 근심 걱정이 장차 못할 일이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 일이 매우 난처하여 부득이 사행을 물리는 이유를 서계로 닦아 도중에 보내고, 별도로 수역을 보내어 차왜에게 타이를 생각이라는 뜻은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는데, 지금의 형세가 대단히 긴급하여 이런 조처가 없으면 장차 끝내기 어려운 근심 걱정이 있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하시며, 훈도 박유년은 이미 벌써 바꾸었으니 그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엄중하게 독촉하여 밤낮 없이 내려 보낼 일임.

그리고 동래부사 남익훈이 4월 초2일 올린 장계 내용임.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일에 의거하여 가훈도 변정옥과 별차 최억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관수 등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 가운데의 사연을 물었더니, ‘통신사 행차의 한 조목은 두 나라의 큰일인데, 이제 들으니 7월로 물린다는 연유를 듣고는 도주가 걱정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이전 약속대로 하기를 간청하고, 한편으로 날날이 급하게 알리게 하였기로, 형편을 통보하기 위하여 비선을 보내왔거니와, 만약 사행을 물린다면 도주가 장차 엄중한 문책을 면치 못할 것이기에 일이 매우 염려스러오니, 연유를 일일이 고하여 진달해 달라’고 거듭하여 말하였음. 노인 1통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라고 운운”한 일로 치통하였음. 동 노인 1통을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전후 장계를 보면 두왜가 연속하여 나왔기에 역관들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차왜 등이 누누이 이야기한 것이 모두 사행이 당겨서 정해 달라는 요청이며, 세 사신 이하의 직함과 성명, 연세를 아울러 글로 적어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당초 관왜(館倭)가 통신사의 일로 이미 의심하는 단서가 생겨 서계를 받아야 하겠다고 청하였다가, 이제 이 도주의 사서에서는 차왜로 하여금 동래 부산의 수령을 만나자고 청하여 기어코 요청을 이루도록 명하였으며, 도주가 이미 관백의 명을 받

았는데, 이제 만약 기일을 어기면 도주가 장차 엄중한 문책을 면치 못한다고 운운하며, 앞으로 강박하는 근심 걱정이 장차 못할 일이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 일이 매우 난처하다고 하였는바, 사신 이하 원역의 직함과 성명은 이미 적어 보내어 오래지 않은 시일에 마땅히 저쪽에 도착하겠으나, 연세를 적어 주는 일은 이제 처음 이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전례가 없고 또 일의 체면에 손상이 되니 그 말대로 굽혀 따를 필요는 없으며, 사행을 조금 물리는 일은 비변사에서 이미 확정하여 방금 이미 행회하였으니, 이제 와서 흔들어 고치기는 어려울 듯하되,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어 모두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며, 훈도 박유년을 교대할 사람에게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는 일은 이미 확정하였으니, 장계대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밤낮없이 내려 보내는 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초7일 동부승지 신 조(趙)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차왜 등이 다시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당겨서 행하자는 뜻으로 누누이 청하였는바, 통신사의 사행은 이제 이미 5월 중에 하기로 택일하였으니 그들의 재촉으로 말미암아 당겨 정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초10일 우부승지 신 어진익(魚震翼)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술(1682) 4월 초9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초3일 성첩한 장계. 이제 이번 호행차왜의 원역(員役) 인원수를 줄이고 경접위관이 접대하는 여부를 추후에 조정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역관들의 수본 내용에 “차왜 원역의 인원수가 극히 넘치는 것은 일이 매우 불가할 뿐 아니라, 계미년(1643) 통신사 때 모두 향접위관이 접대하였으니, 이제 또한 모두 전례대로 시행하는 외에 결단코 흔들려 고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연일 있는 힘을 다하여 다투어 고집하였는데, 차왜 등은 ‘단지 통신사의 행차가 이전에 정한 날짜에 내려온다면 행차를 호송할 따름이지 접대하는 한 조목은 다들 바가 아니거니와, 접위관에 있어서도 참판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져온 차왜를 경접위관이 접대하는 것은 진실로 그 사례이니, 일찍이 이전 통신사를 비록 혹 향접위관으로 접대하였다 할지라도 모두 일시의 임시 조처에서 나온 것이고, 이번에 차왜가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갖추어 가지고 나온 것은 곧

사행을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존중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니,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의 사례를 고집하여 말하여서는 안되며, 동 경접위관을 속히 청하여 오고, 차비역관도 당상관과 당하관이 전례대로 인원을 갖추어 오라'는 뜻으로 매번 견고히 고집하며 아직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위의(威儀)를 성대하게 베풀어 망녕되이 스스로 존대한 체 할 뿐 아니라, 부관 다이라 나리히사(平威尙) 또한 '무신년(1668)에 정관으로 나왔을 때 경접위관으로 대접하였고, 데려온 원역 또한 사례가 있다'고 여러 날 다투어 고집할 무렵에, 피차간에 문답한 이야기는 극히 지루하여 다 진술한 필요가 없겠거니와, 그 뒤에 비록 줄인 바가 있더라도 또한 격식과 사례 밖에서 나온 것이기로 다시 더 타이를 계획이라는 연유는 일찍이 이미 고하여 진달하였는데, 이제 이번 비선이 오자 동 차왜가 말하기를 '도중에서 나온 사서의 내용은 관수들이 이미 자세히 이야기하였으니 이제 다시 번거롭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대개 통신사가 만약 기일을 물려 정한다면 도주가 장차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극히 고민이 되고 일이 또한 다급하여, 원역의 많고 적음은 서로 다룰 것 없이 한결같이 판사 등이 말하는 바를 따라 인원수를 줄여 접대하며,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만은 급급하게 청하여 오되, 오직 하나 통신사의 행차는 5월에 정녕 배를 타는 일로 십분 동래에 고하여 진달하여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알림으로써 기어코 폐단 없이 온전하게 하도록 해 달라'고 갖가지 말로 간절하게 빌었음. 원역의 인원수를 정하는 일은, 정관과 부관의 시봉 각 1인, 반종 16명, 일호선 격왜 70명만 근자의 사례대로 접대하는 일로 명백하게 조정하였다는 일"로 수분하였음. 근래 부관 차왜가 없었고 반종 또한 16명으로 접대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이번 차왜는 당초 정관과 부관이 데려온 반종이 합계 35명이었다가 19명을 줄여서 단지 16명만 남겼으며, 시봉 3인에서 1인을 줄이고, 격왜 180명에서 110명을 줄여서 70명만 남겼으니 그 줄인 인원수의 많음은 실로 근년 이래로 없었던 일인바, 저쪽에서는 통신사를 행차를 당기는 것이 급하여 접대 한 조목은 다룰 것이 못된다고 이렇게 넉넉하게 인원수를 줄이면서, 접위관은 반드시 경관(京官)으로 접대하며, 차비역관은 반드시 당상관과 당하관의 인원을 갖추어 오라고 시종 견고하게 고집하며 빨리 내려오도록 청하는 것은, 그 의도가 또한 사행을 물리거나 당기거나 간에 다투어 따지려는 계획에 있거니와, 통신사의 사행을 다시 당겨 정할 일이 없다면 차왜를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은 급급하게 거행할 필요가 없는데, 원역의 인원수를 이미 줄였으니 경접위관을 장차 차출해야 할 형편이기에, 연유를 치계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의 호행차왜가 데려온 반중 35명 및 시봉 3인과 격왜 180명 중에서 반중 19명과 시봉 1인, 격왜 110명을 줄였다 하며, 접위관은 반드시 경관(京官)으로 접대하고, 차비역관은 당상과 당하관의 인원을 갖추어 와 달라고 시종 건고하게 고집한다 하였는바, 차왜가 데려온 원역의 인원수를 이미 줄였으니 각 잔치에 증정할 예단은 전례대로 마련하며, 차왜가 부관과 도선주의 인원을 갖추어 나왔을 때는 경관이 접대하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는데, 이제 이번 차왜는 일등 봉행이라 칭하면서 인원을 갖추어 나왔으니 한결같이 서로 버티기는 어려울 듯하며, 역관도 인원을 갖추어 차출하여 내려 보내도 무방하되,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초9일 좌부승지 신 윤이도(尹以道)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 일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통신사의 호행차왜가 경접위관으로 접대를 청한다고 하였는데, 호행차왜를 향접위관으로 접대하는 것은 본디 전례이며, 일찍이 이전에 비록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온 자가 있었더라도 또한 향접위관으로 접대한 것이 많았는데, 이제 별도로 경접위관을 차출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렇게 회이하며, 향접위관으로 만약 이웃 고을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도사(都事)를 차출하여 정하는 것도 무방하니,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13일 동부승지 신 조세환(趙世煥)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예조 단자.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조금 물리는 일은 이미 확정하였는데, 다시 일관(日官)에게 택일하게 하였더니 출발은 오는 5월 20일 묘시, 배를 타는 것은 7월 초2일 묘시나 초3일 진시, 초4일 묘시, 초7일 묘시가 모두 길하다고 하니, 배를 타는 기일은 이날 중에 임시로 편의에 따라 정하여 행한다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계달하였더니 계달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임술(1682) 4월 12일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방금 바친 역관들의 수본 내용에, “문위역관이 호행차왜에 대한 상선연은 없애고 건물(乾物)로 들여 달라고 운운하였다”는 수본이 있었기

로 그 원대로 이달 초6일 잔치 음식의 건물 및 예단 잡물을 아울러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음. 방금 도부한 비변사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에,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조금 물리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서계를 만들어 보내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당초 관왜 등이 반드시 조금 물린 연유를 서계로 닦아 보내주기를 바라다가,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가 나온 뒤로부터는 단지 이전에 정한 날짜로 사행을 당기자고 청하고 서계 한 조목에 대하여는 다시 거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초 관왜 등의 말이, ‘서계 가운데 사행의 도구가 미비되고 계절이 덥고 습하다는 말을 한다면 한갓 에도〔江戸〕에 웃음거리가 되니, 반드시 다른 부득이한 실상을 말로 만들어 서계를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제 비록 서계를 만들어 보내더라도, 그 하는 말이 사신이 여러 번 교체되어 사행 도구가 미비되었다는 말에 불과하다면, 관왜 등이 필시 도중으로 들여보낼 리가 없으니, 동 서계는 짐짓 저들이 다시 청하기를 기다린 뒤에 만들어 줄 계획이거니와, 호행차왜가 나온 뒤에 역관들이 문답한 사정은 지난 3월 26일 치계하였는데, 회하(回下)가 아직도 내도하지 않기로, 차왜 등이 일컬기를 ‘저희들이 나온 지 이미 10여 일이 지났는데 사행의 진퇴를 아직도 뚜렷하게 알려 주지 않으니, 동래 부산 영감을 만나 보고 직접 절박한 사정을 진술하겠다’고 운운하였다고 역관들이 날마다 와서 고하는바, 저들이 비록 강박하여 만나보기를 청하여도 가서 만나 볼 리가 만무하되, 이렇게 서로 버틸 무렵에 뜻밖의 생경(生梗)한 우환이 있을까 염려되어 매우 염려되어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一. 예조의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를 호행하는 일로 나온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와 부관 다이라 나리히사〔平成尙〕와 도선주 후지 나리기요〔藤成清〕, 압물과 시봉, 반종 등의 하선연과 상선연, 왜관에 머물 때의 별연(別宴)의 예단을 근래의 사례대로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차비역관을 정하여 가지고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차왜 정관과 부관에 대한 세 차례의 연회에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 참떡 20홀. 화석 3장. 녁장불인 유둔 2부. [이상 본도].

도선주 1인에게 3차례의 연회에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4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 참떡 20홀. 화석 3장. 녁장 불인 유둔 2부. [이상 본도].

압물 1인과 시봉 2인에게 각각 세 차례의 연회에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 [이상 해조].

반종 16명에게 각각 세 차례의 연회에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 해조]

국역 통신사등록 제4책

임술(1682) 4월 15일

一. 이번 4월 13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堂上)을 인견하였을 때, 예조판서 여성제(呂聖齊)가 계달한 바, “통신사가 내려 갈 때 전례로는 충주와 동래 등 네 곳에서 잔치를 하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흉년이 들어 사신의 마음이 매우 불안하여 스스로 사양하고자 하나 감히 직접 진달하지 못하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품신드립니다. 지난번 을미년(1655) 사행 때 있어서도 또한 세 곳을 제외하고 단지 동래에서만 행하였는데, 대개 동래는 저쪽 사람들이 보는 곳이라 매몰하게 전혀 폐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흉작이 이미 이러한데다 사신의 뜻이 이미 이러하니 세 곳에서는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줄여 없앴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좌의정 민정중(閔鼎重)⁵⁷⁾이 말하기를 “통신사에게 베푸는 잔치의 풍성함이 객사(客使)를 접대하는 것과 같음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 군에서 힘을 합쳐 하게 하는데, 그 일로 말하자면 여행을 위로하는 의식에 불과하고, 그 폐단으로 말하자면 고을 물력의 낭비가 적지 않아서, 을미년(1655)의 사행에는 사신의 사양 요청으로 말미암아 세 곳을 줄이고 단지 동래에서만 행하였는데, 지금의 형세는 또 을미년(1655)와 달라서 비록 줄이더라도 될 것입니다.” 하였고, 예조판서 여성제(呂聖齊)⁵⁸⁾가 또 말하기를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것은 비용이 적지 않아서 각 고을에서 미리 먹일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출발에 임한 뒤에 줄인다면 전혀 폐단을 줄이는 뜻이 없으니, 미리 확정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멀리 가는 신하에게 한 번 잔치를 하여 보내는 일이 없어서는 불가하니, 이제 또한 을미년(1655)의 사례대로 동래에서만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음. [통신사의 장무관(掌務官), 공홍도(公洪道; 충청도)와 경상도 등으로 이감(移甘)⁵⁹⁾ 함].

57) 민정중(閔鼎重, 1628-1692); 인조 26년(1649)에 문과에 급제하고, 효종 9년(1658)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고, 여러 관직을 거쳐 관직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58) 여성제(呂聖齊, 1625-1691): 함양 여씨로 자는 희천(希天), 호는 운포(雲浦)이다. 효종 5년(165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와 병조,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영의정에 이르렀다.

59) 이감(移甘): 감결(甘結)을 돌림. 감결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이다.

임술(1682) 4월 17일

一. 재자관(賚咨官) 이만일(李萬鎰)을 명민하면서 일을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차출하되, 시임(時任;현직)과 전함(前銜;전직)에 구애되지 말고 각별히 가려서 보내고, 역관 1인 또한 선발 차출하여 함께 보내는 일로 탐전에서 확정함. [이조, 사역원]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12월 성첩한 장계. 통신사의 호행차왜가 나온 뒤의 사정 및 차왜 등이 누차 서로 만나 보기를 청한 연유는 연속하여 치계하였는데, 차왜 등이 조정에서 결코 사행을 당길 뜻이 없다고 하여 그 망녕된 독기를 부려서 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요즈음 와서는 만나 보기를 청하는 것이 더욱 간절하여, ‘동래부사가 만약 와서 만나주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본부로 올라갈 것’이라 한다고 역관들이 와서 고하거늘, 아주 무리하다는 뜻으로 엄중한 말로 준절하게 물리치게 하였는데, 별차 및 가훈도 등이 모두 새로 부임한 생소한 사람으로 왜인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지라 주선하여 타이르기를 가망이 만무하기로, 전훈도 박유년이 비록 병이 심하여 몸져 누워있는 중에 있지만 그로 하여금 병든 몸을 부축하여 왜관에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르게 하였더니, 방금 바친 박유년의 수본 내용에, “분부가 내려와서 감히 물러나 엎드려 있지 못하고 병든 몸을 끌고서 왜관에 가서 종일토록 타일렀더니, 관수 및 차왜 등이 말하기를 ‘종전에 일이 있으면 정해진 때가 없이 만나 뵙기를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늘,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을 물린 것은 막중한 일에 관계되는데, 동래 영감이 끝내 와서 만나 보지 않기에, 저희들이 직접 나갈 계획을 한 것은 매우 절박한 데서 나온 탓이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고 공갈하여 온갖 말을 하거늘, 소인이 ‘일찍이 이전에 만나 뵙기를 청하는 데는 비록 전례가 있기는 하였지만 모두 조정에 품신하여 이루어졌지 원래 임의로 접견한 때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일찍이 공들이 말한 바를 자세히 진달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무슨 미진한 이야기가 있어서 반드시 얼굴을 보고 진술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렇게 뵙기를 청하는 것은 원래 도움이 안되는 것이거늘, 이제 약조를 범하여 여기면서 본부로 나가는 것은 더욱 더 극히 근거가 없다’고 충분히 말로 문책하였으며, ‘설혹 접견하더라도 피차간에 말을 전하는 것은 곧 저희들의 책임이니, 조용히 자세하게 듣고서 명백하게 수본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말을 만들어 타일러서 죽기로 힘껏 다투었더니, 동 왜인들이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만약 약속과

같이 하지 않으면 필시 큰 우환이 생겨날 것인데, 앞서 정한 기일이 이미 박두해 왔으니 만나서 간절하게 청하여 구걸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기로 이렇게 직접 가서 만나보고 진달하려고 계획하였는바, 만나서 진달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백의 성품이 준절하고 급하여 조금이라도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죽여서, 비록 대신이라도 아침에 바꾸었다가 저녁에 교체하니, 대소 신료들이 벌벌 떨지 않음이 없으며, 지난 해 도주가 에도(江戸)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알현하자 곧장 통신사를 청하고, 곧장 도주에게 즉시 대마도로 돌아가도록 명하였으니, 여기에서도 준절하고 급한 단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통신사의 행차가 4월에 내려와서 5월에 바다를 건너면 7-8월 사이에 에도(江戸)에 닿을 수 있다는 연유는 일찍이 후지 이찌마사(藤一政)가 가지고 돌아간 예조의 회답으로 말미암아 보고하여 알렸고, 또 별단의 회답으로 정녕 기일에 맞추겠다는 뜻을 재차 에도(江戸)에 통보하였기로, 일본 66주의 태수는 그 중 반이 번(番)을 들어 올라가고, 그 중 반은 번(番)을 서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해마다 서로 교체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 평소의 정식이지만, 올해에는 통신사를 기다리느라 번(番)의 차례를 따지지 않고, 경유하는 각 고을의 태수들에게 관백(關白)이 즉시 되돌아가 머물면서 통신사를 대기하며 그들로 하여금 곡진하게 접대하게 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통신사를 기다리며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늘, 이제 만약 7월로 사행을 물려서 그 기일을 어긴다면 성급한 관백이 필시 장차 도주에게 죄를 돌릴 것인지라, 이를 생각하면 어찌 죽기로 청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행장(行裝; 여행 차림)이 미비되어 이렇게 사행을 물리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크고 작은 사람들이 모두들 빈축하며 웃을 것이고, 만약 공경하여 대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통신사로서는 광채가 없음이 어떻게 하겠는가? 통신사에게 광채가 있으면 도주 또한 광채가 있고, 통신사에게 광채가 없으면 도주 또한 광채가 없으니, 도주의 영광과 모욕이 통신사에게 달려 있어서, 온 대마도의 상하 사람들이 모두들 폐단 없이 받들고 가서 큰일을 완수하기를 바라거늘, 이제 긴요하지 않은 일로 갑자기 사행 기일을 물려서 통신사로 하여금 광채가 없고 도주가 죄를 받게 한다면 일이 통탄스럽고 절박함이 이보다 심할 것이 없다. 이른바 행장(行裝)은 도중(島中)에 말을 전하여 보내면 그 자리에서 장만할 수 있을 것이라, 조금도 꺼리지 말고 일일이 적어 보여주면 때맞추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니, 통신사의 행차만은 조금도 물리지 말고 반드시 앞서 정한 4월의 출발과 5월에 배를 타는 것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큰 신의를 지키고 한편으로는 도주가 죄의 문책을 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하며 장황하게 이야기하여 하지 않는 말이 없기에 이루 다 기록하지 못하겠거늘, 소인이 조목조목 따져서 변론하며 곡절을 갖추어 진술하였고, 또한 ‘공들이 하는 말이 이와 같은 일에 지나지 않다면 공들이 만나보고 진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본부에 고하여 품신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함이 마땅한데, 공들이 경계를 넘어 밀고 나오려는 계획은 어찌 너무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혹은 책망하고 혹은 감사하며, 만나 뵈기를 청하는 일은 이제 짐짓 정지하였는데, ‘이런 절박한 뜻을 급히 장계로 조정에 알리되, 장계의 회하(回下)가 혹시라도 지연되어 기일이 이미 박두하면 어찌 이곳에서 기꺼이 죽고만 말겠는가?’라고 하면서 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은연중에 공갈하며 교활한 속임수를 부리는 태도는 참으로 매우 미웠다는 연유를 수본으로 하고 운운하였음. 통신사의 사행 기일은 이미 물려 정하였고, 앞서 정한 날짜는 단지 10일이 남았으니, 저들이 결단코 사행을 당길 수 없음을 모름이 아니로되 전후로 강박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다급할 뿐 아니라, 저들 역시 신을 만나 보는 것이 보탬이 되지 않는 줄 모르지 아니함에도 여러 차례 만나 보기를 청하는데 끝내 굳이 거절한다면 왜관 경계를 넘어 나올 계획까지 하고 있으니, 교활한 속임수를 부리는 정상이 참으로 예측할 수 없거니와, 다만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이미 관백과 조정하였다가 이렇게 물려 정하는 일이 있었으니 기일을 어겼다는 데로 귀결됨을 면치 못하여, 도주가 관백에게 죄를 받는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을 터라, 저들이 이를 염려하여 이렇게 강박하는 청이 있는 것은 또한 이치나 형세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바, 이제 만약 7월을 기일로 하여 다시 조금 당기는 일이 없다면, 교활한 왜인이 독기를 펼치는 일이 장차 이르지 못할 지경이 없을 것이라 참으로 걱정되고 염려스러운데, 앞에 도부한 비변사의 계하 관문 내용에 출발 날짜는 5-6월 간으로 물려 정하였는바, 출발하고 배를 타는 것이 모두 5-6월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데, 택하여 정한 기일을 미리 먼저 분부한다면 소란스럽게 떠드는 근심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겠기에 감히 품신드리오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지(稟旨)하여 진퇴하게 하시며, 방금 도부한 비변사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에, “차왜가 이미 나온 이후로 접대하지 않고 곧장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먼 외국 사람을 접대하는 도리가 아니고, 사행의 기일이 또한 한 달 사이에 지나지 않으니, 혹 그대로 머물러 기다리거나 혹은 되돌아 들어갔다가 다시 오거나 그들이 하는 바대로 일임함이 적절하다”는 일의 관문이었는데, 지금 차왜가 바야흐로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당기거나 물리는 일 때문에 이렇게 다투어 따지며 곧장 먼저 돌아

들어갈 형세가 없고, 동 차왜는 경접위관을 속히 내려오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재촉하였는바, 경접위관으로 접대한다는 뜻은 일찍이 이미 조정하여 치계하였으나, 이미 차출하였으면 재촉하여 내려 보낼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이미 관백에게 조정하였는데 이렇게 물려 정하는 일이 있어서 기일을 어긴 데로 돌아감을 면치 못하여 도주(島主)가 관백에게 장차 죄를 받게 되는 데는 그것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렵기에, 차왜 등이 이를 염려하여 이렇게 강박하는 청이 있게 된 것 또한 이치나 형세로 혹 그럴 만한 일인바, 이제 만약 7월을 기일로 하여 다시 조금 당길 일이 없다면 교활한 왜인이 독기를 펼치는 일이 장차 이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며, 출발하고 배를 타는 것이 모두 5-6월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택하여 정한 기일을 미리 먼저 분부한다면 시끄러운 우환을 조금이나마 멈출 수가 있을 것이며, 동 차왜는 경접위관이 접대한다는 뜻을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미 차출하였다면 재촉하여 내려보내라고 하였는바,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물려 정하는 일을 이미 확정하였기로 5월에 출발하여 7월에 배를 타는 일로 다시 택일하여 방금 이미 행회하였으니, 이제는 조금 당길 수가 없으며, 접위관도 향접위관으로 접대한다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행회하였으니, 이렇게 분부함이 마땅하되, 일이 변방 정세와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17일 우승지 신 송창(宋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13일 성첩한 장계 내용. 왜인의 작은 배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일에 의거하여 가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억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차왜 및 관수 등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갔더니 관수 및 왜관에 있는 두왜들이 한꺼번에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가 있는 곳에 모두 모여서 소인들을 만나 보기를 요구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도중(島中)에서 온 사서를 보면 도주가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7월로 물리려 한다는 연유를 듣고 놀라움과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신의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연유를 자세히 간절하게 진술하여 기어코 청을 얻어내라는 뜻으로 비선을 보낸 것이 두 번 세 번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없어서 바야흐로 목마르게 번민하고 있는 즈음에, 에도(江戸)에서 또 통신사를 재

촉하는 일이 있었으나, 결코 행장이 미비되어 이렇게 사행을 물리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에도〔江戸〕에 회보하여 스스로 무거운 죄를 재촉하여서는 불가하겠기로, 또 이렇게 급하게 통기(通寄)하였는데, 다시 온갖 말로 진청(陳請)하여 기어코 약속대로 하도록 하며, 한편으로 형편을 급하게 알려서 때맞추어 특별히 변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는바, 이른바 변통이라 한 것은 그 의도가 별도로 차왜를 보내어 서계로 진청하는데 있는데, 도주가 만약 어제 보낸 비선의 보고를 보면 별도로 보내는 차사가 오는 것이 반드시 오래지 않아 있을 터이니, 바라건대 속히 그대로 허락하여 갈망을 위로해 달라'고 각 왜인들이 같은 말로 애걸하거늘, 소인들이 또한 '차왜가 나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흔들려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였거니와, 그 나머지 장황하게 문답한 이야기는 모두 앞서의 투식(套式)이기에 이제 다시 번거롭게 진달할 필요가 없음. 노인 1통을 가져다 바치며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차왜가 강박하는 형세는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심지어 경계를 밀고 나와 동래부로 올라오려는 계획까지 하기에 겨우 타일러서 멈추게 하였으나,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조금 당기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은 어제 사유를 갖추어 치계하였는데, 이에 도주(島主)가 또 비선을 보내어 에도〔江戸〕에서 재촉하는 일이 있었다는 핑계를 대어 차왜 등이 간청하는 것이 또 한 층 더한바, 지금의 형세로는 만약 당겨서 정하는 일이 없으면 강박하는 걱정은 장차 이르지 못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또 별도로 차왜를 보내는 일이 있게 대면 접대하는 폐단 또한 매우 고민스러우니, 동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급속히 택일 분부하여, 급보로 도중(島中)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도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조금 당기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은 어제 사유를 갖추어 치계하였는데, 이제 도주(島主)가 또 비선을 보내어 에도〔江戸〕에서 재촉하는 일이 있다고 청탁하며 차왜들이 간절히 진청하는 것이 또 한 층 더하니, 만약 당겨서 정하는 일이 없다면 강박하는 걱정은 이르지 못할 것이 없게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또 별도로 차왜를 보내는 일이 있으면 접대하는 폐단 또한 매우 고민되니, 동 통신사의 사행 기일의 택일을 분부하여 도중(島中)에 급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는바, 연속된 치계가 모두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당겨 정하라는 뜻이나, 겨우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한 일을 이미 복계하여 운허를 받았으니 이것으로 회이하되,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

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17일 우승지 신 송창(宋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전후의 장계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이미 물려 정한 이후에 차왜의 억지 요청으로 다시 당겨 정하는 것은 불가할 뿐 아니라, 일찍이 5월에 출발하여 7월에 배를 타는 일로 고쳐서 확정하여 행회하였으니, 당초 정한 기일에서 한 달을 조금 물린 것이 불가한데, 저쪽으로서도 또한 대단히 어긋나고 그르칠 폐단이 없으며, 일마다 헛되이 공갈하는 것은 본디 교활한 왜인의 평소 태도인데, 설혹 경계를 넘어서 밀고 나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은 저쪽에 있으니 우리로서는 단지 법대로 조처함이 마땅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겁낼 필요가 없으니, 역관들에게 명하여 엄중한 말로 책망하여 타일러 다시 이런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21일 우부승지 신 어진익(魚震翼)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임술(1682) 4월 23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17일 성첩한 장계.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나왔기에 혼도 변정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차왜 및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차왜에게 가서 그 사서 가운데의 사연을 물었더니,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말이 ‘통신사의 행차를 물려 정한 것이 일본에서는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도주가 마음을 졸이며 번민(煩悶)함이 특별히 심하기로, 기어코 약속을 지켜 반드시 5월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연유를 간곡하게 전달하여, 모쪼록 청을 이루도록 하고, 통신사가 올 때 별폭의 예단을 증감하는 일은 별단에 적어 기록한대로 급급하게 전달하여 품신해 달라는 뜻을 고하여 전달하며, 통신사의 행차가 5월에 배를 타야 하는 일은 만약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 사정을 모두 진술하여 간청할 수 없으니, 저희들의 다례(茶禮)는 접위관을 기다릴 것 없이 동래 영감만으로 재명일(再明日; 모레)에 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거늘, 소인의 답하기를 ‘차왜를 접대하는 한 조목은 접위관이 주관하여 관장하니, 접위관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다례를 베풀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는 일찍이 이미 행한 규례가 있는

데 공이 실로 몰라서이다. 단지 돌아가서 고하기만 하면 된다'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였음. 노인 1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하며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요즈음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물려 정하였기 때문에 도중에서 비선이 연속하여 그치지 않고 나와서, 반드시 차왜로 하여금 만나보기를 간청하여 기어코 앞서 정한 날짜로 당겨 행하기를 청하게 하였는데, 사례에 의거하여 방색하여 끝내 가서 만날 뜻이 없다고 하였기로, 이 때문에 지난번에 왜관을 나와 올라 올 계획을 하였다가, 이제 이번 비선이 나온 뒤에 또 다례를 먼저 행하자고 청하여 한두 번에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때가 아닌데 찾아뵙기를 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데다, 또 다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먼 외국 사람이 바라는 심정에도 또한 낙망함이 있겠는데, 경점위관이 만약 때 맞추어 내려오지 않고 차왜의 청이 간절하고 긴박하여 마지않는다면 동 다례를 형편을 보아 베풀 계획이거니와, 점위관은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낼 일.

또한 동일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바친 가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억 등의 수본 내용에,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말이 ‘연전에 문위역관이 도중(島中)에 들어갔을 때 무릇 별폭은 마땅히 전례대로 하되, 시대가 다르고 일이 변하였으며 고금이 같지 아니하기로, 종전에 별폭에 부쳤던 명주와 화석(花席) 따위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고, 만약 증정할 수 있다면 긴요하게 사용되는 물건으로 대신하는 것이 실로 편하고 타당하다는 연유 및 봉행 4인을 전에 비하여 인원수를 더하는 뜻을 아울러 별단으로 진술하여 품신하였으며, 지금 현존한 대집정 1인, 집정 3인, 니시게이인(西京尹) 및 소집정(小執政)이 도합 6인만 먼저 관직과 성함을 적어 바치며, 별폭의 잡물은 시의(時宜)를 헤아려서 짐작하여 줄이거나 더하여 편의대로 적어 올리니, 이대로 시행하자는 뜻으로 고하여 진달하며, 봉행의 확정되지 않은 인원수는 임시로 형편을 보아 적어 바칠 계획이거니와, 일본의 품계와 직급은 1·2·3품은 종실(宗室)이 아니면 될 수 없으므로, 이제 이번 집정과 봉행이 비록 종사위(從四位)라고는 하나 외조(外朝)로 말하자면 그 위에 있는 이가 없으며, 이른바 소집정 또한 참지정사(參知政事)와 같은 부류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세대사가 사용하는 예단은 급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선할 수가 없기로 이렇게 아울러 적어 바치는데, 동 두 장의 받기(件記)를 참고하면, 그 중에 대집정 1인이라 한 것은 곧 쓰구젠수〔筑前守〕를 말함이고, 집정 3인이라 한 것은 곧 가가수〔加賀守〕와 봉고수〔豊後守〕, 야마시로수〔山城守〕를 말함

이며, 니시게이인〔西京尹〕이라 한 것은 곧 단고수〔丹後守〕를 말함이고, 소집정이라 한 것은 곧 빙고수〔備後守〕를 말함인데, 모두 예조에서 서계를 보내어 위문하는 따위의 전례가 있고, 그 나머지 각처에는 모두 접대하는 사신을 접대할 때의 제집사〔諸執事〕의 부류인데, 사신이 증정할 예단은 그 준비에 따라 풍성하고 간략함이 같지 않거니와, 부산진에 있는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을미년(1655) 통신사 때 일본국왕 앞으로 보낸 별폭 가운데 생 모시베 30필과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50필, 채화석 20장이거늘, 이제 두 가지 모시베를 각기 10필을 줄이고, 명주와 화석은 전량을 줄이며, 그 대신으로 담비 가죽 20령과 색대사〔色大紗〕 20필을 대신하여 수량을 충당하고, 응련〔鷹連〕도 죽는 우려 때문에 태반의 수를 줄이고 단지 18연만 남겼으며, 그 밖에 증감한 것이 대략 이와 비슷하거니와, 이제 이번 에 마련한 발기〔件記〕 가운데 이른바 조포〔照布〕는 곧 모시베이고 유포〔油布〕는 곧 검은 삼베이며, 청피〔靑皮〕는 곧 청서피〔靑黍皮〕이고, 교〔鮫〕는 곧 어피〔魚皮〕이며, 송립〔松笠〕은 곧 방백자〔房栢子〕임. 동 별단 2통을 받아서 올려 보내는 일로 수분한다” 하였음. 통신사의 사행 때의 별단 잡물은 전일에 도중에서 등록을 적어 보내면서 원래 물품 종류를 증감하자는 청이 없었다가, 이제 통신사의 출발 기일이 임박한 때에 별단을 적어 바쳐서 이대로 가져가기를 청하였는바, 그 증감한 바는 한결같이 그 말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저쪽에서 이미 이렇게 별단을 적어 바친 일이 있었기로, 동 별단 및 집정 이하의 직함과 성명을 적은 기록의 별단을 아울러 도합 2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니, 동 별폭의 물종을 증감하는 한 조목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임.

일본국 집정〔執政〕 종사위〔從四位〕 히다리 코노에쇼쇼〔左近衛少將〕 겸 쓰구젠수〔筑前守〕 기노공〔紀公〕.

일본국 집사〔執事〕 종사위 시종〔侍從〕 겸 가가수〔加賀守〕 후지와라공〔藤原公〕.

일본국 집사 종사위 시종 겸 봉고수〔豐後守〕 아베공〔阿部公〕

일본국 집사 종사위 시종 겸 야마시로수〔山城守〕 미나모토공〔源公〕

일본국 경윤〔京尹〕 종사위 시종 겸 단고수〔丹後守〕 오찌공〔越智公〕

일본국 근시〔近侍〕 종사위 빙고수〔備後守〕 미나모토공〔源公〕

귀대군〔貴大君〕의 별폭: 응자〔鷹子〕 10연. 준마〔駿馬〕 안장 갖추어 2필. 범 가죽 15장. 표범 가죽 20장. 담비 가죽 20장. 인삼 50근. 대유자〔大繻子〕 10필. 대단자

(大段子) 10필. 색대사(色大紗) 20권. 백조포(白照布) 20필. 황조포(黃照布) 20필. 유포(油布) 30필. 청피(靑皮) 30장. 어피(魚皮) 100본(本). 색지 30권. 각색 붓 50본. 참먹 50홀. 황밀(黃蜜) 100근. 청밀(靑蜜) 10항아리〔壺〕.

저군(儲君의) 별폭: 응자 5연. 준마, 안장 갖추어 2필. 인삼 30근. 범 가죽 10장. 표범 가죽 15장. 면단(綿段) 10필. 능자(綾子) 20필. 색사(色紗) 10권. 색지 30권. 청피(靑皮) 15장. 색필(色筆) 50자루. 참먹 50홀. 화면(花面) 5면. 어피(魚皮) 100장.

귀대군에게 세 사신의 헌상(獻上): 범가죽 5장. 인삼 10근. 조포 10필.

저군에게 세 사신의 헌상: 위와 같음.

집정 1인에게, 예조의 서간과 별폭이 있음.: 범 가죽 3장. 표범 가죽 2장. 단자(段子) 3필. 백조포 10필. 청피 5장. 유지(油紙) 5매. 붓 30본. 먹 20홀. 교(鮫) 10본.

집사 3인에게, 예조의 서간과 별폭이 있음.: 범가죽 2장. 표범 가죽 2장. 단자 3필. 백조포 10필. 청피 3장. 유지 5매. 교 10본.

니시게이인(西京尹) 1인과 근시 1인에게, 예조의 서간과 별폭이 있음.: 범 가죽 1장. 백조포 5필. 청피 2장. 유지 5매. 붓 20본. 먹 10홀.

집정에게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인삼 2근. 색지 5권. 유포 15필. 석린(夕鱗) 1근. 백밀(白蜜) 20근. 송림(松笠) 100. 붓 20본. 먹 10홀. 부용향 50본.

집사에게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인삼 1근. 색지 3권. 유포 10필. 석린(夕鱗) 1근. 백밀(白蜜) 15근. 송림(松笠) 100. 붓 20본. 먹 10홀. 부용향 30본.

니시게이인(西京尹) 1인과 근시에게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인삼 1근. 색지 3권. 유포 5필. 석린(夕鱗) 1근. 백밀(白蜜) 10근. 송림(松笠) 100. 붓 20자루. 먹 10홀.

미주(尾州) 기노주(紀州) 수호(水戸)에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응자 1연. 인삼 1근. 범 가죽 2장. 백조포 5필. 부용향(芙蓉香) 30본. 붓 20본. 먹 20홀.

미즈노 우에몽(水野右衛門) 태부(太夫)에게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인삼 1근. 색지 3권. 조포 2필. 유포 5필. 붓 20자루. 먹 20홀. 작은 칼(小刀) 1본.

히코자카 이끼노모리(彦坂壹岐守)와 오오오가 고부우에(大岡五部右衛)에게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인삼 1근. 작은 칼 1본. 조포 2필. 먹 20홀. 붓 20본.

오카자끼상사(岡崎上使)에게 주는 세 사신의 별폭: 백조포 2필. 유포 5필. 교 5

본. 떡 20홀. 붓 20본.

장지영〔金地院〕에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인삼 1근. 백조포 3필. 부용향 20본. 색필 20본. 떡 10홀.

춘상(春常)과 도모미루〔友見〕에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인삼 1근. 붓 20본. 떡 10홀. 색지 3권. 조포 5필.

마쓰다이라〔松平〕 비젠수〔備前守〕와 게이교꾸〔京極〕 비쥬수〔備中守〕에게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인삼 1근. 색지 3권. 붓 20본. 떡 10홀. 백조포 3필.

마쓰다이라 마사다타〔松平彈正忠〕와 나가이〔永井〕 휴우가수〔日向守〕에게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유포 10필. 작은 칼 1본. 교 5본.

산조오(三條) 대납언(大納言)과 히노〔日野〕 대납언과 히노 대납언에게 주는 세 사신의 별폭: 인삼 1근. 색지 3권. 붓 20자루. 떡 10홀. 부용향 20본.

제(際)

임술(1682) 4월 일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의 도장을 찍은 별폭 등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두 차례에 걸친 장계를 보면, 경접 위관을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으며, 차왜가 바친 짐정 등의 직함과 성명 및 일본국왕 이하에게 보낼 예단 등의 물건을 증감하는 별단을 올려 보내는바, 접위관은 향접위관을 접대하는 일을 비변사에서 확정하여 이미 행회하였으며, 사행의 기일이 임박하여 각처의 예단을 이렇게 증감하여 그 청대로 곱혀서 따라주는 것은 불가한데, 보낼 응련(鷹連)은 그 수량을 이미 반 넘어 줄였으며, 물품 종류는 전에 마련한 것에 비하여 그다지 멀지 아니하니, 그 별단 대로 마련하여 보내어도 무방할 듯하며, 사신이 각처에 증정하여 줄 예단 가운데 혹 부족한 물건이 있으면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듯하되, 일이 변방 정세와 관계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23일 우부승지 신 어진익(魚震翼)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통신사가 들어갈 때 각 처에 줄 예단은 본디 종전부터 정해진 격식이 있는데 차왜의 말 때문에 증감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이제 와서 사행 기일이 임박한 뒤에 물품을 고쳐 마련하는 것도 군색하고 다급한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그 가감한 수량이 전에 마련한 것과 그다지 멀지 아니하다면 별단대로 부응하도록 허락해도 무방할 듯한데, 그 중에 또한 일찍이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물품은 이제 와서 처음으로 길을 열어 후일에 폐단

을 끼치는 것은 불가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26일 우부승지 신 윤이도(尹以道)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술(1682) 4월 24일

一. 동래부사의 장계에 의거한 비변사의 회계(回啓).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다시 당길 수 없다는 뜻은 전후의 해조 및 본 비변사의 복계로 여러 차례 이치를 따져 분부하였는데,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훈도 변이표(卞爾標)가 내려간 뒤 5월에 출발한다는 일로 언급하였으나, 차왜 등이 죽기로 억지를 부리며 절박하게 간청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하나, 저들의 지금 공갈은 비록 돌볼 것이 없지만 후일의 난처한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바, 사행이 사고가 있어 조금 물리는 것은 반드시 후일의 난처한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교활한 왜인의 헛된 공갈은 지나치게 우려할 것도 아니로되, 약간의 날짜를 당기거나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큰 이해가 없으니, 해조에서 행회하여 날짜를 택일하고 짐짓 차왜에게는 미처 말하지 아니했더니, 이제 비록 당겨서 정하여도 일의 체면에 손상될 바 없으니, 해조에 명하여 5월 열흘 이전으로 다시 택일하여 급속히 동래부에 있는 왜인에게 알려서 도중(島中)에 통보하게 함이 마땅하니, 이대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24일 우부승지 신 어진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 장계는 곧장 비변사로 내렸기에 베껴 적지 못함].

一. 예조의 단자. “통신사의 출발 기일을 5월 중순 전으로 고쳐 택일하는 일을 비변사에서 이미 확정하였는데, 다시 일관에게 명하여 택일하였더니, 출발은 오는 5월 초8일 묘시, 배를 타는 것은 6월 초3일 진시, 12일 오시가 모두 길하다고 하며, 배를 타는 것은 아 두 날짜 중에 정하여 행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4월 25일 계달하여 그대로 계달한대로 시행함.

一. 예조의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의 봉과(封裹:포장)는 오는 5월 초5일에 전례대로 호조와 예조의 당상과 세 사신이 본조에서 함께 함이 어떠할지?” 계달하여 계달한 대로 시행함.

一. 전교에 이르기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물건은 십분 정밀하게 택하여 매물찬 폐단이 없도록 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이제 이번 통신사의 집정 이하에게 증정할 예단 및 악기 등의 물품을 안으로 들여서 어람(御覽)하는 일을 각 해당 관청에 분부하라” 하심.

一. 예조에서 계달하기를 “운운한 일로 전교하셨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의 출발 시기를 물려 정하였기 때문에 예단 잡물을 간혹 미처 마련하지 못한 것이 있고, 또한 어제 차왜의 별단 가운데 국왕 이하의 예단 잡물에 증감한 곳이 많이 있으니, 각 해당 관청에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제한 뒤에 일시에 들이라고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셨음.

一.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방금 도부한 함경감사의 장계에 의거한 비변사의 복계 관문 내용에, “통신사의 예단에 사용할 응련 중에 전후로 함경도에 분정한 것이 70여 좌(坐)인데, 모조리 죽어버리고 무사히 데려가 동래에 납부한 것이 단지 5좌이고, 금년에 매의 돌림병이 가장 혹심하고 또 날씨가 따듯하여, 비록 재삼 사들이더라도 폐단 없이 도달할 형세가 없으며, 만약 이른 가을에 등지에 있는 매를 들여보낸다면 일이 매우 편하고 순조로운 것은, 단지 북도(北道)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모두 그러하여, 이른 가을을 기다렸다가 등지에 있는 매를 추후에 보낸다면 피차간에 둘 다 편하겠으니, 시험삼아 동래부에 명하여 관왜에게 타일러 조정하게 하여 장계로 알리라”는 일의 관문이 있었음. 통신사가 갈 때의 별폭의 예단 잡물을 왜인들이 증감한 바 있는데, 응련에 있어서는 더운 계절에 죽어버리는 걱정을 우려하여 태반을 줄여서, 지급할 예단 가운데 단지 18연만 남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아울러 수량을 줄인 일로 별단에 진청하였기로, 이런 연유를 방금 이미 치계하고 별단 또한 해조로 올려 보냈으니, 그 증감한 것을 그 원하는 대로 곱혀서 따를 필요는 없으나, 해조에서 복계할 때 만약 그 고쳐 올린 별단대로 시행한다면, 지금 각도에서 이미 납입한 응련 52연으로 죽어버린 수량을 충당하여 주기에 족하니, 각도에서 미처 거두지 못한 응련은 이제 비록 추가하여 보내지 않더라도 부족할 우려가 없으며, 왜인이 이미 수량을 줄이기를 청하였으니, 다시 타일러 조정할 일이 없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임술(1682) 4월 26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내용. 왜인의 작은 배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일에 의거하여 훈도 변이표와 별차 최억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직급이 높은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통신사의 행차를 미루어 행하는 한 조목이 하나의 큰 괴롭고 긴박한 일이 되었기로, 통신사를 재촉하는 서계 1통 및 전일의 재판차왜 다이라 나리쓰구(平成次)의 서계를 고쳐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다시 연유를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통신사의 사행을 한번 물리면서부터 비선이 오고 간 것이 한 두 번이 아닌지라, 도주가 목마르게 고민함을 또한 상상할 수 있겠는데, 한결같이 굳게 고집하여 말을 실천할 뜻이 없는 것은 이제 무슨 성신(誠信)이며, 차왜의 다례를 반드시 내일 행한다면 모든 심정을 간절하게 진술할 계획이거니와, 이 뜻을 먼저 고하여 진달해 달라’고 운운하였으며, 단지 다이라 나리쓰구(平成次)의 서계만 전해 주었을 따름, 재촉하는 서계는 전하여 주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알지 못하며, 동 다이라 나리쓰구(平成次)의 서계 및 노인 1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하였는데, 고쳐 온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노인 1통 등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에 대한 다례는 본부에서 형편을 보아 먼저 베풀어 행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는데, 그 뒤 차왜가 만나주기를 청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간절하여 짐짓 경접위관이 접대하기를 기다렸으나, 이미 전례가 있기에 이제 별도로 경접위관을 차출하여 보낼 필요가 없고, 향접위관으로 이웃 고을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도사를 차출하여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일로 관문이 있었기로, 관문의 사연에 따라 즉시 역관들에게 분부하여 반드시 향접위관으로 접대한다는 뜻으로 타일러 조정하였더니, 방금 역관들의 수본 내용에, “분부한 사연의 뜻으로 여러 가지로 차왜에게 타일렀더니, 차왜의 말이 ‘제가 나온 것이 벌써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끌어 연기하면서 접대하지 않는 것은 비선으로 먼저 알린 의미가 아주 없거니와, 제가 바라는 바는 오직 통신사의 행차가 이전 약속대로 반드시 5월 내에 배를 타는 데 있으며, 만약 청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도주가 반드시 기일을 어겨 일을 그르쳤다는 죄를 면치 못하기에, 일의 기미가 매우 긴박하여 실로 저희들이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는데, 무슨 겨를에 다른 것을 생각하겠는가? 접위관을 기다리지 않고 동래 영감만 진작 내일이라도 먼저 다례를 행하여 서계를 전하면서 심정에 있는 말을 진

술하여 기어코 5월의 약속을 어기지 않게 해 주면 족하며, 후일의 연향(宴享) 때는 어떤 관인이든지 동래 영감의 위에 앉아 있으면 된다. 만약 향관(鄕官)만으로 접대하여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데려온 차왜의 사례와 같음이 있다면 결코 상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거듭하여 말하며 끝내 듣지 아니하기로, 부득이 본도의 도사가 접대하는 일로 조정하였다"고 수분하였는바, 본도의 도사가 접대하는 일은 이미 비변사의 관문에 있어서 장차 이대로 접대할 형편이로되, 다만 본도의 도사는 지금 바야흐로 말미를 받아 서울로 올라갔기로, 한편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여 재촉하였거니와, 기다리는 사이에 다례를 베풀어 행하는 것이 점차 지연되고, 본부에서 먼저 다례를 거행하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어서 우리로서는 손상되는 일이 없기로, 동 다례를 내일 먼저 베풀어 행할 계획이거니와, 이전에도 본도 도사가 접대할 때는 한결같이 경접위관의 사례대로 하였으니, 역관의 인원을 갖추어 재촉하여 내려 보내며, 증정할 예단도 수량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전례를 대조하여 시행할 일임.

一. 경상감사의 장계. 통신사의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에게 문답한 이야기는 이미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에 다 말하였기로 번거로이 다시 장계하지 않거니와, 접위관으로 본도 도사를 차출하여 보내야 마땅하나, 도사 윤홍리(尹弘離)가 여러 번 참담한 상을 당하여 몸의 병환이 깊은 고질이 되었으나 시골에 의원이 없어서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서울로 올라가 조리하여 치료하게 해 달라고 정장(呈狀)하여 말미를 청하는 것이 간절하고 측은한 정도가 아니거늘, 짐짓 말미를 주어 현재 아직 경상도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로, 다급하게 내려와서 접대하라는 별도의 관문을 발송하여 재촉하였다는 연유를 치계한 일임.

임술(1682) 4월 27일

一. 비변사에서 계달하기를 “통신사 호행차왜의 접위관을 본도의 도사로 차출하여 정했으나, 도사 윤홍리가 말미를 받아 서울로 올라와 미처 내려가지 못했으므로, 본도에서 재촉하였다는 뜻으로 방금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그가 데리고 갈 사람과 말 또한 모두 내려 보내어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하니, 해조에 명하여 말을 지급하여 급속히 출발하여 보내도록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

한다” 하셨음. [이조와 병조로].

一. 예조의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의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에 대한 3차례의 잔치 예단을 전례대로 마련하고 차비역관 1인을 차출하여 정하는 일은 이미 계하하여 분부하였으나, 비변사의 회계 및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동 차왜의 접위관을 본도의 도사로 차출하여 정하는 일로 조정하였는데, 이전부터 도사가 접대할 때는 경접위관과 체례가 서로 같아서 전례대로 사예단(私禮單)을 증정하여 주는 일이 있으니, 무신년(1668)에 차왜 다이라 나리가쓰(平成勝)를 접대한 사례를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고, 접위관의 차비역관 1인 또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별도로 차출하여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접위관의 사예단: 인삼 6근. 범 가죽 3장. 표범 가죽 3장. 흰 명주 20필. 흰 모시베 20필. 검은 삼베 14필. 흰 무명 40필. 황모필 80자루. [이상은 해조]. 화석 10장. 녁장 붙인 유둔 10부. 참떡 80홀. [이상은 본도].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동래부사가 보고한 바로 말미암아 일본에 보낼 약기를 가져가지 말라는 일로 탐전에서 확정하였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호조, 장악원].

一. 예조의 단자.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일본국왕 이하 각처의 예단을 그들의 별단대로 마련하여 보내는 일로 확정하였기로 이에 의거하여 고쳐 마련하였거니와, 그 나머지 봉행과 도주(島主) 및 수도서(受圖書), 수직왜(受職倭), 장로(長老) 등의 왜인에게 주는 예단은 이제 이번 별단 가운데 비록 거론하지 않았으나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제 줄이는 것이 불가하여 이전대로 마련하여, 물목의 수를 아울러 후록에 적어두었으니, 이대로 마련하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一. 일본국왕 앞의 예단: [서계(書契)가 있음. 서계통은 은장식에 주홍 칠을 함].

웅자(鷹子) 10연. [각 해당 도에서 마련함]. 준마(駿馬) 2필, 안장 구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여 이미 내려 보냄]. 범 가죽 15장. 표범 가죽 20장. 담비 가죽

20장. 인삼 50근. 대수자(大繻子;禾段) 10필. 대단자(大段子) 10필. 색대사(色大紗) 20권. [권(卷)은 필(匹)임]. 백조포(白照布;흰 모시베) 20필. 황조포(黃照布;생 모시베) 30필. 유포(油布;검은 삼베) 30필. 청피(靑皮;靑黍皮) 30장. 각색 붓 5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어피(魚皮) 100장. 색지(色紙) 30권. 참떡 50홀. 황밀(黃蜜) 100근. 청밀(淸蜜) 10항아리. [매 항아리마다 1말씩].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一. 일본국 왕자에게 증정하는 예단: [서계가 없고 별폭(別幅)이 있음. 서계통은 은장식에 주홍 칠을 함]. 응자 5연. [각 해당 도에서 마련함]. 준마 2필. 안장 구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여 이미 내려 보냄]. 인삼 30근. 범 가죽 10장. 표범 가죽 15장. 금단(錦段;錦線) 10필. 능자(綾子) 20필. 색사(色紗) 10권. 청피(靑皮) 15장. 색필(色筆) 50자루. [이상 해조에서]. 색지 30권. 참떡 50홀. 화연(花硯) 5면. 어피 100장. [이상 본도].

一. 집정(執政) 1인에게: [서계가 있음. 서계통은 납염(鑱染) 장식에 흑칠을 함]. 번 가죽 3장. 표범 가죽 2장. 단자(段子;大段) 3필. 백조포(白照布) 10필. 청피 5장.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 유지(油紙;油茱) 5부. 참떡 20홀. 교(鮫;魚皮) 15장. [이상 본도].

一. 집사(執事) 3인에게 각각: [서계가 있음. 서계통은 납염(鑱染) 장식에 흑칠을 함]. 번 가죽 2장. 표범 가죽 2장. 단자 3필. 백조포 10필. 청피 3장. [이상 해조에서]. 유지 5부. 교(鮫) 10장. [이상 본도].

一. 니시게이잉(西京尹) 1인과 근시(近侍) 1인에게 각각: [서계가 있음. 서계통은 납염(鑱染) 장식에 흑칠을 함]. 번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백조포 5필. 청피 2장.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 참떡 10홀. 유지 5부. [이상 본도].

一. 봉행 8인에게 각각: [서계가 있음. 서계통은 흑칠에 납염 장식을 함]. 백조포 10필. 흰 명주 10필. 유포(油布) 5필. 번 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유매묵(油煤墨) 10홀. [본도에서 마련함].

一. 대마도주에게: [서계가 있음. 서계통은 흑칠에 납염 장식을 하고, 도주 및 장로와 수도서인 등에게 보내는 서계는 모두 1통에 넣음]. 백조포 10필. 흰 명주 10필. 유포 5필. 흰 무명 20필. 번 가죽 2장. 표범 가죽 3장. 인삼 5근. [이상은 해조에서]. 화석 5장. [본도에서 마련함].

一. 수도서(受圖書) 3인에게 각각: [서계가 있음]. 백조포 5필. 흰 명주 5필. 번 가죽 1장. [이상은 해조에서]. 화석 3장. 유둔 1부. [이상은 본도에서].

一. 수직왜 5인에게 각각: [서계가 없음]. 백조포 3필. 흰 명주 3필. 황모필 1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화석 2장. 유매묵 5홀.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一. 장로 1인에게: [서계가 있음]. 인삼 3근. 백조포 5필. 흰 명주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유매묵 10홀. [본도에서 마련함].

一. 일본국왕자에게 보낼 사신의 예단: 범 가죽 5장. 인삼 10근. 백조포 10필. [이상 해조].

一. 집정에서부터 중납언(中納言) 등에게 사신이 증정할 예단 도합: 인삼 21근. 검은 삼베 85필. 황모필 420자루. 참덕 280홀. 부용향 310매. 범 가죽 6장. 백조포 42필. 작은 은장도(小銀粧刀) 5자루. [이상 해조]. 색지 44권. 백밀(白蜜) 85근. 송립(松笠; 房栢子) 500매. 어피 15장. [이상 본도]. 석린(石鱗) 6근. [황해도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3연. [각 해당 도에서 마련함].

一. 봉행 8인 등에게 사신이 증정할 예단 도합: 인삼 8근. 검은 삼베 25필. 황모필 160자루. 참덕 80홀. [이상 해조]. 색지 24권. [본도에서 마련함]. 석린 8근. [황해조에서 마련함].

一. 사신 일행이 사용할 청심원(淸心元) 100환(丸).

강희 21년(1682) 4월 27일 입계하여 그대로 시행함.

一. 통신사의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가 가져온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참판 대인 합하(閣下)

따뜻한 봄바람이 화창한데 멀리 귀국에서도 한편 맑고 한편 편안하기를 우러러 바라는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본방(本邦)은 동문(同文) 동궐(同軌)로서 멀리 생각하여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먼저 사신을 보내어 내빙(來聘)하는 일을 알려주시니 예전의 교유를 버리지 않고 성신(誠信)이 두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관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와 부관 다이라 나리히사(平成尙), 도선주 후지 나리기요(藤成清)를 보내어 빙사(聘使)를 맞이하오니, 바라건대 4월에 귀국에서 발선하여 5월에 저희 고을에 닿을 내리도록 모름지기 여행 준비를 재촉하여 그 기일을 어기지 말기 바라며, 구구한 심정은 차사가 말로 전할 것입니다. 넉넉지 못한 토산물로 미미한 정성을 표하오니 웃으며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무튼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천화(天和) 2년(1682) 임술 3월 일.

별폭: 채화옥괘연(彩畵玉掛硯) 2비(備). 채화연갑(彩畵硯匣) 2개. 채화칠촌염경(彩畵七寸奩鏡) 5면(面). 첩금병풍(貼金屏風) 4척(隻). 채화야형(彩畵夜桁) 1각(脚).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 1부(部). 청금화로(靑金火爐) 1위(圍). 동화지(桐花紙) 1000편(片). 채화문갑(彩畵文匣) 2개. 계(計). 천화(天和) 2년(1682) 3월 일.

一.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참의 대인 합하. 고선(姑洗)⁶⁰의 음률이 고른 달[3월]에 멀리 생각건대 귀국의 지치(至治; 지극히 좋은 정치)는 본방과 다름이 없이 하늘이 보살피시니 시절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특별히 귀국의 사신을 번거롭게 함은 장차 이웃나라의 우호를 닦음은 이미 보내준 말씀을 통하여 알았으니 높은 우의의 돈독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병사(聘使)를 맞이하여 호위하기 위하여 정관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와 부관 다이라 나리히사〔平成尙〕, 도선주 후지 나리기요〔藤成清〕를 보내오니, 바라건대 4월에 귀국에서 행차가 출발하여 5월에 폐주(弊州)로 뜻을 올리기를 빌면서, 헤아려 보면 날짜가 넉넉하지 않은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 다하지 못하는 말은 모두 사신의 이야기에 부칩니다. 인하여 보잘것없는 물품을 갖추었으니 웃고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현명한 분께서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펴지 못합니다. 천화(天和) 2년(1682) 임술 3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별폭: 채화과광(彩畵菓筐) 3비(備). 채화경대(彩畵鏡臺) 2각(脚). 채화소원분(彩畵小圓盆) 20매. 채화육촌염경(彩畵六寸奩鏡) 5면. 수정 갓끈〔水精笠緒〕 5묶음〔結〕.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備). 적동탕병(赤銅湯瓶) 2개. 적동루오관반(赤銅累五盥盤) 1부(部). 흑칠수촉대(黑漆手燭臺) 3개. 계(計). 천화(天和) 2년 3월 일. 대마주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令公) 합하(閣下).

늦은 봄에 생각건대 여러분의 평소 생활이 편안하신지 달려가는 정을 내맡겨 두지 못합니다. 이에 정관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와 부관 다이라 나리히사〔平成尙〕

60) 고선(姑洗): 12율려(律呂)의 다섯 번째 율(律). 책력으로는 3월에 해당한다.

와 도선주 후지 나리기요〔藤成清〕를 차출하여 미리 빙사(聘使)를 맞이합니다. 이제 여행 일정을 살펴보니 길이 먼데 중하(仲夏)에 폐주(弊州)에서 배가 떠나자면 다음 달에 귀국에서 출발해야 하기에, 인하여 예조에 서신을 올려서 이 일을 고하여 속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폭의 보잘 것 없는 물품으로 멀리 정성을 표하오니, 웃으시며 받아 두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다 쓰지 못합니다. 천화(天和) 2년(1682) 3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동래부사공(東萊府使公) 별폭: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1쌍(雙). 채화화전갑(彩畫華箋匣) 1개. 수주박갑(垂珠簾匣) 1비(備).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鹽鏡) 2면. 채화경대(彩畫鏡臺) 1각(脚).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圍). 수정 갓끈〔水精笠緒〕 1묶음〔結〕. 계(計).

부산영공(釜山令公) 별폭: 채화연광(彩畫硯筐) 1개. 적동루오관반(赤銅累五盥盤) 1비(備). 채화소원분(彩畫小圓盆) 20매. 수주부갑(垂珠簾匣) 1비(備). 동화지(桐花紙) 5백편(片). 중약관(中藥罐) 6개. 계(計). 천화(天和) 2년(1682) 임술 3월 일.

대마주 태수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의 서계와 별폭의 등본에 의거하여 예조에 서 첨부한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 등이 가져온 회답서계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어내게 하되, 별폭의 회례 물건은 전례를 참고해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또한 해조에 명하여 이대로 마련하였다가, 원 서계가 올라 온 뒤에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참관의 회례: 인삼 2근. 범 가죽 2장. 표범 가죽 2장. 흰 모시베 7필. 흰 명주 7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 참먹 30홀. 화석 3장. 녀장 불인 유둔 3부. [이상 본도].

참의의 회례: 인삼 1근.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모시베 7필. 흰 명주 7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 참먹 30홀. 화석 3장. 녀 장 불인 유둔 3부. [이상 본도].

동래 부산 두 곳에서의 회례, 각각: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 참먹 20홀. [본도에서 제급(題給)⁶¹⁾].

61) 제급(題給): 제사(題辭)로 명분을 명시하여 지급함.

一.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통신사의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다례(茶禮)를 본부에서 먼저 베풀어 행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연속하여 치계하였는데, 이달 22일 신이 관소로 가서 전례대로 다례를 베풀어 행하고, 예조참판과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 2통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아 올려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다례를 장차 마칠 무렵에 차왜가 사행의 기일을 어겨 도주(島主)가 장치 죄를 받음을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를 신에게 보내오면서 그 장황한 사설(辭說)은 모두 근일 역관들의 수본 내의 사연이거늘, 신이 답하기를 “너희들이 매양 기일을 어겼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당초 사신을 청할 때 조정에서 이미 그대로 허락하였으면, 기일대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은 아니므로 예조의 서계에서 이대로 회답하였는데, 그 때 어찌 오늘 이런 사고가 있을 줄 알고서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미리 하였겠는가? 이제 와서 뜻밖에 사고가 났으니 사행의 기일을 조금 물리는 것은 조금도 방해될 바 없고, 이른바 사고는 다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은 수륙 만리에 해를 넘기며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일이라, 비록 지난 겨울부터 여행 차비를 하였으나 때가 되어 미비할 우려는 반드시 오게 될 형세인데다가, 하물며 사신이 잇달아 병고가 있어서 누차 교체하여 새 종사관(從事官)을 차출한 지 한 달도 차지 않아, 온갖 사행 도구를 갑자기 장만할 수 없는 것은 실로 일의 형세가 굳이 그러하였다. 사행을 물린 곡절은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는데 너희들이 매양 이를 고집하여 말하니 어찌면 그렇게도 심하게 양해하지 못하는가? 도주(島主)가 죄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더욱 이치에 가깝지 아니하다. 사행이 늦고 빠른 것은 오직 우리나라에 달려 있지 원래 도주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백(關白)이 비록 성품이 급하다고 하나 어찌 이런 일로 도주(島主)에게 죄를 돌릴 리가 있겠는가? 설령 사행이 반드시 앞서 정한 날짜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중첩된 바다 만리의 노정에 혹 바람과 파도에 막히거나, 여러 달 여행할 무렵에 혹 병고가 있으면 도중에 머물러 지체됨을 면치 못하는데, 또한 기한에 미치지 못했다고 도주(島主)에게 죄를 돌리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때문에 우려해서 간청하여 마지아니하므로 조정에서 당초에 7월로 사행을 물렸다가 이제 5월로 당겨 정하였는데, 몇일이 지난 뒤면 곧 5월이라, 너희들의 도리에 있어서도 오직 조용히 기다려야 마땅하지, 어찌하여 한결같이 이다지도 심하게 떠드는가?” 하였더니, 차왜가 말하기를 “5월에 배를 탄다는 뜻은 이미 벌써 에도(江戸)에 치보하여 각 역참에서 대기하며 날마다 기다리고 있으니, 만약 그 기한을 어기면 정녕 일이 생기는

데, 조정에서 이런 사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사행을 물릴 리가 없으나, 저희들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되어 누차 매우 긴박한 뜻을 진달하였는데, 이전에 정한 기일이 이미 박두하였으나 사행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필시 본부에서 장계로 알리지 않은 소치이고, 이제 비록 5월로 당겨 정하였다고 하나, 만약 20일에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5월 내로는 결코 배를 탈 가망이 없어서, 일이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지경에 이르러 더욱 심하니, 반드시 5월 초에 출발하여 앞서 정한 배를 타는 기일에 미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며 간청하여 마지아니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너희들이 절박한 상황은 누차 장계로 알렸으므로 이렇게 당겨 정하는 일이 있었고, 이미 당겨 정한 뒤에 어찌 감히 계속하여 번거롭게 장계를 올리겠는가? 그러나 오늘 다례를 베풀어 행한 뜻은 장차 전례를 따라 장계로 알리는 가운데 마땅히 너희들의 청을 간략하게 진술하겠으나, 5월 20일이 또한 멀지 않은데 다시 날짜를 당기는 것은 형세로 보아 반드시 기약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더니, 차왜가 말하기를 “장계 가운데 만약 저희들의 말을 진술한다면 조정에서 반드시 기꺼이 허락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운운하였고, 인하여 잔치를 파하고 나왔거니와,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나라 말을 아는 왜인이 훈도 일동과 더불어 주고받았으며, 원역(員役)도 정관과 부관, 도선주와 압물, 시봉 등 6인만 나와 참여하였고, 반종은 모두 참여하러 나오지 않았으며, 다례 뒤에 전례에 따라 오일숙공(五日熟供)을 하는 일이 있으나, 또한 반아먹지 않고 접위관이 내려오기를 기다린 뒤에 들여 달라고 운운하였다는 연유를 치제한 일임.

임술(1682) 4월 30일

一. 호조에서 계달하기를 “이번 통신사 때의 각종 잡물을 최선으로 골라 마련하였으나, 대체로 물건의 품질과 수량은 본디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어용(御用) 이외로는 방물(方物)이 최상이고 왜인의 예단은 가장 열악하여, 사행 때 관백 이하 집정 등에게 보내는 잡물과 평상시 바다를 건너가는 예단은 다름이 있어서 전례에 따라 수량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비록 방물의 잡색(雜色)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좋은 품질로 가려서 준비하였으나, 그 가운데 검은 삼베는 달리 사용하는 곳 없이 단지 왜인의 예단에만 사용하여 본디 시장에서 사들일 수 있는 물건이 아

니기에, 이전에 예조의 관문으로 말미암아 이미 비치해 둔 것이 107필이었는데, 이제 동래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추가된 수량이 64필이나 되어, 이제 바야흐로 베를 짜고 있지만 통신사가 출발하기 전에는 미치지 못할 형세인지라, 부용향과 함께 추후에 일시에 보냄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셨음.

임술(1681) 5월 초1일

一. 호조의 관문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의 물종은 한결같이 귀조에서 추후에 보낸 관문의 후록대로 마련하였거니와, 사신 일행의 별반전(別盤纏) 및 수역(首譯)의 사예단(私禮單) 물목을 앞서의 관문에 기록하여 실었는데, 이번 관문에는 구별 없이 기록한 곳이 있는바, 동 물종을 마련하는 가운데 섞어 넣으면서 명목을 구별하지 않은 것인지, 원래 후록(後錄) 가운데 거론하지 않은 것인지 상세하게 급속히 회이하여 살펴보고 거행할 수 있도록 할 일로 관문하였는데, 일행의 별반전 또한 이제 이번의 추가 마련한 가운데 넣어서 이대로 거행하며, 수역의 사예단은 이전의 관문대로 시행할 일.

一. 지난 4월 27일 인견하였을 때 통신사가 가져가서 일본국왕 이하 각처에 증정할 예단의 물목 단자를 어람하기 위해 이달 초4일 입계하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함.

一. 예조의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 갈 각처의 예단 물목.

一. 일본국왕 앞의 예단: 말안장 2부. 범 가죽 15장. 표범 가죽 20장. 담비 가죽 20장. 인삼 50근. 대화단(大禾段) 10필. 대단(大段) 10필. 색대사(色大紗) 20필. 흰 모시베 20필. [12승(升)임]. 생 모시베. [10승임]. 검은 삼베 30필. 청서피 30장. 각색 붓 50자루.

一. 일본국 왕자의 예단: 말안장 2부. 인삼 30근. 범 가죽 10장. 표범 가죽 15장. 금선(錦線) 10필. 대룡(大綾) 20필. 색사(色紗) 10필. 청서피 15장. 색필(色筆) 50자루.

一. 집정 1인에게 증정할 것: 범 가죽 3장. 표범 가죽 2장. 대단 3필. 흰 모시베 10필. [9승으로 지음]. 청서피 5장. 황모필 30자루.

一. 집사 3인에게 각기 증정할 것: 범 가죽 2장. 표범 가죽 2장. 대단 3필. 흰 모시베 10필. [9승]. 청서피 3장.

一. 서경운 1인과 근시 1인에게 증정할 것. 각각: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모시베 5필. [9승]. 청서피 2장. 황모필 20자루.

一. 봉행 8인에게 증정할 것. 각각: 흰 모시베 10필. [9승].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 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

一. 대마도주에게 증정할 것: 흰 모시베 10필. [9승].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범 가죽 2장. 표범 가죽 3장. 인삼 5근.

一. 수도서(受圖書) 3인에게 각각 증정할 것: 흰 모시베 5필. [9승]. 흰 명주 5필. 범 가죽 1장.

一. 수직왜(受職倭) 5인에게 각각 증정할 것: 흰 모시베 3필. [9승]. 흰 명주 5필. 황모필 20자루.

입계하여 낙점(落點) 받음.

임술(1682) 5월 초4일

一. 예조의 통신사가 가져 갈 예단 물품 때문에 전교하시기를 “집정 이상에게 증정할 물건은 전량을 들이고, 집사 이하에게 증정할 물건은 낙점한 대로 들여서 간품(看品:품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호조, 예조].

一. 동래부사의 첩정(牒呈) 내용. 통신사 일행의 상하 원역(員役)의 직함과 성명은 한결같이 예조의 관문대로 본부에서 정서(正書)하여 역관으로 하여금 차왜들에게 전하여 주게 하였는데, 방금 역관들이 와서 고한 내용에 “을미년(1655) 통신사 때의 등록을 살펴보니 세 대사(大使)의 직함과 품계와 겸직을 모두 적었거늘 이번에는 한 직함[單銜]만 적었는데, 이렇게 적어서 에도(江戸)로 보낸다면 반드시 의아하게 여길 것이라, 전례대로 직함을 갖추어 적어 달라고 하였는바, 그 말대로 적어 주어도 무방할 듯하며, 차왜들이 또한 함께 데려 올 원역의 실제 인원수를 묻거늘, 400인을 넘을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차왜가 반드시 뚜렷한 인원수를 알고자 하면서 ‘상상관(上上官)과 상관(上官)과 중관(中官)과 하관(下官)이 각기 몇 원인지 또한 미리 먼저 구별하여 적어 주어야 진작 이를 도중(島中)에 통보하여 거행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통신사가 내려 온 뒤에 확정할 일이기로 짐짓 기다리라는 뜻으로 누차 방색하였더니, 차왜 등이 간절히 청하여 마지아니하

며 말하기를 ‘지금은 먼저 대략의 인원수를 알고자 할 따름이고, 적어 보여 준 뒤에 설혹 증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임시로 변통해도 또한 무방하니, 즉시 적어 주기 바란다’고 하며 압박하여 마지아니하였다”고 와서 고하였는바, 이는 따라주기 어려운 청이 아닌지라, 사행에 데려갈 원역의 총수 및 상중하 관원을 참작 구별한 발기〔件記〕를 적어 급속히 내려 보낼 일임.

이에 의거하여 수결(手決)한 내용. 세 사신의 품계와 직함은 적어 보내거니와, 이른바 상상관은 당상역관을 가리키는 것이고, 상관은 제술관과 당하역관, 군관, 사자관, 화원 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의 성명은 전에 이미 적어 보냈고, 중관 이하에 대하여는 사행이 내려간 뒤에 상세히 알아 적어 줄 수 있을 것이며, 을미년(1655)의 일행 상하 총 인원수가 485인이었는데, 이번에는 당상과 당하역관과 의원을 각기 1원씩 첨가하고, 마상제 2명이 또 별도로 가니, 이를 계산한다면 5인의 인원수가 추가되고, 이 이외에 첨가되거나 줄이는 것은 또한 단정할 수 없고, 오직 사행이 내려간 뒤에 상의하여 적어 주는 것으로 상고하여 시행할 일.

一. 호조에서 계달하기를 “통신사가 가져갈 예단 잡물 가운데, 표범 가죽 2장 외에는 아울러 바꾸어 마련하는 일로 명이 내렸는데, 본조에서 당초에 준비할 때 십분 최상품으로 골랐기에, 평상시의 예단에 견주면 진헌(進獻)의 예비 물품을 보내야 마땅하나, 등록 가운데 진헌 표범 가죽의 가격은 하품의 무명〔下地木〕 45필이고, 일본에 보내는 예단은 25필을 정가로 마련하였으니 종전에 보낸 것의 우열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 진헌으로 바꾸어 보낸다면 이는 갑자기 장만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앞으로 사은(謝恩)의 사행에 짐을 꾸릴 수가 없어 참으로 민망하고 우려되며, 또한 생각건대 이 뒤로 연례 예단을 매양 이번에 보내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드시 서로 다투어 따져서 난처한 일이 있을 것이니, 관백(關白) 및 왕자에게 보내는 35장은 진헌 물품으로 수량을 채우고, 그 아래로는 이전에 준비한 것으로 다음의 좋은 물품을 가려 보냄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유택한다” 하셨음.

一. 계미년(1643) 통신사 때는 관백 앞에서 사배(四拜)를 하고 약군(若君) 앞에 서는 재배(再拜)하였으며, 집정 이하에게는 상읍(相揖)하였고, 을미년(1655) 사행에는 관백 이하에 대한 예수(禮數)가 계미와 같았음.

一. 조선국 예조에서 경건히 교지(敎旨)를 받들어 정사(正使) 예조참판(禮曹參判) 윤지완(尹趾完)⁶²⁾, 부사(府使) 홍문관(弘文館) 전한(典翰) 이언강(李彦綱)⁶³⁾, 종사관(從事官) 홍문관 교리(校理) 박경후(朴慶後)⁶⁴⁾를 차출하여, 서계(書契)와 예물을 갖추어 가지고 앞으로 일본국으로 갈 것이다. 경건히 이에 의거하여 이관함이 합당하니, 청컨대 대조하여 시행하기 바라오니. 모름지기 관문 해당자에게 이르도록.

계(計): 기마(起馬) 49필. 상선(上船) 2척. 중선(中船) 2척. 하선(下船) 2척.

정사 이조참의 윤(尹).

부사 홍문관 전한 이(李).

종사관 홍문관 교리 박(朴).

당상역관(堂上譯官) 동지(同知) 박재흥(朴再興)⁶⁵⁾. 첨지(僉知) 변승업(卞承業). 첨지 홍우재(洪禹載)⁶⁶⁾. 상통사(上通事) 전주부(前主簿) 안신휘(安愼徽)⁶⁷⁾. 전직장(前直長) 정문수(鄭文秀)⁶⁸⁾. 전정(前正) 유이관(劉以寬)⁶⁹⁾. 제술관(製述官) 성균관(成均館) 진사(進士) 성완(成琬)⁷⁰⁾. 차

62) 윤지완(尹趾完, 1635-1718): 과평 윤씨로 자는 숙린(叔麟), 호는 동산(東山)이다. 현종 3년(1662)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도 관찰사와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임술년(1682)에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어영대장, 예조판서, 병조판서,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좌참찬, 우의정에 이르렀다.

63) 이언강(李彦綱, 1648-1716): 전주 이씨로 자는 계심(季心)이다. 숙종 4년(1678)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1682년 통신 부사로서 일본에 다녀왔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64) 박경후(朴慶後, 1644-1706): 함양 박씨로 자는 휴경(休卿), 호는 취옹(醉翁) 또는 만오(晩悟)이다. 숙종 1년(1675)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 수찬, 사간원 정언 등을 거쳐 통신사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뒤에 황해도 관찰사와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65) 박재흥(朴再興, 1645-?): 무안 박씨로 자는 중기(仲起)이다. 현종 4년(1663)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66) 홍우재(洪禹載, 1644-?): 남양 홍씨로 자는 정서(廷瑞)이다. 현종 7년(1666)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에 종사하고 교회를 역임하였다.

67) 안신휘(安愼徽, 1640-?): 순흥 안씨로 자는 백륜(伯倫), 현종 3년(1612)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다.

68) 정문수(鄭文秀, 1626-?): 운양 정씨로 자는 자화(子和)이다. 현종 3년(1662)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에 종사하고 교회를 역임하였다.

69) 유이관(劉以寬, 1636-?): 평산 유씨로 자는 자요(子饒)이다. 효종 2년(1651) 식년 역과에 급제하고 왜학에 종사하여 교회를 역임하였다.

70) 성완(成琬, 1639-1710): 창녕 성씨로 자는 백규(伯圭), 호는 취허(翠虛)이다. 현종 7년(1666) 식년시에 진사 2등 제8인으로 합격하고 문학으로 명성이 높아 백의(白衣)로 통신사의 제술관이 되고, 관직을 사양하고 은거하였다가 65세 때 북부 참봉으로 임명되어 한성부 참군, 상의원 직장, 군자감 주부를 역임하였다.

상통사(次上通事) 전판관(前判官) 김관(金琯)⁷¹⁾. 전봉사(前奉事) 박중렬(朴重烈). 압물통사(押物通事) 전정(前正) 오윤문(吳允文). 부사맹(副司猛) 김도남(金圖南)⁷²⁾. 통훈대부(通訓大夫) 이석린(李碩麟)⁷³⁾. 정(正) 김지남(金指南)⁷⁴⁾. 의원(醫院) 전정(前正) 정두준(鄭斗俊). 전판관(前判官) 주백(周伯). 전주부(前主簿) 이수번(李秀蕃)⁷⁵⁾. 사자관(寫字官) 상호군(上護軍) 이삼석(李三錫). 상호군 이화립(李華立). 화원(畫員) 전교수(前教授) 함제건(咸悌健)⁷⁶⁾.

정사군관(正使軍官): 첨지 차의린(車義麟). 전부사(前府使) 윤취상(尹就商)⁷⁷⁾. 전군수(前郡守) 신리장(申履壯). 전군수 원덕휘(元德徽). 전만호(前萬戶) 백흥령(白興齡). 전판관(前判官) 이엽(李曄)⁷⁸⁾. 초관(哨官) 부사과(副司果) 강진무(姜晉武)⁷⁹⁾.

부사군관(副使軍官): 전부정(前副正) 윤취오(尹就五). 전부정 장한상(張漢相)⁸⁰⁾. 첨지 김중기(金重器)⁸¹⁾. 선전관(宣傳官) 양익명(梁益命)⁸²⁾. 부사과(副司果) 이유린(李有麟). 전첨정(前僉正) 홍세태(洪世泰)⁸³⁾. 호군

-
- 71) 김관(金琯, 1644-?): 자는 순옥(純玉), 본관은 송도이다. 숙종 4년(1678)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다.
- 72) 김도남(金圖南, 1659-?): 우봉(牛峰) 김씨로 자는 중우(仲羽)이다. 숙종 4년(1678)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 73) 이석린(李碩麟, 1660-?): 해주 이씨로 자는 성서(聖瑞)이다. 숙종 4년(1678)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관직이 직장(直長), 품계가 가선(嘉善)에 이르렀다.
- 74) 김지남(金指南, 1654-?): 우봉 이씨로 자는 계명(季明)이다. 현종 13년(1672) 식년 역과에 급제하고 한학(漢學)에 종사하여 교회를 역임하였다.
- 75) 이수번(李秀蕃): 통신사등록 제3책 신유년 11월 23일 조에는 이번(李蕃)으로 기록되어 있다.
- 76) 함제건(咸悌健): 강릉 함씨로 호는 동암(東巖)이다. 도화서 화원으로 교수를 역임하였다.
- 77) 윤취상(尹就商, ?-1725): 함안 조씨로 숙종 2년(1676)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양주목사, 총융사, 포도대장, 훈련대장, 병조참판,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 78) 이엽(李曄): 덕수 이씨로 숙종 7년(1681)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청학(淸學)에 종사하였으며 관관을 역임하였다.
- 79) 강진무(姜晉武): 진주 강씨로 효종 2년(1651) 별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 80) 장한상(張漢相, 1622-?): 대원(大元) 장씨로 효종 2년(1651) 별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 81) 김중기(金重器, ?-1735): 자는 대기(大器)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함경도 병마절도사, 총융사, 포도대장, 통제사, 병조참판, 어영대장, 훈련대장을 역임하였다.
- 82) 양익명(梁益命, 1657-?): 남원 양씨로 자는 윤화(潤和)이다. 숙종 21년(1695) 별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 83) 홍세태(洪世泰, 1653-1725): 남양 홍씨로 자는 도장(道長), 호는 창랑(滄浪) 또는 유하(柳下)이다. 숙종 1년(1675)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한학(漢學)에 종사하였다. 통신

(護軍) 김효상(金孝尙). 호군 조정원(趙廷元)⁸⁴).

종사관군관(從事官軍官): 전판관 정태석(鄭泰碩)⁸⁵. 별파진검군관(別破陣兼軍官) 어모장군(禦侮將軍) 이시형(李時馨). 전략장군(宣略將軍) 한준일(韓俊一). 마상재(馬上才) 부사과(副司果) 오순백(吳順伯). 부사과 형시정(邢時挺). 이마(理馬) 박계한(朴戒漢). 전악(典樂) 김몽술(金夢述). 윤만석(尹萬碩). 상사반인(上使伴人) 1인. 노자(奴子) 2명. 부사반인 1인. 노자 2명. 종사관 반인 1인. 노자 2명. 당상역관 노자 6명. 제술관 당하원역 노자 16명. 군관 및 별파진 마상재 노자 21명. [이상 원역은 이 뒤에 거행할 때 나열하여 적을 것임].

위〔右〕

정사 이조참의 윤(尹)

부사 홍문관 전한 이(李)

종사관 홍문관 교리 박(朴)

임술(1682) 5월 일.

행판서(行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임술(1682) 5월 초7일

一. 이번 5월 초6일 영의정과 좌의정 및 통신사를 인견하였을 때, 종사관 박경후(朴慶後)가 계달한 바, “무릇 통신사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책임을 종사관에게 전달시키는데, 이전의 일로 말하자면 통신사가 왕래한 뒤에 곧장 잠상(潛商)이 잡다하게 넘쳤다는 말이 있었으니, 이는 실로 우리나라에서 방지하기 어려운 폐단이고 또한 나라를 욕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래에 인심이 매우 모질어서 나라의 기강이 풀어졌기에 엄중하게 조목을 세워서 특별하게 조치하는 방도가 없으면 이익을 노리는 탐욕스런 상인들이 두려워하여 그만두거나 징계하고 격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행에 데려가는 군관이나 원역을 막론하

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온 뒤에 제술관으로 여러번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84) 조정원(趙廷元, 1652-?): 배천(白川) 조씨로 자는 군실(君實)이다. 현종 13년(1672) 별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85) 정태석(鄭泰碩, 1641-?): 창녕 정씨로 자는 대재(大哉)이다. 현종 3년(1662) 증광 역과에 급제하여 청학(淸學)에 종사하였고, 판관을 역임하였다.

고 만약 중대한 법률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곧장 효시(梟示)한 뒤에 장계로 알리고, 가벼운 죄를 범한 자는 세 사신이 상의하여 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편하고 타당한데, 대신이 이제 바야흐로 입시하였으니, 이 일을 두루 물어보고 확정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상사(上使) 윤지완(尹趾完)이 말하기를 “신 등이 들어간 뒤에 금법을 범하는 자들은 마땅히 적발되는 대로 죄를 결정해야 마땅한데, 반드시 먼저 조목을 정한 뒤에 저들이 두려워 피할 줄을 알 것이고, 신들도 참작하여 조처할 뜻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시자,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근래에 잠상이 잡다하게 넘치는 폐단이 더욱 심한데, 통신사의 행차는 평상시와 달라서 만약 엄중하게 조목을 세워서 두려워하여 그만 두게 할 바가 있지 않으면 이 폐단은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확정함이 타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고,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은 말하기를 “잠상과 금법을 범하는 무리가 우리나라 경내에서 적발된 자는 굳이 장계로 알린 뒤에 조처함이 합당하나, 이미 저쪽 나라로 들어간 뒤에는 사신이 그 범한 죄를 참작하여 범한 죄가 무거운 자는 곧장 효시한 뒤에 장계로 알려도 되겠지만, 그 조목을 정하자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무릇 일은 간혹 생각과 우려의 밖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 또한 일은 미미하지만 관계되는 바가 큰 것이 있는데, 만약 조목 외에 범한 죄가 무거운 것이 있으면 사신된 자가 어떻게 조처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잠상으로 적발된 자는 세 사신이 상의하여 그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하였음. 영의정 김수항이 말하기를 “좌상(左相)이 계달한 것은 대체(大體)가 참으로 그러하나, 사신의 뜻은 함부로 죽이는 것을 중히 여겨 이렇게 조목을 세우자는 의견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일은 비록 미리 정할 수가 없으나 시행되어야 할 금제(禁制)를 절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북경(北京) 사행의 금제 또한 조목이 있는데, 이제 또한 이에 의거하여 그 조목을 정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세 사신이 상의하여 그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참작하여 다스리되, 범한 바가 엄중한 자는 곧장 효시한 뒤에 장계로 알려 징계하여 그치게 하도록 함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변사, 예조, 통신사 장무관에게].

임술(1682) 5월 초8일

一. 예조에서 계달하기를, “통신사 종사관 박경후(朴慶後)의 계달 및 대신이 계달한 바로 말미암아 상감께서 ‘북경 사행 때의 금제에도 또한 조목이 있는데, 이제 이에 의거하여 그 조목을 정하여, 만약 금제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세 사신이 상의하여 그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참작하여 다스리되, 범한 바가 엄중한 자는 곧장 효시한 뒤에 장계로 알려져 징계하여 그치게 하도록 함이 좋겠다’는 일로 명이 내렸는데, 통신사 종사관이 가져 갈 금단절목(禁斷節目)은 본디 을미년(1655)의 사례가 있으므로, 일찍이 2월에 마련하여 계하여 분부하였으나, 하교가 이러하시니 대신에게 가서 절목 가운데서 다시 침삭하여 표를 붙여 들이개 하라는 뜻으로 감히 계달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一. 통신사가 가져가는 일행의 금단절목을 침삭하여 다시 표를 부친 단자(單子) 후록(後錄).

一. 일행이 한꺼번에 가져가야 할 물건은 점검하여 짐바리로 만들어 각기 글자를 적어 표시하고 수결(手決)하며, 또 자호(字號)를 붙여서 수결하여 걸어 묶고, 도중에 간간이 불시에 적간(摘奸)하며, 포소(浦所) 및 대마도와 달리 머무는 곳에 도착하면 별도로 추가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에서 몰수하며, 범한 사람은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실려 있는바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紗羅) 능단(綾緞) 황백사(黃白絲)나 보물을 몰래 사고파는 자는 모두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대전후속록』 내용에, 왜인이 가져온 대랑피(大狼皮) 및 포소에서 몰래 사고팔아 무역하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通事)는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향통사(鄉通事) 및 장사꾼이 왜인과 약속하여 어두운 밤에 매매하거나 혹은 서로 모이는 자는 모두 잠상금물(潛商禁物) 조에 의거하여 논단함.

一. 일행의 인원들이 본국에서 숨겨야 할 일 및 국가와 관련된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림.

一. 상통사(上通事) 이하 일행의 하인으로 금제(禁制)에 걸린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 직단(直斷) 함.

一. 다른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점검하되, 우리나라 경내에서 범한 일은 즉시 장계로 알리고, 바다를 건넌 뒤에 만약 금제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세 사신이 상의하여 그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참작하여 다스리되, 범한 죄가 매우 무겁고 기밀에 관계된 자는 수역(首譯)과 군관(軍官) 이하를 곤장 효시함.

一. 일행의 원역 이하로서 만약 왜의 여인과 몰래 통하다가 적발된 자는 극률(極律)⁸⁶⁾로 논단함.

一. 우리나라에서 풍랑에 표류하였다가 되돌아온 사람을 격군에 뒤섞어 넣어 충당하는 것은 극히 편치 못하니 일체 충당하여 넣지 말고, 만약 탄로가 난 자 및 본관 수령은 각별히 추고(推考)하여 죄를 다스림.

一.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軍器)는 종사관이 서명을 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만약 군기를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림.

一.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슬며시 누설하여 사사로이 통한 자와 중국과 관계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아울러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대전(大典)』의 금제 조목: 북경으로 가거나 이웃나라에 사신 가는 인원이 정해진 수량 이외의 물자나 상품을 가져가는 자와 잡문서(雜文書)를 가지고 가는 자는 모두 곤장 100대. 금지된 물품을 몰래 파는 자는 곤장 100대에 도(徒:유배) 3년. [활세포(濶細布; 폭이 넓고 가는 베), 채문석(彩文席; 채색 무늬를 넣은 돛자리), 후지(厚紙), 담비가죽, 표범 가죽, 수달피 가죽 따위임]. 중한 자는 교형(絞刑). [철물이나 소와 말, 금은과 주옥 보석, 염초(焰硝), 군기(軍器) 따위]. 부탁하거나 위촉한 자는 모두 1등급 감형. 『속록(續錄)』의 금제 조목: 왜인이 가져온 대랑피(大狼皮) 및 잡물을 포소(浦所)에서 몰래 서로 무역한 사람 및 사정을 아는 통사(通事)는 『대전』의 잠재금물자(潛賣禁物者)의 사례대로 곤장 100대에

86) 극률(極律):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규정한 법률.

도(徒;유배) 3년, 검거하지 않은 소재지의 첨사 및 수령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함. [법률에는 곤장 100대]. ◎ 해랑도(海浪島)에 내왕하는 사람은 연변(沿邊)의 관새(關塞)를 넘어 건넌다가 그대로 외국 경계로 나간 자에 해당하는 율로 논단하여 교형(絞刑)에 처함. ◎ 저쪽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구리(銅)나 주석[錫]을 몰래 판 자는 감형하고, 금지된 물품이 중대한 자는 죄로 곤장 100대를 때리되, 사면하지 못함[勿赦前]⁸⁷⁾. ◎ 향통사(鄉通事) 및 장사꾼이 왜인과 어두운 밤에 만나기로 약속하여 절도(絶島)에 몰래 들어가 매매한 자는 잠매금물(潛賣禁物) 조에 의거하여 논하고, 검거하지 않는 관원은 파직하여 내쫓음. ◎ 객인(客人;이국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명주와 약재를 매매한 자는 잠매금물 조에 의거하여 논하고, 사라(紗羅), 능단(綾段), 황백사(黃白絲) 및 일체의 보물(寶物)을 범한 자는 엄중한 자의 사례대로 논하고, 중대한 물건을 범한 것을 사로잡아 고한 자와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자는 상을 주거나 벌을 줌. ◎ 일체의 북경에 가는 사람들이 본국에서 기휘하는 일을 누설한 자는 곤장 100대에 도(徒;유배) 3년. 그 가운데 국가의 중대한 일과 관계된 자는 교형에 처하며, 검거하지 않은 사신이나 서장관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단함. ◎ 사객(使客) 접대 조항: 왜인과 친한 향통사(鄉通事) 등이 왜인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는 각 지방관이나 각 역에서 여러 가지로 폐단을 만들거나 몰래 왜인을 사주하여 바라는 바를 수행하는 자는 추고하여 논죄한 뒤에 다른 도에 충군(充軍)함. [이상 율(律)의 명목은 계하(啓下)하지 않고 율관(律官)을 시켜 베껴 내어 본조에서 적어 사행(使行)에게 보냄].

임술(1682) 5월 16일

一. 접위관 경상도사(慶尙都事) 윤홍리(尹弘離)⁸⁸⁾의 장계. 신은 조정의 분부대로 통신사 호행차왜를 접위하는 일로 이달 초10일 달려가 동래부에 도착하였는데, 다

87) 사면하지 못함[勿赦前]: ‘물간사전(勿揀赦前)’을 줄인 말. 범죄 사실이 사면령이 내리기 이전에 있었으면 그에 대한 형벌은 사면의 대상이 되지만,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를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사면의 예외 조항을 ‘물간사전(勿揀赦前)’이라 한다.

88) 윤홍리(尹弘離, 1641-?): 파평(坡平) 윤씨로 자는 거경(巨卿)이다. 숙종 4년(1678)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사헌부 장령, 승정원 승지를 역임하였다.

례는 동래부에서 이미 베풀어 행하였거니와, 하선연은 역관에 명하여 의논하여 정하게 하고, 행한 뒤에 추후에 치게할 일임.

임술(1682) 5월 19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내용.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나왔기에 훈도 변이표와 별차 최억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 및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이제 이번 통신사 때 사용할 잡물을 재촉하기 위하여 대관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음. 노인 1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동래부사 남익훈과 접위관 도사 윤홍리의 연명(聯名) 장계 내용. 통신사의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하선연을 이달 16일로 정하였는데, 동일에 신 등이 초량 객사로 갔더니 차왜의 원역들이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베풀어 행하고, 공사 예단을 또한 들여 주었으며, 동 차왜에게는 다례 뒤에 전례로는 오일숙공(五日熟供)을 제공하는 일이 있었으나 받아먹지 않고 접위관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하였기에, 동 숙공은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제 비로소 지급을 청하기로 전례대로 숙설(熟設)로 공궤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임술(1682) 5월 28일

접위관 경상도사 윤홍리와 동래부사 남익훈의 연명 장계. 통신사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원역 등에 대한 별연(別宴)을 이달 22일로 정하였는데, 같은 날 신들이 관소에 가서 전례대로 연례를 베풀어 행하였고, 공사 예단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준 일임.

임술(1682) 6월 초1일

통신사 정사 윤지완(尹趾完)과 부사 이언강(李彦綱)이 연명하여 지난 5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신들은 이달 24일 무사히 동래에 도착하였거니와, 이곳에 온 뒤로 동래부사의 말을 들으니, 차왜가 승선(乘船)하기를 재촉하는 것이 간절하고 절박할 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바, 신들이 이미 내려 온 뒤로는 날짜를 끌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서 다음 달 초3일에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리려고 하니, 예단 가운데 미처 마련하지 못한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밤낮 없이 내려 보내어 긴박하여 군색한 걱정이 없게 해 달라는 일임. [동일 참판 이민서(李敏敍)⁸⁹⁾가 주장(晝講)에 입시하였을 때, 미비한 물건을 이미 내려보냈다는 뜻으로 탐전에 진달하였으므로 회계하지 않음].

임술(1682) 6월 초7일

一. 접위관 경상도사 윤홍리의 장계 내용. 통신사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원역 등에 대한 상선연을 이달 초1일에 정하였는데, 동래부사 신 남익훈은 마침 신병이 있어서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신이 홀로 관소에 가서 전례대로 연례를 베풀어 행하였고, 공사 예단 또한 들여 주었다는 일임.

一.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임술조 세건 제13선의 격왜 20명에다 전일 통신사의 예단 말을 실어 가기 위해 나왔던 왜인 3인이 또한 동 예단 말 4필을 담당하여 실었고, 이마(理馬) 박계한(朴繼漢)과 소통사(小通事) 김금이(金金伊) 등이 동 말을 먹이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배의 격군(格軍) 권석우(權碩祐) 등과 함께 탔으며, 동년조 세건 제14선의 격왜 20명에다 마상재(馬上才)가 타는 말 3필을 실어서, 도합 2척이 돌아 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하였으며, 동일 통신사의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상선연을 베풀어 행하였는데, 신은 마침 신병이 있어서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접위관만 폐단 없이 베풀어 행하였다는 일임.

89) 이민서(李敏敍, 1633-1688): 전주 이씨로 자는 이중(彛仲), 호는 서하(西河)이다. 효종 3년(1652)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 호조, 이조의 관서를 역임하였다.

임술(1682) 6월 초9일

접위관 경상도사 윤홍리의 장계. 통신사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상선 연을 배풀어 행하였다는 일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동 차왜가 어제 이미 배를 탔는데, 그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본부에서 저절로 치계함이 당연하여 특별히 머물러 기다릴 일이 없겠기로 오늘 출발하여 본도 감영으로 향하겠으며, 차왜가 전후로 바친 예물단자 2통은 해조에 올려보내며, 물건은 본부로 보내어 추후에 올려보내도록 하였다는 일임.

임술(1682) 6월 24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달 18일 성첩한 장계 내용. 통신사 일행이 탄 배 3척과 짐을 실은 배 3척, 모두 6척에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12명과 금도왜(禁徒倭) 12인, 통사왜(通事倭) 6인이 관소에서 나와 나누어 탔으며, 호행차왜가 타고 온 배에는 정관 다이라 마사끼〔平眞幸〕과 봉진압물 1인, 시봉 2인, 반종 25명이 일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연유는 먼저 치통하였는데, 동 사행이 마침 순풍을 만나 이미 출발하였으니, 참으로 다행이거니와, 폐단 없이 물마루(水宗)를 넘었는지 여부는 추가로 치계할 일임.

임술(1682) 7월 11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이달 초6일 도부한 부산첨사 이두귀(李斗龜)의 치통 내용임.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나왔기에 훈도 변이표와 별차 최억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6명 및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통신사의 장계 및 노인 1통을 가지고 나왔거늘, 동 행차가 무사히 바다를 건넜는지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이 없이 통신사의 행차가 폐단 없이 대마부(對馬府)에 도착하여 정박한 연유와 장계를 봉함하여 가지고 왔으며, 동 행차는 이달 초4일 대마부에서 출발하여 다음으로 향하기로 이미 날짜를 정하였다’고 운운하였는데, 위 항목의 장계 봉함 및 노

인 1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운운”하였기에 받아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1통은 감봉하여 올려 보내며, 통신사의 장계를 또한 올려 보내는 연유의 일임.

一. 통신사 윤지완과 부사 이언강의 연명 장계. 신들의 일행이 지난 달 18일 부산에서 발선(發船)한 일은 이미 벌써 치계하였거니와, 그날 초경(初更) 가량에 무사히 사수나포(左須浦)에 도착 정박하였고, 19일과 20일에는 그대로 본 포구에 머물면서 각 선을 수검(搜檢)하였고, 21일에 앞길을 향해 출발하여 겨우 30리 거리에 있는 이른바 풍기정(豐崎頂)에 겨우 도착하였는데, 석맥(石脉)이 바다 가운데로 이어져 뻗어 있어서 단지 한 가닥 길만 통행할 수 있는데, 역풍이 불고 조수물이 얕아서 지나가지 못하겠기로 포구로 되돌아와서 정박하였다가, 22일에는 그대로 배 위에서 머물고, 23일에 조수물을 타고서 발선하여 약 167리를 갔는데, 밤이 깊었기 때문에 그대로 포구에서 지내며 자고, 24일에 비로소 대마부 부중의 포구에 도착하였더니, 도주(島主) 및 이른바 장로왜(長老倭) 2인이 배를 타고 10리 쯤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신들은 국분사(國分寺)에서 접대하는 등의 일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으며, 26일에 도주와 두 승려가 나와 관소에서 신들을 보았습니다. 29일 신들이 도주(島主)의 집으로 가서 하선연을 행하고, 전후로 서로 접촉한 것은 단지 전례에 따른 이야기였고, 잔치를 파한 뒤에 신들이 휴소(歇所; 쉬는 곳)으로 갔더니, 도주가 별지(別紙) 1폭을 내어 보냈는데, 거기에 한 말이 모두 일행을 엄하게 신칙하라는 뜻으로, 전일에 도해역관이 전한 바와 별로 다름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 쓰구젠주[筑前州]의 잠상(潛商) 서적(書籍) 한 조목은 비록 실상이 어떤지를 모르겠으나 일이 극히 놀랍고 해괴하여 동 별폭을 베껴 적어 보내오며, 신들이 되도록 속히 전진하겠다는 뜻을 언급하였더니, 초4일에 출발하기로 정하였으니, 배를 탄 이후에 잇달아 순풍을 만나면 8월 내에 에도[江戸]에 도착할 수 있겠는데, 바람이 순조로울지 거스를지는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연유의 일임.

一. 별단(別單)

一. 역관을 통하여 입으로 알리고자 한 것이 다섯 조목이었으나 사건이 번거롭고 세세하여 곡진하게 전달하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기록하여 바칩니다. 또 생각건대 기실(記室)⁹⁰⁾이 글을 잘하지 못하여 사정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 오직 살펴

90) 기실(記室): 공문 기록을 담당하는 보좌관.

주시기 바랍니다.

一. 이번 일행의 상관(上官) 이하는 모름지기 정숙하고 삼가하고 성실하기 바람.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에 각처의 대기하며 접대하는 곳에서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흠뻑 취한 탓에 간혹 술잔과 쟁반이 낭자하거나 혹은 부질없이 문이나 기둥을 짚아 새기거나, 자리를 잘라내고 병풍에 글을 쓰거나 혹은 당(堂)과 벽에 침을 뱉거나, 혹은 계단 가로 오줌을 흘려보내거나, 마침내는 타는 말을 달리게 하여 엎어져 죽기에 이르는 자도 있어서, 우리나라 인사가 개미떼나 사슴떼처럼 모여들어 보는 자가 담장과 같았는데, 그 목동이나 마부와 종들까지 또한 칼을 차지 않는 자라도 그 풍속이 과감하여 여유 있게 부드러운 기상이 전혀 없으니, 만약 혹시라도 말을 타고 군교(軍校)를 차거나 혹은 부녀들에게 침을 뱉기까지 하면 보는 이들이 매우 한심하게 여기고, 또한 대기하여 접대하는 곳에서 여러 관리들이 가지 않고 높이 누워 거만하게 바라보는 자가 종종 있으며, 병자년(1636)에 사신들이 이미 동도(東都)에서 출발하는 날 한 하관(下官)이 술에 잔뜩 취한 나머지 말 위에서 우리 병졸에게 꾸짖어 욕설을 하자, 군졸이 노하여 말을 꺼내자 칼을 쳐서 상해하였는데, 생각하면 그렇게 말에 상처를 입힌 것은 오히려 말할 것도 못하고, 만약 혹시라도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하여 꾸짖는 자는 반드시 살해당하여 죽는데. 우리나라의 사나운 풍습은 서경(西京) 동쪽이 심하니, 요컨대 모름지기 잘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국의 사람으로서 법을 범하거나 금지를 침범하는 무리가 있으면 모름지기 먼저 기록하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저는 내 휘하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비록 후백(侯伯)의 대관(大官) 집의 요속(僚屬)이나 이민(吏民) 또한 청하는 바에 따라 처치할 것입니다. 나의 휘하에 속한 자에게는 이미 벌써 몇 건의 명을 내려서 그 법이 매우 엄격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동래에다 잠상(潛商)을 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미 우리나라 국경으로 들어왔으니 바라건대 명령을 매우 엄중하게 하여 주시면 가장 감사하겠기에 정중히 말씀드리오니, 우리 섬을 떠나기 전에 더욱 더 규찰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一. 전년인 무신년(1668)과 기유년(1669) 사이에 우리나라 쓰구젠주(筑前州)의 호민(豪民)이 위장 선박으로 귀국과 몰래 통하여 금지된 물품을 무역하다가 그 일당 수십 인이 일이 발각되어 모조리 책형(磔刑)⁹¹⁾을 당하고 집안의 많은 재산을 관고(官庫)로 몰수당하였는데, 그 가운데 귀국에 적(籍)을 올린 자도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일찍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세상에 간행하였고, 또 들으니 『여지

91) 책형(磔刑): 죄인의 신체를 갈라 찢어 죽이는 형벌.

도(輿地圖)』와 『대전(大典)』 등의 책을 관고(官庫)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건대 이번 동도(東都)에 머무는 날 혹 시강관(侍講官)으로 하여금 의심나는 여러 곳을 바로잡을 것이니, 그렇다면 모름지기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성조(盛朝)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국가의 금령과 관계되는 것은 청탁하여 빙자하는 한계를 두지 않겠습니다.

一. 이번에 두 장로로 하여금 접위(接慰)하게 한 것 또한 예전 사례를 준수한 것입니다. 본국에서는 불교를 숭상하여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자의(紫衣)와 황의(黃衣)를 하사한 자는 우리나라 전상관(殿上官)에 상당하니, 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一. 창화(唱和)⁹²⁾와 기행(紀行)의 여러 시문 작품에 기휘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군(大君)은 천부의 자질이 영매(英邁)하고 문학을 숭상하며, 집정(執政) 여러 관원 또한 자못 책을 좋아하여, 이때문에 이번 사행에 저술한 것을 감히 베껴 적어 위에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탄 없이 말하면 저의 허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6월 29일 대마주 태수 다이로 요시자네〔平義眞〕].

임술(1682) 9월 29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내용.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가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이표와 별차 최억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비선에는 직급이 높은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통신사의 행차가 폐단 없이 섭진(攝津)에 도착하였다는 연유를 통보하기 위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특별히 정하여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지고 나왔거니와, 회답을 급속히 내려 보내면 진작 돌아 들어가겠다는 뜻을 간절히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 하였음. 이른바 섭진(攝津)은 곧 오오사카성〔大坂城〕이며, 동 서계와 별폭 등을 가져다 바친다”고 회연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두왜가 서계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전혀 없고 근근이 있었는데, 경자년(1660)에 하사(賀使)가 나올 적에

92) 창화(唱和): 시나 노래를 서로 주고 받음.

먼저 통기하는 일로 두왜가 본부 및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졌으나, 예조로 보내는 서신은 없었고, 을묘년(1675)에 두왜 사다이후[左大夫]가 나올 때 예조 및 본부와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졌으나 별폭은 전후로 모두 없었는데, 이제 이번 두왜는 서계와 별폭을 갖추어 가지고 나와서 마치 차왜인 듯함이 있으니, 이는 실로 전례에 없는 일이라 동 서계와 별폭을 모른 채 받아 올리는 것이 부당하겠는데, 다만 생각건대 도주가 사신 일행이 무사히 저쪽에 도착하였다는 기별을 알리기 위하여 이런 서계를 보내면서 겸하여 별폭을 바쳤으니, 실로 곡진한 뜻에서 나온 것이라, 전례에 없다하여 물리쳐서 받지 않는 것 또한 매물찬 일이기로, 동 서계와 별폭을 받아 올려 보내오니, 회답 서계를 해조에 명하여 속히 내려 보내도록 하시며, 이전에 두왜가 공무로 나오면 급료를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두왜는 이미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바, 마땅히 되도록 넉넉하게 접대하여야 하겠기로, 왜관에 머물 때의 양식과 반찬을 참작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통신사의 행차 기일을 통보하기 위하여 두왜 1인이 서계와 별폭을 갖추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실로 전례에 없는 일이나, 도주(島主)가 사행이 무사히 저쪽에 도착하였다는 기별을 하기 위해 이렇게 서계에다 별폭을 겸하여 보냈으니, 실로 곡진한 뜻에서 나온 것이라 물리쳐 받지 않는 것 또한 매물찬 일이니 회답 서계를 지어내어 내려 보내라고 하였으며, 왜관에 머물 때의 양식과 반찬을 참작하여 지급할 계획이라 하였는바, 두왜가 서계와 별폭을 갖추어 가지고 나온 것은 별로 전례가 없으나, 이미 사행을 위하여 두왜를 보내왔으니 접대하는 일이 없어서는 불가하여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고, 그리고 회답 서계를 지어 보내는 일을 장계대로 시행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9월 29일 동부승지 신 이수언(李秀彦)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閣下).

통신사의 성사(星槎:사신이 탄 배)가 7월 초8일 다이호〔對浦〕에서 닻을 올려 동 26일 셋슈우〔攝州〕에 닻줄을 내렸고, 세 관사(官使) 및 문무 여러 관료들의 잠자리와 음식은 편안하며, 진행하고 물리면서 어렵게 먼 길을 규정대로 호위하여, 각 포구에서의 접대도 이전대로 하여 기쁘고 위안됨이 매우 깊습니다. 이에 알리오며

보잘것없는 토산물로 정성을 표하오니,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살피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천화(天和) 2년 임술(1682) 8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별폭: 채화층갑(彩畵層匣) 1비(備). 청금화로(靑金火爐) 1구(具). 명반(明礬) 50근. 동화지(桐花紙) 300편(片).

조선국 동래·부산 두분 영공(令公) 합하(閣下).

통신사의 성사(星槎:사신이 탄 배)가 7월 초8일 다이호〔對浦〕에서 닻을 올려 동 26일 셋슈우〔攝州〕에 닻줄을 내렸고, 세 관사(官使) 및 문무 여러 관료들의 생활이 편안하며, 뱃길에서의 접대는 규정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예조 합하에게 글을 올려 이일을 고하오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산물로 보잘것없는 물품을 별전(別箋)에 적었으니 웃으며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천화(天和) 2년 임술(1682) 8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별폭: 수납명완(粹鑑茗莞) 10개. 수주괘연(垂珠掛硯) 1비(備). 동화지(桐花紙) 200편(片).

별폭: 채화중광(彩畵層筐) 1비. 단목(丹木) 100근.

一.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통신사의 사행 기일을 통보하기 위하여 두왜가 가져온 서계에 대한 회답서계 및 동래 부산에서 답장하는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물품을 참작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별도의 금군을 정하여 가지고 내려 보내도록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회례: 범 가죽 1장. 인삼 1근.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 화석 2장. 녁장 불인 유둔 1부. 참먹 20홀. [이상 본도].

동래 부산 두 곳에서의 회례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검은 삼베 1필. 흰 무명 3필.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조]. 참먹 10홀. [본도에서 지급].

임술(1682) 11월 초5일

경상우수사 원(元)이 10월 27일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왜인의 배 1척이 나왔는데, 동 배에는 통신사 사행 중에 먼저 나온 상사군관(上使軍官) 이만상(李萬相)과 부사군관 윤취오(尹就五), 상통사(上通事) 안신휘(安愼徽)와 소통사 김금이(金金伊), 동 노자(奴子) 2명이 함께 타고 나왔으며, 군관 2원 및 상통사 등은 옥면포(玉面浦)에서 곧장 출발하여 서울로 올라간다고, 차례 차례 지방관 거제현(巨濟縣) 오양역(烏壤驛)에서 사람과 말을 찾아 잡았다는 연유를 치보하여 운운하였기에, 동 사정을 묻기 위하여 신의 수영 왜학 김응윤(金應潤)을 보내어 달려갔고, 양식과 반찬과 물은 전례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뜻으로 지방관인 거제현령 서승태(徐昇泰)에게 분부하였다는 연유를 치계한 일임.

임술(1682) 6월 20일

[앞 장의 6월 사이에 적어야 함].

통신사 정사 윤지완(尹趾完)과 부사 이언강(李彦綱)이 연명하여 6월 15일에 성첩한 장계. 신 등의 일행이 이달 초3일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린다는 일은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바람이 불순하고 또 장마비가 내려 지금까지 지체하여 바야흐로 우려하고 있을 즈음에, 신 지완이 데려 온 별파진겸군관(別破陣兼軍官) 이시형(李時馨)이 12일부터 갑자기 토사(吐瀉) 병을 얻어 증세가 위독하기에 여러 가지로 치료하고 약을 썼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고 당일 묘시에 마침내 죽기에 이르러 매우 놀랍고 참담한데, 상을 치르는 여러 도구를 지방관인 동래부에 명하여 마련하게 하였으며, 소(牛)로 운구하는 일에 대하여는 경상도에는 먼저 이문(移文)하였거니와, 경기도와 공홍도(公洪道;충청도)에는 묘당에 명하여 일체로 거행하도록 분부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임술(1682) 6월 24일

[위의 6월 항목에 적어야 함].

통신 정사 윤지완과 부사 이언강이 연명하여 6월 18일에 성첩한 장계. 신 등 일행은 바람이 불순하여 지체하고 있다는 일은 이미 벌써 치계하였거니와, 당일 처음으로 동북풍이 있어서 날이 비록 늦었으나 그래도 도달할 수 있겠다고 하기로, 사시(巳時) 쯤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임술(1682) 11월 초2일

통신사 정사 윤지완과 부사 이언강이 10월 18일 성첩한 장계. 신 등 일행은 7월 초4일 대마도에서 배를 타고 전진한다는 뜻은 일찍이 이미 장계로 알렸는데,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초8일에 비로소 발선하여 같은 달 26일 오사카〔大坂〕성에 도착하여 육지에 올랐으며, 25일이 지나 8월 21일에 에도〔江戸〕에 도착하였고, 같은 달 27일에 관백(關白)에게 명을 전하고, 이튿날 약군(若君)에게 별폭을 전하여 주고, 의주(儀註) 절차는 한결같이 전례대로 하였으며, 여관에 모두 20일을 머물다가 9월 12일에 노정(路程)을 되돌려서, 당일 대마도로 돌아와 정박하였으니 왕래의 신속함은 참으로 뜻밖이며, 일행 중의 허다한 인원이 모두 무사하게 된 것은 더욱이 매우 다행이로되, 종사관 신 박경후(朴慶後)가 탄 배의 사공 경상좌수영에 사는 장남금(張南金)이라는 사람이 오사카〔大坂〕성에 머물 때 병으로 죽어서 측 은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시신을 먼저 내어 보냈습니다. 지나는 길의 각 역참 및 에도〔江戸〕에서 접대하는 등의 일은 이전의 사행보다 더함이 있었으며, 에도〔江戸〕의 봉행 8인에게는, 해조에서 공사의 예단을 아울러 마련하였는데, 여관에 도착한 뒤에 여러 곳의 예단을 나누어 줄 무렵에 당상역관 3인이 기일에 앞서 대마도에서 일을 주관하는 왜인과 주선하여 서계 및 공예단(公禮單)은 전하여 주지 않았고, 사예단(私禮單)만은 지급할 인원수가 많아 변통하여 지출하였으며, 수직왜(受職倭) 5인은 모두 이미 죽었기로, 부친 예단 역시 도로 가지고 왔으며, 이 외의 예단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물품은 바다를 건넌 뒤에 이문하여 해조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고, 관백(關白)과 약군(若君), 집정 등의 회답 서계 및 보내온 물건은 아울러 가지고 가며, 신들에게 보내온 은자(銀子) 도합 16,724냥은 모두 요시자네〔義眞〕에게 주어서 전례대로 구별 조처하게 하였으며, 다른 잡물은 일행 원역 및 하인과 군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곳에서 보고 들은 일은 별로 긴급하게 관계되는 이야기가 없어서 조정으로 돌아간 뒤에 계달할 계획이며, 신들이 에도〔江

戶)에 있으면서 집정들과 상대하였을 때 ‘이번에는 치제하지 아니하여 인정이나 예로 보나 흠이 있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언급하였더니, 수집정(首執政) 기노 마사도시(紀政俊)가 제법 관심 있게 듣는 기색이 있어서 말하기를 ‘이 말이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마땅히 돌아가서 대군(大君)에게 고하겠다’고 운운 하였으며, 신들이 올 때 탐전에서 확정한 일은 수역(首譯) 박재흥(朴再興) 등이 이미 벌써 단서를 꺼내어 탐문하였더니, 실망할 지경에 이르지 않는 듯하되, 그 사이의 사소한 곡절은 신들이 미처 요시자네(義眞)를 만나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장차 힘껏 말하여 조정하려고 하며, 신 등이 이곳에 머무는 날짜의 늦고 빠름은 미처 완전하게 정하지는 못하지만 초열홀에서 보름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나, 바람이 순조로울지 거스름지를 미리 짐작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우려되며, 신 지완(趾完)의 군관인 전초관(前哨官) 이만상(李萬相)과 신 언강(彦綱)의 군관인 부정(副正) 윤취오(尹就五), 상통사(上通事) 안신휘(安愼徽) 등에게 장계를 가지고 먼저 내어 보내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임술(1682) 11월 초5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10월 29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의 앞서 온 군관과 역관들이 탄 왜선 1척이 거제 경내로 표류 정박하였는데, 동 군관과 역관 들은 그곳에서 곧장 서울로 올려갔으며, 동 왜선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어제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28일 해시(亥時)에 성첩하고 29일 축시(丑時)에 도부한 부산첨사 민기(閔錡)⁹³⁾의 치통 내용에, “이달 26일 옥면포(玉面浦)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에 문정하기 위해 별차 최역을 정하여 보냈더니, 동 별차의 회고 내용에 ‘문정하기 위해 다대포로 달려갔더니 동 왜선 1척이 이미 돛을 걸고 돌아서 관소로 향하기로 문정하지 못하고 일시에 되돌아왔다’고 회언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수호장 서평포만호 박상빈(朴尙彬)⁹⁴⁾의 치보 내용에 ‘동 왜선 1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훈도 변이표와 별차 최역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통신사

93) 민기(閔錡, 1611-?): 여흥(驪興) 민씨로 인조 15년(1637) 별시 무과에 급제하고 영장(營將)과 훈련부정을 거쳐 첨사를 역임하였다.

94) 박상빈(朴尙彬, 1646-?): 밀양 박씨로 자는 자장(子章)이다. 숙종 1년(1676) 을묘 증광 무과에 급제하였다.

보다 먼저 온 군관 2원과 역관 1원, 소통사 1인과 군관과 역관의 노자(奴子) 각 1명 등과, 영술하여 온 두왜 1인과 금도왜 3인, 사공왜 2명, 격왜 10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통신사 행차가 대마도로 되돌아온 기별을 탐문하였더니, 두왜 및 소통사의 말이, 통신사의 행차가 대마도로 되돌아와서 정박하였다는 장계를 가지고 이달 26일 먼저 왔다가 표류하여 거제 경내의 옥면포에 정박하여, 동 군관 2원과 역관 1원 등은 표류한 곳에서 곧바로 서울로 향하였으며, 동 통신사의 행차가 8월 21일 폐단 없이 에도(江戸)에 도착하고 9월 22일 에도(江戸)에서 출발하여 이달 17일 대마도로 되돌아왔고, 이달 26일과 27일 사이에 대마도에서 배를 탈것이라고 운운하거늘, 그대로 관수왜에게 가서 또 통신사의 행차 및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대답은 별로 다름이 없는데, 사서(私書) 가운데 동 행차의 호행차왜가 또 일등봉행(一等奉行)으로 나오는 일을 적어 왔으니 각별히 접대해 달라는 뜻을 미리 동래 영감 앞에 고하여 임시로 군색하고 급박한 폐단이 없게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음. 동 노인 1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회언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이제 이번 통신사의 호행차왜가 또 일등봉행으로 나온다고 하였는바, 접대하는 등의 일은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사례대로 함이 마땅하거니와, 그 때는 접위관을 본도의 도사를 차출하였는데, 본도의 도사가 접대하는 규정은 경접위관과 일체로 할 뿐 아니라, 본도의 도사는 방금 연분(年分)을 복심(覆審)하는 일이 있어서 경접위관으로 접대해야 마땅할 듯한데, 동 경접위관을 미리 먼저 차출하였다가 차왜가 나오기를 기다려 다시 조정한 뒤에 진작 내려 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통신사의 호행차왜가 또 일등봉행으로 나온다고 하였는바, 접대 등의 일은 한결같이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사례대로 해야 마땅할 듯하거니와, 본도의 도사가 접대하는 규정은 경접위관과 일체로 할 뿐 아니라 본도의 도사는 방금 연분을 복심하는 일이 있어서 경접위관으로 접대해야 마땅할 듯하니, 동 경접위관을 미리 먼저 차출하여 차왜가 나온 뒤를 기다려 진작 내려 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 통신사의 호행차왜가 일등봉행으로 나온다면 접대하는 한 조목은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와 다름이 없어야 할 듯하나, 도사와 경접위관의 접대는 또한 차이가 있는데 도사에게 사고가 있으니 도내의 직급이 높은 수령 중에서 차출하여 접대하고, 예단 등의 물건은 도사와 일체로 마련함이 무방할 듯하되, 일이 변방 사정에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

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11월 초6일 우승지 신 박태상(朴泰尙)⁹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침부한 계목. 호행차왜가 이미 일등으로 나온다면 접위관은 또한 도사를 차출하여 보냄이 마땅하나, 마침 연분을 복심하는 일로 겹하여 행하기가 어려우니, 별도로 이웃 고을의 수령 가운데서 직급이 높은 문관을 차출하여 보내고, 예단 등의 물품은 한결같이 통신사를 호송하여 간 차왜의 사례대로 마련함이 마땅하니, 이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해조와 해당 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11월 초9일 우부승지 신 서문중(徐文重)⁹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10월 30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왜선이 나온 일로 이에 의거하여 훈도 변이표와 별차 최억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 5척에 각각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2척은 은화(銀貨)를 실어왔고, 2척은 관중(館中)에 사용할 잡물을 싣고 나왔으며, 1척은 통신사의 종사관이 탄 배의 사공인 좌수영 장남금(張南金)의 시신을 실어 왔다’고 운운하였음. 노인 5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운운하였기에, 동 노인은 받아서 올려 보내거니와, 동 시신은 그 족속으로 하여금 찾아가라고 하였으며,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5통을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임술(1682) 11월 초7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10월 30일 성첩한 장계 내용.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9척이 나오는데, 반드시 통신사 일행이 탄 배이겠기로 연유를 방금 이미 치계하였는데, 추후에 동 봉군(烽軍)이 진고하기를 ‘왜선 6척이 또 나온다’고

95) 박태상(朴泰尙, 1636-1696): 반남(潘南) 박씨로 자는 사행(士行) 호는 만휴당(萬休堂)이다. 현종 12년(1671)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대사성, 평안도 관찰사, 대제학, 우참찬,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96) 서문중(徐文重, 1634-1709): 달성(達城) 서씨로 자는 도윤(道潤), 호는 몽어정(夢語亭)이다. 현종 14년(1673) 학행으로 천거되어 청도군수와 상주목사를 역임하고, 숙종 6년(1680)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광주부윤과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고, 그 뒤 공조와 형조, 병조의 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하였으며, 부산첨사 민기(閔錡)의 치통 내의 사연은 또한 봉군 등이 진고한 것과 한가지였음. 동 나왔던 배는 세 사신 일행이 탄 배 및 호행차왜 등의 배인데, 당일 유시(酉時)에 폐단 없이 부산에 도착 정박하였거니와, 차왜 등에 대한 문정은 추후에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一. 예조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를 호송하여 오는 차왜의 접위관을 수령 가운데서 차출하여 보내고 예단 등의 물품은 한결같이 통신사를 호송하여 간 차왜의 사례대로 마련하라는 일로 비변사에서 이미 확정하였기에 이대로 마련하여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게 하였으며, 차비역관으로 당상 당하 각 1인을 차출하여 보내는데, 당상역관은 박유년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로 또한 확정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차출하는 일을 분부함이 어떠할지?

접위관의 사예단(私禮單): 인삼 6근. 표범 가죽 3장. 흰 명주 20필. 흰 모시베 20필. 검은 삼베 14필. 흰 무명 40필. 황모필 80자루. [이상 해조]. 화석 10장. 낙장 붙인 유둔 10부. 참떡 80홀. [이상 본도].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11월 초1일 성첩한 장계. 어제 통신사 일행이 탄 배 및 호행차왜의 배가 부산에 도착 정박한 연유는 연속하여 장계로 알렸거니와, 당일 진시(辰時)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대마도에서 나온 배 15척 가운데 6척은 통신사 일행이 탄 배이며, 그 나머지 왜선 9척에 훈도 변이표와 별차 최억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1척은 통신사의 호행차왜로서 도주의 일등봉행인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와 봉진압물 1인, 시봉 2인, 반종 25명, 격왜 90명, 도금도왜 5인, 제2척에는 동 차왜의 도선주 1인, 격왜 40명, 제3척은 수목선으로 격왜 20명, 제4척은 재판차왜 후지 나리히사(藤成久)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왜 10명, 격왜 40명, 제5척에는 동 차왜의 수목선에 격왜 20명이 전례대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동 서계는 다례하는 날 바치겠다고 운운하였으며, 제6척은 비선인데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잡물을 실어왔으며, 제7척과 제8척, 제9척 등은 동 차왜 등의 소소종선(小小從船)으로 격왜가 없고 노인이 없음.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가 비직 등을 만나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이번에 이렇게 나온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는 곧 도주(島主)의 수봉행(首奉行)이니 각별히 우대하며, 접위관도 경접위관으로 속히 청하여 오게 해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접대하는 한 조목은 본디 전례가

있는데 어찌 가감이 있겠으며, 접위관은 지난번 통신사를 호행하여 갈 때 본도의 도사로 접위했으니 이번에도 전례대로 도사로 접대할 것이다」라고 말을 만들어 타일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전날에 호송하여 갈 때는 일이 급박하여 비록 도사가 접대하였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름이 있으니 반드시 경관(京官)을 청하여 와야 하며, 차비역관도 당상과 당하의 인원을 갖추어 내려오라는 뜻으로 동래영감 앞에 고하여 달라」고 자꾸 되풀이하여 말하였으며, 재판차왜 접위관은 전례대로 부근 고을의 향관(鄕官)을 급속히 청하여 오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음. 비선의 노인 1통 및 서계 등본을 아울러 가져다 바친다'고 회언 운운하였기에 받아 보내오며, 통신사 일행이 탄 배 6척에 나누어 타고 나온 통사왜(通事倭) 6인과 도금도왜 6인과 지로사공왜 12명은 육지에 내리자 즉시 왜관으로 들여보냈다는 일로 치통한다」하였음. 비선의 노인 1통 및 두 차왜의 서계 등본을 아울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이제 이번 차왜가 데려온 반종 25명과 3척 배의 격왜가 도합 150명이지만, 다이라 마사끼(平眞幸)는 곧 통신사가 들어갈 때의 호행차왜로 나온 자이기로 한결같이 그 때의 접대한 사례대로 반종 16명과 격왜 70명을 접대한다는 뜻으로 역관에게 명하여 이미 조정하였으며, 호행차왜를 접대하는 경접위관을 차출하는 뜻은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여 차출하여 속히 내려 보내며, 차비역관도 당상과 당하의 인원을 갖추어 내려와 달라고 이야기하였는바, 역관들이 바다를 건너 겨우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생각건대 필시 적을 것이라, 비록 당하 2인을 차출하여 내려 보내더라도 또한 무방한데, 이제 통신사의 말을 들으니, 7건의 약조제찰(約條制札)을 거듭 밝히는 한 조목은 이미 벌써 도주(島主)와 조정하여, 이제 이번에 나온 차왜가 왜관에 머무는 날 장차 제찰(制札)을 만들어 세우려고 하는데, 무오년(1678) 문위역관 김근행(金謹行)과 박유년(朴有年)이 바다를 건넌을 때 이 7건의 약조를 도중(島中)에서 조정하였으나, 김근행은 비록 이미 죽었지만 박유년은 무고하게 서울에 있어서 이 일의 시말을 상세히 알고 있기로, 제찰을 건립할 때 상의하여 조정할 일이 없지 아니하니, 동 박유년을 차비역관으로 내려 보내면 실로 양쪽으로 편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시고, 재판차왜 후지 나리히사(藤成久)를 접대하는 향접위관은 전례대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여 차출하되, 증정하여 줄 예단 등의 물품은 또한 해조에 명하여 전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낼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통신사를 호위하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를 접대하는 경접위관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확정하며, 차비역관으로 당상 당하관의 인원을 갖추어 내려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당하관 2인을 차출하여 보내어도 무방하되, 제찰(制札)을 설립할 때 상의하여 조정할 것이 아니라는 일로 역관 박유년을 차비역관으로 내려 보내면 양쪽으로 편하다고 하여 이렇게 치계하였는바, 경접위관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의 합당한지 여부는 방금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한 일로 이미 보계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이대로 분부하며, 차비역관 2인 중 1인은 박유년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편하고 타당할 듯하되,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 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동 호위하여 온 차왜의 원역 이하 및 재판차왜 등에게 증정하여 줄 예단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 장계대로 시행하는 일로 분부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11월 초8일 좌부승지 신 조지겸(趙持謙)⁹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통신사를 호위하여 온 차왜를 접대하는 일은 이미 동래부사가 처음에 보내온 장계에 의거하여 복계하여 분부하였거니와, 이제 또 관수 등 여러 왜인의 청으로 이렇게 품신하였는데, 차비역관을 당상과 당하 각 1인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을 모두 해조에서 복계한 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11월 초9일 우승지 신 서문중(徐文重)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술(1682) 11월 초8일

一. 통신사 윤지완이 11월 초3일 성첩한 장계. 신 등 일행은 길을 나누었기에 부사 신 이언강(李彦綱)은 먼저 출발하였고, 신은 별폭 물건을 거두어 받기 위하여 짐짓 지체하여 머물렀는데, 동 물건의 거의 절반이 오지 않고 왜인의 말이 “공사복물(卜物:짐)의 수량이 많기로 각 배에 나누어 실을 때에 뒤쳐진 배에 잘못 실었으나 며칠 안되어 당도할 것이라 하였는바,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려 일시에 감봉하여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동래부에 분부하였으며, 압물(押物)하기 위해 정문수(鄭文秀)와 압물통사 오윤문(吳允文) 등은 뒤쳐져 머무른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계

97) 조지겸(趙持謙, 1639-1685): 풍양(豐壤) 조씨로 자는 광보(光甫), 호는 오재(汚齋)이다. 현종 11년(1670)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 부제학,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하는 일임.

一. 예조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를 호위하여 나오는 일로 나온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와 도선주, 압물, 시봉, 반중 등의 하선연, 상선연과 왜관에 머물 때 별연(別宴)의 예단을 전래대로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차비역관에게 명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차왜의 3차례 연회에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 참떡 20홀. 화석 3장. 녁장 붙인 유둔 2부. [이상 본도].

도선주 1인에게 3차례 연회에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4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 참떡 20홀. 화석 3장. 녁장 붙인 유둔 2부. [이상 본도].

압물 1인과 시봉 2인에게 각각 3차례 연회에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 [이상 해조].

반중 16명에게 각각 3차례 연회에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 해조]

임술(1682) 11월 초10일

一. 통신사를 호위하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 등이 가져온 서계 별폭.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참판 대인 함하.

황종(黃鍾)⁹⁸의 달에 멀리 생각건대 지내시는데 편안하신지, 발돋움하여 우러러는 심정 더욱 간절할 뿐입니다. 우리 대군(大君)께서 홍업(洪業: 건국 대업)을 계승하여 광채가 선열(先烈)에게 빛나는데, 관사(官使)께서 치하하여 빙례(聘禮)⁹⁹를 두터이 해주시고, 더구나 저군(儲君)의 성에 올라가 잉수(孕秀)의 경하¹⁰⁰를 펴시니, 덕 있는 이에게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의리는 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본

98) 황종(黃鍾): 12월의 첫 번째 음률. 책력으로는 동짓달에 해당한다.

99) 빙례(聘禮): 외교 사절을 보내어 상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예.

100) 잉수(孕秀)의 경하(慶賀): 빼어난 기운을 잉태하였음을 축하하는 일. 후계자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축하한다는 말이다.

방에서는 이를 매우 가상(嘉尙)히 여기고, 불녕(不佞)이 부지런히 오가는 길을 호위하여, 공을 이루고 영화롭게 돌아가게 하였기에, 이에 차관(差官)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배를 부산포로 보냅니다. 바라는 바는 세 분의 관사(官使)께서 일찍 도성에 도달하여 반드시 평안함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토산물의 보잘것없는 물품으로 멀리 정성을 표하오니, 웃으며 받아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퍼지 못합니다. 천화(天和) 2년(1682) 임술 10월 일.

별폭: 적동루오관반(赤銅累五盥盤) 1부. 수정 갓끈(水精笠緒) 2묶음(結). 채화칠촌염경(彩畵七寸畵鏡) 2면. 첩금병풍(貼金屏風) 2쌍.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1부. 대화진주(大和眞朱) 4근(斤). 채화의형(彩畵衣桁) 1각(脚). 문지(紋紙) 1,000편(片).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

운운. 조선국 예조참의대인 합하. 때는 소춘(小春;10월)인데, 멀리 생각건대 지내시기에 모든 게 좋으리라 여기며 그리워하는 마음 마지못합니다. 방금 관사(官使)가 탄 배는 바다와 육지에 장애가 없었는데, 불녕(不佞)이 접대하고 호위하여 오고가면서 어찌 게을리 하였겠습니까? 이제 폐주(弊州)에서 닳을 풀었기에 그대로 가신(家臣) 다이라 마사끼(平眞幸)로 하여금 부산포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세 분 관사가 불일간에 도하(都下)에 도착하면 반드시 고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토산물로 미미한 정성을 표하여 별폭에 기록하여 놓았으니,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천화(天和) 2년(1682) 임술 10월 일.

별폭: 청금화로(靑金火爐) 2위(圍). 채화소원분(彩畵小圓盆) 20매. 채화육촌염경(彩畵六寸畵鏡) 5매. 청동명로(靑銅茗爐) 2위. 채화경대(彩畵鏡臺) 2비. 대화진주 2근. 흑칠촉대(黑漆燭臺) 3각.

운운.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 합하. 여러분께서 지내시기에 편안하시겠지요. 이에 관개(官价: 공식 사절)를 통하여 동무(東武)에 국가의 신의를 통함애, 불녕(不佞)이 먼 길에 사절(使節)을 호위하여 이제 뜻을 올리니, 정성으로 머무르게 할 수가 없는지라, 예전의 관례대로 가신(家臣)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와 채판 후지 나리히사(藤成久)를 차출하여 보내어 부산포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도하(都下)로 돌아감에 반드시 평안함을 알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남은 정은 두 차사에게 부쳐 두었으며, 보잘것없는 별폭의 물품으로 멀리 경의를 표하오니, 아무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동래 별폭: 수주부갑(垂珠簿匣) 1비, 채화팔촌염경(彩畵八寸奩鏡) 5매, 대화진주 2근, 채화중연갑(彩畵中硯匣) 1개, 적동명로(赤銅茗爐) 2위, 문지(紋紙) 400편.

부산 별폭: 수정 갓끈(水精笠緒) 2묶음[結],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 1부, 채화소원분(彩畵小圓盆) 20매, 중약관(中藥罐) 6제(提), 채화문갑(彩畵文匣) 1개.

一. 재판차왜 후지 나리히사(藤成久)가 가져온 동래 별폭: 채화대연갑(彩畵臺硯匣) 1개, 수정 갓끈(水精笠緒) 2묶음[結], 채화육촌염경(彩畵六寸奩鏡) 1면, 부산 별폭: 대화진주 1근, 적칠연갑(赤漆硯匣) 1개, 문지 300편.

一.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운운. 이제 이번 통신사를 호위하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 등이 가져온 서계에 대한 회답 서계 및 동래 부산에서 답변할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되, 별폭의 회례 물품을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또한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이대로 마련하고, 원 서계가 올라온 뒤에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호행차왜에 대한 참판의 회례: 인삼 2근, 범 가죽 2장, 표범 가죽 2장,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10필, 흰 무명 3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 참떡 30홀, 화석 3장, 녁장 불인 유둔 3부, [이상 본도].

참의의 회례: 인삼 1근,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모시베 7필, 흰 명주 7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 참떡 30홀, 화석 3장, 녁장 불인 유둔 3부, [이상 본도].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 참떡 20홀, [본도에서 마련함].

재판차왜에게 동래 부산 두 곳에서의 회례 각각: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 참떡 20홀, [본도에서 마련함].

임술(1682) 11월 13일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 방금 도부한 부산참사의 이문 내용에, 방금 도부한 통신사의 관문 내용의 예단 응자(鷹子) 31연 가운데 19연은 예단에 사용하였고, 전후

로 죽은 것이 9연이며, 나머지 매 2연 중 1연은 다리가 부러졌고, 1연은 다쳐서 모두 쓸모가 없기로 버렸으며, 동 죽은 9연은 투(套)를 붙여 꼬리깃에 붙인 것은 저쪽에서 곧장 왜관으로 부친 것이 1마리이며, 사행이 가져온 8마리는 보내오니 알아서 거행할 일이라고 이관하였으니 상고하시되, 통신사 행차 때 관왜에게 들여준 예단 응자가 84연인데 그 중에 죽은 것이 41연이과 생존한 것이 43연이며, 도중에 들여보낸 것이 31연이고 왜관에 있는 것이 12연이나, 이미 이전에 들여보낸 31연은 통신사의 관문 내의 사연이 이러하여 본진에서 다시 거론할 일이 없거니와, 위 항목의 왜관에 머물러 둔 12연은 속히 수표를 받아 뒤에 연례구청 조목으로 옮겨 시행한다는 뜻으로 역관들에게 각별히 신칙하여 분부하였으니, 이런 뜻으로 귀 동래부에서 각도에 따져 보고하여 시행함으로써 뒷날 상고할 수 있도록 이문하여 주시고, 통신사의 예단 응련으로 본도 및 각 도에 분정하여 가져왔다가 죽은 이외에 생존하여 피집(被執)한 실제 수량 43연 중 12연은 왜관에서 머물러 두었다가 31연을 먼저 들여보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의 관문 내용에 31연 중 예단으로 사용한 것이 19연이고 죽은 것이 9연이며 다리가 부러져서 상한 것이 2연이라 하였는바, 사용하거나 죽고 손상된 것 도합 30연을 제하고 1연은 간 곳이 없는바, 동 1연의 매가 간 곳을 예조에서 사신이 데려간 담당 역관들에게 상세히 물어보라고 하였음. 왜관에 머물러 둔 매 12연은 아울러 모두 생존하였기로, 연례 조의 구청 응자로 역관에게 명하여 수표를 받아 본도에 보고하여 구분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는 일임.

一. 통신사 장무역관(掌務譯官)의 수본 내용. 본조(本曹)의 감결(甘結)에 의거하여, 통신사의 별폭에 부치고, 집정들에게 사용한 응자(鷹子)의 남은 수량이 모두 31연인데, 그 중 예단에 사용한 것이 19연이고, 전후로 죽은 것이 9연이며 저쪽에서 죽은 매의 꼬리깃을 왜관으로 곧장 보낸 것이 1연이며, 사행이 가져온 꼬리깃 8연은 부산진으로 보내었고, 남은 매 3연 중 1연은 다리가 부러졌고, 2연은 손상되어 거의 죽을 지경이기로, 사신 앞에서 살펴본 뒤에 그대로 버렸는데, 남은 매 3연 의 삼(三) 자가 사행이 급하게 출발함으로 인하여 2(二) 자로 잘못 적어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되었기로, 사신의 뜻으로 이렇게 감히 수본하는 일임. [동래부로 이문함].

임술(1682) 11월 16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11월 초10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접위관 울산부사 안한규(安漢珪)의 이문 내용임. 이달 초10일 재판차왜 후지 나리히사(藤成久) 원역 등에 대한 다례를 전례대로 베풀어 행한 뒤에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4통을 받아 보내었거니와, 동 차왜가 역관을 시켜 말을 보내오기를 ‘도주(島主)가 통신사를 모시고 폐단 없이 대마도로 돌아온 뒤에 귀국에서는 전례에 역관을 보내어 위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또한 전례대로 문위역관의 인원을 갖추어 차출하였다가 해가 바뀐 뒤에 2월에 진작 내려와서 3월 전후로 바다를 건너며, 어제 비선이 나와서 도주(島主)가 직급이 높은 두왜에게 통신사 세 행차 앞으로 서신을 보냈고, 또 병풍을 보내어 세 사신의 수필(手筆)을 요구하였는데, 동 행차가 이미 출발하여 그 글씨를 쓸 물건을 세 행차 앞으로 전하여 보내 주기 바라며, 또한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가 반드시 해가 가기 전에 진작 돌아가려고 하니 경접위관을 속히 청해 오라는 뜻으로 아울러 동래부에 전해 달라’고 운운하기로, 연유를 이문하는 일로 이문한다 하였음. 동 서계와 별폭을 받아서 상고하였더니, 본부 및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뿐인바, 예조로 보내는 서계 가운데는 단지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를 내보낸다는 뜻만 적었고, 재판차왜를 내보낸다는 뜻은 단지 본부 및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가운데 언급하였기로, 이제 이번 다례 때 단지 이 서계만 바친 것은 사례가 그러하며, 별폭 4통 중 2통은 호행차왜가 가져온 물건이고, 2통은 재판차왜가 가져온 물건인데, 아울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문위역관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은 해조에 명하여 미리 먼저 확정하여 차출하여 때가 되어 내려 보내도록 하며, 호행차왜를 접대할 접위관을 차출하는 일은 일찍이 이미 여러 차례 치계하였는데, 저쪽에서 재촉하는 뜻이 있으니, 또한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어 기다리며 오래 머무는 폐단이 없게 하고, 통신사 사행에게 도주(島主)가 보내온 서폭(書幅)에 대하여는 역관들이 추후에 와서 바칠 것이라 하거늘, 그 곡절을 물었더니 역관들의 말이 ‘초8일 나온 두왜가 통신사 행차가 폐단 없이 바다를 건넌는지 여부를 탐문하고 세 사신 앞으로 보낸 도장(都狀) 1폭과 별폭 3통과 감자(柑子) 3상자를 바치기 위하여 가지고 왔으며, 병풍 2쌍은 도주가 사신의 필적을 얻기 위하여 아울러 가지고 왔는데, 사신 행차가 비록 이미 올라갔으나 도주(島主)가 보내온 물품을 저희들이 전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차왜 등이 이야기하기에, 비직 등이 추후에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답하

였는데, 이제 이번 다례 때 후지 나리히사(藤成久)가 접위관 앞에서 발언하기로, 동 서쪽 등을 가져다 바치라고 와서 고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도주(島主)가 사행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겸하여 별폭을 바치고 한편으로 필적을 구하는 것은 실로 구구하게 정성을 바치는 뜻이지만 사행이 조정으로 돌아간 뒤에 추후에 전하여 보내는 것은 일의 체면으로 헤아리면 불가한 바가 있기로,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또한 역관들에게 명하여 차왜에게 말하게 하였거니와, 차왜들이 만약 시종 굳게 고집하여 반드시 보내어 전하려고 한다면 장차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지휘하게 하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운운. 이 장계를 보면 대마도 도주에게 문위역관을 미리 먼저 차출하였다가 때가 되어 내려보내며, 호행차왜의 경접위관을 재촉하여 달라 하였으며, 도주(島主)가 사행에게 서신을 보내고 겸하여 별폭을 바치면서 한편으로 필적을 구하였는데, 사행이 조정에 돌아간 뒤에 추후에 보내어 전하는 것은 불가함이 있기로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역관들을 시켜 차왜에게 말하게 하였거니와, 만약 반드시 보내어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여 지휘해 달라고 하였는바, 도주(島主)가 대마도로 돌아온 뒤에 전례로는 역관을 보내어 위문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제 또한 전례대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차출하여 보내게 하고, 경접위관은 이미 차출하였으니 또한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보내게 하며, 도주(島主)가 사행에게 서신을 보내고 또 필적을 구하는 일은 이전부터 사신이 가는 곳에서 액호(額號)를 써주기를 요청하여 서신을 보내고 물품을 보낸 때가 있었는데, 이미 서신을 보내어 답례하는 일이 있었으니 서로 믿는 도리에 있어서 이제 되돌려 보내는 것은 불가하니, 세 사신에게 온 도장(都狀) 및 별폭과 병풍 등의 물건을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받아 올리게 하여, 적어 주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이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11월 17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통신사가 들어와서 그대로 인견하였는데, 통신사가 가져온 관백(關白)의 회답 서계 및 별폭과 저군(諸君)의 별폭, 집정 이하의 서계와 별단을 들었는데, 집정 이하의 서계는 계하하고, 관백의 서계와 별폭, 저군의 별폭은 계하하지 않았으므로 승정원에 고하여 사알(司諫: 정6품 내시)이 미품(微稟)¹⁰¹⁾하여 계하함.

101) 미품(微稟):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넉넉히 아뢰.

一. 경건히 답장 드림〔敬復〕.

일본국 미나모토 쓰나모시〔源綱吉〕 근봉〔謹封〕. 전서〔篆書〕로 새긴 미나모토 게이쥬우〔源敬忠〕. 도장을 찍음.

조선국왕 전하〔殿下〕.

빙사〔聘使〕가 멀리 오에 예의〔禮意〕가 정중하였습니다. 서신을 열어보고는 우리가 전대의 업을 계승한 것을 경하한 뜻을 모두 살펴 알았으며, 증정한 물품은 별폭대로 받고 간절하게 정성을 다한 우호에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마음으로 교제하여 오래도록 공경하여 이웃으로 외롭지 않았으니, 더욱 대대로 화목을 닦아 하늘의 복을 무성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가을이 서늘하고 기운이 상쾌한데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아끼십시오. 이에 토산품을 부쳐 멀리 정성을 표합니다. 사신이 돌아감에 글로써 말을 다하지 못합니다. 천화〔天和〕 2년(1682) 임술 9월 일. 일본국 미나모토 쓰나모시〔源綱吉〕. 도장 찍음.

별폭: 견〔鑣:창〕 100자루. 살금시회안구〔撒金蒔繪鞍具〕 20장〔裝〕. 금지화병풍〔金地畫屏風〕 20쌍. 살금시회광개〔撒金蒔繪廣蓋〕 10매. 채문복〔綵紋服〕 50령〔領〕.

천화〔天和〕 2년(1682) 임술 9월 일 일본국 미나모토 쓰나모시〔源綱吉〕. 도장 찍음.

관백자〔關白子〕 서계 없음.

별폭: 대자제구〔臺子諸具〕 5식〔飾〕. 팔장주〔八丈紬〕 200단〔端〕. 월전면〔越前綿〕 500파〔把〕. 천화〔天和〕 2년(1682) 임술 9월 일. 전서〔篆書〕의 미나모토 슈기〔源緝熙〕. 도장 찍음.

一. 경답〔敬答〕

일본국 집정 종사위〔從四位〕 히다리 고노에쇼쇼〔左近衛少將〕 겸 쓰구젠수〔筑前守〕 기노 마사도시〔紀正俊〕. 도장 찍음.

조선국 예조참판 홍공〔洪公〕 각하〔閣下〕 서계〔書契〕. 〔외면〔外面〕〕

내면〔內面〕: 다음과 같이 운운하였음. 경답〔敬答〕.

멀리 부쳐주신 방함〔芳緘:서찰〕으로 교분의 의리가 더욱 두터웠습니다. 글을 살펴보고는 귀국 왕께서는 우리 대군〔大君〕이 큰 운세를 계승하여 능히 아름다운 상서를 계승한 소식을 들으시고 멀리 세 사신을 보내고 이에 함께 방물〔方物〕을 증정하시어 옛 맹약을 변치 않고 이웃 나라의 우호를 더욱 닦으심을 알았습니다. 신〔臣〕 등 또한 보내 주신 물품을 수량대로 검사해 받고서 감사하는 마음 매우 깊습

니다. 천 리 먼 곳까지도 동일한 인자함을 베푸시니 만년토록 복이 끝없을 것입니다. 통신사가 사신의 명을 완수하고 돌아감으로 인하여 하찮은 물건을 올려 조그만 정성을 표하오니,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천화(天和) 2년(1682) 임술 9월 일. 운운. 도장을 찍음.

一. 봉답(奉答)

일본국 집사 종사위(從四位) 시종(侍從) 겸 가가수〔加賀守〕 후지와라 다다또모〔藤原忠朝〕.

조선국 예조참판 홍공 각하.

내면: 운운. 멀리 화한(華翰; 서찰)을 보내주시니 문정(文情)이 너무 두텁습니다. 살펴보고는 귀국의 왕께서 우리 대군(大君)이 능히 전인의 업을 이어서 경복(景福)을 누리며 멀리 세 사신을 보내시어 이에 기이한 특산물을 증정하시며 이웃나라와 사귀는 도리를 모두 옛날 법도대로 따르시니 인자한 이를 가까이 하고 의리에 돈독하여 나라의 기틀이 더욱 견고할 것입니다. 신들 또한 아름다운 선물을 받고서 간절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애오라지 보잘 것 없는 물품을 바쳐 미미한 정성을 표합니다. 서찰이 비록 짧지만 한 치의 붉은 마음이 깁니다. 나머지는 빙사(聘使)가 돌아가는 편에 맡기고 오직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연호 운운.

별폭: 백은(白銀) 100매. 월전면(越前綿) 100파(把).

一. 일본국 집사 종사위(從四位) 시종(侍從) 겸 봉고수〔豐後守〕 아베 마사오〔阿部正武〕.

조선국 예조참판 홍공 각하.

내면: 운운. 멀리 화한(華翰)을 보내주시니 문정(文情)이 너무 두텁습니다. 살펴보고는 귀국의 왕께서 우리 대군(大君)이 능히 전인의 업을 이어서 경복(景福)을 누리며 멀리 세 사신을 보내시어 이에 기이한 특산물을 증정하시며 이웃나라와 사귀는 도리를 모두 옛날 법도대로 따르시니 인자한 이를 가까이 하고 의리에 돈독하여 나라의 기틀이 더욱 견고할 것입니다. 신 등 또한 아름다운 선물을 받고서 간절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애오라지 보잘 것 없는 물품을 바쳐 미미한 정성을 표합니다. 서찰이 비록 짧지만 한 치의 붉은 마음은 깁니다. 나머지는 빙사(聘使)가 돌아가는 편에 맡기고 오직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다. 연호 운운.

별폭: 백은(白銀) 100매. 월전면(越前綿) 100파(把).

一. 일본국 집사 종사위 시중 겐 야마시로수〔山城守〕 후지와라 다다쇼오〔藤原忠昌〕.

조선국 예조참판 홍공 각하.

내면: 운운. 사용한 말은 붕고수(豊後守)와 동일함.

별폭: 상동(上同).

一. 일본국 신 종사위 시중 겐 당고수〔丹後守〕 오찌 마사미찌〔越智正通〕

조선국 예조참판 홍공 각하.

내면: 운운. 멀리 화전(華箋)을 보내주시니 우호의 정이 더욱 깊습니다. 이로 인하여 귀국의 왕께서 우리 대군(大君)께서 아름다운 사업을 계속하여 온갖 공적이 모두 빛남을 들으시고 멀리 세 사신을 보내시어 특별히 신령스런 구역의 진귀한 생산물을 증정하시니 예전의 교유와 이웃의 맹세를 이미 성대한 예로 닦으심을 알고는, 덕화(德化)의 인애(仁愛)로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함께 기뻐합니다. 미미한 신(臣) 또한 후한 선물을 받고 지극히 간절하게 감사드리며, 인하여 하찮은 예물로 경건히 회답을 표시하오나, 기교가 다하고 생각도 모자라 분수에 넘치거나 소략한 번거로운 말씀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고, 오직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퍼지 못합니다. 연호. 상동.

별폭: 상동.

一. 일본국 근시 종사위 빙고수〔備後守〕 미나모토 나리사다〔源成貞〕.

조선국 예조참판 홍공 각하.

내면: 운운. 홀연 보내주신 귀한 서신을 받고 정을 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귀국의 왕께서 우리 대군(大君)이 홍업(洪業)을 이은 것을 축하하여 세 사신을 보내고 방물을 증정하여 멀리 아름다운 의식을 닦아 예전의 우호를 돈독하게 함이 가이없음을 알고는 감사하는 마음 매우 깊습니다. 신 등 또한 아름다운 선물을 받고서 성대한 덕성을 알기에 축하였습니다. 통신사가 돌아감을 고향에 가벼운 물품을 바치오니 피차의 정은 같을 것이라 밝게 살펴보시겠지요. 퍼지 못합니다. 연호 상동.

별폭: 상동.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내면: 운운. 성사(星使; 사절)의 배편에 화함(華絨)이 따라 오고 덧붙여 풍성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 매우 깊습니다. 이에 오로지 우리 대군(大君)께서 지위를 맡아 교화를 베푸는 것을 축하하고 아울러 저군(儲君)께서 정체(正體)로 덕성을 기르는 것을 경하하여 관사(官使)께서 두 차례 성에 올라 대례(大禮)를 이미 마치고 진퇴가 법도에 맞아 서로 우호하는 정의 더욱 돈독해졌으니, 이는 실로 두 나라의 변함없는 기쁨이요 경사인지라, 불녕(不佞)이 어찌 춤이라도 추지 않겠습니까? 구구한 곡절은 생각건대 세 관사께서 상세히 말씀드릴 터인지라 번거로이 군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하여 하찮은 예물을 바쳐 간략하게 회답의 경의를 표합니다. 때는 초겨울인데 오직 진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별폭: 황연(黃蓮) 40근. 채화괘연(彩畵掛硯) 2비(備).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2개. 수주괘연(垂珠掛硯) 2비. 첩금병풍(貼金屏風) 2쌍. 청금화로(靑金火爐) 3위(圍).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수납루삼청발(粹鑑累三清鉢) 1부(部).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내면: 운운. 성사(星槎; 사절의 배)가 바다를 넘어 보내주신 서찰이 저에게 온데다가 관사(官使)와 여러 번 만나봄에 매우 기뻐고 많은 예물을 받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별폭의 가벼운 물품으로 감히 감사의 정성을 펴니다. 겨울철이 사랑스러운데 오직 계절에 따라 진중하게 삼가시기 바라며 펴지 못합니다.

별폭: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1개.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2쌍. 채화문갑(彩畵紋匣) 2개. 수정 갓끈〔水精笠緒〕 2묶음〔結〕. 수납명완(粹鑑茗盃) 20개.

一. 일본국 대마주 종벽산(鍾碧山) 만쇼잉〔萬松院〕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내면: 운운. 먼저 배를 타고 온 사신에 의하여 삼가 은혜로운 말씀을 받들고 겸하여 좋은 선물을 받으니 위안과 감사하는 마음 번갈아 생깁니다. 넉넉지 못한 물

품으로 예의를 표하여 회답의 경의를 펴오니 웃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별폭: 채화괘연(彩畵掛硯) 1비. 황련 5근. 채화누합연갑(彩畵累合硯匣) 1비. 수납과아(粹鑑鍋兒) 1개. 채화연광(彩畵宴筐) 1비.

一. 일본국 대마주 할로산(瞎驢山) 이페이양(以酤菴)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내면: 운운. 성사(星使)가 내빙(來聘)하고 화첩(華帖)이 겹쳐 움에 삼가 편안하신 줄 알고 기쁨과 위로됨을 이기지 못합니다. 보내주신 선물을 받고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사신이 돌아감에 하찮은 물품으로 회답의 경의를 표하오니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무튼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별폭: 첩금병풍(貼金屏風) 1쌍.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1개. 문지(紋紙) 500편. 수납명완(粹鑑茗盃) 10개. 수주괘연(垂珠掛硯) 1비.

一. 일본국 야마시로주(山城州) 영귀산(靈龜山) 사문(沙門; 승려) 겐싱(玄森).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내면: 운운. 지난번에 화첩(華帖)을 보내 주시고 덧붙여 진귀한 선물을 주셔서 두텁게 보살피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 길에 수고롭게 세 사신이 대군(大君)이 계승함을 축하하고 바다와 육지 길에 장애 없이 빙례(聘禮)를 엄숙하게 마치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넉넉지 못한 별폭으로 회답의 경의를 표하오니, 웃으시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별폭: 대화진주(大和眞朱) 5근. 청동화로(靑銅火爐) 2위. 수납다기(粹鑑茶器) 20개. 살화대연갑(撒畵大硯匣) 1구. 적동루오관반(赤銅累五盥盤) 1부. 수정 갓끈(水精笠緒) 2결. 황련 10근.

임술(1682) 11월 16일

오늘 통신사를 인견하였을 때 통신사 호행차왜에 대한 경접위관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로 답전에서 하교하셨음. [이조, 예조, 비변사].

임술(1682) 11월 18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10월 13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 세 사신에게로 보내온 도주(島主)의 서간을 추후에 전하여 주는 것은 부당하기로 역관을 시켜 차왜에게 되돌려주게 하였는데, 차왜들이 시종 굳게 고집하면 또한 매우 난처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여 지휘해 달라는 일로 방금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역관들이 와서 고한 내용에, “동 서간을 분부대로 재판차왜 및 호행차왜에게 되돌려주었더니, 동 왜인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 서간은 곧 도주(島主)가 통신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뜻이고 겸하여 보낸 물건이 있을 뿐 아니라, 일찍이 이전에는 행차가 병폐 없이 대마도로 돌아온 뒤에 행중(行中)에서 도주(島主)에게 치사(致謝)하는 내용 중에 관백(關白)에게 아울러 치사하는 뜻이 있는데, 이번 사신이 도주(島主)에게 치사한 서신 가운데는 전혀 관백(關白)에게 치사하는 말이 없었으므로, 도주(島主)가 이 한 조목 때문에 세 사신 앞으로 서신을 보냈는데, 만약 보내어 전하여서 답을 얻어 보내지 않으면 관백에게 치사하는 한 조목은 전연 누락되고, 도주(島主)가 시종 사행을 모시고 호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접대한 뜻이 관백(關白) 앞에 신용을 받을 수가 없어 일이 매우 민망하고 답답하다’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한다”고 와서 고하거늘, 동 서간을 당초 역관들이 가져왔을 때 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주었기에 서간 가운데 한 말이 과연 차왜들이 운운한 이야기라면 전연 흑백을 가림이 없어서는 부당하기로, 동 서간을 역관들에게 시켜 베껴 오게 하여 보았더니, 세 사신에게로 보낸 각 폭에는 전례에 따라 서로 문안하는 말에 불과하고, 또한 병풍을 써 달라는 청을 언급하였고, 도장(都狀) 한 통에는 과연 별도로 서계를 만들어 동도(東都)에 치사하는 말이 있으며, 을미년(1655)에 이미 행한 사례로 증명하기까지 하였는바, 을미년(1655)의 사례는 비록 뚜렷이 알지 못하나, 도주(島主)가 치사하는 서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실로 에도(江戸)에 신임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나, 일이 긴급하고 간절하여 등한한 서신의 말에 비할 바가 아니기로, 동 서간은 해조의 품의 조치를 기다리는 사이에 짐짓 받아 올리지 않았으며, 등본만 먼저 해조로 올려 보내오니, 답장을 닦을 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치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방금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도주(島主)가 보낸 서장 및 병풍 등의 물건을 올려보내어 글씨를 적어 답장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일로 복계하여 윤허를 받아 이미 분부하였는데, 이 장계의 사연을 보면

사신의 답서 가운데 관백에게 치사하기를 청하였고, 을미년(1655)에 이미 행한 사례라고 증거를 삼았는바, 을미년(1655) 사신이 대마도에 되돌아와서 도착한 뒤에 도주(島主)가 이것을 간청하여 그가 생색을 내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므로, 원하는 대로 간략하게 답서 가운데 언급하였으니, 이제 또한 전례대로 답서를 닦아도 무방하니 이 뜻으로 분부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11월 19일 우부승지 신 서문중(徐文重)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술(1682) 11월 21일

一. 세 분 사공(使公) 대인 합하에게 받들어 바칩니다. 외람되이 화전(華箋)을 접하니 기쁨과 위로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맑고 여유로우며 배가 이미 악포(鰐浦)에 도착하였음을 알고 우러러 그리워하는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순조로운 바람이 있으니 아마 이미 부산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번엔 먼 길을 함께 다니면서 접반(接伴)한지 오래였는데, 객지의 길이 평안하고 피차간에 적절함을 얻었으니 두 나라의 경사가 이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이제 사례하시는 큰 말씀을 받고 보니 이제 얼굴에 땀이 남을 어찌 그치겠습니까? 지난 을미년(1655)에 귀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있을 적에 불녕(不佞)에게 서신을 올려 먼저 우리나라의 바다와 육지의 먼 길에 역참과 여관에서 준비가 지극함에 대하여 동도(東都)에 치사해 주기를 요청하여, 이 때문에 불녕(不佞)의 서신과 함께 아울러 봉하여 집정에게 보내어 진달하여 알렸는데, 이번 행차에는 오직 이 한 조목이 없었으니, 모름지기 별도로 서계 하나를 만들어서 예전 규례를 준수하여 불녕에게 주시기 바라며, 감히 이렇게 알리지 못하오나, 아무튼 밝게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세 사신 앞의 각폭(各幅).

정사대인 합하. 추위의 위세가 바야흐로 혹독한데 지금까지 몇 일 동안 생각건대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라는 마음 이기지 못합니다. 닳을 뿐 뒤로 이우고 좋은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느 곳에 배를 대었는지, 오직 뒷날의 기약이 없음을 생각하면 서운하기가 무한히 깊습니다. 지난번에 병풍 위의 글씨를 구하였

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억지로 요청하는 것은 작별한 뒤에 얼굴을 대신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만리 길을 같이 하였던 정의의 정성스러움에 대한 신표로 삼기 위함입니다. 거절하지 마시면 감사하기 그지없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호송하는 자가 말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에 황감(黃柑)을 바쳐 구구한 심정을 표합니다. 아무튼 밝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부사대인 합하. 작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러러 그리는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연일 상쾌한 바람이 불었는데 오늘은 어느 곳에 닳줄을 매었는지 모르겠으나, 지내시기에 맑고 여유로우신지요? 생각건대 뒤에 만나볼 기약이 없는지라 서운함이 어찌 그치겠습니까? 지난번에 병풍에 글을 써주기를 바랐는데, 고명(高明)¹⁰²⁾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필(巨筆)을 휘둘러 주시면 감사함이 그지없겠습니다. 또한 이제 동암(東巖)의 그림을 구하면서 합하에게 찬(贊)을 지어주시기 바라오니, 합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황감(黃柑)을 바쳐 소개의 신의로 받드오니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종사관 대인 합하. 배 위에서 읊하고 작별하며 서운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일에 바람이 순조로운데 오늘은 어느 포구에 도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생각건대 객지에 지내시기가 맑고 적절하신지 우러르는 마음 어찌 이기겠습니까? 이에 길을 같이 다닌 지극한 정을 생각하면 뒷날 만날 기약이 없는 것이 부질없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번에 병풍에 거필(巨筆)을 휘둘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이제 또한 동암(東巖)에게 화폭(畫幅)을 요청하는데, 고명(高明)께서 찬(贊)을 지어주시기를 받들어 청합니다. 이는 뒷날의 안면(顔面)으로 삼으려고 함이니, 사양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황감(黃柑)을 바쳐 멀리 정성을 표하오니 웃으며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전 서계의 회답 및 병풍을 써서 보내는 일을 이미 복계(覆啓)하여 윤희를 받았는데, 동 병풍이 올라 온 뒤에 그 말대로 화원 함제건(咸悌建)이 각별히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고, 사신으로 하여금 글씨를 쓰게 하여 보내며, 회답 서계는 전례대로 또한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며, 보내온 황감(黃柑)은 해조로 옮겨 보내어 구분하여 조처하도록 하되, 회례 물품은

102) 고명(高明): 상대방을 높여 일컫는 말이다.

참작하여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보내는 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11월 21일 동부승지 신 서문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세 사신의 회례. 각각: 황모필 30자루. 참먹 30홀. [이상 해조].

一. 이번 11월 12일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민정중에 계달한 바, “일찍에 통신사의 행차에 세 조목의 금약(禁約)을 조정하게 하였는데, 이제 사신의 장계를 보면 저쪽에서 모두 순종하였다고 하니, 약조를 거둬 밝혀서 조목 조목 나열하여 왜관 가운데 패(牌)에 새겨 왕래하는 왜인에게 금제(禁制)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아서는 안되니, 이것을 즉시 동래부사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비변사, 본도와 본부, 예조로 이문함].

임술(1682) 11월 22일

통신사가 상고할 일. 에도(江戸) 봉행 8인에게 전하여 지급하지 않았던 서계 8통과 별폭 8통에 부친바 공예단(公禮單) 잡물 및 수직왜(受職倭) 5인에게 전하여 지급하지 않았던 공예단 잡물을 아울러 후록하였으니 상고하여 받아 올리며, 수직왜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본조에서 해당 도에 분정하였던 화석 10장 및 쓰고 남은 인삼 3근, 석린(石鱗) 3근과 잉여 인삼 7근과 붉은 보자기 20건 등을 상고하여 받아 올린 일임.

범 가죽 8장. 흰 모시베 95필. 명주 95필. 유포(油布) 40필. 황모필 210자루. 참먹 105홀. [봉함을 바꾸지 않고 호조로 이송함. 승문원, 통신사 봉감(捧甘)].

임술(1682) 11월 30일

一. 동래부사 남익훈이 24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비변사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에, “통신사의 사행에 세 조목의 금약(禁約)을 조정하게 하였는데, 이제 통신

사의 장계를 보면 저쪽에서 모두 순종한다 하니, 거둬 조약을 밝혀서 조목을 나열하여 패(牌)에 새겨 왜관 가운데 세워서 왕래하는 왜인들에게 금제(禁制)를 분명하게 알게 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이것을 즉시 동래부에 분부할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관문 내의 사연을 이제 막 거행할 계획이거니와, 관문 가운데 세 조목의 금약이라 한 것은 당초 본부의 장계 후록의 세 가지 일을 가리킴이 마땅하나, 세 가지 가운데 세선(歲船)의 수를 줄이는 일은 사신이 당초 저쪽에서 꺼내지 않았다고, 차왜의 일은 과연 조정하였으나 원래 왜관 가운데 패를 세울 일이 아닌바, 지금 패를 새기는 한 조목은 오직 일곱 가지 약조(約條)일 뿐인데, 이른바 일곱 가지 약조는 본부에서 올린 무오년(1678) 장계 등록에 실려 있으나, 문자가 길고 번거로워 패에 새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곱 가지 가운데 제1조는 관문(館門) 밖의 출입 한계를 정하는 일이고, 제2조는 경계를 정한 뒤에 범하는 자는 죄를 다스린다는 일이고, 제5조는 조시(朝市)에서 어울려 매매하는 이외에는 일체 여염집에 출몰하지 말라는 일인데, 이 세 조목은 말의 뜻이 중첩되어 한 가지로 합쳐야 할 일이며, 제3조의 잠상(潛商)으로 금법을 범하는 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같은 죄로 한다는 한 조목은 편치 못한 일이 없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간사한 사람이 관가에 고하지 않고 몰래 물화(物貨)를 가지고 왜인과 매매하는 자를 잠상(潛商)이라 일컫는데, 왜인은 그 사람이 잠상인지 모르고 함께 매매하였다가 그것이 적발된 뒤에 우리나라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죄(一罪)로 논한다면 저쪽에서 반드시 원통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잠상을 금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배로 엄격하여 왜인이 잠상을 참형으로 처단한 것이 전후로 한 두 번이 아니거니와, 금령을 범한 왜인이 소지한 물화가 반드시 우리나라 상인의 몰래 판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상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피집(被執)한 물건을 왜인들이 사사로이 매매하다가 도중(島中)에서 탄로 나서 잡힌 뒤에 우리나라 사람을 같은 죄로 처벌하기를 요구한다면 일이 매우 난처하니, 잠상 두 글자는 빼어버리고 단지 노부세(路浮稅) 한 조목만 남겨 둬서 어떻겠으며, 제6조의 이른바 왜인이 진상숙배(進上肅拜)하러 왕래할 때 그 직품 등급에 따라서 그 수행인원을 정하여 곧장 갔다고 곧장 올 것이지 혹시라도 뒤쳐져 제멋대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한 조목은, 이른바 뒤쳐져 제멋대로 다닌다는 것은 경계 표시의 금제를 범하는 자와 원래 다름이 없어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 수행 인원 수를 정하는 것은 형편상 시행하기 어렵고 또한 번쇄(煩瑣)한 일이라 이 한 조목은 빼어버리는 것이 적합할 듯한데, 이렇게 말하자면 패에 새길만한 것은 네 가지에 지나지

않겠기로, 신이 감히 비천한 견해로 조목을 만들어 무오년(1678)에 확정한 7조와 아울러 뒤에 나열하였으니, 묘당에 명하여 참작 취사하여 분부하여 거행하도록 해주실 일.

후록:

一. 왜관 문 밖으로 왜인이 출입하는 제한은 엄중하게 그 경계를 정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구관(舊館)에서는 수문(守門) 밖 수십 보 되는 곳에 좌자천(左自川) 냇물 하나가 있으므로 그 내를 한계로 하되, 신관(新館)에서는 수문 밖에서 앞으로 나오면 곧 해안의 항구이고, 그 항구를 건너면 곧 절영도(絶影島)이며, 서쪽으로 나가면 곧 연향청(宴享廳)으로 지나가는 길이고, 문에서 연향청까지는 겨우 한 마장(馬場; 1리)입니다. 동쪽으로는 곧 구관으로 왕래하는 길인데, 문에서 송현(松峴)까지 또한 백 보 남짓 거리에 불과합니다. 연향청에 출입하는 곳은 비록 또한 문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밖에서 굳게 잠궈두고, 열고 닫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기에, 왜인이 결코 수문(守門)을 버리고 감히 이 문으로 출입할 생각을 내지 못합니다. 이제 경계를 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수문으로 그들이 출입하게 정하고, 앞으로는 감히 해안의 항구를 건너 절영도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서쪽으로는 감히 연향청을 지나지 못하게 하며, 동쪽으로는 송현을 지나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명백하게 조정함.

一. 이미 경계를 정한 뒤로는 만약 감히 범하는 자가 있으면 수문(守門) 군관(軍官)과 입번(入番) 소통사(小通事)와 복병(伏兵) 등이 법을 범한 왜인을 사로잡아 관수왜에게 들여 주어 즉시 도중으로 보내어 법대로 형벌을 행하라는 뜻으로 특별히 한 조목을 만들어 도주(島主)에게 조정함.

一. 잠상(潛商)의 노부세(路浮稅)가 적발되어 잡힌 뒤에는 피차간에 같은 죄로 해야 마땅하나, 근래에는 비록 이 일로 금법을 범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단지 우리나라 사람만 죽일 따름이고, 왜인은 탈이 없으니 이 어찌 두 나라가 신의로 일을 처리하는 도리이겠는가? 일의 체면으로 헤아리자면 극히 한심하니, 지금 이후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도 같이 일죄(一罪)로 하자는 뜻으로 엄하게 조목을 세워 도중(島中)과 조정하여 일체로 준행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음.

一. 개시(開市) 때 대관(代官) 여러 왜인이 우리나라 역관 상인들과 대청(大廳)에서 좌정하고, 상인들의 종들과 말 주인들은 그들 이름으로 패를 받아 문에 들어온 자는 대청 아래에 줄지어 앉는데, 무릇 매매하는 일은 한결같이 문을 들어온 물화의 수량에 따라 그 다소와 귀천의 품질을 따져 공정하게 교역하여 물러가고,

일체 그 하왜(下倭)들과 사사로이 상인 및 말 주인들과 함께 몰래 각 방에 들어가서 몰래 매매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하게 조목을 세워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각기 잠상(潛商)의 율을 시행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음.

一. 왜인이 몰래 여염집으로 나와서 함부로 난잡하게 행동하는 폐단은 한정이 없는데, 몰래 나온 자들은 매양 생선과 채소를 산다고 말을 하나 그 간교한 버릇은 참으로 매우 밋지만, 다만 생선과 채소를 매매하는 길을 영영 막는다면 먼 외국 사람의 생계가 또한 매우 절박하여 또한 모름지기 별도로 한 조목을 세워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생선과 채소와 과실과 쌀 등 일상생활에서 폐지할 수 없는 물품을 매일 아침 전에 관문 밖에 가서 팔도록 허락하는 외에, 또한 왜인에게도 수문(守門) 밖에서 사들이는 즉시 들어가서 일체 이전처럼 여염집에 출몰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조정할 것

一. 신관(新館)의 객사(客舍)를 아직 새로 짓지 않았고 객사의 터는 현재 비록 들어가 사는 여염집이 없으나, 해가 오래된 뒤면 장차 큰 마을을 이룰 형세이니, 만약 미리 약속하지 않는다면 뒤에 막기가 어렵고, 곧장 구관(舊館)의 일로 말하자면 왜관에서 객사에 이르는 사이에 시골 마을이 준비하므로, 송사(送使) 등이 숙박하러 왕래할 즈음에 종왜(從倭)를 많이 거느리고 와서 흠어져 들어가 횡행하는 폐단을 견디지 못하니, 이 뒤로는 신관의 송사가 숙박하러 객사에 왕래할 때면 한결같이 품수(品數)에 따라 그 수행하는 인원수를 정하여 곧장 갔다가 곧장 오되, 혹시라도 뒤쳐져서 함부로 행동하여 이전의 버릇을 따르지 말라는 뜻으로 또한 명백하게 조정함.

一. 오일잡물(五日雜物)을 관왜에게 들여 줄 때는, 전례로는 본부에서 아전과 고직(庫直)들을 정하여 보내어 왜관 문을 들어가서 수량을 대조하여 지급하되, 계산하여 지급할 때 만약 사소하게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왜인이 시비를 묻지 아니하고 곧장 사납게 화를 내어, 색리(色吏)나 고자(庫子)나 소통사(小通事)나 부장(部將)이나 문직(門直)의 무리를 따지지 않고 사사로이 끌고 다니며 구타하고, 심지어는 의관을 찢어버리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지경에 이르니,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성신(誠信)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 이후로는 일체 이런 버릇을 따르지 말고 비록 혹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조용히 본부에 전하여 알려 좋은 모양으로 조처하라는 뜻으로 명백하게 조정함.

위는 무오년(1678) 장계의 후록(後錄) 조건임.

一. 금표로 정한 경계 밖으로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밀고 나와 범하여 넘는 자는 일죄(一罪)로 논할 일.

一. 노부세(路浮稅)로 적발되어 잡힌 뒤에 준 자와 받은 자는 같이 일죄(一罪)로 할 일.

一. 개시(開市)할 때 각 방에 몰래 들어가서 몰래 서로 매매하는 자는 피차간에 각기 일죄(一罪)를 시행할 일.

一. 오일잡물(五日雜物)을 들여 줄 때 색리와 고직과 소통사들을 왜인이 일체 끌어다가 구타하지 말 일.

위 4가지 약조는 한 번 정한 뒤에 만약 함부로 범하는 자는 한결같이 역관들의 서찰대로 조정하라는 뜻으로 본부에서 곧바로 도중(島中)에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논하게 할 것.

위는 패에 새길 새 약조임.

一.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운운. 이번 통신사가 이미 왜관의 금약(禁約)을 거듭 밝히자는 뜻으로 대마도주에게 타일러 따르게 하였기로, 동래부사에게 분부하여 속히 패를 새겨 왜관 가운데 세워서 왕래하는 왜인으로 하여금 금제를 분명히 알게 하라 하였는데, 변방의 사정이라 멀리 헤아리기에 어려움이 있기로 전후의 장계에 실린 조건을 거론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면 그 진술한 조목이 실로 변방 실정에 합당할 뿐 아니라, 후록의 네 조목은 또한 매우 요령 있게 요약되으니, 이대로 새겨 세우게 하되, 이런 약조를 세우는 것은 관계가 매우 엄중하여, 만약 소홀하여 누락됨이 있으면 추후에 미칠 수가 없고, 전일에 일을 보았던 역관이 방금 이미 내려갔으니, 다시 더 상의하여 구태여 보태어 넣을 만한 조목이 있으면 비록 재삼 장계로 알려져서 누차 강론하여 정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으니, 이런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12월 초3일 좌부승지 신 조(趙)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임술(1682) 12월 12일

一. 예조 단자. “방금 바친 사역원의 첩정 내용에, 이제 이번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문위(問慰) 당상역관으로 행부사용(行副司勇) 박재흥(朴再興)과 당하역관으로

훈도 김관(金琯)을 차출하여 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대로 들여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계달하였더니 계달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一. 예조 단자. 이제 이번 대마도주에게 문위역관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을 이미 확정하였는데, 문위서계(問慰書契)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가지고 갈 예단은 전례대로 마련하였으니,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범 가죽 3장. 표범 가죽 3장. 인삼 5근.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10필. 흰 무명 3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 참떡 30홀. 화석 10장. 상화지(霜花紙) 10권. 화연(花硯) 3면. 녁장 붙인 유둔 5부. [이상 본도].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대마도주에게 문위역관으로 당상과 당하 각 1원을 내려 보내는바, 타고갈 배 및 사공과 격군(格軍)과 데려갈 하인을 아울러 분정하여 정돈하여 대기하라는 일로 각 지방관 및 수영에 거듭 밝혀 분부하고, 배는 이번 통신 상사(上使)가 댔던 배가 견고하고 빨리간다 하니, 이 배로 정하여 주며, 반전(盤纏;여비)으로 증정하는 예단과 바다 건너의 양식 등의 물자는 전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할 일. [경상 감사에게].

임술(1682) 12월 15일

一. 접위관 병조정랑 이(李)가 12월 초7일 성첩한 장계. 신은 이달 초7일 동래부에 도착하였거니와, 통신사를 호위하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다례 날짜를 역관에게 조정하게 하였는데, 배풀어 행한 뒤 추후에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일임.

一.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 통신사 세 사신 앞으로 온 대마도주가 바친 서간과 물건을 받아 올려 올려보내는데, 서폭 4통은 이미 이전의 파발 편으로 올려보냈으며, 물건은 이제 이번 별폭 잡물을 영술하여 가는 편에 부쳐 보내오니, 후록을 상고하여 일일이 세 사신 앞으로 전하여 보낼 일임.

후록: 병풍 2쌍. 감자(柑子) 3상자.

一. 예조 단자. 통신사가 가져온 관백(關白)의 별폭 회례(回禮): 진상(進上). 건(鑑;창) 100자루. 살금시회안구(撒金蒔繪鞍具) 20장(裝). 금지화병풍(金地畫屏風) 20쌍. 살금시회광개(撒金蒔繪廣蓋) 10매. 채문복(綵紋服) 50령(領).

一. 관백(關白) 아들의 별폭 회례: 진상(進上). 대자제구(臺子諸具) 5식(飾). 팔장주(八丈紬) 200단(端). 월전면(越前綿) 500과(把).

一. 집정 1인, 집사 3인, 시종 1인, 근시 1인의 별폭 회례 각각: 진상(進上). 백은(白銀) 100매. 월전면(越前綿) 100과.

一. 대마도주의 별폭 회례: 진상(進上). 채화화전갑(彩畫華箋匣) 1개.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2쌍. 채화문갑(彩畫文匣) 2개. 수정 갓끈〔水精笠緒〕 2묶음〔結〕. 수납명완(粹鑑茗盃) 20개.

一. 수도서(受圖書)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별폭 회례: 진상(進上). 황련(黃蓮) 40근. 채화괘연(彩畫掛硯) 2비(備). 채화화전갑(彩畫華箋匣) 2개. 수주괘연(垂珠掛硯) 2비. 첩금병풍(貼金屏風) 2쌍. 청금화로(靑金火爐) 3개. 대화진주(大和眞朱) 3근. 수납루삼청발(粹鑑累三清鉢) 1부(部).

一. 수도서(受圖書) 만쇼잉〔萬松院〕 별폭 회례: 진상(進上). 채화괘연(彩畫掛硯) 1비. 황련 5근. 채화루합연갑(彩畫累合硯匣) 1비. 수납과아(粹鑑鍋兒) 1개. 채화연광(彩畫宴筐) 1비.

一. 수도서(受圖書) 이때이양〔以酊菴〕 별폭 회례: 진상(進上). 첩금병풍(貼金屏風) 1쌍. 채화화전갑(彩畫華箋匣) 1개. 문지(紋紙) 500편. 수납명완(粹鑑茗盃) 10개. 수주괘연(垂珠掛硯) 1비.

一. 사문(沙門) 겐 모리〔玄森〕〔장로승(長老僧)] 별폭 회례: 진상(進上). 대화진주(大和眞朱) 5근. 청동화로(靑銅火爐) 2위. 수납다기(粹鑑茶器) 20개. 살화대연갑(撒畫大硯匣) 1구. 적동루오관반(赤銅累五盥盤) 1부. 수정 갓끈〔水精笠緒〕 2결. 황련 10근.

계달하였더니, 계달한대로 시행하라 하심.

〔이상 등의 물품은 역관 정문수(鄭文秀), 오윤문(吳允文) 등이 가져온 물품 수분을 바쳤으므로, 전례대로 간품(看品)하고 봉함하여 제사(題辭)를 안에 들이고 당상이 서압(署押; 서명)하였으며, 동 물건은 당상 낭청(郎廳)이 간품하고, 낭청 신이 삼가 착함(着緘; 서명을 붙여 봉함함)하여 봉함하고, 역관이 영솔하여 가서 상고(箱庫)에 바쳤는데, 짐꾼 200명은 병조에 이문(移文)하여 수송하여 바침].

임술(1682) 12월 17일

접위관 병조정랑 이현기(李玄紀)¹⁰³와 동래부사 남익훈이 12월 12일 연명으로 성첩한 장계.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다례를 이달 11일로 정하였기로 같은 날 신들이 함께 관소로 가서 전례대로 베풀어 행한 뒤에 차왜가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 2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아 올려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위 항목의 차왜가 당초 통신사를 호위하여 가기 위해 나왔을 때 이미 부관(副官)이 있었기로 시봉을 2인으로 접대하였으나, 이번에 나올 때는 이미 부관이 없어서 시봉을 2인으로 접대하는 것이 불가하기로 영관에게 명하여 타일러 줄이게 하여 단지 1인만 접대하였는데, 증정할 예단을 해조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라는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임술(1682) 12월 23일

접위관 병조정랑 이현기(李玄紀)와 동래부사 남익훈이 12월 17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의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하선연을 이달 16일로 정하였는데, 같은 날 신들이 초량 객사로 가서, 차왜의 원역들이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베풀어 행하고 공사 예단을 또한 들여 주었으며, 연례를 이미 미친 뒤에 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가 신들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사행이 무사히 갔다가 되돌아온 것은 실로 도중(島中)의 큰 다행이라, 마땅히 별도로 축하하는 일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저희의 조부가 일찍이 사행을 모시고 무사히 돌아와서 잔치할 때는 크게 성악(聲樂)을 베풀어 피차간에 경축하였기로, 저 또한 간략하게 주찬(酒饌)을 준비하고 겸하여 악기를 설치하여 진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거늘, 신들이 가만히 생각건대 중배례(重杯禮) 때 왜인이 찬(饌)을 베풀어 술을 들이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고, 연향하는 날 본부에서 또한 기악(伎樂)을 베풀어 저쪽 사람을 접대하니, 저쪽에서 음악을 베푸는 것은 또한 일체 물리쳐서 먼 외국 사람이 낙망하는 한탄이 있게 할 필요가 없겠기로 그들이 청하는 바를 허락

103) 이현기(李玄紀, 1647-1714) ; 전주 이씨로 자는 원방(元方), 호는 졸재(拙齋)이다. 숙종 2년(1676)에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우부승지와 대사성이 되었다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숙종 8년(1682)에 접위관으로 동래에 다녀갔다.

하여, 현악기와 관악기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그들이 하는 바대로 맡겼으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임술(1682) 12월 26일

접위관 병조정랑 이현기와 동래부사 남익훈이 12월 21일에 성첩한 장계. 통신사의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별연(別宴)을 베풀어 행하지 않고 배상(排床)으로 들여달라고 운운하였다고 역관들이 와서 고하기로 그 바라는 대로 이달 20일 잔치할 물품의 배상(排床) 및 공사 예단을 아울러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다는 연유를 치계한 일임.

계해(1683) 정월 초4일

접위관 이현기와 동래부사 남익훈이 12월 26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상선연을 이달 25일로 정하였기로 같은 날 신들이 관소로 가서 전례대로 베풀어 행하고 공사 예단 또한 들여 주었다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계해(1683) 정월 18일

접위관 이현기가 정월 12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 호행차왜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의 상선연을 베풀어 행하였다는 일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도주(島主)에게 보내는 세 사신의 서신이 진작에 내도하지 않았기로 차왜들이 여러 날 지체하여 기다렸는데, 동 답서가 엇그제 도착하였거늘 역관들로 하여금 차왜에게 전하게 하였더니, 동 차왜가 오늘 배를 타기로 정하였으니, 그 돌아 들어가는 것을 기다려 본부에서 치계함이 마땅하고, 신은 특별히 머물러 기다릴 일이 없기로, 당일 출발하여 전진하며, 차왜가 전후로 바친 예물의 물목 단자 3통을 해조로 올려 보내며 물건은 동래부로 보내어 추가로 올려 보내도록 한다는 일임.

一. 접위관에게 보낸 차왜의 예물 단자.

한해가 저물기를 재촉하는데 기운이 어떠하신지? 이제 하찮은 물품으로 경의를 표하며,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임술 초월(抄月) 일. 차사(差使) 침중(僉中).

채화유기대원분(彩畵有跂代圓盆) 1속(束). 채화대조경(彩畵大釣鏡) 2면. 우산(雨傘) 4지(枝). 직역연기(直譯煙器) 10악(握). 계(計).

一. 단자 운운.

매화가 해를 넘기고 버들가지에 봄이 가까운데, 군후(鈞候)¹⁰⁴가 편안하시리라 생각되어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 지난번에 외람되이 용문(龍門)에 올라 평범하지 않은 곡조를 보고 조용히 인사를 드림에 국가의 예전(禮典)이 눈에 보이는 형상 밖에서 나온 것인지라 한편 감격하고 한편 감사드립니다. 넉넉지 못한 예물을 아래와 같이 갖추었으니 웃으며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펴지 못합니다.

임술 조년(凋年) 일. 차사 침중.

의장단자(衣裝單子) 1비(備). 공작꼬리(孔雀尾) 1시(翅). 문지(紋紙) 500편. 향련 3근. 도가입팔촌염경(塗家入八寸奩鏡) 1면. 이만리대천목(伊萬里大天目) 1속(束). 계(計).

一. 단자 운운.

경건이 묻자옵건대 기운이 어떠하신지? 이에 장차 배를 돌이키기에 우러러 서운한 마음 둘 데 없어 하찮은 물품으로 작별의 회포를 표합니다. 펴지 못합니다.

임술(1682) 12월 일. 차사 침중.

채화식룡(彩畵食籠) 1비. 도문갑연(塗文匣硯) 1개. 적동루삼수세(赤銅累參手洗) 1조(組). 도타수(塗打數) 2속(束). 채화남초분(彩畵南草盆) 2구(具). 이만리대명(伊萬里大皿) 2속. 주칠소원분(朱漆小圓盆) 1속. 제(際).

계해(1683) 정월 19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정월 14일 성첩한 장계. 이달 13일 신시(申時)에 도부한 부산

104) 군후(鈞候): 신분이 높은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첨사 민기(閔錡)의 치통 내용에, “통신사 호행차왜가 탄 배 1척에 정관 다이라 마사끼[平眞幸]와 봉진압물 1인, 시봉 2인, 반종 25명, 도금도왜 5인, 격왜 90명 등이 함께 탔으며, 동 차왜의 도선주가 타고 온 배 1척에 도선주 1인, 격왜 40명, 통신사 일행의 배에 나누어 타고 나온 통사왜(通事倭) 6인과 도금도왜 6인,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12명 등이 함께 탔으며, 수목선 1척에 격왜 20명 및 일시에 나왔던 격왜 없는 소소종선(小小從船) 3척과 비선(飛船) 1척에 두왜 1인, 격왜 9명과 임술년(1682) 11월 25일에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 금도왜 1인, 격왜 15명과, 같은 날 규정 외로 나온 임술조 만쇼잉 송사의 수목선 1척에 격왜 15명 등 도합 9척이 당일 사시(巳時)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간 일임.

계해(1683) 3월 초4일

이번 3월 초2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¹⁰⁵⁾ 남용익(南龍翼)¹⁰⁶⁾이 계달한 바, “이번 통신사가 데려간 사람 중에 객지에서 죽은 자가 있는데, 일찍이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홀전(恤典)¹⁰⁷⁾을 거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신드립니다” 하였는데, 상감께서 “사례대로 거행하라” 하셨음. [호조].

다이라 마사끼[平眞幸], 다이라 나리쇼우[平成昌], 다찌바나 싱쥬우[橘眞重], 다이라 마사깁[平眞賢] 등의 회답 서신.

말씀하신 바의 폐주(弊州)에 별도로 사자(使者)를 보낸 일은 지난번에 일의 형편이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으로, 당초에 약조의 뜻에서 어긋남이 있는 것이 아니나, 지금 이후로는 한결같이 약조대로 연례 송사 이외에는 별도로 보내지 아니하고, 표류한 사람을 호송하는 한 조목은 경중의 구별이 없을 수 없으니, 만약 혹시

105)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관직 품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의 현재 품계보다 낮은 직급의 관직을 수행하는 것을 행직(行職)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행직으로 예조판서가 된 것을 말한다.

106) 남용익(南龍翼; 1628-1692):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곡(壺谷), 의령인이다. 인조 26년(1648)에 문과에 급제하고 경상도 도사를 거쳐 효종 6년(1655)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현종 정미년(1667)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07) 홀전(恤典): 조정에서 이재민을 구휼하여 보살피는 은전(隱典).

라도 다른 군현으로 흘러들어간 자나, 혹은 배가 파손되어 생명을 잃을 형세가 있어서 사유를 갖추어 고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감히 호송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나머지 표류한 사람은 모름지기 말씀하신 대로 순부(順付)¹⁰⁸⁾ 함.

108) 순부(順付) : 이미 가는 인편에 함께 부쳐 보냄.

편집위원

위원장 **강대민**(경성대학교 교수)
위 원 **김동철**(부산대학교 교수)
위 원 **박은경**(동아대학교 교수)
위 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연구원)
위 원 **황경숙**(부경대학교 교수)
위 원 **홍연진**(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국역위원

자료해제 **김동철**(부산대학교 교수)
자료번역 **정경주**(경성대학교 교수)
감 수 **이원균**(전 부경대학교 교수)

釜山史料叢書 21

國譯 通信使謄錄(Ⅱ)

발 행 인 강 창 석
편 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집·교열 부산광역시사편집분과위원회
발 행 일 2014년 8월 31일
인 쇄 대원애드콤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76-10
ISBN 979-11-85308-02-9
978-89-964675-0-2(세트)

비매품

【연락처】 611 - 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051) 888-4122, 팩스 051) 888-4129

자료검색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www.bssisa.com)

부산광역시 홈페이지(향토사도서관)